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표지와 같은 면지

차 례

제1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사업 소개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 소개 ····· 10
2. 알법의 필요성 ····· 11
3. 알법의 기본 원칙 ····· 12

제2장 용어 정비

1. 정비 원칙 ····· 16
2. 어려운 한자어 ····· 17
   1) 쉬운 말로 고치기 ····· 17
   2) 설명 붙이기 ····· 23
   3) 한자를 같이 쓰기 ····· 23
   4) 풀어 쓰기 ····· 25
   5) 고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고치기 ····· 26
   6) 어려운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 29
   7) 한문 투 표현 고치기: 유무와 여부 ····· 30
3. 일본식 한자어 ····· 31
   ▶ 「일본식 한자어」란? ····· 31
   ※ 일본식 한자어 목록과 정비안
   1) 가도(假道) ····· 32
   2) 계리하다 ····· 33
   3) 공(供)하다 ····· 33
   4) 기타 ····· 34
   5) 기하다, 부착하다 ····· 35
   6) 당해(當該) ····· 35
   7) 명기(明記)하다 ····· 36

8) 명(命)하다 ····· 35
9) 미불(未拂) ····· 36
10) 부의(附議)하다 ····· 37
11) ~에 불구하고 ····· 37
12) 산입하다 ····· 37
13) 응하다 ····· 38
14) 자(者) ····· 39
15) 일본식 용어 정비 목록 ····· 39

4. 일본어 투 표현 ····· 40

※ 일본어 투 표현의 목록과 정비안

1) ~에 관하여 ····· 40
2) ~에 대하여 ····· 41
3) 명사 나열형 ····· 42
4) ~에 ····· 43
5) ~에 있어, 있어서 ····· 46
6) 으로써 ····· 48
7) 요하는, 필요로 하는 ····· 50
8) 요하지 아니하다 ····· 51
9) 의 ····· 51
1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54
11) 하지 아니하는 한 ····· 54
12) ~에 한하여 ····· 54
13) ~에 한한다 ····· 56

5. 외래어와 외국어 ····· 56

1)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방법 ····· 56
2) 외국어 표기 시 유의사항 ····· 57
3) 틀리기 쉬운 외래어 ····· 61
4) 일본식 외래어 ····· 61
5) 외국어 정비 사례 ····· 62

차 례

6. 그 밖의 정비 대상 용어 ····· 63
1) 에게 ····· 63
2) 경우, 때 ····· 64
3) 내지 ····· 65
4) 본딧말과 준말 ····· 66
5) 아라비아 숫자 ····· 68
6) 의한, 의하여, 의한다 ····· 69
7) 하여금 ····· 71
8) 복합조사(까지에, 로부터) ····· 72
9) 문장부호: 가운뎃점 ····· 73
10) 문장부호: 쉼표 ····· 75
11) 문장부호: 마침표 ····· 76
12) 두음법칙 관련 사항 ····· 76
13) 틀리기 쉬운 표현 ····· 78
14) 적절하지 않은 용어 ····· 80
15)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 ····· 82
16) 조문의 번호 체계 ····· 84

7. 띄어쓰기 ····· 85
1) 법령 이름 띄어쓰기 ····· 85
2) 법령문의 띄어쓰기 ····· 89

제3장 문장 정비

1. 정비 원칙 ····· 100

2.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 101
1)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 102
2) 단서를 두는 경우 ····· 105
3) 후단을 두는 경우 ····· 106

4) 단서나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 108
5) 조나 항은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109
3. 문장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 110
1) 주어를 분명히 밝혀 준다 ····· 111
2) 목적어를 분명히 밝힌다 ····· 116
3)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를 쓴다 ····· 120
4) 수식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 가까이 둔다 ····· 121
4. 복문에서 주어-서술어 관계를 명확히 한다 ····· 123
1) 복문의 종류 및 구조 ····· 123
2) 복문에서는 각각의 주술관계를 명확히 한다 ····· 125
5.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 126
1) 행위 주체를 주어로 고쳐 쓴다 ····· 126
2) 일본어 직역 투의 피동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 127
3) 잘못된 피동 표현을 고친다 ····· 128
4)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피동문으로 쓸 수 있다 ····· 128
6. 명확한 문장으로 쓴다 ····· 129
1) '또는', '및'에 의한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 129
2)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 132
3) 다의적 표현은 정확한 의미로 고쳐 쓴다 ····· 133
4) 이중 부정문은 가능하면 긍정문으로 쓴다 ····· 133
5) 지시어의 내용을 직접 쓴다 ····· 134
6) 열거된 사항을 호나 목으로 규정할 수 있다 ····· 137
7. 지나친 생략은 피한다 ····· 138
1)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성분을 쓴다 ····· 138
2) 명사연속어구를 쓰지 않는다 ····· 141
8.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 141
1) 간결한 문장이 되게 한다 ····· 141
2) 필요한 경우 표, 계산식, 그림 등을 이용한다 ····· 145
※ 자치법규 등도 용어와 문장을 정비한다 ····· 147

차 례

제4장 정비안 작성

Ⅰ. 정비 방식 ····· 152
1. 순수알법과 내용알법 ····· 152
2. 제정/전부개정 방식 정비 ····· 152
3. 일부개정 방식 정비 ····· 153
4. 법률 정비를 시작하기 전의 확인사항 ····· 153

Ⅱ. 순수알법 정비안 작성 방법 ····· 157
1. 제안이유 ····· 157
2. 주요내용 ····· 158
3. 참고사항 ····· 159
4. 개정문 ····· 160
1) 기본 원칙 ····· 160
2) '조' 단위 개정 ····· 160
3) '장·절' 단위 개정 ····· 161
4) '항'의 정리 ····· 163
5) '호'와 '목'의 정리 ····· 163
5. 신·구조문대비표 ····· 164
1) 기본 원칙 ····· 164
2) 밑줄 기준 ····· 164
3) 신설되거나 삭제된 조문의 작성방법 ····· 167
6. 부칙 작성방법 ····· 168

Ⅲ. 내용알법 정비안 작성 방법 ····· 169
1. 제안이유 ····· 169
2. 주요내용 ····· 169
3. 참고사항 ····· 169
4. 개정문 ····· 170
1) 기본 원칙 ····· 170
2) '조' 단위 개정 ····· 170

3) '장·절' 단위 개정 ····· 171
4) '항'의 정리 ····· 174
5) '호'와 '목'의 정리 ····· 175
5. 신·구조문대비표 ····· 176
1) 기본 원칙 ····· 176
2) 밑줄 기준 ····· 176
3) 신설되거나 삭제된 조문의 작성방법 ····· 179
6. 부칙 작성방법 ····· 182

부록

Ⅰ. 정비 권고 용어 ····· 184
ㄱ ····· 184
ㄴ ····· 194
ㄷ ····· 195
ㄹ ····· 198
ㅁ ····· 199
ㅂ ····· 201
ㅅ ····· 207
ㅇ ····· 215
ㅈ ····· 226
ㅊ ····· 234
ㅋ ····· 238
ㅌ ····· 238
ㅍ ····· 240
ㅎ ····· 242
Ⅱ. 법령 유형별 작성례 ····· 246
1. 법률 작성례 ····· 246
2. 대통령령 작성례 ····· 259

차 례

3. 부령 작성례 ····· 267
4.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례 ····· 272

Ⅲ. 어문규정 ····· 283
1. 한글 맞춤법 ····· 285
2. 표준어 규정 ····· 320
3.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 338

1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사업 소개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사업 소개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 소개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의 법령은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법제처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어려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법령용어 순화 사업'과 '법률 한글화 사업'을 거쳐 현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령용어 순화 사업'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어려운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등에 대한 순화 용어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용어 순화의 기초 자료를 만들었으나, 직접적으로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처는 2002년부터 '법률 한글화 사업'을 추진, 2004년 한자로 된 모든 법률을 일괄해서 한글로 바꾸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1]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한자로 된 법률을 일시에 모두 한글화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단순한 법률의 한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용어 및 문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고, 2008년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지난 사업의 취지를 흡수하여 추진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잘못된 문장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문장 정비에도 중점을 두면서 진행돼 왔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2006.5.30.국무회의 보고)을 세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 주도로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까지 법률 중 정비가 필요한 법률 1천여 건을 알기 쉬운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많은 수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2]함에 따라,

1) 「민법」, 「상법」, 「형법」 등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8건의 법률은 제외하였다.
2) 2017년 11월 기준 알기 쉽게 정비된 법률안 1,140여 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중 890건이 통과되었다.

그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쓰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부터는 법제처에 접수되는 제정법령, 전부개정법령을 알기 쉽게 검토하여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령이 알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하였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문장 자체를 쉽고 반듯하며 명확하게 쓰도록 하는 기준을 다시 수립하였다. 또한, 법령의 장애인 비하 표현,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한층 심화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2 알법의 필요성

세종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법이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을 '어엿비' 여겨 한글을 창제하였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바른 것을 바른 표현으로 바르게 드러내 나타낸다'는 정음사상(正音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글자보다도 뛰어난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쉽고 아름다운 글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최고의 문자인 한글을 두고서도 한자 문화의 오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한자로 표기된 어려운 법령 문장을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을 법률관계에서 소외시켜 왔다.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투 표현으로 가득한 법령문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다. 비문은 아니더라도 군더더기 말이 많고 복잡한 문장 역시 이해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국민에게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제도를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이 만들어진다면 법을 어길 일도 없는 반듯한 사회로 가는 길이 한걸음 더 앞당겨질 것이다.

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법 사업의 첫해인 2006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63건의 알법 법률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제안 이유에 잘 나타나 있다.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알법의 기본 원칙

쉬운 법령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법령문은 직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써야 한다.
- 이를 위해 먼저 한자로 표기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다.
-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은 법령문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보통 수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령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어렵

다'는 기준은 법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되어야 한다.

- 법령문은 위엄 있고 장중(莊重: 장엄하고 무게가 있는 것)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하나의 문장이나 용어로 압축하고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석 면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문장의 간결성과 함축성보다는 입법 의도를 정확하고 충분히 나타내는 내용이 법령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조세나 기술 관계 법령 등과 같이 그 제도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기술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법령은 내용이 어느 정도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논리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을 쉽게 서술하면서 정확성과 치밀성을 높이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한다든지, 실체 규정과 절차 규정을 나눈다든지, 수식과 도표를 적절히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조항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조항 배열의 순서도 조정해서 알기 쉬운 법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

뚜렷한 법령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정비한다.

- 법령문은 용어와 표현 등이 명확해야 하며,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법령문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법령은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게 한다.
- 이해를 어렵게 하는 불분명한 수식관계, 복잡한 회계관계가 서술된 문장은 계산식과 도표를 활용하거나 각 호로 구분하는 등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듯한 법령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

- 법령문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문자 생활에서의 통일성과 편의를 위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법령의 입법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기준 외에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입법 실무상의 편의나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행화된 법령문 표현'이라고 하면서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그러나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은 법령문이라고 해서 예외로 할 수 없는, 문장 작성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입법을 할 때에도 어문 규정을 따른다.

자연스러운 법령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

- 법령문의 문체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체와 가깝게 만들어서 읽는 사람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체(古語體)에 가까운 문어적(文語的) 표현이 법령의 위엄과 무게 그리고 권위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 우리말의 문체를 살려서 자연스러운 법령문을 쓰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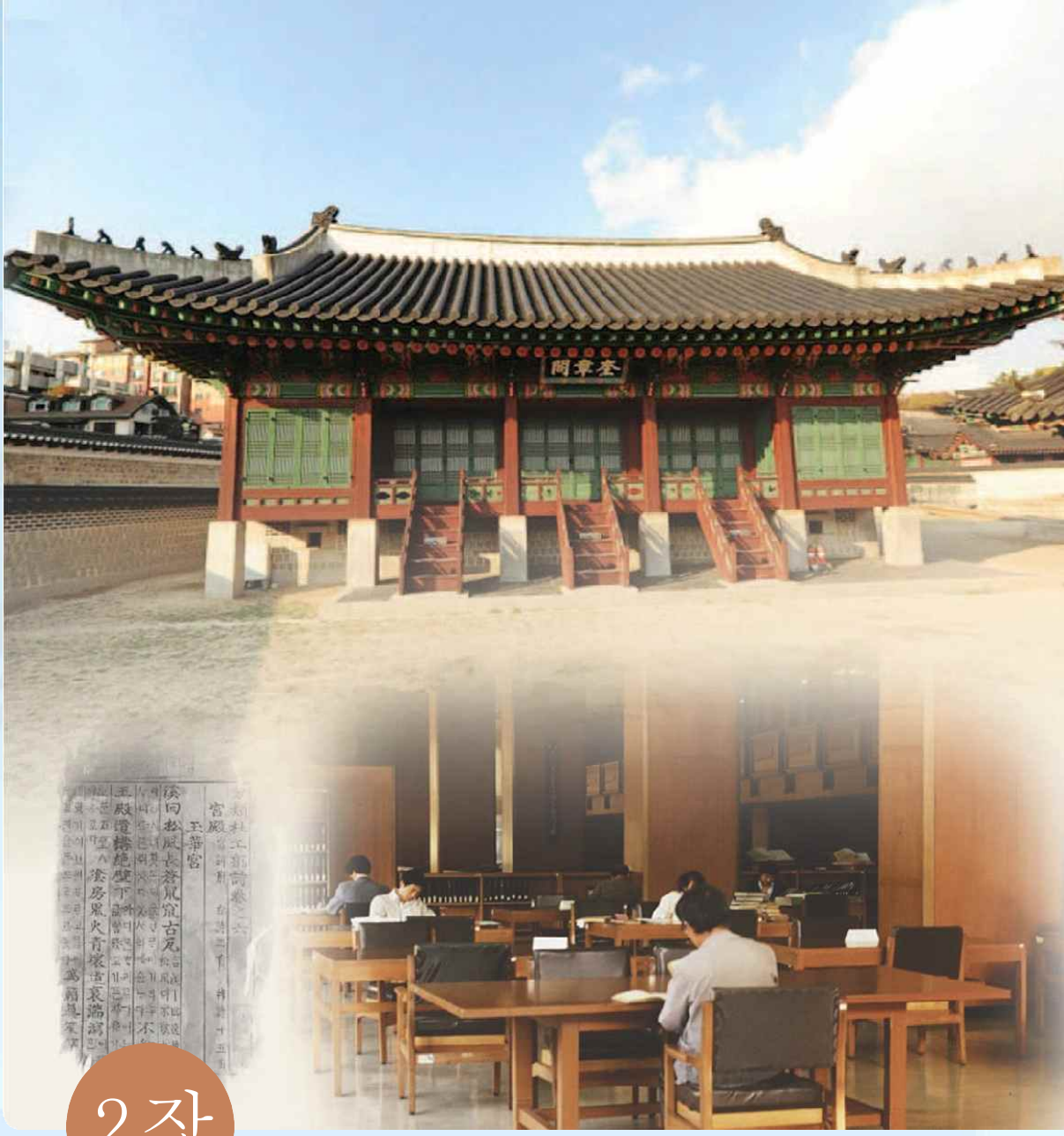

2장

용어 정비

※ 이 장에 소개된 정비 기준은 법령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맞게 신중한 검토를 거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용어 정비

1 정비 원칙

한글로 표기
-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쓴다.

일반 한자어의 순화
-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쓴다. 다만, 우리말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 쉬운 한자어라도 그에 해당하는, 널리 쓰이는 쉬운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로 바꾼다. 다만, 뜻풀이 방식의 순화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피한다.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다면 널리 쓰이는 적절한 한자어로 순화한다.

외래어
- 외래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기로 하되,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행을 존중하며, 그 외에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국립국어원과 법제처 등 전문 기관에 자문한 후 사용한다.

너무 간단하거나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의 수정
- 너무 간단해서 알기 어려운 용어나 지나치게 줄여 써서 알기 어려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첨가하거나 쉽게 풀어 쓴다.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등의 정비
-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권위적인 용어와 비민주적인 용어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쓴다.

어문규정의 준수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는 어문규정에 맞게 고쳐 쓴다.

정비 용어 사전의 활용
- 그동안 발간된 '법령 용어 순화 편람'을 통합하고 정비사례를 추가한 이 책의 [정비 권고 용어 목록]을 참고하되, 법문장의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해서 순화한다.

각 부처 등의 국어 순화 정책에 따른 용어 순화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어 순화 사업에 따라 결정된 용어는 법제처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쓴다.

2 어려운 한자어

1) 쉬운 말로 고치기

-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고칠 것인지는 법령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서 어렵기만 한 한자어로 된 용어는 쉬운 말로 고친다.
-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도 그 특별한 의미와 관계없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쉬운 말로 고친다.
- 글자만 같고 뜻은 다른 용어와 구별하거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이 때 한자는 괄호 안에 쓴다.
- 이 책 [정비 권고 용어 목록]에 따라 기계적으로 법령 용어나 문장을 고치지 말고 제시된 '순화 용어' 중에서 문맥에 가장 적절한 용어를 선택한다. 제시된 순화 용어 중 적절한 용어가 없으면 다른 용어를 생각해 내거나 문장 자체를 고쳐서 되도록 법령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고친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쉬운 한자어로 바꾼다.
- 순화할 수 있는 용어라도 문맥이나 명사, 동사 또는 형용사 등의 쓰임새나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순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뜯다

예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용전기통신법」[3] 제18조)

교부하다 → 내주다, 주다, 지급하다, 발급하다, 교부하다

교부 → 지급, 발급, 교부

- 문맥에 따라 금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다'로, 등록증, 인증서, 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발급하다'로 바꿀 수 있다.
- (돈)을 교부하다 → 지급하다, 내주다, 주다, [명사] 지급, 교부
- (증명서)를 교부하다 → 발급하다, 내주다, 주다, [명사] 발급, 교부
- '교부', '교부하다'를 쓰는 경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 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등을) 교부하다.

발급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

3) 이 정비기준에서 예시로 든 법령 중 일부는 목적에 맞게 현행 법령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현행 법령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제55조(보조금의 교부) 대부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5조(보조금의 지급) 대출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출이나 주택대출(대지구입대출 및 주택개량대출은 제외한다)을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교부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① 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권고안

사위(詐僞) → 거짓, 속임수

예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건축사법」 제39조의2제1호)

상당(相當)한

→ 상응하는, 타당한, 해당하는, 적절한, 많은, 해당 조문의, 상당한

– '상당한'은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꽤 많은'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법령에서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등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타당한', '해당하는', '합당한'의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밖에도 '상당한'은 문맥에 따라 '적절한', '많은' 등으로 고쳐 쓸 수 있으며, '꽤 많은'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상당한'을 그대로 쓸수 있다.

상응하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권고안

타당하다고

신고의무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신고기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적절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지상권이 저당권의 대상인 경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된 후 적절한 기간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88조) ※2015년 국회제출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 ※2015년 국회제출안

적절하지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소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12조의2 본문) ※2015년 국회제출안

상당한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항의 경우에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본문) ※2015년 국회제출안

해당하는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제1084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채권의 변제로서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채권이 금전을 대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변제받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84조) ※2015년 국회제출안

구거(溝渠) → 도랑

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溝渠)·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 구거: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자중 → 물건 자체의 무게

예

외곽시설은 자중·수압·파도 및 토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

외곽시설은 그 시설 자체의 무게, 수압, 파도 및 토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권고안

잔임기간(殘任期間)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자의) 남은 임기

예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대(轉貸)하다 → 다시 대여하다, 다시 빌려주다

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필증(畢證) → 증명서, 확인증, 증

- 필증(畢證)은 '어떤 일을 마쳤다는 증명서'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졸업증명서'로 표현하고,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표현하듯이 '○○필증'을 '○○를 마쳤다는 증명서'라는 의미를 지닌 '○○증명서'로 순화할 수 있다.
- '신고필증'은 신고를 접수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신고확인증', '신고증명서' 또는 '신고증'으로 순화할 수 있다.
- 다만, '등기필증'은 근거 법률인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필증'을 '등기증명서', '등기확인증' 또는 '등기증' 등으로 순화한 이후부터 다른 법령에서도 순화하기로 한다.

검사합격증명서, 검사합격확인증, 검사합격증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5조제4항)

필(畢)하다 → 마치다

예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 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5항)

허위(虛僞) → 거짓

예

제○조제○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조제○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설명 붙이기

- 적절한 우리말 순화 용어를 찾기 어려운 한자어는 그 한자어를 일단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 이 방법은 입법 기술 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독림가(篤林家) →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

소택지(沼澤地) → 습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소택지(沼澤地)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3) 한자를 같이 쓰기

- 법률을 한글화하더라도 '차대(車臺)', '실화(失火)' 등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등과 같은 동음이의어, 한글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 한자 병기는 법령에서 해당 용어가 맨 먼저 나오는 곳에서 한 번만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자 병기를 할 것인가와 한자 병기를 몇 번 할 것인가는 그 법령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와 법령의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결정한다.
  - 참고로 「약사법」은 약사(藥師)와 약사(藥事)가 여러 번 서로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서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각각 구별해서 한자를 병기하였다.

고가 → 고가(高架)

- '높이 건너질러 가설(架設)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고가(高架)를 단순히 '공중에 설치하는'으로 고친다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도하는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풀어 쓰지 않고 한자를 함께 쓰는 정도로만 고친다.

예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2호) ※권고안

저인망(底引網)

– 그 법령과 별로 관계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렵지만 실제 그 법령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한자어는 바꿔 쓸 적절한 용어가 없으면 무리해서 순화하지 말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필요하면 한자를 함께 쓴다.

예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底引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권고안

4) 풀어 쓰기

-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나친 축약어(縮約語: 줄여 쓴 말)는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줄이지 않은 온전한 말로 풀어 쓴다.
- 가운뎃점(·)을 사용하면서 줄여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절약되는 음절이 대부분 한두 음절 정도에 불과하면서 이해하기만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줄여 쓰지 않고 정확하게 모두 표기한다.
-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굳어진 특별한 경우(예: 수출입)에는 그대로 축약어를 쓸 수 있다.

개폐 → 개편 또는 폐지, 개정 또는 폐지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예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6항)

균분 → 균등 배분

균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균등 배분하다, 동일하게 나누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다

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55조제2항)

월 → 개월

– '월'은 기간을 나타낼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월'로 고쳐야 한다.

– 예를 들어 '공포 후 ○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라고 하면, 일년 열두 달 중 특정한 달(○월)이 지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개월'로 쓴다.

5) 고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고치기

-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우리말이 있으면 되도록 한자어 대신 우리말을 쓴다.
- 이 경우에도 명사나 명사형은 우리말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한자어를 그대로 쓴다.

가중하거나 경감하다

→ (기간을,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다

→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다

→ (세금을) 감면하다

– 범위가 명확한 '기간'이나 '금액'이 대상일 때에는 '늘리거나 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자연스러우므로 '가중하거나 경감하다'를 우리말인 '늘리거나 줄이다'로 고쳐 쓴다.

– '처분'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대상일 때에는 '경감하다'를 '줄이다'로 고치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으므로 '경감하다'를 그대로 쓴다.

– '세금'과 어울려 쓰이는 '감면(減免)하다'는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한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감면하다'를 그대로 쓴다.

줄이다

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 4. (생 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늘리거나 줄이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경감하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감면하다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재하다 → 쓰다, 적다, 적어 넣다, 써넣다, (장부에, 대장에, 명부에) 기록하다
→ (전자문서에) 기재하다, 기록하다, 입력하다

- '기재하다'는 '쓰다', '적다', '적어 넣다', '써넣다'로 바꿔 쓴다.
- 장부, 대장, 명부 등과 함께 쓰일 경우에는 '기록하다'로 바꾼다.
- 다만, '전자문서'와 어울려 쓸 때에는 '기재하다, 기록하다, 입력하다' 등으로 문맥에 맞게 쓴다.

적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기록하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상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4조제5항)

입력하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미달하다 → 미달하다, ~보다 낮다, ~를 충족하지 못하다, ~에 미치지 못하다

–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미달하다'를 문맥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고쳐 쓴다.

보다 낮다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인 개인으로부터 有價證券을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에 미달하는 價額으로 買入하는 경우 時價와 당해 買入價額의 差額에 상당하는 금액

➔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충족하지 못하다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미치지 못하다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연령 → 나이

수급연령 → 수급연령(○) 수급나이(×)

– '연령'은 '나이'로 바꾼다.

– 다만, '연령'이 '수급연령'처럼 한자어와 결합된 복합명사일 때에는 '연령'을 '나이'로 순화하는 것이 어색하므로 그대로 '연령'을 사용한다.

저감 → 저감, 줄이기

저감하다 → 줄이다

예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

6) 어려운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멸실하다

– '멸실하다'를 '없어지다'로 바꾸면 '멸실 후 잔해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멸실하다'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6조제2항)

현저한

– '현저한'을 '뚜렷한', '매우 큰'으로 바꾸면 '뚜렷이 드러나다'라는 '현저한'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현저한'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양도, 양수

– 한자어와 가장 뜻이 비슷한 고유어가 원래 용어의 법적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필요하면 한자를 함께 쓴다.

예

양도하다 → 양도하다(○), 양도(讓渡)하다(○), 넘겨주다(×), 넘기다(×)
양수하다 → 양수하다(○), 양수(讓受)하다(○), 넘겨받다(×)

7) 한문 투 표현 고치기: 유무와 여부

- 법령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무(有無)'와 '여부(與否)'는 한문과 영어의 부가의문문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 우리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 '유무'나 '여부'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맥을 잘 살펴서 '유무'나 '여부'가 없으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와 같이 꼭 필요할 때에만 '유무'나 '여부'를 쓴다.

환자의 유무

– '환자의 유무'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뜻인데 '환자'만으로는 그런 뜻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환자의 유무'를 그대로 쓴다.

예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법」 제9조 본문)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하는지, 충족하는지 여부

– '여부(與否)'는 '그러함'과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충족하는지'에서 어미 '~는 지'는 그 자체가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충족하는지'와 '여부'를 같이 쓰면 의미가 중복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부'를 쓰지 않는다.

– 다만, '여부'나 '유무'의 결과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여부'를 살려쓸 수도 있다.

예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8항)

승인 여부

– '승인 여부'에서 '여부'는 '승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반면, '승인'만으로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승인 여부'를 그대로 쓴다.

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3항 전단)

타당성 여부, 타당성 유무 → 타당성, 타당한지

–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굳이 '여부'를 쓸 필요가 없다.

예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1항 전단) ※권고안

3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란?

-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 일본어에서는 한자를 음독(音讀: 음으로 읽는 것)하거나 훈독(訓讀: 뜻으로 읽는 것)한다.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한자의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는 순수한 일본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우리가 한자의 음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되었다.
- 이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 일본식 한자어라도 바꿔서 사용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우리말이 법령문에서의 원래 의미와 일치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다.
- '공부(公簿)'를 '공문서'로 바꾸거나 '부본(副本)'을 '복사본'으로 바꿀 수 있지만, 법령 내용에 따라서는 '공부'나 '부본'을 '공문서'나 '복사본'으로 쓰면 의미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에는 '공부'나 '부본'을 그대로 쓴다.

- **일본식 한자어 목록과 정비안**

일본식 한자어	순화안
가도	임시 도로, 임시 통로
계리하다	회계처리하다, 처리하다
공하다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기타	그 밖의, 그 밖에
기하다	도모하다, 꾀하다, ~를 바탕으로 하다, 기하다
부착하다	붙이다, 부착하다
당해	해당, 그
명하다	처분을 하다, 명하다
미불	미지급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회의에 올리다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산입하다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포함하여 계산하다
응하다	따르다, 응답하다, 받다, 응하다
자(者)	사람, 자

1) 가도(假道) → 임시 도로, 임시 통로

- '가(假)'에는 '거짓'과 '임시'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임시'의 의미를 띤 '가-'는 '임시'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약'도 좋은 예이다.

※ 그러나 '가설건물(假設建物)'에서의 '가설'은 기간적 의미는 물론 형태적 의미도 있으므로 '가설건물'은 '임시 건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쓴다.

- '가처분', '가석방'과 같이 그 자체가 하나의 법률용어로 정착되어 쓰이는 것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조사·측량 및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폐지 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8조제1항)

2) 계리하다 → 회계처리하다, 처리하다

예

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

3) 공(供)하다 →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예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2항)

4)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기타(其他)'는 '그 밖의'나 '그 밖에'로 바꾼다.
- '그 밖의'를 쓸지 '그 밖에'를 쓸지는 문장에서 수식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 '기타' 다음에 오는 말이 길어질수록 '그 밖의' 보다는 '그 밖에'로 바꿔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기타+명사 → 그 밖의

–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에 명사가 바로 오고, 그 명사를 꾸며줄 때 쓴다.

※ '기타' 뒤에 바로 명사가 오더라도 '기타'가 그 명사를 꾸며주지 않을 때에는 '그 밖의'를 쓰지 않는다.

예

상업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인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명

중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 그 밖의 외국인

– 예외: 그 밖에 + [명사 1, 명사 2, 명사 3]

이 경우 '그 밖의'를 쓰면 '명사 1'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므로 '그 밖에'를 쓴다.

기타+형용사/동사+명사 → 그 밖의

– '그 밖의'가 바로 뒤에 오는 형용사나 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서 그 형용사나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줄 때에는 '그 밖의'를 쓴다.

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예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에는 '기타 + 형용사 + 명사'이지만 '그 밖의'로 쓰지 않고, 관용어처럼 '그 밖에'를 쓴다.

예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타+절/동사구+명사 → 그 밖에

- '그 밖에'에 결합된 '에'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요소가 동사구일 경우(명사구가 아닐 경우)에는 '그 밖에'를 쓴다.
- '그 밖에'는 뒤에 '절'이 올 때도 쓴다.

예

도로·공원·철도·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

➔ 도로·공원·철도·수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참고: "⑤ 그 밖에 0000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처럼 마지막 제○항에 쓰이는 "그 밖에"의 표현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나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으로 구체적으로 쓴다.

5) 기하다, 부착하다

- '기하다', '부착하다' 등은 '도모하다', '붙이다' 등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쓴다.
- 다만, 이 용어들은 다른 용어로 고치면 어감이 달라질 때에는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

기(期)하다 → 도모하다, 꾀하다, 일으키다, ~에 따르다, ~를 바탕으로 하다, 기하다

부착하다 → 붙이다, 부착하다

6) 당해(當該) → 해당, 그

- '당해'는 '해당'으로 바꾼다.
- 지시하는 내용이 문장에 나온 후 '당해'가 나올 때에는 '그'로 바꾼다.
- '그'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그'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보다는 '해당'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의제2항)

7) 명기(明記)하다 → 명확하게 적다, 명확하게 기록하다, → 분명히 적다, 분명히 기록하다

예

골재채취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8) 명(命)하다 → 처분을 하다, 명하다

- '명하다'를 '처분을 하다'와 같이 명확하게 다른 말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친다. 그러나 마땅히 고쳐 쓸 말이 없으면 '명하다'를 그대로 쓴다.
- '명령하다'는 어감이 너무 강하므로 '명하다'를 '명령하다'로는 고치지 않는다.

명할 수 있다. ~처분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취소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 본문) ※권고안

9) 미불(未拂) → 미지급

예

제37조 (수수료등의 미불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 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7조)

10)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회의에 올리다

예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제2항제3호)

11)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 '불구하고' 앞에 오는 조사 '에'를 '에도'로 고쳐서 조금이라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든다.
- '불구하고'를 '제○조에 관계없이', '제○조와 달리', '제○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등으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구하고'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 및 기준에 의할 수 있다.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 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4조제3항)

12) 산입하다 →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포함하여 계산하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버린다

- 한자를 병기하여 '산입(算入)하다'로 고칠수 있다.
- 문맥에 맞게 '포함하다', '포함하여 계산하다' 등으로도 고칠 수 있다.

산입(算入)하다

농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제3항)

버린다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

13) 응하다 → 따르다, 응답하다, 받다, 응하다

- '~에 응하다'가 지시하는 내용을 풀어 쓴다.
- '(명령에) 따르다, (요구에) 응답하다, (검사를) 받다'로 바꿀 수 있다.
- 지시하는 내용을 직접 밝히거나 '따르다' 등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에 응하다'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받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검역 해제를 받은 사람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받아야 한다.

(종전 「검역법」 제14조제2항)

지시하는 내용을 풀어 쓴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0조제1항)

따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현행 유지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14) 자(者) → 사람, 자

-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야 한다.
-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 미성년자는 이사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람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자
>
> (「보건의료기본법」 제47조)

15) 일본식 용어 정비 목록[4]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가도 (假道)	임시도로	구좌 (口座)	계좌	시말서 (始末書)	경위서
가료 (加療)	치료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	엽연초 (葉煙草)	잎담배
가식 (假植)	임시식재	녹비 (綠肥)	풋거름	일부인 (日附印)	날짜도장
갑상선 (甲狀腺)	갑상샘	미강 (米糠)	쌀겨	주말하다 (朱抹)	붉은 선으로 지우다
거래선 (去來先)	거래처	미불 (未拂)	미지급	지득하다 (知得)	알게 되다
건정 (鍵錠)	잠금장치	부락 (部落)	마을	지참 (遲參)	지각
게기하다 (揭記)	규정하다	불입 (拂入)	납입	침목 (枕木)	받침목
견습 (見習)	수습	불하 (拂下)	매각	품신 (稟申)	건의
계리 (計理)	회계처리	사리 (砂利)	자갈	하구언 (河口堰)	하구둑
곤색 (紺色)	감색	사찰 (査察)	조사	행선지 (行先地)	목적지
구배 (勾配)	경사	시건 (施鍵)	잠금		

※ 위의 32개 용어 외에 일본식 외래어 5개가 있음. 가리(kalium), 가성소다, 레자(leather), 미싱(machine), 엑기스(extract) 등
→ 정비기준 61쪽 5. 외래어와 외국어 부분 4) 일본식 외래어 참조

4) 순화할 필요가 있는 일본식 용어를 보다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4년 37개의 일본식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다.

4 일본어 투 표현

• 일본어 투 표현의 목록과 정비안

일본어 투 표현	정비안
관하여	~에 관하여, 문맥에 따라 '관하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하여	에게, 로 하여금, 대하여, 는, 를
명사 나열형	조사나 보조사를 추가한다, 명사를 형용사나 동사로 바꾼다.
에	과, 로, 를, 보다, 에게, 에서
요하는, 필요로 하는	~이 필요한
으로써	여, 여서, 으로써
의	이, 가, 을, 를, 인, 생략하는 경우
있어, 있어서	에서, 경우, 할 때, 하여, ~는 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하지 아니하는 한	경우 외에는, 경우가 아니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한하여	~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 ~에만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2회에 한하여	두 차례만, 두 번까지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두 번만
~에 한하다	~에 한정한다, ~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만을 말한다, ~만(을) 할 수 있다

1) ~에 관하여 → ~는, ~를, ~에, ~에 관하여

• '~에 관하여'는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를

예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5조) ※2015년 국회제출안

~에

– '운영'과 같이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서술성 명사) 다음에 '관하여'가 오면 '관하여'를 삭제해도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하여'를 삭제한다.

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관하여

– '기준'과 같이 서술성 명사가 아닌 단어와 '필요한 사항'을 바로 연결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관하여'를 살려 쓰거나 '필요한'을 생략하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예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2) ~에 대하여 → ~를, ~에게, ~는, ~에 대하여, ~로 하여금

~를

자녀에 대한 → 자녀를

"외국인유치원"이라 함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제17조·제18조제2항·제19조·제22조·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

~에게

예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때까지 근무하는 당해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당시의 직종 및 급별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직원에게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 당시의 직종 및 직급별 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대하여'를 그대로 쓰는 경우

- '단체의 장에 대하여'를 '단체의 장에게'로 바꿀 수도 있다.
- 이 때 '단체의 장에게'로 쓰면 '단체의 장'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에 대하여'를 그대로 쓰거나 '~로 하여금'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낙농진흥법」 제17조제1항)

3) 명사 나열형

- 명사 나열형은 조사나 보조사를 추가하거나 명사를 형용사나 동사로 바꾼다.
- 법령 문장에는 여러 개의 명사를 조사 없이 나열한 명사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이는 단어가 쓰임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우리말과는 달리 문장 내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한문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를 법령에 그대로 옮겨온 영향으로 보인다.
  - 그런데 문장에 이런 명사 나열형이나 명사구가 있으면 문장이 딱딱해지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 이와 같은 명사 나열형 문장에는 조사나 보조사를 적절하게 넣어서 낱말과 낱말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 또한 나열된 명사 중 일부를 형용사·동사로 바꾸어도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예

부품의 호환성 제고를 위하여	➔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 피난 장소에 도착했을 때의 조치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

"사유명"란에는 다른 공사의 지연등 사유의 요약을 적는다.

➔

"사유명"란에는 다른 공사의 지연 등 해당 지연 사유를 요약하여 적는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 '명사 나열형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명사 나열형 문장이더라도 문장이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으면 장황하게 풀어쓰지 않고 그대로 둔다.

현행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

4) ~에 → 과, 로, 를, 보다, 에게, 에서

- 법령문에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지 않게 사용된 예가 많은데, 이는 일본어 격조사 'に'를 직역한데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이는 일본어 격조사와 우리말 조사가 일대 일로 대응하지 않는데도 기계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 일본어 'に'에 대응되는 우리말 조사는 '~에'를 중심으로 하여, '~를, ~에서, ~에게, ~로, ~ 과, ~보다, ~로서' 등 다양하므로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우리말 조사로 고쳐 쓴다.

과

- 보험에 관계있는 → 보험과 관계있는
- 내용에 관계있는 → 내용과 관계있는

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과 관계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예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하였을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과 그 밖에 유언의 내용과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88조) ※권고안

로, 으로

- 기산일에 소급하여 → 기산일로 소급하여
- 시기에 소급하여 → 시기로 소급하여
-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 원상에 회복하여야 →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예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1항)

예

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예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전세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민법」 제316조제1항) ※2015년 국회제출안

를

– 신의에 좇아 → 신의를 좇아, 신의에 따라, 신의를 지켜

> 예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 신의에 따라
>
> (「국세기본법」 제15조)

보다

– 결원 수에 부족하고 → 결원보다 적고

–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만, '미치다'는 우리말에서도 '~에 미치다'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에'를 그대로 쓸 수 있다.

> 예
>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수에 부족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
>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의 수가 결원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된 계급 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그 명부에 올라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경찰공무원법」 제9조제6항)

에게[5]

– 소유자에 속한 경우 → 소유자에게 속했을 때,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예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민법」 제305조제1항 전단) ※2015년 국회제출안

5) '에'와 '에게'는 어법에 맞게 구별하여 쓴다. 자세한 내용은 '6. 그 밖의 정비 대상 용어'(63쪽) 참조

에서

– 이 법에 규정한, 이 법이 규정한, 이 법으로 규정한 → 이 법에서 규정한

– ☆☆법에 정한, ☆☆법이 정한, ☆☆법으로 정한 → ☆☆법에서 정한

~에서 규정한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8항)

~에서 정한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질권자는 제353조에 따른 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민법」 제354조) ※2015년 국회제출안

5) ~에 있어, 있어서 → 에서,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하는 데에

• '에 있어(서)'와 '에 있어서의'는 일본어 'に おいて, に おいての, に おける'를 직역한 표현이므로, '에서',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하는 데에' 등으로 고쳐 쓴다.

에서

– 승진에 있어서 → 승진에서

예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승진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우, 때[6]

– 도급계약에 있어서 →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할 때, 도급계약을 맺을 때

6) '경우'와 '때'의 쓰임에 대해서는 '6. 그 밖의 정비 대상 용어'(64쪽) 참조

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할 때

➔ 도급계약을 맺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경우

– 등에 있어서는 → 등의 경우에는

예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 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등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제1항)

시, 할 때

– 업무에 있어서 → 업무 수행 시, 업무를 수행할 때

예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1항)

하는 경우, 하여, 할 때

– 적용함에 있어서 → 적용하는 경우, 적용하여, 적용할 때

예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102조 본문)

하는 데, 하는 데에

– 제공함에 있어 → 제공하는 데, 제공하는 데에

예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제공하는 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로, 로 인하여, 가 발생하여(문맥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 위기에 있어서 → 위기로, 위기로 인하여, 위기가 발생하여

예

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6) 으로써 → 여, 여서, ~으로써

•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는 한문(以)과 일본어(~を もって, ~を 通じて)에서 온 표현이다.

여, 여서

– '으로써'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보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연결하는 의미가 더 큰 경우에는 '으로써'를 '여', '여서'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높여서 어린이를 올바르고 아름다우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6조) ※권고안

‘으로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으로써’ 다음에 ‘하여’가 이미 있는 경우 ‘으로써’를 ‘여’나 ‘여서’로 바꾸면 ‘여’가 반복되는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으로써’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 예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

– ‘으로써’가 도구나 수단·방법 등의 의미로 쓰인 경우 ‘으로써’를 ‘여’나 ‘여서’로 바꾸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여’나 ‘여서’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 예
>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 (「가사소송법」 제36조제1항)

‘으로서’와 ‘으로써’ 구분하기

–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쓰고, ‘으로써’는 수단이나 방법, 도구를 나타낼 때 쓴다.

> 자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 방법
> 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 ➔
>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7) 요하는, 필요로 하는 → ~이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

- '~을 요하는'과 '~을 필요로 하는'은 일본어 '~を必要とする場合'를 직역한 표현이다. 이 표현을 우리말인 '~이 필요한', '~을 ~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고쳐 쓴다.

~가(이) 필요하다

예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미아, 병자 또는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3호)

긴급을 요할 때 → 긴급한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

예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2호)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예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제3항 단서)

8) 요하지 아니하다 →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아도 된다

- '요하지 아니하다'는 문맥에 맞게 순화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필요가 없다'는 '요하지 아니 하다'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서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요하지 아니하다'를 '필요가 없다'로는 순화하지 않는다.

> 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
>
> (「형사소송법」 제277조) ※권고안

9) 의 → 이, 가, 을, 를, ~인, 생략

- 조사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 'の'의 영향이므로, 생략하거나 적절하게 바꾼다.

주격 조사 자리에 '의'를 사용한 경우: 의 → 이, 가

- 주어의 위치에 주격 조사가 아닌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해서 어색한 문장이 된 경우, '의'를 주격 조사인 '이, 가'로 고치면 문장이 쉬워진다.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 예
>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
>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
> (「저작권법」 제39조제1항)
> ※ 법이 개정되면서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음

> 예
>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 (「민법」 제180조제2항) ※2015년 국회제출안

목적격 조사 자리에 '의'를 사용한 경우: 의 → 을, 를

예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1호)

예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고용정책 기본법」 제5조제1항)

서술어 자리에 '의'를 사용한 경우: 의 → 인

–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이다'라는 문장이 '것'을 꾸미는 의미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직사각형의'를 그 의미상 주어인 '횡단면이'에 대한 서술어임을 나타내주는 '직사각형인'으로 고치면 이해하기 쉽다.

예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두께가 4.5밀리미터 이상의 것	➔	두께가 4.5밀리미터 이상인 것
수탁자 중 법인의 경우에는	➔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

4.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18세 미만인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를 반복해서 쓰거나 부적절하게 쓴 경우

- '의'를 생략하거나 '에게' 등 적절한 표현으로 고친다.

예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	건축물의 건축∨금지
임대주택의 건설에	➔	임대주택∨건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의 위반여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품위	➔	수사∨주재자로서∨지녀야 할 품위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변제로서∨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예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 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권 대상물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2조) ※2015년 국회제출안

예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 있는 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 있는 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예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5항)

1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

11) 하지 아니하는 한 →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니하였으면 → 경우 외에는, 경우가 아니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848조제1항) ※권고안

12) ~에 한하여 → ~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

~에서만

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서 공무원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일정계급이하의 계급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 관계 규정에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일정계급 이하의 계급에서만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권고안

~에 한정하여

예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행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본문)

예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담보 대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권고안

~으로만

예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2회에 한하여 → 두 차례만, 두 번까지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두 번만

예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13) ~에 한한다 → ~에/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만을 말한다, ~만(을 할 수 있다)

~만 해당한다, ~로 한정한다, ~만을 말한다

예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 제9조제6항) ※권고안

~만 할 수 있다, ~만을 할 수 있다

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의2제2항)

5 외래어와 외국어

-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1)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방법

-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쓴다.
-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나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原語)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예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 이름: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외래어나 외국어를 바꾼 우리말이 생소하거나 어감의 차이가 있어 순화어만 제시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 그 용어의 한글 표기와 원어(原語)를 함께 쓸 수 있다.

예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치(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온천법」 제7조제2항제2호나목)

2) 외국어 표기 시 유의사항

•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자모만으로 쓴다.
▶ 하나의 음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
▶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
▶ 파열음(ㅂ, ㄷ, ㄱ 계열의 자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 이미 굳어져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는 관행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한다.
[예: 핀셋(pincette), 카세트(cassette): 뒷부분의 자모나 발음기호가 같지만 우리말 표기는 '셋'과 '세트'로 다름]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를 쓰지 않는다.

싸이렌 → 사이렌

예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싸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면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까스 → 가스

예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배수관·가스관·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민법」 제218조제1항 본문) ※2015년 국회제출안

씨씨 → 시시

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법이 개정되면서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차의 배기량 기준이 '800시시'에서 '1천시시'로 바뀌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3항)

▶ 예외

- 위의 기준과 달리 일본어, 중국어 등에는 '쓰나미' '마오쩌둥'과 같이 된소리 표기가 일부 허용 된다.
- 또 2005년부터 태국, 베트남 등지의 언어 표기에 대해 '푸껫' '호찌민'처럼 된소리 표기를 쓰기로 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음운체계가 우리나라와 같이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세 체계(ㅂ/ㅍ/ㅃ, ㄱ/ㅋ/ㄲ, ㄷ/ㅌ/ㄸ, ㅈ/ㅊ/ㅉ)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받침에는 일곱 글자(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

- 따라서 'ㅍ' 대신 'ㅂ'으로, 'ㅌ, ㄷ, ㅈ' 대신 'ㅅ'으로 쓴다.
- 짧은 모음 다음의 끝소리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 coffee shop을 우리말 소리로 옮기면 [커피숖]이고, diskette은 [디스켙]이지만, 받침에는 일곱 글자만 쓰므로 '-숍', '-켓'으로 쓴다.

예

coffee shop [kɔfi ʃɔp] ➔ 커피숍
diskette [disket] ➔ 디스켓

- 짧은 모음과 유음(r, l), 비음(m, n) 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 act는 [액트]이지만 'ㅋ(k)'가 짧은 모음 '애(æ)'와 자음 'ㅌ(t)'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받침으로 적되, 받침에는 일곱 글자만 쓰므로 'ㄱ'으로 적는다.

예
act [ækt] ➔ 액트

- 위의 두 경우 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데스크'의 '크'나 '애플'의 '프'처럼 '으'를 붙여 적는다.

예
desk [desk] ➔ 데스크
apple [æpl] ➔ 애플

'ㅈ, ㅊ' 다음에는 이중모음(ㅑ, ㅖ, ㅛ, ㅠ 등)을 쓰지 않는다.

- 그러나 '슈퍼마켓', '튤립' 등 'ㅈ, ㅊ'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에 이중모음을 쓸 수 있다.

예
텔레비젼 ➔ 텔레비전
쥬스 ➔ 주스

장음(長音) 표기를 하지 않는다.

예
뉴우요오크 ➔ 뉴욕
스노우 ➔ 스노

이중모음 [ou]는 'ㅗ'로 표기한다.

예
불도우저 ➔ 불도저
로우더 ➔ 로더
로울러 ➔ 롤러

예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pilotis)

➔

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나무를 심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예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alkali)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tʃ]는 'ㅊ, ㅈ'으로 표기한다.

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batching

➔

배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권고안

[e], [ʌ]는 'ㅓ'로 표기한다.

예

데이타베이스 이용 수수료 ※ data [deitə]

➔

데이터베이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f], [p]는 'ㅍ'으로 표기한다.

예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종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file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4호)

3) 틀리기 쉬운 외래어

데이타	➔	데이터	오리지날	➔	오리지널
뎃상	➔	데생	첵크무늬	➔	체크무늬
로우프	➔	로프	컨텐츠	➔	콘텐츠
맛사지	➔	마사지	케비넷	➔	캐비닛
메뉴얼	➔	매뉴얼, 설명서, 안내서	콘베이어	➔	컨베이어
바베큐	➔	바비큐, 통구이	콘테이너	➔	컨테이너
보우트	➔	보트	콘텍트렌즈	➔	콘택트렌즈
불도우저	➔	불도저	택	➔	태그
비데오	➔	비디오	텔레비젼	➔	텔레비전
스테인레스	➔	스테인리스	퓨우즈	➔	퓨즈
시이시이, 씨이씨이, 씨씨	➔	시시	프라스틱	➔	플라스틱
심볼	➔	심벌	햄머	➔	해머
알콜	➔	알코올	헥타아르	➔	헥타르

4) 일본식 외래어[7]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가리 (kalium)	칼륨	미싱 (machine)	재봉틀
가성소다 (苛性소다)	수산화나트륨	엑기스 (extract)	추출물, 진액
레자 (leather)	인조 가죽		

7) 2014년 일괄정비대상 일본식 용어 37개 중 일본식 외국어 표기 5개이다.

5) 외국어 정비 사례[8]

거트	→	내장	안전펜스	→	안전울타리
글루	→	아교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다운로드	→	내려받기		→	가속기, 가속장치
다크네이비	→	진남색	업로드	→	자료전송
리스크관리	→	위험 관리	오일펜스	→	기름막이
미션	→	임무	웨이스트	→	폐기물
사보타주	→	태업(怠業)	파이프라인	→	송유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			팜플렛	→	소책자
	→	섬유질 재료	하이픈	→	붙임표(-)
스냅	→	똑딱단추	화이버보드	→	섬유판(파이버보드)
스커트	→	치마	후드형 (스탠카라 반코트)		
시멘팅을 하다	→	시멘트를 바르다		→	모자가 달린(스탠드칼라 반코트)
아쿠아리움	→	수족관			
아쿠아슈즈	→	수중용 기능성 신발	흄(fume)	→	연기

심사 과정에서 제명의 외국어가 정비된 사례

커버드 본드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9]
금융허브(hub)	→	금융중심지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홈리스(homeless)	→	노숙인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0]

8)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양하고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써야 할 때에는 부록의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338쪽)를 참조하여 쓴다.

9) 법 제정 시 입안 단계에서 부처와 관계자들은 '커버드 본드'를 제명과 조문에서 그대로 쓰기를 원했으나 외국어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조문의 정의에서만 원어를 병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음.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이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10)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랑인·노숙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통합 명칭으로 '홈리스'를 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2011년 '노숙인 등'으로 개정되고 2011년 위의 법률이 제정됨.

제명에 외국어가 남아 있는 사례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의원입법 등의 이유로 외국어 법 제명에 대한 심사 과정이 생략됨. 제명에 외국어가 쓰인 선례가 되어 그 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형태의 외국어 제명으로 제정됨.[11]

6 그 밖의 정비 대상 용어

1) 에게

- '에'와 '에게'는 둘 다 여격(與格) 조사로서 앞말이 어떤 행동/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앞말이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 '~에'와 '~에게'를 구별한다. 즉, '나무에 물을 준다'와 '운동선수에게 물을 준다'에서처럼 앞말이 사물[무정명사(無情名詞)]일 때에는 '에'를 쓰고, 앞말 이 사람·동물[유정명사]일 때에는 '에게'를 쓴다.

(기관, 단체)에게 → ~에, ~로 하여금

- 기관이나 단체는 무정명사이므로 '에게'를 쓰지 않고 '에'를 써야 한다.
- 그러나 사역(使役)의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로 하여금'으로 바꾼다.

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지원기관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4항)

11) 프랑스의 경우: e-learning이 '온라인학습'이란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 'apprentissage enligne'로 바뀜. 프랑스어로 정의하고 명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개념들과 연관이 있는 어휘를 생성하여 언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당에게 → 정당에

예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라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30조제5항) ※권고안

2) 경우, 때

때

– '~한 때'와 '~하는 때'는 '~하였을 때', '~할 때'로 바꿔 쓴다.

– 과거의 법령문에서 '~한 때'와 '~하는 때' 두 가지 표현이 주로 쓰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아니다.

'때'라는 명사는 '~ㄹ/을' 형의 관형어와 호응하기 때문에 (특히 '가정'의 조건절에서) '~한 때'와 '~하는 때'로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법에 맞지 않다.

– 다만, '시점'의 의미를 강조할 때에는 '~한 때'와 '~하는 때'를 쓸 수 있다.

경우

– '경우'는 앞에 오는 말의 어미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한 경우', '~하는 경우'와 '~할 경우'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설치할 때, 설치하는 경우

➔ 체결하였을 때, 체결한 경우

➔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 경우

(「방송법」 제80조) ※권고안

예외: ㄴ 때, 는 때 [현행 유지]

-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는 'ㄴ/는 때'를 살려 쓴다.

현행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3) 내지 → ~부터 ~까지의 규정, ~부터 ~까지, ~이상 ~이하

- 일반인이 법령문에 있는 '내지'를 '또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지'를 '~부터 ~까지의 규정', '~부터 ~까지', '~ 이상 ~ 이하'로 바꿀 필요가 있다.

번호에 붙은'내지'

- 원칙: '~부터 ~까지' 다음에 '~의 규정'을 붙여서 뒤에 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 예외: '~부터 ~까지'가 열거되는 조문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의 규정'을 붙이지 않아도 문장이 자연스러우므로 '~의 규정'을 붙이지 않는다.

예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해당 인용조항의 범위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명시

제5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급에 붙은‘내지’

예

1. 국가정보원의 1급 내지 4급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실의 1급 내지 4급 경호공무원

➔ 1급부터 4급까지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축척에 붙은‘내지’

예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어업 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

기간에 붙은‘내지’

예

第31條(授業年限) ① 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4年 내지 6年으로 한다. 다만, 授業年限을 6年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

4) 본딧말과 준말

-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본딧말은 일상적인 언어 습관에 맞게 준말로 고친다.
- 본딧말을 써서 지나치게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말은 준말로 쓴다.
-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민원 서식이나 별표 등에서는 익숙한 준말을 쓴다.

~하여

– '~하여'가 독립적인 서술어로 쓰일 때에는 '~하여'의 형태를 유지한다.

– '대하여' '위하여' 등은 그대로 사용한다.

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
△△에 관한 제○조를 위반하여 ~를 한 자

~하여 → ~해

– '~하여'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하여서는'처럼 다른 요소와 결합할 때, 또 다음에 '주다' 등의 보조용언이 올 때에는 준말을 쓴다.

예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예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었던, 이어야 → 였던, 여야

– 'ㅣ' 뒤에 'ㅓ'가 와서 'ㅕ'로 준 경우. 다만 '공무원이었던 사람'처럼 앞말(~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본딧말을 쓴다.

예
가입자이었던 자 ➔ 였던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 여야

예
※ 공무원이었던 사람 ➔ 이었던

그러하지 아니하다[12)]

-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 '그렇지 않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아니 된다, 안 된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 '안 된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하다

- '아니하게, 아니하는, 아니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 '않게, 않는, 않은'으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5) 아라비아 숫자

•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

2 → 둘

예
2 이상의 필지 ➔ 둘 이상의 필지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예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수개, 수개의 → 여러, 여러 개의

- 관형사 '수(數)'는 '몇, 여러, 약간'의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수백', '수천'과 같이 다른 수사 앞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므로 문맥에 맞게 풀어 쓴다.

  예) 수인 → 여러 명(사람만 있는 경우에만 사용), 여럿(사람만 있는 경우와 단체·법인이 있는 경우도 사용) 수개 → 여러 (개)

12) 될 수 있으면 지시어를 쓰지 않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 쓰거나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 등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다. '제3장 문장 정비'에서 '지시어의 내용을 직접 쓴다'(134쪽) 참조

예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倂合審理)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조) ※권고안

6) 의한, 의하여, 의한다

의한, 의하여,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른다
→ 방법으로
→ [문장을 고친 경우]
→ '의한, 의하여, 의한다'를 그대로 쓰는 경우

- '~에 의한/의하여/의한다'는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바꾼다.
- '의하여'가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으로' 등으로 바꾼다. 다만, '의하여'를 '~으로'로 바꾸었을 때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에 따른, 따라, 따른다

- '제○조'에 '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규정'을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에서와 같이 '규정'을 생략하면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에는 '규정'을 그대로 살려 쓸 수 있다.

예

제○조의 규정에 의한	➔	제○조에 따른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에 따라
제○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조에 따른다

예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법으로

– '의하여'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으로', '~로도' 등으로 바꾼다.

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예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 이 구입·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예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예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류로도

➔ 서류만으로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의하여’유지

–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로’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에 의하여’를 그대로 사용한다.

– ‘의하여’가 질병이 발생한 ‘원인’ 등을 나타낼 때에는 ‘의하여’를 사용하면 그 뜻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의하여’를 그대로 사용한다.

현행 유지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3호)

현행 유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7) 하여금 → ~에게, ~를, ~가, ~로 하여금

- ‘~로 하여금’은 가급적 ‘에게’ 등으로 고쳐 쓴다.
- ‘~에게’로 고치면, 오히려 의미 전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나 ‘~에게’가 한 문장에서 두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로 하여금’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참고인을

(「건축법」 제95조제2항)

예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 타인에게 경영하게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

8) 복합조사(까지에, 로부터)

까지에 → ~까지, ~시점까지

– 조사 '까지'와 '에'를 합성하여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에'를 삭제한다.

– 문맥에 따라서는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시점'을 추가할 수 있다.

예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 혼인이 성립하는 시점까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829조제4항) ※2015년 국회제출안

즉시로, 즉시로부터 → 즉시, 바로 그 때부터

– '즉시'는 명사이지만, 다른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부사어로도 쓰인다. 따라서 '즉시'를 '로'나 '로부터'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여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예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제3항) ※권고안

예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을 시(時), 분(分) 또는 초(秒)로 정한 경우에는 바로 그때부터 기산(起算)한다.

(「민법」 제156조) ※2015년 국회제출안

공직으로부터 → 공직에서

– '~로부터'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이나 아래 조문에서 '공직으로부터'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문맥에 적절한 조사로 수정한다.

예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공직에서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4항) ※권고안

처음으로부터 → 처음부터

– 조사 '부터'만으로도 시작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

예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제2항) ※2015년 국회제출안

9) 문장부호: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가운뎃점[13]을 사용한다.

– 예: 지정·공고, 조사·연구, 조사·심의, 지도·감독, 위법·부당, 기록·유지, 설치·운영, 유지·관리, 부과·징수 등

– 다만, 'A, B·C, D 및/또는 E'처럼 입법기술 면에서 쉼표(,)와 가운뎃점(·)이 혼용된 경우나 그 밖에 바꾸어 쓰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운뎃점을 사용한다.[14]

가운뎃점을'와, 과, 나, 이나'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

• 두 단어 사이의 가운뎃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관리에 필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구축하여 운영할

➔ 구축·운영할

※ 이 경우 연결되는 사항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가운뎃점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

13) 법령에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에는 한글(HNC)문자표 HNC코드번호가 '357D'[전각 기호(일반) 오른쪽 밑]인 가운뎃점을 쓴다.

14) '한글맞춤법 부록 문장부호'(312쪽) 참조

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 세 개 이상 단어나 구절 사이의 가운뎃점

– ‘A·B 또는 C’의 경우 셋 중 선택적임을 뜻하나, A는 당연히 포함되고 B와 C 중 선택적으로 하나가 더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우려가 있으면 ‘A나 B 또는 C’로 열거하거나 각 호 등으로 분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한다.

예
A·B 및 C ➔ • A, B 및 C • A와 B 및 C • A·B 및 C
• A, B 또는 C • A, B 또는 C • A나 B 또는 C • A·B 또는 C

– 다음 경우를 보면, 쉼표를 써도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형태’라는 점이 명확하나, 수식관계에서 ‘건축물의’가 어디까지 수식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가운뎃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

• 구나 절을 연결하는 경우: 띄어져 있는 구(句)인 ‘주무기관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가운뎃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예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사무소이전·개업·휴업 및 폐업 ➔ 사무소∨이전, 개업, 휴업 및 폐업

-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아우르는 말이나 가운뎃점을 사용할 경우 앞뒤로 하여 '직계존'과 '비속'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직계존비속'으로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풀어 쓴다.

예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직계존속·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가운뎃점의 적절한 사용

- 가운뎃점 사용 시 문맥을 보아 의미 단위로 묶어 주어야 한다.
-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이라는 의미이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

-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경우

예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

10) 문장부호: 쉼표

어구를 열거할 때에는 쉼표를 쓴다.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결과의 확인, 최종 성과의 종합

✎ 절과 절 사이에 쉼표를 쓴다.

예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건축법」 제4조의4제2항)

✎ 가운뎃점과 쉼표의 구분

– 열거되는 단어의 무리 사이에는 쉼표를 쓰고, 이와 같이 열거되는 개별 단어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예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신이면 및 군자면, 영암군 삼호면·이호면 및 학산면, 무안군 일로읍 및 몽탄면과 나주시

11) 문장부호: 마침표

✎ 주의사항

– 괄호 안에 문장이 하나일 때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둘 이상일 때에는 맨 마지막 문장에만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두음법칙 관련 사항

✎ 년, 연

– 두음법칙에 맞게 쓴다.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첫머리에 오면,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예
년월일 ➔ 연월일

– 합성어의 경우: 두 단어가 결합되기 전의 형태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예

경과년수		경과연수
내용년수		내용연수(耐用年數)
승인년도	➔	승인연도
제조년월일		제조연월일
회계년도		회계연도

리

–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리(里)' → 리

– 구역을 나타내는 '리(里)'를 두음법칙에 따라 '이'로 쓰면 대명사 '이'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동·리' 또는 '리'로 쓴다.

예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리, 동·리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제4항)

– 열/율: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렬/률: 그 외에는 '렬, 률' 그대로 적는다.

예

열/율: 나열, 비율, 선율, 전율, 백분율
렬/률: 확률, 유량변동률

13) 틀리기 쉬운 표현

기한 내에, 기한내에 → 기한까지

예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기한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예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

자문

- 바른 표현
  [질문하는 입장] 자문하다, 문의하다, 묻다
  [질문에 대답하는 입장] 자문에 응하다, 자문에 답하다, 자문에 검토의견을 내놓다
- 틀린 표현: 자문을 받다/얻다/구하다/요청하다
- 자문(諮問)은 물을 자(諮)자와 물을 문(問)자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 '자문을 구하다'나 '자문을 요청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질문하는 것을 구하다'나 '질문하는 것을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은 '자문하다. 조언을 구하다. 도움 말을 청하다, 의견을 듣다'로 고쳐 써야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다.[15]

예

발주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15) '자문위원회'라는 용어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나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대로 쓰기로 한다.

예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자문에 응하는, 조언하는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필요있는, 필요 있는 →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

예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필요가 있는 경우

➔ 필요한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49조) ※권고안

현재하다 → (현재) 있다

– '현재(現在)'는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로만 쓰일 뿐, '현재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현재하다'와 같은 동사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현재하다'는 '(현재) 있다'로 고친다.

예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현재 관할구역에 있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조제1항) ※권고안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쓰고 있는 용어는 가운뎃점 없이 붙여 쓴다.

예

국·공립		국공립	임·직원		임직원
송·수신		송수신	천재·지변		천재지변
수·출입	➔	수출입	총·포	➔	총포
신·구		신구	출·입구		출입구, 출입문
어·패류		어패류	통·폐합		통폐합
인수·인계		인수인계			

그 밖에 잘못 쓰기 쉬운 용어

예

1시간	➔	시간당	표시판	➔	표지판

14) 적절하지 않은 용어

- 권위적인 용어, 성차별적인 용어, 장애인을 비하(卑下)하는 느낌이 있는 용어는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권위적인 용어: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권위적인 용어: 얻다 → 받다

-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얻다 →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받다
- 종래에 '승인'은 '얻다'와, '면허, 인가, 동의' 등은 '받다'와 어울리는 것으로 써 왔으나, 특별히 구별해서 써야 할 이유가 없고 실익도 없으므로 '받다'로 통일해서 쓴다.
- '의결'의 경우 '받다', '거치다' 등의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다.

예

승인을 얻다 ➔ 받다
동의를 얻다 ➔ 받다

성차별적 용어: 자(子) → 자녀

예

①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 제781조) ※2015년 국회제출안

장애인을 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16]

– 불구자 → 신체장애인, 장애인

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 신체장애인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1조제6호)

– 장애자 → 장애인('장애자'는 비하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용어 통일 차원의 정비임)

16) 2014년 '불구'등 장애인 비하 용어 일괄 개정
– 109건의 정비 대상 법률에서 아래 목록의 용어 일괄 개정

현행	맹인	간질병자	간질	농아자	농아	정신병자	불구자	불구
개선 기준	시각 장애인	뇌전증 환자	뇌전증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	정신 질환자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

예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 농아자 →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말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법조문에서는 선택적 의미로도 '농아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순화할 때 문맥을 보고 순화안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제223조(농아자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술할 때에는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23조)

15)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

- 틀리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보다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용어로 통일해서 쓴다.

갈음하다

- '갈음하다'를 '대신하다'로 고치지 않는다.
- '대신하다'는 '갈음하다'와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고유어인 '갈음하다'를 굳이 한자어인 '대신하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갈음하다'를 그대로 살려 쓴다.

불($) → 달러

- 화폐 단위 중 혼용되고 있는 '달러'와 '불(弗)'은 '달러'로 통일해서 쓴다.

예

관광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불 이상일 것

➔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제1호)

인(人) → 명

– ‘위원 3인’처럼 ‘인(人)’이 홀로 단위로 쓰일 때에는 ‘명’으로 바꾸어 쓴다.

– 그러나 2인승, 3인분, 5인 가족 등과 같이 굳어진 표현은 그대로 쓴다.

> 예
> 10인(×), 10명(○), 2인승(○), 5인 가족(○)

이내 → 이내

– ‘이내’는 명시한 숫자까지 범위를 한정할 때 쓴다.

> 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제1항)
> ※ 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음

~이상 ~이내, ~내지 ~이내 → ~ 이상 ~ 이하

– ‘~ 이상 ~ 이하’는 일정한 숫자에서 시작되어 일정한 숫자까지로 범위를 한정할 때 쓴다.

> 예
>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1항)

> 예
>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
>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 **정비용어 목록**

예

갈음하다	➔	갈음하다(○) 대신하다(×)	~이상 ~이내 ~내지 ~이내	➔	~이상 ~이하
불($)	➔	달러	평방미터	➔	제곱미터
우편수취함	➔	우편함	입방미터	➔	세제곱미터
새로이	➔	새로	가성소다	➔	수산화나트륨
인(人)	➔	명	말 10두	➔	말 10마리
			두수	➔	마릿수

16) 조문의 번호 체계

• 조문 번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한다.[17]

1. → 가. → 1) → 가) → (1) → (가)

17) 종전에는 조문 번호의 체계를 1. → 가. → (1) → (가) → 1) → 가) 순으로 하였으나, 2003년 7월 14일 구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번호 체계를 변경하였다.

7 띄어쓰기

1) 법령 이름 띄어쓰기

- 단어별로 띄어 쓴다.
  예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이름은 최대 8음절[18]까지 붙여 쓸 수 있다.
  -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단체 또는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
    예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하위법령임을 나타내는 명칭은 띄어 쓴다.
  예시) 아동복지법∨시행령
-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 법률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예시) 고용정책∨기본법
- 법령 이름 띄어쓰기 권고안(작성 기준일: 2017. 12. 1.)

> - 법령 이름이 아직 한글화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법령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아래 '권고안'으로 개정되기 전이라도 '권고안'과 같이 인용한다.
> - 법령 이름이 아직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거나 띄어쓰기가 되었더라도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는 법령 이름은 그 법령을 일부개정하거나 전부개정할 때 아래 '권고안'에 따라 법령 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개정한다.

현 행	권 고 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8)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절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라고 한다.

현 행	권 고 안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國際民事司法共助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歸屬財産處理法	귀속재산∨처리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만화진흥에∨관한∨법률	만화∨진흥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현 행	권 고 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生命工學育成法	생명공학∨육성법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위한∨시험연구∨등에∨관한∨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위한∨시험연구∨등에∨관한∨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漁業資源保護法	어업자원∨보호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관한∨법률	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관한∨법률
援護財産特別處理法	원호재산∨특별처리법

현 행	권 고 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조경진흥법	조경∨진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현 행	권 고 안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協同硏究開發促進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2) 법령문의 띄어쓰기

-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법령 이름 띄어쓰기에 따른다.

정비기준

-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참고)에 하나의 단어로 올라와 있는 용어는 당연히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성명 외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정비 원칙	허용
대한∨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사범∨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가) 띄어 쓰는 경우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어 쓴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이 법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앞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앞말과 띄어 쓴다.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各條)와 '각항'(各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 실려 있으나, 법령문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각 호'나 '각 목'을 띄어 쓰는 것과 형평을 고려해 '각 조'와 '각 항'도 띄어 쓴다.
- 다만, 가목(目), 나목(目) 등의 경우 '제1조', '제1항', '제1호' 등을 붙여 쓰는 것과 마찬 가지로 '가목', '나목'처럼 붙여 쓴다.

~용∨

- '~용(用)' 다음에는 띄어 쓴다.

공사용∨건축물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령 용어이므로 '유효기간'이 포함된 명사구를 띄어 쓰더라도 혼선의 소지가 적으므로 띄어 쓴다.

어업면허∨유효기간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

-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학교∨안에서, 자연공원∨밖, 이 법 시행∨전, 합병∨후, 10년∨이상, 5년∨이하,
3개월∨미만, 1년∨이내, 2015년 4월 1일∨이전, 2010년 5월 2일∨이후

의존명사'∨중, ∨내, ∨외'

- 의존명사 '중, 내, 외'는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관계 전문가∨중, 기일∨내, 규정된 사항∨외

∨체납처분

- 법률 용어나 전문 용어로 볼 수 있는 명사구로서 띄어 쓰더라도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용어는 띄어 쓴다.

국세∨체납처분　　지방세∨체납처분

아니∨된다, 안∨된다, 아니하다

- '~하지 아니하다'에서와 같이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아니하다'는 붙여 쓴다.
- '아니∨된다', '안∨된다'는 '아니', '안'과 다음 글자를 띄어 써야 한다. '아니'와 '안'은 부사이고 '되다'는 동사여서 두 개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며, '아니하다'는 '않다'의 본딧말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나) 붙여 쓰는 경우

'조 번호'와 '조 제목'은 붙여 쓴다.

제2조(정의)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 목 번호'를 서로 붙여 쓰고, 가지번호도 붙여 쓴다.

- 제△조제△항제△호△목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제5조의3

행정처분

- 하나의 법률행위나 행정처분은 붙여 써도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알아보기 쉽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허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인가취소, 등록취소, 변경허가, 변경인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중지명령, 착공신고, 폐쇄명령, 행정처분

장관 직책

- '기관 이름'과 '장관 직책'은 붙여 쓴다.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간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 '간'을 '동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다.

> 이틀간, 한 달간, 삼십 일간
> 이틀∨동안

당

- (수, 단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 마리당 삼천원, 시간당 얼마, 40명당

별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에 따른'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 능력별, 성별, 월별, 직업별, 학년별

- 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다른 말로 풀어쓸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바꾼다.

>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 ➔ 종류는

상

- '앞말과 관계된 입장' 또는 '앞말에 따름'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 관계상, 미관상, 사실상, 외관상, 절차상

-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과 붙여 쓴다.

> 인터넷상, 통신상

하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과 붙여 쓴다.

> 식민지하, 원칙하, 지도하, 지배하

- 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다른 말로 풀어 쓸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바꾼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외국이 관할하는
>
> (「전파법」 제40조제1항)

게을리하다

- '게을리하다'는 부사 '게을리'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된 것이므로 '게을리하다'로 붙여 쓴다. '멀리하다', '가까이하다' 등과 같다.

> 멀리하다, 가까이하다, 게을리하다(○)
> 게을리∨하다(×)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 하나의 낱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으므로 붙여 쓴다.

※ '지체 없이'는 '관계없이' 등과 달리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문장부호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쓴다.

장 제목

- 법령문에서 글자 간격을 벌리지 않고 붙여 쓴다.

> 제 1 장 총 칙 ➔ 제1장 총칙
> 제 9 장 벌 칙 ➔ 제9장 벌칙

숫자와 단위명사

- 숫자와 단위명사는 붙여 쓴다.[19]

  ※ 법령 본문에서는 만, 억 단위로 한글을 넣어 주되, 마지막 천 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때에는 '천'도 한글로 쓴다. 수식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별표나 별지 서식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주로 쓴다.

> 12억3456만7500원 (○)　350백만원 (X)　3억5천만원 (○)　3억∨5천만원 (X)
> 700미터 (○)　5만2천미터 (○)

다)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는 경우

정의, 약칭

- '정의'나 '약칭'은 그 법령 안에서 붙여 쓸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거나 약칭한 용어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4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 (「건축법」 제4조제1항)

기관, 단체

- 기관(위원회, 협회 등),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기금 등의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축산업협동조합,　한국마사회,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

19) 어문 규정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숫자와 어울려 쓰거나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금액 등을 적을 때에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모두 붙여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법령문에서는 숫자와 단위명사를 띄어 쓰지 않고 모두 붙여 쓰기로 한다.

~시설, ~사업, ~계약, ~계획, 직종 등의 이름

-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는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쓸 수 있다.
  -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 등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경우, 즉 노인복지시설, 가맹계약, 노인복지상담원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로서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서 일정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의미가 한정됨
가맹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의미가 한정됨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의미함

의존명사'∨간'

- 의존명사 '간'은 앞말과 띄어 쓴다.
-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를 뜻하거나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의 뜻(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간'은 띄어 쓴다.

> 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
>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다만 '간'이 앞말과 함께 한 단어로 굳어진 예들은 붙여 쓴다.

> 국제간, 다자간, 피차간, 고부간, 부녀간, 부부간, 부자간, 동기간, 천지간

데

-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

  '상황을 미리 말하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뜻의 연결어미 'ㄴ데(ㄴ데/는데/은데/던데)'로 사용할 때에는 앞말과 붙여 쓴다.

- 앞말과 띄어 쓰는 경우

  '데'가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데' 뒤에 '에' 등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

>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실현하는∨데에
>
> (「교육기본법」 제2조)

'바'

-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

  'ㄴ바/는바/던바'는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주로 '-ㄴ데', '-니' 따위에 가까운 뜻을 지닌다. 고어 투의 문어체 표현으로 법령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 앞말과 띄어 쓰는 경우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방법, 일, 것' 등에 가까운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정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시

- '시'는 명사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의 의미를 갖는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그러나 '비상시', '평상시'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사용되는 단어는 붙여 쓴다.

>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 등)
> ➔ 설치허가신청∨시
> ➔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지

-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이어지는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에 사용될 때에는 연결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앞말과 띄어 쓰는 경우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될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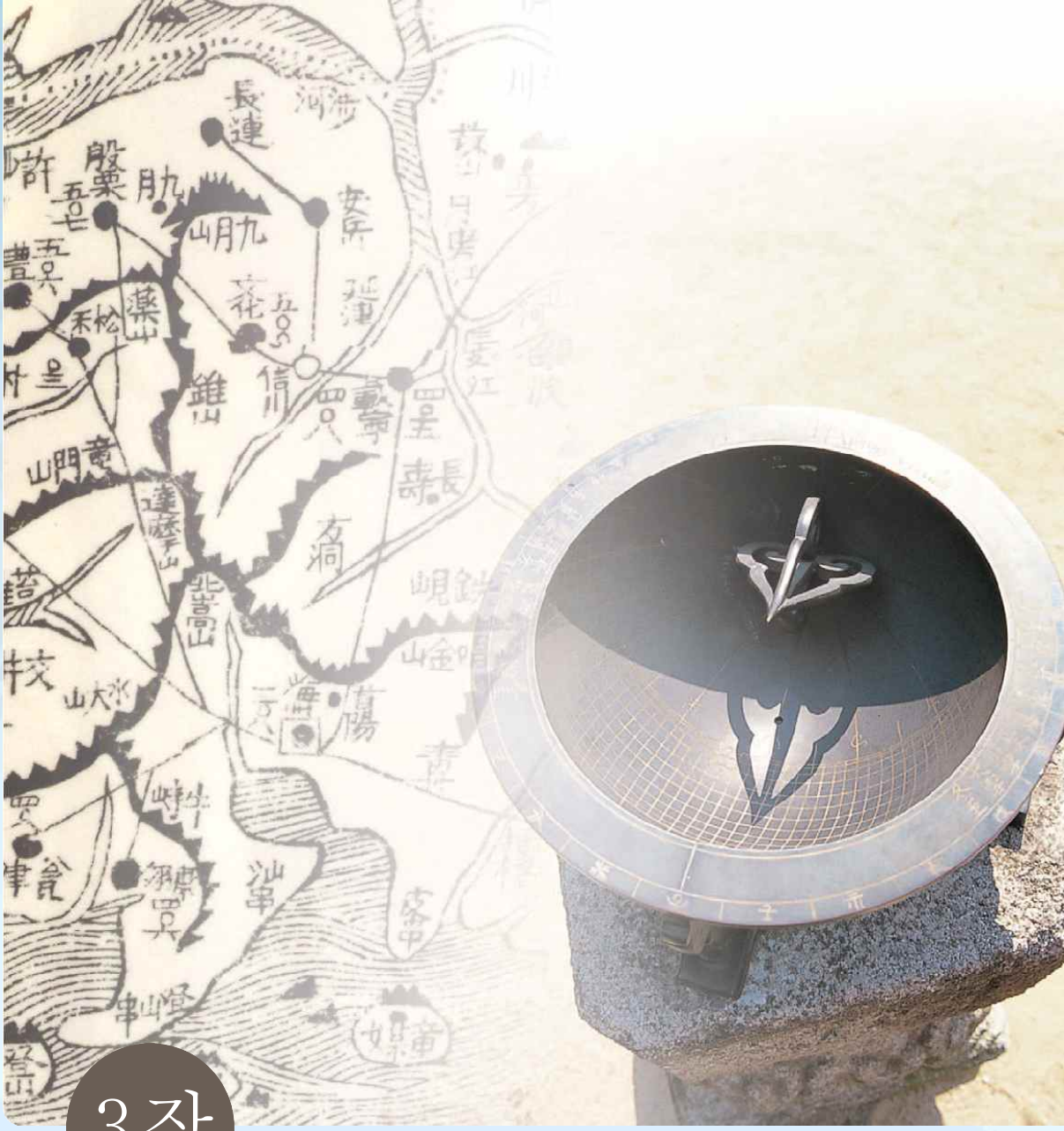

3장

문장 정비

3 문장 정비

1 정비 원칙

제안이유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길고 복잡한 문장, 이중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등은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법령문에는 일본어 투의 피동문, 이중 부정문 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도 많다. 이러한 문장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해석에 논란을 일으켜 유권해석이나 소송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입안 시부터 쉽고 명확하게 쓰는 게 좋다. 법령문의 틀 속에서 문장을 최대한 명확하고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 법령문의 기본 단위인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문장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면 문장이 복잡해진다. 조나 항은 한 문장으로 구성하되 단서나 후단을 둘 수 있다.

문장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 법령문도 어법에 따라 문장성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어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구절을 가까이 두고 문장성분 간에 호응이 잘 되도록 하며, 주어나 목적어 등 필수적인 성분이 빠져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빠진 내용을 보충해 준다.
- 주어를 원칙적으로 문장 앞에 두고 서술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어–서술어 사이에 지나치게 긴 부사절 등이 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 문장구조가 단순한 능동문에 비해 피동문은 구조가 복잡하고 행위주체(주어)를 파악하기도 힘들므로 능동문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명확한 문장으로 쓴다

- 많은 내용이 열거되는 복잡한 문장은 열거되는 사항을 호, 목으로 구분하고, 수식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한다.
- 이중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꾸어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 중의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지시어를 가급적 쓰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성분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명사 연속어구를 쓰지 않고 서술어로 풀어 쓴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 중복되는 내용,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한다.
- 표, 계산식, 그림 등이 효율적일 때에는 해당 조문에서 바로 제시한다.

2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 구조가 복잡한 긴 문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주어-서술어가 꼬이거나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는 긴 문장은 대개 한 문장에 여러 주제를 담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 법문장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통일성 있게 규정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 법령은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달리 조(條), 항(項) 등을 기본 단위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법문장을 훨씬 간결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다.
- 조나 항은 원칙적으로 한 문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 단서나 후단은 조나 항이 주된 내용과 예외적·부수적 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으나, 주된 내용과 함께 규정해야 할 만큼 긴밀한 관계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조나 항을 나눌 때에는 그 조나 항 등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문(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함께 정리해 주어야 한다.
- 가능하면 한 조에 규정하는 항의 개수는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 조나 항에 규정할 내용이 많아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그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행위 주체별, 세부 주제별로 나누거나 일련의 절차에 따라 항으로 규정한다.

가)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구분한 경우

• 문장 안에 둘 이상의 행위 주체가 등장하고 각 행위 주체별로 의무나 권한이 달리 규정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나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주무관청'을 기준으로 항을 구분한 경우

예

제29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② (생 략)
③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9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② (생 략)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임명권자'와'비서실장'을 기준으로 항을 구분한 경우

– 행위 주체가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명하고'의 주체는 임명권자이고 '관장한다'의 주체는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한 문장에 행위 주체가 다른 서술어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의 행위 주체별로 항을 나눈다.

예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생 략)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생 략)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0조 ※권고안)

나) 세부 주제별로 항을 구분한 경우

‘등록’과‘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항을 구분한 경우

– 아래 조문은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각각의 항으로 구분한다.

예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16조의3 및 제27조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계획의 공고’와‘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항을 구분한 경우

– 하나의 항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공고’와 ‘관계 서류 열람’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항으로 나눈다.

예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 때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상위법 위임에 따라 학습보조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의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항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규정한다.

예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습 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다) 절차에 따라 항을 구분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와'결과 반영'절차로 항을 구분한 경우

– 하나의 항에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반영 절차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문장이 길고 복잡하므로 각각의 절차로 항을 구분한다.

예

제6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

제6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2) 단서를 두는 경우

-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무 또는 절차를 달리 정할 때에는 접속사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를 쓸 수 있다.
- 단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주된 내용과 예외적인 사항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나 항에 규정될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나 항의 구조만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단서는 본문으로 규정될 주된 내용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가) 단서의 용례

본문의 행위주체 중 일부를 제외한 경우

예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완화한 경우

예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적용대상을 일부 배제한 경우

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나) 조나 항의 일부를 단서로 구분한 사례

기간 계산을 적용하는 데 예외를 인정한 경우

– 주된 내용을 본문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사항은 단서로 처리한다.

예

제78조(기간의 계산) ① 일·월 또는 연으로써 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업무정지기간의 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8조(기간의 계산) ① 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괄호 안에 규정된 특별한 상황을 단서로 규정한 경우

–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괄호 안에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서로 구분한다.

예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①·② (생 략)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①·② (생 략)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 후단을 두는 경우

- 조나 항의 문장이 주된 내용에 더하여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길고 복잡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관계를 살려 후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후단은 통상 '이 경우'로 시작한다.
- 주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거나 후단으로 규정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한다.

가) 후단의 용례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예

제200조의4(원상복구의 의무) ① ~ ③ (생 략)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

유의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여 설명한 경우

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대응하는 의무를 규정한 경우

예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나) 조나 항의 일부를 후단으로 구분한 사례

부수적·추가적인 사항을 후단으로 규정한 경우

–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선 규정하고, 도장을 지니지 않았을 때에 관한 사항을 후단으로 규정한다.

예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고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인을 찍어야 한다.

➔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세법」 제287조)

4) 단서나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려면 주된 내용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긴 문장을 본문/단서나 전단/후단으로 규정하면 문장을 한번 끊어 읽게 될 뿐만 아니라, 내용 간 관계가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서나 후단으로 규정할 내용이 많거나 본문 또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아 별도의 세부 주제나 절차로 구분될 때에는 다른 항으로 규정한다.
- 단서는 주된 내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후단에 비하여 다른 항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적다. 소송 실무에서는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서를 다른 항으로 구분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단서를 다른 항으로 규정한 경우

예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한 경우

예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 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교육훈련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① (생 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

5) 조나 항은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조나 항은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내용이 많아 한 문장으로 규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항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나 부수적인 사항을 단서나 후단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조나 항에 종종 두 문장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세 문장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단서와 후단을 같이 규정하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그 내용을 적절히 나누어 다른 항으로 규정한다.

단서를 다른 항으로 규정한 경우

예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에 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권고안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한 경우

예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8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권고안

3 문장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 법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널리 따르는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문장을 규정할 때에는 선례나 관행화된 표현 방식에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어문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어문 규범은 법문장이라고 하여 예외로 할 수 없는, 한글 문장을 쓸 때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법문장을 쓸 때에도 어문 규범에 따라야 한다.
- 먼저 문장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필수적인 문장성분을 분명히 드러낸다. 또한 우리말은 조사가 명사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조사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 문장의 어순을 올바르게 하면 번잡한 표현을 방지하고 문장을 읽을 때 호흡을 흩뜨리지 않게 하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문장의 어순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주어, 부사구 또는 부사절,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다면,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구 또는 부사절이 오며,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오는 것이 기본 어순이며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 대상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그 위치에 주의한다.

1) 주어를 분명히 밝혀 준다.

가) 법령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어를 명시한다.

•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자주 생략하고 문맥과 정황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문장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를 정하게 되므로 중요하다. 행정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문장의 주어는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또한 법문장의 주어가 의무 이행자일 경우에도 의무 이행자를 정확하게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생략된 주어를 찾아 쓴 경우

– 아래 조문에서 주어인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을 넣어 주면 법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주어를 알 수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쉽고 문장 구조도 완성된다.

예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전단과 후단의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

– 아래 조문에서 본문의 주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이나, 단서의 주어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단서의 주어가 생략되어 마치 본문의 주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서술어(연장하다)의 주체를 찾아 명시해 주어야 한다.

예

제43조(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

➔

제43조(완성검사)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서술어의 주체를 찾아 주어로 쓴 경우

– 주어가 생략되어 어색하므로 서술어(~하여야 한다)의 행위 주체인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를 찾아 쓴다.

예

제10조(징계처분등) ① (생 략)
②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징계처분등) ① (생 략)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나)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처음에 둔다.

• 법문장의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처음에 둔다. 이는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을 따르고 법문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주어는 문장 처음에 둔다.

예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문장 전체의 주어가 문장 처음에 오도록 위치를 변경한 경우

– 문장 맨 앞에 목적을 설명하는 부사구가 옴에 따라 문장 전체의 주어(보건복지부장관은)가 문장 한가운데에 있어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색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문장 처음에 두면 문장이 한결 자연스럽고 명확해진다.

예

제3조(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

주절의 주어가 문장 처음에 오도록 위치를 변경한 경우

– 다음 문장은 조건절(각급학교의 장이 ~ 해당할 때에는)과 주절(관할청은 ~ 요구할 수 있다)로 구성된 복문이다. 주절의 내용이 문장 전체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조건절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 가급적 주절의 주어를 문장의 처음에 둔다.

예

제54조의2(解任要求) ① 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당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 4. (생 략)

➔

제54조의2(해임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 4. (생 략)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전단)

다) 주격 조사와 주어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적절하게 쓴다.

- 주어는 행위의 주체로서 주격 조사 '이/가'와 주어임을 나타낼 수 있는 보조사 '은/는'[20]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 주격 조사 '이/가'는 주어에 붙어 주어임을 분명히 나타내지만, 통상적으로 주어에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이 많이 사용된다.[21] 법문장, 특히 복문으로 쓰여지는 문장에서 '이/가'는 종속절의 주어에 쓰이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주절의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을 주로 사용한다.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

– 아래 문장은 주절과 조건절로 구성된 복문이다. 문장 전체의 주어에는 보조사 '–은'을 쓰고, 조건절의 주어에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예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20) '은/는'은 보조사로서 '주제', '대조', '강조' 등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보조사는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가 붙은 용어가 주어로 사용되었는지, 목적어로 사용되었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 '방재작업은 끝났다'와 '방재작업은 끝냈다'에서 앞의 '방재작업은'은 주어이고 뒤의 말은 목적어이다.

21) 그 외에도 '이/가'와 '은/는'에 대해서는 각각 '신정보'와 '구정보'를 나타낸다는 등 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으나, 여기서는 위의 설명과 같이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정도로만 설명하기로 한다.
– 어떤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신정보). 그런데 그 나무꾼은 매우 부지런했어요(구정보).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가 반복되는 경우

– 복문 형식의 법문장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거나 의미상 동일할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통상 주절의 주어는 '–은/는'으로,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의 형태로 쓰인다.

법문장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로 '–은/는'을 많이 쓴다. 따라서 주절의 주어('–은/는')를 문장 처음에 두고, 주절과 같은 조건절의 주어('–이/가')는 생략하도록 한다.

예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53조)

같은 표현이 중복되는 경우: –는 ~할 때에는

– 주절의 주어('–은/는')를 쓰면서 종속절의 상황에도 초점을 두게 되면, '–는 ~할 때에는'과 같이 동일한 표현이 반복될 수 있다.

– 이를 피하기 위해서 종속절의 주어 '–이/가'를 명시하고 주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 법령 문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절의 주어('–은/는')는 그대로 두고, 종속절을 나타내는 용어 '~때에는', '~경우에는'을 '~때(에)'나 '~경우(에)'로 바꿔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예

제26조(조사질문권) ①·② (생 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6조(조사질문권) ①·② (생 략)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6조(조사질문권) ①·② (생 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6조)

라) 예외적으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법문장에는 주어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 내에 동일한

주어가 반복되거나[22] 단서 또는 후단의 주어가 본문 또는 전단의 주어와 같아서 주어를 쓰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주어가 일반 국민이나 국가·정부 등인 경우, 법령 소관 부처의 장이나 집행기관의 장 등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 가까운 조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 등으로서 주어가 예측 가능하고 법리적으로나 해석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문장에 의미상 주어가 이미 내포되어 있거나 'A를 B로 한다', 'A를 B로 본다' 등의 문장에서는 주어를 쓰면 오히려 어색하므로 주어를 생략한다.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의 주어가 같은 경우

– 본문과 단서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단서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고, 전단과 후단의 주어가 같을 때에는 후단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문장에서는 전단의 주어와 후단의 주어가 '판사는'으로 같고 후단의 주어를 쓰지 않더라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예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주어가 일반 국민인 경우

– 주어가 법령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 누구나'임이 충분히 예측될 때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누구든지)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주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등인 경우

– 국가배상 등과 같이 법령의 전체 맥락이나 정책 성격상 국가 등이 행위 주체임이 자명한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제3조(배상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2. (생 략)

(「국가배상법」 제3조)

22) '다) 주격조사와 주어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적절하게 쓴다.'(113쪽) 참고

주어가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

– 소송법에서 항소 등을 하는 주체는 당사자(대리인 포함)이므로 각각의 절차마다 그 주체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 예
> 제19조(항소) ①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19조)

문장에 행위 주체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 문장 자체가 행위 주체를 예정하고 있어 주어를 쓰면 동어 반복이 되는 경우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이라는 조건에 '세법을 해석·적용하려는 자는'이라는 행위 주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법 제61조의 경우에도 주어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이므로 굳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다.

> 예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하려는 자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제61조)

2) 목적어를 분명히 밝힌다.

가) 목적어를 밝힌다.

• 목적어는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으로 '무엇을'의 형태를 띤다.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주어와 함께 꼭 밝혀 주어야 할 문장성분이다.

생략된 목적어를 밝혀 쓴 경우

– 다음 조문에서 개발된 '건설기술'의 활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임이 제목에 나타나 있지만 문장 속에 '무엇을' 공사에 활용하게 한다는 것인지를 직접 쓴다.

예

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3조)

의미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목적어를 찾아 쓴 경우

– 아래 조문은 '공급을 받는' 앞에 '부가가치세를'이 있어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을 추가하여 의미를 분명히 해 주는 게 좋다.

목적어 둘이 나란히 연결되어 그 의미에 혼선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를 '~경우에는' 다음에 배치할 수도 있다.

예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대상을 명시한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을 쓸 때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대상을 밝힌다.

예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나) 목적어의 형태를 갖춘다.

• 목적어에는 목적격 조사 외에 '-은/는'이 붙을 수 있으나, 목적어임을 명확히 하려면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에 위반하다 → ~을 위반하다

– 종종 법문장에 보이는 '~에 위반하다' 등의 표현은 일본어 문장을 직역한 것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경우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여 목적어와 서술어를 어울리도록 쓴다.

> 예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하천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

✎ ~에 갈음하다 → ~를 갈음하다

– '갈음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을/를'의 형태로 고쳐 쓴다.

> 예
> 제58조의2(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① ~ ③ (생 략)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제4항)

✎'수락권고합니다'→'수락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 문장에서 '수락권고합니다'는 서술어 '수락하다'와 '권고하다'가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읽히기 쉽다. 그러나 '수락'은 '권고하다'의 목적어에 해당하며, 수락할 주체('당사자')와 권고하는 주체('조정위원회')가 다르므로 이러한 점들이 드러나도록 고친다

> 예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한 조정안을 위와 같이 수락권고합니다.
> ➔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한 조정안을 위와 같이 수락할 것을 권고합니다.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다) 목적어를 서술어 앞에 둔다.

문장 구조를 개선하여 목적어를 서술어 앞에 둔 경우

– 다음 문장은 주어부(법–––––권한은)가 너무 길어 어색하다. 중심 내용을 추려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으로 어순을 재배치한다.

예

제20조(권한의 위탁)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목적어가 중복 규정된 경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규정은'은 '~은'의 형태로 맨 앞에 있지만 내용상 목적어이다. 이러한 경우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혼동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를'이라는 목적어와 중복되므로 목적어의 형태를 갖추어 '이를'의 자리에 직접 규정한다.

예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

라) 서술어와 잘 어울리도록 쓴다.

- 서술어가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둔 경우: 동사의 형태를 타동사로 바꾸거나 목적어를 다른 성분으로 고친다.
- 서술어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 동사의 형태를 자동사로 바꾸거나 목적어를 찾아 쓴다.

✎ 성질을 변하지 → 성질을 변하게 하지, 성질이 변하지

– '변하다'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하다'를 사동 형태인 '변하게 하다'로 고치거나, '성질을'을 서술어 '변하다'와 맞춰 '성질이 변하다' 꼴로 고친다.

> 예
>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건이나 권리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 ➔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건이나 권리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 (「민법」 제118조)

✎ 상대방이 확정한 → 상대방이 확정된

– '확정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없이 쓸 수 없다. 따라서 타동사인 '확정하다'를 목적어가 필요없는 자동사 '확정되다'로 고친다.

> 예
>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 상대방이 확정된
> (「민법」 제142조)

3)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를 쓴다.

- 문장의 기본 단위는 주어–서술어이며, 그 둘이 짝을 이루어 주술관계를 이룬다. 법문장의 경우에도 주술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형식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법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나오는 복문의 경우에도 하나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서술어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한다.[23]

✎ 주어–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

> 예
>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20조)

23) '4. 복문에서 주어–서술어 관계를 명확히 한다'(123쪽)에서 살펴 본다.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2개 이상 규정하는 경우

– 법문장에서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예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 ③ (생 략)

④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 수식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 가까이 둔다.

수식하는 말(수식어)은 수식을 받는 말(피수식어) 앞에 두는 것이 기본 어순이다. 수식어가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문장성분이기 때문이다.

가) 관형절(구)

• 관형어는 이어지는 명사, 대명사 등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이다.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놓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 대상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그 위치에 주의한다.

관형절(구)가 연이어 나오는 경우

– 다음 문장에서 관형절(구) '여단급 이상의'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이 '부대'를 수식하고 있다. 그런데 '여단급(旅團級) 이상의'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의 앞에 있으면 '여단급 이상의 전투'라는 말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두 관형절(구)의 위치를 조정한다.

예

제16조(보직) ① (생 략)

② 旅團級이상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에 規定된 補職上의 資格을 具備한 戰鬪兵科出身將校로써 補한다.

③·④ (생 략)

➔

제16조(보직) ① (생 략)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④ (생 략)

(「군인사법」 제16조)

나) 부사절(구)

• 부사절(구)은 동사·형용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따라서 수식받는 동사·형용사나 문장 앞에 두어야 한다.

둘 이상의 부사절(구)에 대한 수식 관계를 각각 명확히 한 경우

– 아래 문장에서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하는 것은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의 조문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앞에 두었다.

– 또한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끝나'는 문장 전체(공단이~반환하는 경우에는)를 수식하므로 문장의 맨 앞에 두었다. 결국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두어야 한다.

예

3.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3.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부사어를 서술어 가까이 옮긴 경우

– 아래 문장에서 중심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서술어(권장할 수 있다)와 그 대상(가맹본부에) 사이에 긴 부사구(건전한 ~ 방지하기 위하여)가 있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권장하는 대상을 서술어 가까이에 둔다.

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 ③ (생 략)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권고안

수식 대상을 오해하지 않도록 부사어의 위치를 옮긴 경우

– '제2항의 범위 내에서'가 '공표된'을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의도는 제2항의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어순을 바꾸어 수식어를 피수식어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

예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제2항의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권고안

4 복문에서 주어-서술어 관계를 명확히 한다.

1) 복문의 종류 및 구조

- 단문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며, 복문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복문은 다시 안은문장[內包文]과 이어진문장[接續文]으로 나뉜다. 안은문장은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절을 문장의 한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하며,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하여 이어진 문장을 말한다. '-며/-고' 등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하여 이어진 문장은 대등접속문이라고 하고, '-면/-는데' 등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하여 이어진 문장은 종속접속문이라 한다.
- 복문의 경우에도 하나의 행정주체에 대한 서술어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한다. 부사절로 된 안긴문장[24]이나 종속절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주절의 주어는 문장 맨 앞에 두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한 문장에 속해 있는 절들의 주어가 모두 같고 예측할 수 있을 때에는 주어를 한 번만 쓸 수 있다.

가) 안은문장

주어가 다른 경우

- '하수급인이 ~ 준수하도록'은 부사절로서 서술어인 '관리하여야 한다'를 꾸며 주고 있다. 주절의 주어('수급인은')와 부사절의 주어('하수급인')가 다르므로 각각 규정해 준다.

예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24) 이와 같이 '주어-서술어' 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문장성분의 역할을 하며 큰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주어가 같은 경우

– 주절('외국인은 ~ 취득할 수 있다')과 부사절('외국인은 ~ 허가를 받아')의 주어가 같을 때에는 한 번만 표기하면 된다.

예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9조)

나) 대등접속문

• 앞절과 뒷절이 대등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각각의 주어/서술어가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되어 있다.

대등접속문 예시

예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생 략)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 종속접속문

• 종속접속문은 앞절이 뒷절의 조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법문장 특성상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형태로 통상 '~한 경우에는', '~할(하였을) 때에는', '~하려면' 등의 형태를 띤다. 종속접속문의 경우에도 종속절이 길지 않거나 해석상 문제가 없으면, 법문장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절의 주어를 문장 맨 앞에 둔다.

종속접속문 예시

예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8조)

주어를 한정하여 조건절을 대신한 경우

– 조건절을 쓰는 대신 주어 자체를 한정하여 조건,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과 같이 조건절('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을 쓰지 않고 수식어가 주어를 꾸미는 식('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예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건축법」 제11조제1항)

2) 복문에서는 각각의 주술관계를 명확히 한다.

부사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가까이 둔 경우

– 주어인 '국민이'는 서술어 '접근할'과 호응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보'를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길어 그 관계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을 붙여 쓴다.

예

제5조(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국민이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 및 조사결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 및 조사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등접속문의 주어를 찾아 쓴 경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여'에서 뒤쪽의 주어가 생략되어 문장이 어색하다. 주어가 같고 둘 이상의 서술어가 연이어 연결될 때에는 뒤쪽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조문의 경우 한 문장이 완성('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된 후에 주어없이 서술어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주어를 밝혀 문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예

제8조(안전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권고안

대등접속문의 서술어를 찾아 쓴 경우

– 법문장에서 둘 이상의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면서 서술어가 같으면 앞절의 서술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장이 길 때에는 서술어를 생략하지 않고 모두 쓴다.

예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군인사법」 제59조의2)

5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1) 행위 주체를 주어로 고쳐 쓴다.

- 우리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에 비해 피동문(被動文)을 잘쓰지 않는다.
- 법문장에서 종종 주체가 사람임이 분명한데도 피동문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피동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므로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능동문은 의미나 행위주체가 얼른 파악되는 반면, 피동문은 그렇지 않다. 또한 피동문은 '~에 의하여' 등의 부사구가 추가되어 문장이 복잡하므로 가급적 피동문은 능동문으로 고친다.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학교 법인이 제출한'

예

제2조(보조와 결정)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조(보조와 결정)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 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제2조) ※권고안

2) 일본어 직역 투의 피동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 특히 '依って'를 직역한 표현인 '~에 의하여', '의한'과 같은 피동문이 법령에 많이 등장한다. 이는 일상적인 우리말 표현이 아니므로 표현과 어순을 조정하여 능동문의 형태로 쓴다.

'~에 의하여'→'~가','~되는'→'~하는'

예

2. 당해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

2. 해당 상품이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권고안

'~에 의한'→'~이 실시하는','~에 의하여 실시된'→'~이 실시한'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과 '국민'이 해양과학조사의 주체이므로, 이들을 주어로 하여 능동문으로 쓰면 번거롭고 어색한 표현이 쉽고 단순한 구조로 바뀐다.

예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실시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제1조)

'의하여'의 의미를 풀어 쓴 경우

다음 문장에서 '의하여'가 의미하는 내용을 문맥에 맞게 직접 써 주고 어순도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예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4. (생 략)

➔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생 략)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시험에 의한다'→'시험으로 채용한다'

'의하다'는 문장의 종결 서술어로 잘 쓰이지 않는다. 아래 조문에서 '시험'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수단이므로 '~시험으로 채용한다'로 표현을 바꾼다.

예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3) 잘못된 피동 표현을 고친다.

-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피동 형태로 쓰지 않는다.

'발생된'→'발생한'

'발생하다'는 그 자체로 자동사이므로 피동 형태로 쓸 수 없다.

예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 발생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권고안

4)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피동문으로 쓸 수 있다.

-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무생물 주어는

주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서술어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피동문으로 쓴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무생물 주어인 ‘소멸시효’는 타동사인 서술어 ‘완성하다’의 주어가 될 수 없으므로 피동문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

예

4. 제9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민연금법」 제99조제3호)

‘계획은 ~을 포함하여야 한다’→‘계획에는 ~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생물주어가 ‘기본계획은’인 현재 문장보다, 계획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어로 하고 서술어를 피동 형태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

예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2항) ※권고안

6 명확한 문장으로 쓴다.

- 법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
- 특히 연결 관계나 수식 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끊어 읽을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개선하고, 애매한 지시어는 그 뜻을 살려 직접 규정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주는 이중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어 주면 법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1) ‘또는’, ‘및’ 25)에 의한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 ‘또는’, ‘및’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법문장에는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법문장을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25) ‘또는/및’에 의한 연결에 대해 서술어 사용에 초점을 맞춘 설명 ‘7. 지나친 생략은 피한다’(140쪽) 참조

가) '또는'을 사용하는 경우

- '또는'을 사용하면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또는'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물건 제조 또는 수입 허용

물건 제조 또는 수입 허용(○)
물건 제조나 물건 수입의 허용(○)
물건 제조 허용이나 물건 수입 허용(○)

- 두 개의 사항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또는'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나, ~이나, ~거나'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나, ~이나, ~거나'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이 법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나)'및'을 사용하는 경우

- '및'을 사용하면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및'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 ➔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
지방 채무와 지방 채권의 관리(○)
지방 채무 관리와 지방 채권 관리(○)

- 두 개의 사항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와/ 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와/과'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또는','및'을 사용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경우

- '또는',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풀어 쓰거나 문장 구조를 바꾼다.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는’으로 이어진 명사구(A 또는 B) 앞에 긴 수식어가 붙으면, 그 수식어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쪽 명사(A)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이러한 경우에는 긴 수식어를 ‘또는’으로 이어진 명사구(A 또는 B) 뒤에 풀어 쓰는 등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그 의미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규정한다.

예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 또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일 것[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권고안

‘또는’이 ‘해당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경우

아래 문장과 관련하여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A)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B)이 모두 변경되더라도 A나 B 중 하나만 표시해 주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27] 이와 같이 ‘또는’이라고 표시하면서도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더 구체적으로 써 준다.

예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2. 내화·방화·피난 및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권고안

공사채 등록 청구자의 범위

아래 문장과 같이 공동 청구 주체를 규정하면서 그 대리인까지 ‘또는’으로 연결하게 되면 청구 주체의 범위가 혼동될 수 있다.

---

26) 같은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정하고 있다.
「수산업법」이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관리선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일 것

27)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26 해석례: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령해석례 참조

이 경우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 청구를 하여야 하는 주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그 대리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뒷부분에 쓴다.

예

제5조(등록의 청구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양도·질권설정등 상대방이 있는 때에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등록의 청구자)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질권설정 등 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제5조) ※권고안

'~나(~거나) 또는'

'~나(~거나)'와 '또는'의 연결은 적절하지 않다. 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요소인 부사 '또는'을 삭제한다.

예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 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권고안

2)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 법문장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식어를 쓰게 되면 그 수식을 받는 대상이나 범위에 혼동이 생기거나, 수식어의 의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아래 예시와 같이 과태료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할 때에는 이해하는 데 혼선을 일으키는 수식어를 삭제한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식어 삭제

다음 문장은 「자연공원법」 제29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씀으로써 수식 대상이 '계곡'인지 아니면 '목욕·세탁 행위'인지 혼란스럽고, 수식 대상이 '목욕·세탁 행위'라고 할 경우에는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목욕·세탁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아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의미를 흐리는 수식어는 삭제한다.

예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권고안

3) 다의적 표현은 정확한 의미로 고쳐 쓴다.

- 뜻이 이중으로 읽히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정확한 의미로 바꾼다.

'기피신청을 받은 자'→'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

아래 문장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미로 쓴 것이나, '기피 신청을 접수한 사람'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기피신청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예

제38조(제척 및 기피)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심사전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38조(제척 및 기피)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심사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8조)

4) 이중 부정문은 가능하면 긍정문으로 쓴다.

- 번역 투의 이중부정문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문장 형태이다. 부정의 표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문장도 길고 복잡해진다.
- 내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이중부정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쉬운 긍정문으로 쓴다.

'~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된 후에 ~할 수 있다'

예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7조) ※권고안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에만 할 수 있다'

예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소장이 직권으로써 등록하는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제13조) ※권고안

'~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는 제외한다'→'~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한다)

➔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5) 지시어의 내용을 직접 쓴다.

- 법문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와 같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표현을 흔히 쓰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다만, 가리키는 내용을 직접 쓸 경우에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호나 목에서 명사로 끝난 말 다음에 단서를 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표현은 적절

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나 '예외로 한다' 등으로 바꾼다.

'같다'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 경우

예

第536條(同時履行의 抗辯權) ①雙務契約의 當事者 一方은 相對方이 그 債務履行을 提供할 때까지 自己의 債務履行을 拒絶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먼저 履行하여야 할 境遇에 相對方의 履行이 困難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前項 本文과 같다.

➔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제2항) ※2015년 국회제출안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을 직접 서술한 경우

– 다음 두 조문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각각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다'를 부정함을 뜻한다.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지시어를 쓰기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써 주어 명확하게 서술한다.

예

②留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 없이 留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留置物의 保存에 必要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제2항) ※2015년 국회제출안

예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3조제4항) ※2015년 국회제출안

'제외한다','예외로 한다'로 바꾼 경우

– 호, 목 부분에서 서술어 없이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의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

서술식으로 표현하는 게 부적절하다.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 등으로 바꾼다.

예

○○○한 법인. 다만, ○○○한 비영리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 법인. 다만, ○○○한 비영리 법인은 제외한다.

➔ ○○○한 법인(○○○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자주 틀리는 예

–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우에는(×)

※ '예외로 한다' 앞에는 '경우에는'이 아니라 '경우는'을 써야 한다. '(~ 경우)를 예외로 (처리)한다'의 의미이므로 목적어 '경우를'의 다른 형태인 '경우는'이 와야 한다.

※ '경우에는' 다음에는 구체적인 서술어가 와야 한다. '~ 경우에는'은 부사절의 일종인 조건절이므로 다음에는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서술어절이 와야 한다.

예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 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 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예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4항) ※권고안

6) 열거된 사항을 호나 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문장에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여러 사항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항을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일부가 수식을 받고 있는 경우 수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경우 호나 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고 연결 관계도 명확해진다. 각 호 간 또는 각 목 간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항의 내용 일부를 각 호로 규정한 경우

예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사목(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아목(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자목(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법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 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 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호의 내용을 각 목으로 규정한 경우

예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

5.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권고안

하나의 호를 두 개의 호로 나눔으로써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 경우

예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세무사법」 제4조)

7 지나친 생략은 피한다.

1)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성분을 쓴다.

- 법령 문장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성분이 빠져 있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다.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문맥상 필요한 내용을 적거나 설명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가) 명사가 생략된 경우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

다음 문장은 '피후견인을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라는 의미로 쓴 것이나, '피후견인을 감화하거나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 '감화기관'을 '감화'로 줄여 쓰기보다는 '기관'까지 쓰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예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945조)

'조성사업'→'교육 여건(환경) 조성'

'조성'은 서술어 성격을 가진 명사로서 '분위기 조성'처럼 앞말에 목적어 성격의 대상을 필요로 하므로 법령 전체의 맥락을 보아 앞부분에 적절한 내용이나 설명을 보충한다.

예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

2. 교육 여건(또는 환경)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하였을 때
3. 교육 여건(또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권고안

나)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

통보의 대상 명시하기

아래 문장은 누구에게 통보하는지가 빠져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찾아 적어 준다.

예

제42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

제42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5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다) 문장의 일부 내용이 생략된 경우

'장래를 훈계함'→'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생략된 훈계의 대상과 내용을 적어 줌으로써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예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

6. 견책은 비행을 저지른 군인에 대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군인사법」 제57조제1항제6호)

라) 형용사의 어미 등이 생략된 경우

필요 또는 유익한 → 필요하거나 유익한

– '또는'이나 '및'은 동일한 자격의 단어나 어구를 연결해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이에 따라 아래 문장에서 '필요 또는 유익한'을 '필요한 또는 유익한'으로 고치거나 '또는'을 빼고 '필요하거나 유익한'으로 고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예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생 략)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생 략)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688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739조제2항) ※2015년 국회제출안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 선의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라는 표현은 '선의, 평온'에서 '하게'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선의하다'란 말은 없으므로 '선의'에 '하게'를 붙이면 어색하다. '선의'에는 조사 '로'를 붙이고 '평온 및 공연하게'는 '평온하고 공공연하게'로 풀어 쓰면 문장이 보다 자연스러워진다.

예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제1항) ※2015년 국회제출안

2) 명사연속어구를 쓰지 않는다.

- 문장을 명사로만 나열하지 말고 필요한 서술어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다. 명사구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형식적으로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설명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빠진 내용을 추가하고 서술어로 써 준다.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예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8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을 달리 하면 훨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 읽지 않아도 한눈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계산식, 표 등을 활용한다.

1) 간결한 문장이 되게 한다.

- 문장은 가급적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한다.

가)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한다.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로 구성한다. → 도립공원위원회는 ~로 구성한다.

도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문장의 앞뒤로 중복되고 '구성'은 서술어에 해당하므로 앞의 말을 생략한다.

예

①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도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중복되는'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생략

예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중복되는'위임·위탁'생략

예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가 제87조에 따라 위임·위탁된 경우 그 위임·위탁받은 자

➔

1. 제87조에 따라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하다'와'실시하다'(의미의 중복)

'하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경우 '실시'를 생략한다.

예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혈액관리법」 제13조)

나) 당연한 내용을 생략한다.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에 대한 부연 설명 삭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시킬 때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삭제한다.

예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다)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한다.

불필요한 인용조문은 생략할 수 있다.

바로 앞 조나 같은 조 다른 항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인용조문을 쓰지 않는다. 인용조문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명확하며 해석에 논란이 없는 경우에는 인용조문을 생략할 수 있다.

예

제22조(손실보상)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손실보상)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권고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각 호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각 호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아래 문장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쓰지 않더라도 뒤의 ‘~중에 서’가 그 의미를 대신해 주므로 생략할 수 있다.

예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 3. (생 략)

➔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 3. (생 략)

(「감사원법」 제7조)

과태료 등 금액과 관련된 표현

– 아래와 같이 수치상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한다’라는 불필요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식대의 100분의 50’

예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 ‘과태료’에 숫자가 대응되는 경우 돈의 액수(금액)를 가리키는 것이 당연하므로 ‘과태료 금액’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

예

「낙농진흥법 시행령」 별표 중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진흥회,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진흥회,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50	300	500
2) …		…	…	…

단수에 관한 표현 정리

불필요한 단수(端數)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면 중요한 내용만 남게 되어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다.

예

③ 1년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③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예

제17조(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계산에 있어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24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초연금법」 제24조)

예

제130조의7(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176조의3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2) 필요한 경우 표, 계산식, 그림 등을 이용한다.

-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에 표·계산식·그림 등 시각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기존의 서술 중심의 평면적인 체계로는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 쉽지 않다. 수리적인 내용이나 사물의 형상, 추상적인 개념·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표·계산식·그림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한다. 또 법령상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표·도표 등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에 직접 규정한다.

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구분한 경우에는 표를 활용할 수 있다.

예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2. ~ 7. (생 략)

②·③ (생 략)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나) 계산식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산식을 쓸 수 있다.

예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 ~ ③ (생 략)

④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에 전체 조합의 상호금 융일반자금대출시의 평균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 ~ ③ (생 략)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연체료 = 미납입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 × 전체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 시의 평균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예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975/1000 + 65/10000 (재직 연수 − 5)]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권고안

다) 대상을 묘사하는 경우 그림으로 정확히 예시한다.

예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 (생 략)

②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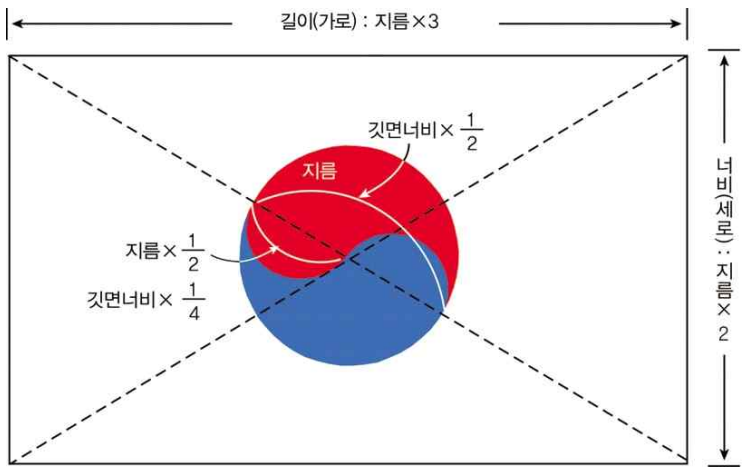

※ 자치법규 등도 용어와 문장을 정비한다.

법제처에서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자치법규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내규, 대학의 학칙 등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을 제공하고 있다.

생략되거나 불명확한 문장성분과 구조 정비

– 생략된 주어(군수)를 밝혀 주고 불명확한 문장성분을 문맥에 맞게 정비한다. '피해상황은'이 지원할 목적어인 것처럼 보이나 목적어는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예

② 재해로 발생한 피해상황은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 생략된 서술어 '있다고'를 보충한다.('~지원에 대한 공적이 인정되는'도 가능)

예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조제1항)

사동형을 능동형으로 정비한 사례

– 사동형 표현(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을 피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발전을 이끌).

예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 사항

(「○○○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6조제3호)

– 사동문이 피동문을 안고 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피동문 형태를 바꾸고 권고 대상을 서술어(권고할) 가까이에 둔다.

예

제제7조(교통안전지도원 등)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의 장에게 교원, 학생의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부터 등·하교 교통지도를 받도록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 ○○구 어린이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2항)

간결하게 정비한 사례

– 반복되는 표현을 줄이고 같은 항의 내용을 하나로 합친다.

예

제8조(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 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 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28]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의견을 협의 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로 나누어 정비한 사례

– 인력 현황과 장비 현황으로 나누어 각 호로 규정하여 나열된 항목들이 한눈에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예

제19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장비 중 동원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
2.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

(「○○○○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8)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허가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장

정비안 작성

I 정비 방식

1 순수알법과 내용알법

- 법제처는 새로 마련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의 모든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법령의 개정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순수알법은 법령의 내용 변경 없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개정 방식을 말한다.
  - 내용알법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는 개정 방식을 말한다.

2 제정/전부개정 방식 정비

- 제정법령안과 전부개정법령안은 일반적인 방식(『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제정 방식과 전부개정 방식)으로 법안을 작성한다.
-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할 때, 제정이나 전부개정 방식으로 정비했으면, 그 하위법령도 제정이나 전부개정 방식으로 정비한다.
- 전부개정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경우, 기존 법령의 부칙은 모두 소멸되므로, 기존 법령의 부칙 중 현재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 부칙은 반드시 개정 법령 부칙에 규정해야 한다.
- 기존 법령의 부칙이 너무 많거나, 어떤 부칙이 현재도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법령 전체를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부개정 방식 중 순수알법 또는 내용알법 방식으로 정비한다.

3 일부개정 방식 정비

- 다른 개정 사항 없이 법령문을 알기 쉽게 고치는 경우에는 순수알법 방식으로 정비한다.
- 법령문을 알기 쉽게 고치면서 다른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내용알법 방식으로 정비한다.

  ※ 내용 개정 사항의 경우, 알법 개정 사항과 구분하기 위해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해당 부분을 **진하게** 표시한다.

- 법령을 내용알법과 순수알법으로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 장에서 설명하는 '알법 정비방식'으로 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 다만, 법령의 모든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지 않고 내용의 일부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법령안은 일반적인 방식(『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일부개정방식)으로 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 법률을 일부개정 방식(알법 정비 방식)으로 정비했으면 그 하위법령도 일부개정 방식으로 정비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전부개정 방식으로 정비할 수도 있다.
- 하위법령은 반드시 '알법 정비 방식'으로 정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법 정비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보다 간편하므로 되도록이면 하위법령도 '알법 정비 방식'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4 법률 정비를 시작하기 전의 확인사항

- 법률 정비를 시작하기 전에 정비대상 법률과 같은 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거나 공포된 것은 없는지, 정비대상 조문 중에서 공포는 됐지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은 없는지를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률이 있는 경우
  -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현행 법률로 보고 그 내용을 정비안에 포함시켜서 작성해야 한다.
-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이곳에 설명이 없는 사례인 경우에는 법제처(담당 법제관실, 법제정책총괄과)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을 때 처리 방법

(일반적 내용개정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개정 법률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법률 정비안의 국회 제출일

◇ 개정방식

1.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만 개정할 때
   ○ 법안 첫머리에 쓰는 개정지시문에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적는다.
   – 예: 법률 제000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함께 개정할 때
   ○ 법안 첫머리에 쓰는 개정지시문은 통상의 일부개정방식에 따른다.
   – 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문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마다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적어서 그 조문이 시행 전임을 표시한다.
   – 예: 법률 제000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조(또는 제○조제△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문: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조문 순서대로 개정문을 작성한다.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서로 섞이는 형태가 되더라도 상관 없다)
   ○ 2개 이상의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서로 연이어 있는 경우에는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법률 공포번호를 일괄하여 붙일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도 조문 순서대로 적고,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조' 앞에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적어서 표시한다. '조' 중에서 일부 '항'만 시행 전일 때에도 '조' 앞에 법률 공포번호를 적는다. 현행란과 개정안란 양쪽 모두 적는다.
   ○ 전부개정법률을 공포 후 시행 전에 다시 개정하는 경우
   – 종전 사례: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전부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전부개정),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153호 전부개정, 2004. 1. 19. 공포 1년 후 시행) 등

종전 사례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00조(○○○) ① …….

부 칙

   ○ 현행 조문과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종전 사례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을 "◆◆◆"으로 한다.
~ 중 략 ~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을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을 "□□□"로 한다.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ㅇㅇㅇ) ·····
제8조(ㅁㅁㅁ) ·····

부 칙

3. 현행 심사기준 보완 사항

○ 개정하려는 '조'에 현행 '항'과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 '항'이 함께 있는 경우

<개정문>

○ 공포 후 시행 전 '항'만이 개정대상일 때에는 법률 공포번호를 인용하여 그 '항' 전체를 전부 개정한다.
○ 그 '조' 전체가 개정대상일 때에는 '조'를 현행 '항'과 공포 후 시행 전 '항'으로 나누어서 각각 전부 개정한다. (이때도 공포 후 시행 전 '항'에는 법률 공포번호를 붙여야 한다)
○ 상황에 따라 '항'으로 분리하기 어려우면 공포 후 시행 전 '항'이 있는 그 '조' 전체를 전부 개정할 수 있다. (이때 그 조에는 법률 공포번호를 붙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법률 제○○호 일부개정법률'이라는 문구를 '조' 중간인 '항' 앞에 넣지 않는다. 그 문구를 해당 '항'이 들어 있는 '조'의 맨 앞에 붙여야 하며, 현행란과 개정안란에 각각 넣어야 한다.

4. 정비하려는 법률의 이름을 최근 개정·공포된 법률에서 개정(법률 이름의 한자를 한글로만 고치거나 띄어쓰기만 한 경우도 포함한다)했으나, 아직 그 최근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 법률 이름
- 최근 개정·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안 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이름을 적지 않는다.
- 최근 개정·공포되기 전 상태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 법률 이름의 한글화나 띄어쓰기는 이미 최근 개정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서 개정하였으므로 지금 정비하려는 법률 개정안에서 다시 반복해서 법률 이름을 개정하는 개정문을 넣을 필요는 없다.

○ 법률의 내용
- 최근 개정·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안된 법률의 내용을 현행으로 보고 지금 정비하려는 법률에 포함시켜서 정비한다.

5. 공포 후 시행 전 법률로 처리하지 않고 현행 법률로 처리하는 경우

○ 법률의 주된 시행일은 이미 도래했고, 일부 '조'나 '항'만 아직 시행이 안 된 경우
- 법률안의 주된 시행일은 이미 지났으나, 부칙 시행일 규정에서 단서로 정한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 시행일이 오지 않은 '조'를 개정할 때, 그 법률 전체를 현행으로 보고 있으므로 '개정문'이나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란'에는 아직 시행일이 오지 않은 '조', '항'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할 때, 시행일 단서조항에서 그 조문의 시행일을 아직 오지 않은 시행일과 동일하게 맞추어 규정해야 한다.

○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으로 개정된 조항이 아직 시행 안 된 경우
- 이 경우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임을 따로 '개정문'이나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 다만,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란'에는 아직 시행일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타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적어야 한다.
- 타법 개정으로 '공포 후 시행 전 조항'이 된 조항의 시행일은 부칙에서 그 타법 개정 법률에서 정한 시행일과 동일하게 맞추어 규정해야 한다.

○ 정비하고 있는 법률의 시행일(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보다 더 늦게 오는 것이 분명한 경우
-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에 맞춰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 타법 개정이 아니라 자기 법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일 때에는 지금 개정하려는 법률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보다 뒤에 오는 것이 분명해도 그 법률을 국회 제출하는 시점을 '시행 전 법률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 위에 설명한 방법을 참고해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을 개정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Ⅱ 순수알법 정비안 작성 방법[29]

1 제안이유

• 다음 문구로 제안이유를 작성한다.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현행 법률이 한자 법률일 때만 쓰고, 한글 법률일 때는 쓰지 않는다)

• 순수알법은 내용 개정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 개정이 있는 일괄 정비 사항의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양벌규정, 과태료규정'을 일괄 정비한 사례[30]가 있으나, 현재는 해당 사항을 추가하지는 않고 있다.

---

29) 여기 설명된 '알법 정비안 작성 방법'은 2015년 12월 말까지 결정된 사항을 모은 것이다. '알법 정비안 작성 방법'은 알법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
※ 여기서는 법률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알법 정비 방식'으로 개정할 때에는 해당 법령에 맞게 고쳐서 사용한다.

30) 이 경우 제안이유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참고사항란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해 준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입법절차를 대행하는 법제처는 반드시 사전에 소관 부처,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해야 하고, 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소관 부처로부터 받아야 한다.

2 주요내용

• 순수알법에는 다음 문구를 기본으로 해서 주요내용을 작성한다.

현행 법률이 한자법률일 때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計上"을 "계상(計上)"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받다"를 "돌려받다"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쉼표(,)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법률이 한글 법률일 때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받다"를 "돌려받다"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쉼표(,)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참고사항

- 순수알법의 경우, 일반적인 참고사항 외에 특별히 추가할 사항은 없다.[31]

5. 참고사항
가. ~ 다. (표시 생략)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 ) 안에는 입법예고기간을 적는다.

31) 일괄정비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서 개정하는 경우, 참고사항 라. 기타 부분에 다음 내용을 넣는다.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26조제1항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안 제47조 단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4 개정문

1) 기본 원칙

- 개정 대상인 법률은 현행 법률(법전 기준)의 내용과 반드시 똑같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법전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당시 관보(전자관보)를 찾아서 법전의 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법률 이름을 한글화하거나 띄어쓰기만 한 경우에도 개정문을 작성한다.
- 원칙적으로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 일괄 개정 대상(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양벌규정, 과태료 등)의 경우, 내용 개정이라 하더라도 진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2) '조' 단위 개정

가) 조의 전부개정

- '조(條)' 단위로 '조'를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지조문(예: 제3조의3, 제10조의4)은 풀어 쓰지 않고 그대로 둔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한자를 한글로 바꾸거나 띄어쓰기만 바꾸더라도 개정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조' 전체를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나) 조의 제목 개정

- 조의 번호와 제목만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글로 개정한다.

제5조의 조 번호 "第5條"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각각'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음)
∨∨제5조(○○업의 허가)

다) 조에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 '조'에 용어, 문장, 한글화, 띄어쓰기, 문장 부호, 문장 구성 중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으면 그 '조'에 대해서는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는다.[32]
- 중간에 개정하지 않는 조문이 있으면 그 조 번호만 빼고 나머지 조 번호를 한꺼번에 적어서 개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개정 사항 없이 조문을 맞교환하는 경우
  - 현행 조문 순서는 그대로 두고, 개정안의 조문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16조로 한다.

3) '장·절' 단위 개정

가. 장·절의 제목 개정

- 장·절 제목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모두 한글로 개정한다.

5.제2장의 장 번호 "第2章"을 "제2장"으로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각각'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음)
∨
제2장 ○○업

나. 장·절 단위 개정이 가능한 경우

- 장·절의 번호 및 제목을 포함한 모든 '조'를 개정할 때 장·절 단위 개정이 가능하다.
  - 장·절 단위로 개정할 경우 개정문에서 장·절 번호와 제목은 앞뒤로 한 줄씩 띄우고 가운데 정렬을 한다.

32) 법제처가 정비초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처에 제공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개정사항이 없음을 소관 부처에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 알법 개정 사항이 전혀 없는 '조'도 신·구조문대비표에 포함시켜서 작성한다.

– 개정문을 쓸 때, 장·절 옆에 괄호를 하고 해당 조문 번호를 모두 적는다. 연속된 조문번호는 '~조부터 ~조까지'로 표현하되, 가지번호인 조 번호가 있으면 조 번호도 생략하지 않고 모두 적는다.

5.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 –

4) '항'의 정리

- '항'이 하나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항이 없는 조'로 만든다.

제5조제1항이 삭제되어, 제2항만 남은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중간에 삭제되어 있는 '항'이 있는 경우에는 '항 번호'를 정리하지 않는다.
  - 다만, 인용조문을 검색한 결과 개정 대상인 그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그 '항'을 인용하는 조문이 없으면 '항'을 항 번호 순대로 정리할 수 있다.
- 이미 삭제된 '항'이 '제1항'이거나 중간에 들어있는 '항'인 경우
  - 그 '조'를 삭제된 '항'을 기준으로 둘로 나눠서 각각 일부개정한다.

제3조제2항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미 삭제된 '항'이 그 '조'의 마지막 '항'인 경우
  - 그 삭제된 '항'을 개정문이나 신·구조문대비표 어느 곳에도 표시하지 않고, 그 '조'를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5) '호'와 '목'의 정리

- '호'와 '목' 번호는 항상 일련번호 순서가 되도록 정리한다.
  - 다만, 개정 대상인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호'나 '목'을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 '호 번호'나 '목 번호'를 정리하지 않을 수 있다.
- 해당 '호'나 '목' 번호를 개정 대상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변경되는 '호'나 '목' 번호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작성한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호'나 '목'을 인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인용 부분이 있으면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조문을 추가해서 그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호'나 '목' 번호를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해 준다.

5 신·구조문대비표

1) 기본 원칙

- '현행란'과 '개정안란'에 정비 대상 법률의 모든 조문의 전문(全文)을 넣어 작성한다.
- 어떤 '조'의 일부 항에만 개정 내용이 있더라도 그 조의 모든 항의 전문을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한다.
  - 다만, 알법 개정 사항(한글화, 띄어쓰기, 용어나 문장 순화 등)이나 내용 개정 사항이 전혀 없는 '조'는 개정문과 마찬가지로 그 '조' 전체를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표시하지 않는다.
- '장, 절, 관'의 번호와 제목은 한글 변환, 띄어쓰기, 글자 변경 등 변경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다만, '장' 전부 개정을 할 때에는 '절, 관'은 바뀐 부분이 없더라도 신·구조문대비표에 '절, 관'의 번호와 제목을 표시한다.[33]
- '조, 항, 호, 목' 별로 줄을 맞춘다.
- 법령문 글씨체: 내용 개정 없이 알기 쉽게 고쳤으므로 보통 글씨체로 표시한다.

2) 밑줄 기준

- 법령 이름: 정비하려는 법령의 이름을 개정할 때
  - 고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
  - 고치는 부분이 단순 한글 변환이나 띄어쓰기 변경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하고, 이름 전체를 밑줄 긋되, 보통 글씨체로 표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畜産物加工處理法	축산물가공처리법

- 법령 이름: 법령문에 인용된 법령의 이름
  - 고치는 부분이 전혀 없거나 낫표 (「」) 추가, 단순 한글 변환, 띄어쓰기 변경만 할 때에는 법령 이름에 밑줄을 긋지 않는다.

33) 법제처에서 처음 법령 정비초안을 마련(신·구조문대비표 형태로만 제공함)할 때에는 개정 사항이 없는 조의 전문, 법률 제명, 장, 절, 관의 번호 및 제목 모두를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법령 이름의 글자 자체를 추가, 변경, 삭제하는 경우에는 법령 이름 앞뒤에 붙는 낫표까지 포함해서 법령 이름 전체를 밑줄 긋되, 보통 글씨체로 표시한다.
- 고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도 법령 이름 바로 뒤에 오는 조문 번호의 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문 번호와 함께 법령 이름도 밑줄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②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나 수산물가공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법령문 밑줄
  - 변경된 부분(신·구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밑줄을 긋는다.
    → 원칙적으로는 조(항, 호, 목)의 대부분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부분만 밑줄을 긋는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항, 호, 목)의 전체 구조를 변경(어순, 후단, 단서, 각 조, 항, 호, 목의 추가, 삭제, 병합, 분리로 그 조, 항, 호, 목의 내용 대부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하면, 그 조(항, 호, 목) 전체(조, 항, 호, 목 번호 및 제목은 제외)를 밑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대상품목 및 대상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 및 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와 등록신청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에 대한 밑줄
    → '조사'가 변경될 때 '조사'를 포함한 그 단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조사'가 변경되지 않을 때 명사 다음에 오는 '조사'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다만, '조사('있어서의'에서 '의')'가 형용사('있어서의'에서 '있어서')나 부사 다음에 오거나 문맥의 의미상 '조사'까지 밑줄을 긋는 것이 이해하기 편한 경우에는 '조사'까지 밑줄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어미'

→ '어미'가 변경될 때 '어미'를 포함한 그 단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어미'가 변경되지 않을 때, 한 단어만 변경된 경우에는 '어미' 부분은 밑줄을 긋지 않는다. 연이은 단어가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어미'에도 밑줄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한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현행에 없는 가운뎃점(·)을 추가할 때에는 밑줄을 긋는다.

→ 그러나, 가운뎃점(·)을 쉼표(,)로 바꾼 경우, 쉼표(,)를 가운뎃점(·)으로 바꾼 경우, 쉼표(,)를 추가한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 띄어쓰기만 변경된 경우: 밑줄을 긋지 않는다.

– 단순 한글 변환만 한 경우: 밑줄을 긋지 않는다.

→ 그러나, 한글로 변환하면서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써준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 모두 밑줄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2. "畜産物"이라 함은 식육·포장육·原乳·食用卵·食肉加工品·乳加工品·알加工品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食肉)·포장육·원유·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乳加工品)·알 가공품을 말한다.

3) 신설되거나 삭제된 조문의 작성 방법

-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되거나 새로 삭제되는 '조', '항', '호', '목'에 대해 '<신∨∨설>', '<삭∨∨제>'를 표시한다.
- 내용개정 없이 순수알법 차원에서 '항', '호', '목'을 삭제하거나 신설한 경우에는 신·구 조문대비표에 '<신∨∨설>', '<삭∨∨제>'를 표시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소속기관의 장,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

- 이미 삭제된 '조'의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 기존에 삭제된 '항'이 있는 경우 현행란에만 삭제 표시를 하고, 개정안란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삭 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 개정 사항 없이 조문을 맞교환할 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생 략)	제20조(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8조(면허의 갱신)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8조(면허의 갱신)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0조(생 략)	제16조(현행 제20조와 같음)

6 부칙 작성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Ⅲ 내용알법 정비안 작성 방법

1 제안이유

• 다음 문구를 제안이유에 추가한다.

현행법률이 한자법률일 때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법률이 한글법률일 때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내용알법에는 주요내용에 알법 정비와 관련된 별도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3 참고사항

•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정책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이라는 설명문을 추가한다.

- 설명문의 위치: 참고사항의 기타란 제일 마지막 부분
- 설명문 내용

> 5. 참고사항
> 가. ~ 다. (표시 생략)
>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 ( ) 안에는 입법예고기간을 적는다.

4 개정문

1) 기본 원칙

- 개정 대상인 법률은 현행 법률(법전 기준)의 내용과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법전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당시 관보(전자관보)를 찾아서 법전의 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법률 이름을 한글화하거나 띄어쓰기만 한 경우에도 개정문을 작성한다.
- 원칙적으로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 기존 제도나 정책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 개정 사항은 진하게 표시한다.

2) '조' 단위 개정

가. 조의 전부개정

- '조(條)' 단위로 '조'를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 제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지조문(예: 제3조의3, 제10조의4)은 풀지 않고 그대로 둔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한자를 한글로 바꾸거나 띄어쓰기만 바꾸더라도 개정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조' 전체를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나. 조의 제목 개정

• 조의 번호와 제목만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글로 개정한다.

제5조의 조 번호 "第5條"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각각'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음)
제5조(○○업의 허가)

다. 조에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 '조'에 용어, 문장, 한글화, 띄어쓰기, 문장 부호, 문장 구성 중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으면 그 '조'에 대해서는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는다.[34]

• 중간에 개정하지 않는 조문이 있으면 그 조 번호만 빼고 나머지 조 번호를 한꺼번에 적어서 개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개정 사항 없이 조문을 맞교환하는 경우
  – 현행 조문 순서는 그대로 두고, 개정안의 조문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16조로 한다.

34) 법제처가 정비초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처에 제공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개정사항이 없음을 소관 부처에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 알법 개정 사항이 전혀 없는 '조'도 신·구조문대비표에 포함시켜서 작성한다.

3) '장·절' 단위 개정

가. 장·절의 제목 개정

• 장·절 제목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모두 한글로 개정한다.

제2장의 장 번호 "第2章"을 "제2장"으로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각각'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음)

∨

제2장 ○○업

나. 장·절 단위 개정이 가능한 경우

• 장·절의 번호 및 제목을 포함한 모든 '조'를 개정할 때 장·절 단위 개정이 가능하다.

– 장·절 단위로 개정할 경우 개정문에서 장·절 번호와 제목은 앞뒤로 한 줄씩 띄우고 가운데 정렬을 한다.

– 개정문을 쓸 때, 장·절 옆에 괄호를 하고 해당 조문 번호를 모두 적는다. 연속된 조문 번호는 '~조부터 ~조까지'로 표현하되, 가지번호인 조 번호가 있으면 조 번호도 생략하지 않고 모두 적는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 이하 생략 ~

• 장·절 번호나 장·절 제목을 전혀 바꾸지 않는 경우(장·절 번호나 장·절 제목을 한글로 고치거나 띄어쓰기를 바꾸지도 않는 경우)에는 장·절 단위로 개정하지 않고, '조' 단위로 개정한다.

• 장·절 안에 이미 삭제된 '조'가 있는 경우

– 내용 개정은 아니나 이미 삭제되어 있는 '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는 원래 그 장, 절에 없는 '조'로 여기고 장·절 단위로 개정할 수 있다.

– 개정문을 작성할 때, 장 뒤에 괄호 안에 이미 삭제되어 있는 '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의

번호를 모두 기재한다.

제2장 안의 제9조, 제11조가 삭제된 경우

제2장(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장·절 단위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

- 장이나 절 안에 개정 사항이 전혀 없는 '조'가 있으면, 장·절 단위로 개정문을 작성할 수 없고, 조 단위로 개정문을 작성해야 한다.

제1장 안의 제3조가 개정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내용 개정으로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조'가 있으면 장·절 단위로 개정할 수 없고, '조' 단위로 개정해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조'가 속해 있는 장이나 절의 번호와 제목을 개정하려면 별도로 개정문을 작성하고, 신설되거나 새로 삭제되는 조문도 별도 개정문으로 작성한다.
  -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해당 조문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문을 조문 순으로 묶어서 개정문을 작성한다.
  - 개정문은 항상 보통 글씨체로 표시하되, 내용 개정으로 '조'를 삭제할 때에는 개정문(제○○조를 삭제한다.) 자체를 진한 글씨체로 표시해야 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하 중략 ~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 6 조 의 3 (○ ○ ○)
---.
제17조부터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하 생략 ~

4) '항'의 정리

- '항'이 하나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항이 없는 조'로 만든다.

제5조제1항이 삭제되어, 제2항만 남은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중간에 삭제되어 있는 '항'이 있는 경우에는 '항 번호'를 정리하지 않는다.
  - 다만, 인용조문을 검색한 결과 개정 대상인 그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그 '항'을 인용하는 조문이 없으면 '항'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다.
  - 조를 내용개정하여 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항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다(상세 내용은 아래 참조).
- 이미 삭제된 '항'이 '제1항'이거나 중간에 들어있는 '항'인 경우
  - 그 '조'를 삭제된 '항'을 기준으로 둘로 나눠서 각각 일부개정한다.

제3조제2항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미 삭제된 '항'이 그 '조'의 마지막 '항'인 경우
  - 그 삭제된 '항'을 개정문이나 신·구조문대비표 어느 곳에도 표시하지 않고, 그 '조'를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 내용 개정으로 항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 개정문은 '조 단위'의 전부개정 방식으로 작성한다.
  - '항'을 일련번호 순서로 정리하고, 그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항을 인용하고 있으면, 바뀐 '항 번호'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 '항'을 신설한 경우 개정문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신설된 '항' 전체를 진한 글씨체로 표시한다.

제5조제2항을 신설하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을 삭제하고 남은 '항'이 2개 이상인 경우 개정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이 제2항이 되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 삭제로 '항'이 1개인 '조'가 되면, 개정문에서는 '항 없는 조'로 만든다.

5) '호'와 '목'의 정리

- '호'와 '목' 번호는 항상 일련번호 순서가 되도록 정리한다.
  – 다만, 개정 대상인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호'나 '목'을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 '호 번호'나 '목 번호'를 정리하지 않을 수 있다.
- 해당 '호'나 '목' 번호를 개정 대상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변경되는 '호'나 '목' 번호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작성한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호'나 '목'을 인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인용 부분이 있으면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조문을 추가해서 그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호'나 '목' 번호를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해 준다.
- 내용 개정으로 '호'나 '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 '항'의 신설 및 삭제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5 신·구조문대비표

1) 기본 원칙

- ‘현행란’과 ‘개정안란’에 정비 대상 법률의 모든 조문의 전문(全文)을 넣어 작성한다.
- 어떤 ‘조’의 일부 항에만 개정 내용이 있더라도 그 조의 모든 항의 전문을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한다.
  - 다만, 알법 개정 사항(한글화, 띄어쓰기, 용어나 문장 순화 등)이나 내용 개정 사항이 전혀 없는 ‘조’는 개정문과 마찬가지로 그 ‘조’ 전체를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표시하지 않는다.
- ‘장, 절, 관’의 번호와 제목은 한글 변환, 띄어쓰기, 글자 변경 등 변경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다만, ‘장’ 전부 개정을 할 때에는 ‘절, 관’은 바뀐 부분이 없더라도 신·구조문대비표에 ‘절, 관’의 번호와 제목을 표시한다.[35]
- ‘조, 항, 호, 목’별로 줄을 맞춘다.
- 법령문 글씨체
  - 변경된 내용이 알기 쉽게 고치기만 한 것이면 보통 글씨체로 표시한다.
  - 변경된 내용이 기존 제도나 정책 내용을 바꾸는 내용개정이면 진한 글씨체로 표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산·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밑줄 기준

- 법령 이름: 정비하려는 법령의 이름을 개정할 때
  - 고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
  - 고치는 부분이 단순 한글 변환이나 띄어쓰기 변경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하고, 이름 전체를 밑줄 긋되, 보통 글씨체로 표시한다.

35) 법제처에서 처음 법령 정비초안을 마련(신·구조문대비표 형태로만 제공함)할 때에는 개정 사항이 없는 조의 전문, 법률 제명, 장, 절, 관의 번호 및 제목 모두를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畜産物加工處理法	축산물가공처리법

- 고치는 부분이 법령 이름의 글자 자체를 추가, 변경, 삭제하는 것이면 법령 이름 전체에 밑줄을 긋고 진한 글씨체로 표시한다.

• 법령 이름: 법령문에 인용된 법령의 이름

- 고치는 부분이 전혀 없거나 낫표(「」) 추가, 단순 한글 변환, 띄어쓰기 변경만 할 때에는 법령 이름에 밑줄을 긋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법령 이름의 글자 자체를 추가, 변경, 삭제하는 경우에는 법령 이름 앞뒤에 붙는 낫표까지 포함해서 법령 이름 전체를 밑줄 긋되, 보통 글씨체로 표시한다.
- 법령 이름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개정할 때(예: 「산림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낫표까지 포함해서 법령 이름 전체를 밑줄 긋고, 진한 글씨체로 표시 한다.
- 고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도 법령 이름 바로 뒤에 오는 조문 번호의 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문 번호와 함께 법령 이름도 밑줄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②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나 수산물가공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법령문 밑줄

- 변경된 부분(신·구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밑줄을 긋는다.

→ 원칙적으로는 조(항, 호, 목)의 대부분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부분만 밑줄을 긋는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항, 호, 목)의 전체 구조를 변경(어순, 후단, 단서, 각 조, 항, 호, 목의 추가, 삭제, 병합, 분리로 그 조, 항, 호, 목의 내용 대부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하면, 그 조(항, 호, 목) 전체(조, 항, 호, 목 번호 및 제목은 제외)를 밑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대상품목 및 대상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 및 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와 등록신청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에 대한 밑줄

→ ‘조사’가 변경될 때 ‘조사’를 포함한 그 단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조사’가 변경되지 않을 때 명사 다음에 오는 ‘조사’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다만, ‘조사(‘있어서의’에서 ‘의’)’가 형용사(‘있어서의’에서 ‘있어서’)나 부사 다음에 오거나 문맥의 의미상 ‘조사’까지 밑줄을 긋는 것이 이해하기 편한 경우에는 ‘조사’까지 밑줄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어미’

→ ‘어미’가 변경될 때 ‘어미’를 포함한 그 단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어미’가 변경되지 않을 때, 한 단어만 변경된 경우에는 ‘어미’부분은 밑줄을 긋지 않는다. 연이은 단어가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어미’에도 밑줄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한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현행에 없는 가운뎃점(·)을 추가할 때에는 밑줄을 긋는다.

→ 그러나, 가운뎃점(·)을 쉼표(,)로 바꾼 경우, 쉼표(,)를 가운뎃점(·)으로 바꾼 경우, 쉼표(,)를 추가한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 띄어쓰기만 변경된 경우: 밑줄을 긋지 않는다.

– 단순 한글 변환만 한 경우: 밑줄을 긋지 않는다.

→ 그러나, 한글로 변환하면서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써준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 모두 밑줄을 긋는다.

현 행	개 정 안
2. "畜産物"이라 함은 식육·포장육·原乳·食用卵·食肉加工品·乳加工品·알加工品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食肉)·포장육·원유·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乳加工品)·알 가공품을 말한다.

3) 신설되거나 삭제된 조문의 작성 방법

-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되거나 새로 삭제되는 '조', '항', '호', '목'에 대해 '<신∨∨설>', '<삭∨∨제>'를 표시한다.
- 내용개정 없이 순수알법 차원에서 '항', '호', '목'을 삭제하거나 신설한 경우에는 신·구 조문대비표에 '<신∨∨설>', '<삭∨∨제>'를 표시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소속기관의 장,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

- 이미 삭제된 '조'의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 기존에 삭제된 '항'이 있는 경우 현행란에만 삭제 표시를 하고, 개정안란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삭 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 개정 사항 없이 조문을 맞교환할 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생 략) 제18조(면허의 갱신)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20조(생 략)	제20조(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8조(면허의 갱신)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현행 제20조와 같음)

• 내용개정으로 ‘조’, ‘항’, ‘호’, ‘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조, 항, 호, 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때

현 행	개 정 안
第5條(免許등의 基準)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을 삭제하고 항이 2개 이상 남은 경우

현 행	개 정 안
第5條(免許등의 基準)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삭 제>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을 삭제하고 항이 하나만 남아 항 없는 조로 정리하는 경우.

→ 개정문에는 진하게 하지 않았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진하게 표시한다.

→ 항이 삭제되었음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第5條(免許등의 基準)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부칙 작성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록

Ⅰ 정비 권고 용어

<주의>

- 여기에 제시한 순화용어가 모두 적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다른 순화용어를 찾아서 바꾸거나 현행 그대로 쓸 수 있다.

ㄱ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	가각	街角	(길)모퉁이
2	가감	加減	가감, 더하고 빼기, 더하거나 빼기
3	가건물	假建物	임시건물
4	가계약	假契約	임시∨계약
5	가공선	架空線	공중 전선
6	가공한	加功	가공한
7	가금	家禽	가금(家禽)
8	가급적	可及的	될 수 있으면, 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
9	가납	假納	임시∨납부
10	가내	家內	가내, 가내(家內), 집안
11	가도	假道	임시∨도로, 임시∨통로
12	가두	街頭	길거리
13	가드레일	guardrail	보호난간
14	가료	加療	치료, 고침
15	가료하다	加療	치료하다
16	가리	加里	칼륨, 칼리
17	가무	歌舞	노래와 춤
18	가미하다	加味	덧붙이다, (맛을) 더하다, 추가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9	가병	假病	꾀병
20	가불	假拂	우선지급
21	가불금액	假拂金額	우선지급금
22	가사	家事	가사
23	가사용	家事用	가정용, 가사용(家事用)
24	가산	加算	덧셈, 보탬, 더함
25	가산하다	加算	더하여 계산하다, 더하다, 가산(加算)하다
26	가선	架線	전선∨설치, 공중∨전선
27	가설건물	假設建物	가설건물
28	가설인	假設人	가공인물
29	가설하다	架設	가설하다
30	가성소다	苛性soda	수산화나트륨
31	가소제	可塑劑	가소제
32	가솔린	gasoline	휘발유
33	가수금	假受金	임시∨수령금
34	가스	gas	가스(○), 까스(×)
35	가스스토브	gas stove	가스난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6	가습기	加濕器	가습기
37	가시광선	可視光線	가시광선(可視光線)
38	가시도	可視度	가시도(可視度)
39	가식	假植	임시 식재
40	가액	價額	가액(價額)
41	가연성	可燃性	가연성(可燃性)
42	가온	加溫	온도를 높임, 가온(加溫)
43	가용	家用	가정용
44	가용성	可溶性	녹는∨성질, 가용성
45	가운뎃점		제2장 중 73쪽에 설명 있음
46	가위탁	假委託	임시∨수감
47	가이드	guide	가이드, 기준, 지침
48	가인	加印	추가∨날인
49	가장	假裝	가장(假裝)
50	가점	加點	가산점
51	가제식	加除式	가제식(加除式)
52	가제하다	加除	갈아∨끼우다
53	가주소	假住所	임시주소
54	가중	加重	가중
55	가중하다	加重	(처분을) 가중하다, (기간을, 금액을) 늘리다
56	가지정	假指定	임시∨지정
57	가집행선고	假執行 宣告	가집행선고
58	가처분	假處分	가처분
59	가철	假綴	임시∨묶음, 가철(假綴)
60	가철하다	假綴	임시로 묶다, 철하다
61	가철하다	加綴	묶다, 덧붙여 묶다, 철하다, 덧붙여 철하다
62	가청경보	可聽警報	소리∨경보
63	가출	假出	임시∨반출
64	가출소	假出所	가출소
65	가퇴원	假退院	임시∨퇴원
66	가하다	加	가하다, (변경을) 하다, (위해를) 주다, (위해를) 입히다, (행위를) 하다
67	가한(행위를 가한)	加	한 (행위를 한)
68	가해	加害	가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69	가해제	假解除	임시∨해제
70	가환부	假還付	임시∨환급, 임시∨반환
71	각기	各其	각각
72	각목의 1		각∨목의 어느 하나, 각∨목의 구분에 따른
73	각별, 각별로	各別	각각, 따로따로
74	각본조	各本條	각 해당 조문
75	각인	刻印	새김, 도장을 새김
76	각인하다	刻印	새기다, 도장을 새기다
77	각조, 각항, 각호, 각목		각∨조, 각∨항, 각∨호, 각∨목
78	각종	各種	각종, 여러∨가지
79	각치	角値	각도
80	각호	各戶	집집마다
81	각호의 1,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各號	각∨호의 어느 하나, 각∨호의 구분에 따른
82	간	間	① ['사이', '관계'를 의미할 때] 부모와 자식 ∨간, 회사∨간, 국가∨간 ② [예외] 다자간, 부자간, 피차간, 국제간 ③ ['기간'을 의미할 때] 이틀간, 한 달간, 삼십 일간, 이틀∨동안
83	간격	間隔	간격
84	간과	看過	간과
85	간만	干滿	간만
86	간벌	間伐	솎아베기
87	간병	看病	간병
88	간석지	干潟地	간석지(o), 개펄(o), 갯벌(x)
89	간수	看守	관리, 간수(看守), 교도관(사람일 때)
90	간수자	看守者	관리자
91	간수하다	看守	관리하다
92	간이잠실	簡易蠶室	간이∨누엣간
93	간이처리	簡易處理	간이∨처리
94	간인하다	間印	간인(間印)하다
95	간조	干潮	간조(干潮)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96	간주	看做	간주
97	간주하다	看做	(~로) 보다
98	간질		뇌전증
99	간헐, 간헐적	間歇(的)	간헐, 간헐적
100	갈음하다 (~에 갈음하다)		~을 갈음하다 * 대신하다(x)
101	감경	減輕	감경, (가볍게) 줄임, 가볍게 함, 낮춤
102	감경하다	減輕	감경하다, (기간을, 금액을) 줄이다
103	감금	監禁	감금
104	감모	減耗	감모(減耗)
105	감별	鑑別	분류∨심사, 감별
106	감봉	減俸	감봉
107	감속	減速	감속
108	감속하다	減速	속도를 줄이다
109	감손되다	減損	줄어들다
110	감쇠	減衰	감쇠(減衰), 적어짐, 줄어짐, 약해짐
111	감수	監守	감수(監守)
112	감수	減水	감수(減水)
113	감수	減收	감수(減收)
114	감수되다	減收	(수확이) 줄어들다
115	감안하다	勘案	고려하다
116	감액하다	減額	감액하다, (금액을) 낮추다
117	감염되다	感染	감염되다
118	감자	減資	감자(減資), 자본금∨감소
119	감찰	監察	감찰
120	감하다	減	빼다, 덜다, 낮추다, 줄이다
121	감항능력	堪航能力	안전∨항행∨능력, 감항능력
122	감호	監護	감호, 보호감독
123	갑상선	甲狀腺	갑상샘
124	강구	講究	마련
125	강구하다	講究	마련하다
126	강급	降級	강등
127	강급하다	降級	강등하다, (등급을) 내리다
128	강도	强度	세기, 강도
129	강선	鋼船	강선(鋼船)
130	강설량	降雪量	강설량
131	강우량	降雨量	강우량
132	강취	强取	강취(强取)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33	강탈하다	强奪	강탈하다
134	강풍	强風	강풍
135	강하	降下	강하(降下)
136	강하하다	降下	내리다
137	같다, 또한 같다		[문장 전체를 순화한다]
138	개간	開墾	개간
139	개간지	開墾地	개간지
140	개개	個個	각각
141	개과천선	改過遷善	개과천선
142	개답	開畓	개답(開畓)
143	개두수술	蓋頭手術	개두수술(開頭手術), 머리뼈 절개수술
144	개명	改名	개명(改名)
145	개명하다	改名	이름을 고치다
146	개변하다	改變	고치다
147	개산보험료	概算保險料	개괄∨산정∨보험료
148	개산하다	概算	개괄적으로 계산하다, 어림잡아 계산하다, 추산하다
149	개서하다	改書	고쳐 적다, 고쳐 쓰다, 고치다
150	개선	改選	변경 선임
151	개수	改修	개선
152	개수하다	改修	고치다, 개선하다
153	개수설비	改修設備	개수설비
154	개시	開始	시작, 개시(開始)
155	개시하다	開始	시작하다, (상속을) 개시하다
156	개요	概要	개요
157	개의하다	開議	회의를 시작하다, 개의(開議)하다
158	개인	改印	인감∨변경, 인감∨바꿈, 인감을∨바꿈
159	개임	改任	교체∨임명
160	개임하다	改任	바꾸어 임명하다, 교체하다, 교체하여 임명하다
161	개장	開裝	포장 열기, 포장 뜯기
162	개장	改裝	재포장
163	개장하다	改裝	다시 포장하다
164	개전의 정이 현저한	改悛의 情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165	개정하다	開廷	재판을 시작하다
166	개조	改造	개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67	개진하다	開陳	(의견을) 진술하다, (의견을) 펴다, (의견을) 밝히다
168	개착	開鑿	개착(開鑿)
169	개착하다	開鑿	뚫다, 개착하다, 파다
170	개찬	改竄	정정
171	개체	改替	바꿈
172	개최	開催	개최
173	개최하다	開催	열다, 개최하다
174	개축	改築	개축(改築)
175	개측	改測	재측정, 재측량
176	개측하다	改測	개측(改測)하다, 다시 측량하다, 다시 측정하다
177	개폐	改廢	개정 또는 폐지, 개편 또는 폐지
178	개폐시	開閉時	여닫을 때
179	개피	開披	개봉
180	개피하다	開披	개봉하다, 뜯다
181	개호	介護	수발, 간병, 개호(介護)
182	개황	槪況	상황, 형편, 개황
183	객담	喀痰	가래
184	객토	客土	새∨흙∨넣기
185	갱구	坑口	갱구(坑口)
186	갱내	坑內	갱내(坑內)
187	갱생하다	更生	선도·교화하다
188	갹출하다	醵出	갹출하다, 각자 나눠 내다
189	거골	距骨	목말뼈
190	거동	擧動	행동, 거동
191	거래선	去來先	거래처
192	거류	居留	거류(居留)
193	거마비	車馬費	교통비
194	거수	擧手	거수
195	거수하다	擧手	손을 들다
196	거액	巨額	거액
197	거즈	gauze	거즈
198	거짓 그 밖의		거짓이나 그 밖의
199	거치기간	据置期間	거치∨기간
200	거택	居宅	집
201	건당	件當	건당, 한 건에
202	건립	建立	건립
203	건정	鍵錠	잠금장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04	건조	乾燥	건조
205	건폐율	建蔽率	건폐율
206	검량	檢量	수량 재기, 무게 달기, 검량(檢量)
207	검사역	檢査役	검사원, 검사인
208	검시	檢屍	검시(檢屍)
209	검식	檢食	음식∨검사, 검식(檢食)
210	검안	檢案	검안(檢案)
211	검증	檢證	검증
212	검체	檢體	검사∨대상물
213	게기	揭記	열거
214	게기하다	揭記	열거하다, 규정하다
215	게시	揭示	게시
216	게시하다	揭示	게시하다
217	게시판	揭示板	게시판
218	게양	揭揚	게양
219	게양하다	揭揚	달다, 게양하다
220	게을리하다		게을리하다(○), 게을리∨하다(x)
221	게이지	gauge	게이지
222	게이트	gate	게이트
223	게임	game	게임
224	게재하다	揭載	게재하다, 싣다
225	격납	格納	격납
226	격리	隔離	격리
227	격무	激務	격무
228	격벽	隔壁	칸막이벽, 격벽(隔壁)
229	격일	隔日	격일, 하루걸러
230	견갑골	肩胛骨	어깨뼈
231	견본	見本	견본, 본보기
232	견습	見習	수습
233	견양	見樣	서식, 본보기, 견본 양식
234	견인력	牽引力	견인력
235	견장	肩章	견장
236	견적	見積	견적
237	견적서	見積書	견적서
238	견지	見地	관점
239	견품	見品	견본, 본보기
240	견학	見學	견학
241	결궤하다	決潰	무너지게 하다, 터져 무너지게 하다
242	결말	結末	결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43	결문	結文	맺음말
244	결빙	結氷	결빙, 얼어붙음
245	결석계	缺席屆	결석∨신고, 결석∨신고서
246	결속	結束	결속
247	결속하다	結束	묶다
248	결손	缺損	결손
249	결손되다	缺損	모자라다
250	결원이 있는 때에는	缺員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51	결핍	缺乏	부족, 모자람, 결핍
252	결함	缺陷	잘못, 모자람, 흠, 결함
253	겸무하다	兼務	업무를 겸하다
254	겸보	兼補	겸해∨맡김, 겸해∨맡음, 겸임
255	겸유	兼有	동시∨소유
256	경간	徑間	(기둥과) 기둥∨사이
257	경감	輕減	경감
258	경감하다	輕減	(처분을) 경감하다, (기간을, 금액을) 줄이다
259	경개	更改	채무 변경
260	경계책	境界柵	경계∨장치, 울타리
261	경고	警告	경고
262	경골	頸骨	목뼈
263	경골	脛骨	정강이뼈
264	경과	經過	경과
265	경과규정, 경과조치	經過規定 經過措置	경과조치
266	경과년수	經過年數	경과연수
267	경과하다	經過	지나다, [부칙 시행일에서] 경과하다
268	경관	景觀	경치, 경관
269	경광등	警光燈	경광등
270	경도	硬度	경도(硬度), 굳기
271	경도	傾度	경사도, 기울기
272	경도하다	傾倒	(재산을) 탕진하다
273	경락	競落	경락(競落)
274	경료된	經了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료된, 설정된
275	경미하다	輕微	경미하다
276	경봉	警棒	경찰봉
277	경사	傾斜	기울기, 경사
278	경수	硬水	센물
279	경시하다	輕視	경시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80	경악	驚愕	경악, 놀람
281	경우, 때		* [이해 편]에 설명 있음
282	경운	耕耘	땅갈이, 갈이
283	경유	經由	경유
284	경유하다	經由	거치다, 경유하다
285	경이하다	輕易	가볍다, 쉽다
286	경정	更正	경정(更正)
287	경정결정하다	更正決定	경정∨결정하다
288	경정하다	更正	경정하다
289	경중	輕重	경중
290	경질하다	更迭	바꾸다, 변경하다, 경질하다
291	경토	耕土	경토(耕土)
292	경품	景品	경품
293	경하다	輕	가볍다, 약하다
294	경하다	經	거치다
295	경하시	傾下時	기울∨때
296	경합	競合	경합(競合)
297	경합하다	競合	경합(競合)하다, 경쟁하다, 맞서 겨루다
298	경화	硬化	단단하게 됨, 굳어짐, 경화(硬化)
299	계고	戒告	계고(戒告)
300	계고하다	戒告	계고(戒告)하다
301	계구	戒具	보호∨기구
302	계금	契金	[금융회사에서] 계금
303	계기	契機	계기
304	계기	計器	계기(計器)
305	계도하다	啓導	지도하다
306	계류삭	繫留索	배∨매는∨밧줄
307	계류하다	繫留	(배를) 매어 두다, (배를) 붙들어 매다, 계류하다
308	계리	計理	회계처리
309	계리하다	計理	회계처리하다, 처리하다
310	계박하다	繫泊	계류(하여) 정박하다, 배를 매어 두다
311	계산식 관련 문장		A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312	계상	計上	반영, 계상
313	계상하다	計上	(예산을) 계상하다, (계산하여) 넣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14	계선설비	繫船設備	배∨매는∨설비, 선박∨계류∨설비
315	계선하다	繫船	계선(繫船)하다, 배를 매다
316	계속	係屬	계속(繫屬/係屬), 소송계속((訴訟繫屬), (소송) 제기
317	계인	契印	계인(契印)
318	계출	屈出	신고, 제출
319	계표	界標	경계표지
320	계표	計票	표∨세기, 계표(計票)
321	계호	戒護	경계∨보호, 경계∨감호, 교도소∨보안∨유지
322	고가	高架	고가(高架)
323	고가	高價	높은 가격, 고가, 고가(高價)
324	고가로	高價	비싼 값으로
1	고가의	高架	지상 위, 높은 곳에 설치하는, 고가(高架)의
325	고갈	枯渴	마름, 고갈
326	고객	顧客	고객
327	고관절	股關節	엉덩관절, 고관절(股關節)
328	고무하다	鼓舞	북돋우다, 고무하다
329	고분	古墳	고분
330	고사	枯死	말라 죽음, 고사
331	고서화	古書畵	고서화(古書畵)
332	고성방가	高聲放歌	고성방가
333	고수부지	高水敷地	둔치
334	고시	告示	고시
335	고아	孤兒	고아
336	고아원	孤兒院	보육원
337	고원	高原	높은 지대, 고원
338	고저	高低	높고 낮음, 높낮이, 고저
339	고저차	高低差	고저차, 높낮이∨차
340	고조	高潮	고조(高潮)
341	고지	告知	고지, 고지(告知)
342	고지하다	告知	고지하다, 고지(告知)하다, 알리다
343	고하다	告	알리다
344	고지대	高地帶	고지대, 높은 지대
345	고지방송	告知放送	안내∨방송
346	고지벽보	告知壁報	고지∨벽보
347	고지의무	告知義務	고지의무
348	고충	苦衷	고충
349	고취	鼓吹	고취, 북돋움, 고무
350	고형물	固形物	고형물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51	곡각지점	曲角地點	굽은 지점, 구부러진 지점
352	곡기비행	曲技飛行	곡예비행
353	곡류적재	穀類積載	곡류∨적재
354	곡물	穀物	곡물
355	곡분	穀粉	곡물∨가루
356	곡선형	曲線形	곡선형
357	곡종	穀種	곡물∨종류
358	곡직	曲直	곡직(曲直)
359	곤로		풍로, 화로
360	곤색	곤色	감색
361	골조	骨組	뼈대, 골조
362	공(公)의	公	공공의
363	공과	公課	공과
364	공구	工區	공구, 공사구역
365	공란	空欄	빈칸
366	공람	供覽	열람
367	공로	公路	공공도로
368	공류	公流	공공유수(公共流水)
369	공률	工率	공정률
370	공무소	公務所	공공기관, 관공서, 관계∨행정기관
371	공법	工法	공사∨방법, 공법, 공법(工法)
372	공부	公簿	공적 장부, 공문서와 장부, 공문서∨묶음, 공부(公簿)
373	공석	公席	공석(公席), 공적인 자리
374	공석	空席	공석(空席), 빈자리
375	공설	公設	공설, 공설(公設)
376	공술	供述	진술
377	공술자	供述者	진술자
378	공시	公示	공시, 공시(公示)
379	공시하다	公示	공시하다, 공시(公示)하다, 공개적으로 게시하다
380	공안	公安	공공의 안녕
381	공여하다	供與	제공하다
382	공연히	公然	공공연하게
383	공용	共用	공용, 공용(共用)
384	공임	工賃	삯
385	공작물	工作物	인공구조물
386	공장도가격	工場渡價格	공장도가격
387	공전	公典	규범
388	공제	控除	뺌, 공제
389	공제하다	控除	빼다, 공제하다
390	공종	工種	공사∨종류
391	공중	公衆	공중, (일반)사람들, 일반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92	공중선주	空中線柱	안테나, 안테나 기둥
393	공지	空地	빈터, 공터
394	공차	空車	빈차
395	공판정	公判廷	공판법정
396	공하다	供	제공하다, 쓰이다, 주다, 사용되다 ['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함]
397	과금	課金	요금, 요금∨부과
398	과납	過納	더∨냄, 과납
399	과년도	過年度	전년도, 지난해
400	과다	過多	너무 많음, 과다
401	과다하다	過多	지나치게 많다, 너무 많다, 과다하다
402	과당경쟁	過當競爭	과당경쟁
403	과당하다	過當	(정도가) 지나치다
404	과대하다	過大	과대하다
405	과도하다	過度	지나치다
406	과세	課稅	과세
407	과세하다	課稅	세금을 매기다, 과세하다
408	과오급	過誤給	과오급(過誤給)
409	과오납	過誤納	과오납, 과오납(過誤納)
410	과원	過員	정원∨초과, 인원∨초과
411	과원이 되다	過員	정원이 초과되다, 인원이 초과되다, 정원을 넘다, 인원을 넘다
412	과잉	過剩	(도가) 지나침, (수효가) 남아돎, 초과, 과잉
413	과징하다	課徵	과징하다, 징수하다, 부과 징수하다
414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415	과태료처분		과태료처분
416	과하다	課する	(조세, 과태료를) 부과하다
417	과하다 (벌금을 과하다)	科する	~에게는 형벌을 과(科)하다, ~에게는 벌금을 과(科)하다, ~은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418	관개	灌漑	관개, 물대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419	관계 기관		관계∨기관
420	관계 법령, 관련 법령		관계∨법령, 관련∨법령
421	관계없다, 관계있다		관계없다(○), 관계있다(○), 관계∨없다(×), 관계∨있다(×)
422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423	관급	官給	관급(官給)
424	관급하다	官給	(관공서에서) 지급하다, 주다
425	관련 기관		관련 기관
426	관련 시설		∨관련∨시설 (○○∨관련∨시설)
427	관리환	管理換	관리환(管理換)
428	관망	觀望	관망
429	관망하다	觀望	바라보다, 지켜보다
430	관사	官舍	관사, 관사(官舍)
431	관수	管守	보관, 간수(看守)
432	관용	官用	관용(官用)
433	관장하다	管掌	맡아 처리하다, 맡다, 관장하다
434	관저	官邸	관저, 관용∨저택
435	관제엽서	官製	우편엽서
436	관하여, 대하여		에, 에게, 은, 는, 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른 말로 고치고, '관하여, 대하여'를 남용하지 않는다]
437	관할○○		① 관할∨○○(관할∨지방자치단체) ② 관할○○(관할구역) [국어사전에 한 단어로 등록된 것만 '관할'과 그 다음 단어를 붙여 쓴다]
438	광견	狂犬	미친개, 광견
439	광도	光度	광도, 밝기
440	광부	鑛夫	광부
441	광재	鑛滓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
442	괘도	掛圖	괘도
443	괴경	塊莖	덩이줄기
444	괴근	塊根	덩이뿌리
445	교란하다	攪亂	교란하다, 어지럽히다
446	교량	橋梁	다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447	교반	攪拌	교반(攪拌), 휘저어 섞음
448	교부	交付	발급, 지급(금전의 경우), 교부
449	교부하다	交付	내주다, 주다 (돈을) 지급하다, 내주다, 주다, (증명서를) 내주다, 발급하다, (교부금, 교부세 등을) 교부하다, [활용] 서로 교부하다 → 서로 주고받다
450	교사	校舍	학교∨건물
451	교사하다	敎唆	교사하다, 교사(敎唆)하다
452	교점	交點	교차점
453	교정하다	矯正	교정하다
454	교체	交替	바꿈, 교체
455	교체하다	交替	바꾸다, 교체하다
456	교회	敎誨	교회(敎誨), 문맥에 맞게 다른 쉬운 말로 순화한다.
457	구거	溝渠	도랑
458	구경	口徑	지름, 구경, 총 구경
459	구금하다	拘禁	구금하다
460	구독	購讀	구매, 사서∨읽음, 구독
461	구독하다	購讀	사다, 사서∨읽다, 구독하다
462	구두로	口頭	말로, 구두로
463	구류	拘留	구류
464	구릉	丘陵	언덕
465	구매하다	購買	구매하다, 사다
466	구명동의	救命胴衣	구명조끼
467	구명하다	究明	밝히다, 밝혀내다, 알아내다
468	구문	歐文	영문자, 유럽 문자
469	구배	句配	기울기, 경사, 비탈, 오르막
470	구보	驅步	달리기
471	구비	具備	갖춤, 구비
472	구비하다	具備	갖춰 놓다, 갖춰 두다
473	구상, 구상권	求償	구상(求償) * 구상권(求償權)
474	구술하다	口述	말로 하다, 구술하다
475	구인	拘引	구인
476	구인하다	拘引	구인하다
477	구입	購入	사들임, 사들이기, 구입
478	구제	驅除	없애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479	구제하다	驅除	없애다
480	구조내력	構造耐力	구조내력(構造耐力)
481	구조부환	救助浮丸	구명튜브, 구조부환(救助浮丸)
482	구좌	口座	계좌
483	구중청량제	口中	구강 청량제
484	구축하다	構築	마련하다, 갖추다, 구축하다
2	(의견을) 구하여야		(의견을) 들어야
485	구형	球形	구형, 공 모양
486	구획하다	區劃	구획하다, (경계를) 가르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487	구휼	救恤	빈민∨구제, 구호
488	국	麴	누룩
489	국기	國基	국가의 근본, 국가의 근간, 국기
490	국부적인	局部的	부분적인
491	국외	國外	국외
492	국·공립		국공립
493	국·공립 학교		국공립학교, 국립·공립학교
494	국·공·사립학교		국립·공립·사립학교
495	국·공유지		국유지·공유지
496	국제반신우표권	國際返信郵票券	국제회신우표권
497	굴곡부	屈曲部	굽은 부분, 꺾인 부분, 굴곡부
498	굴삭기	掘削機	굴착기
499	굴신	屈伸	굽히고 펴기, 굴신(屈伸)
500	굴진	掘進	파나감, 파 들어감, 굴진(掘進)
501	굴착	掘鑿	(땅을) 팜, (굴을) 뚫음, 굴착
502	굴착하다	掘鑿	(땅을) 파다, (굴을) 뚫다
503	굴취하다	掘取	캐내다, 파내다, 굴취하다
504	굴토	掘土	땅파기
505	궁박	窮迫	절박한 사정
506	궁박한	窮迫	절박한 사정이 있는
507	궐석	闕席	결석
508	궐원	闕員	결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509	궐원이 있는 때에는	闕員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510	궐위	闕位	궐위
511	궐위되다	闕位	궐위되다
512	궐하다	闕	빠지다, 비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513	궤조	軌條	철로, 레일
514	귀감	龜鑑	본보기, 귀감
515	귀석	貴石	귀석(貴石)
516	귀속되다	歸屬	귀속되다
517	귀책사유	歸責事由	귀책사유
518	귀환	歸還	돌아옴, 귀환
519	귀휴	歸休	일시∨휴가
520	규명	糾明	규명, (사실을) 밝힘
521	규반	畦畔	밭두둑
522	규정	規定	∨규정 *양벌규정
523	규정에 의하여	規定	에 따라, 에 따른 (제○조에 따라, 제○조에 따른)
524	규정에 의한	規定	에 따른, 에 따라 (제○조에 따른, 제○조에 따라)
525	규정한 (~에 규정한)	規定	규정한 (~에서 규정한)
526	균분	均分	균등∨배분
527	균분하다	均分	똑같이 나누다, 균등 배분하다, 동일하게 나누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다
528	균일하다	均一	균일하다, 고르다
529	그라프	graph	그래프, 도표
530	그람	gram	그램
531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문맥에 맞게 해당 내용을 풀어 쓴다. ②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 ③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별표, 별지서식에서] 그렇지 않다
532	그룹		그룹, 모둠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533	그린색	green	녹색, 초록색
534	그밖에, 그밖의		그∨밖에, 그∨밖의
535	근린	近隣	이웃, 근린
536	근속하다	勤續	계속 근무하다, 근속하다
537	근접하다	近接	가까이 닿다, 가깝다, 근접하다
538	근주	根柱	근주(根柱)
539	금렵구, 금렵구역	禁獵區	사냥금지구역
540	금색사	金色絲	금색실
541	금속차폐체	金屬遮蔽體	금속차단물체
542	금원	金員	금액, 금품
543	금제	禁制	금지
544	금제품	禁制品	금지품
545	금치	禁置	금치, 금치(禁置)
546	금품수수	金品授受	금품수수
547	금회	今回	이번
548	금후	今後	향후, 장래에
549	급경사	急傾斜	급경사
550	급부금	給付金	지급금
551	급속	急速	시급, 급히, 빨리, 몹시 빨리
552	급수	給水	물∨대기, 물∨공급, 급수
553	급시를 요하는	急施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시급히 필요한, 긴급한
554	급양	給養	급양(給養)
555	급유	給油	유류∨공급, 급유
556	급탄	給炭	연탄∨공급, 석탄∨공급, 급탄(給炭)
557	긍지	矜持	긍지
558	기	旣	이미, 기존에
559	기간 내에, 기간 이내에, 기간내에, 기간이내에	期限內	기간에, 기간에서, * [예외적으로 사용] 기간 내에
560	기간동안		기간에, 기간∨동안
561	기거	寄居	생활, 기거
562	기금의 운영, 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
563	기기	機器	기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564	기납	旣納	기납, 이미∨냄
565	기도	企圖	기도, 꾀함
566	기립	起立	기립, 일어섬
567	기립하다	起立	일어서다
568	기만	欺瞞	속임, 기만
569	기망	欺罔	속임
570	기반	基盤	기반
571	기산하다	起算	~부터 계산하다, 기산(起算)하다
572	기상시간	起床時間	기상∨시간
573	기선	基線	기준선
574	기설	旣設	이미 설정, 이미 만듦
575	기성고	旣成高	성과, 실적, ['돈'일 때] 기성액
576	기성의	旣成	기성, 기성의, 이루어진
577	기속	羈束	기속
578	기수의	旣遂	기수(旣遂)의
579	기승하다	騎乘	(말을) 타다
580	기아	棄兒	버려진 아이, 기아, 기아(棄兒)
581	기안	起案	기안
582	기어	gear	기어, 변속장치
583	기여하다	寄與	이바지하다, 기여하다
584	기예	技藝	기예
585	기왕	旣往	이미, 벌써, 그전, 이전
586	기왕증	旣往症	과거∨질병, 과거∨증세
587	기율	紀律	규율
588	기인	起因	원인, 까닭, 인하여, 기인
589	기일	期日	기일, 특정한 날이나 기간
590	기일	忌日	제삿날, 기일
591	기장	旗章	기장(旗章)
592	기장	記帳	장부∨기록
593	기장하다	記帳	(장부에) 적다, 써넣다, 기록하다, 기재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594	기재	記載	기재
595	기재하다	記載	쓰다, 적다, 적어∨넣다, 써넣다, (장부에, 대장에, 명부에) 기록하다, (전자문서에) 기재하다
596	기점	起點	출발점, 시작점, 기점
597	기착	寄着	기착, 들름
598	기채	起債	공채(公債)∨모집, 기채(起債)
599	기채지	起債地	공채(公債)∨모집∨장소, 기채지(起債地)
600	기타	其他	그∨밖의, 그∨밖에
601	기타 필요한 사항	其他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2	기탁	寄託	기탁
603	기탁하다	寄託	기탁하다, 부탁하여 ~에 맡기다
604	기포	氣泡	기포, 거품
605	기피하다 (회피하다)	忌避	꺼리다, 피하다, 기피하다
606	기하다	企する	도모하다, 꾀하다, 일으키다, ~에 따르다, ~를 바탕으로 하다
607	기하다	基	~에 따르다, ~를 바탕으로 하다
608	기한	基	근거한, 기초한, 바탕으로 한
609	기한 내	期限內	기한까지
610	기항지	寄港地	기항지(寄港地)
611	기형	奇形	기형
612	기화로	奇貨	이용하여, 핑계로
613	기히	旣	이미
614	긴급을 요할 때	緊急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 긴급한 경우
615	긴절히	緊切	절실히
616	끽연	喫煙	흡연

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617	나대지	裸垈地	나대지
618	나동연선	裸銅鉛線	노출된 동연선(銅鉛線), 민구리납줄
619	나맥	裸麥	쌀보리
620	나안시력	裸眼視力	맨눈∨시력
621	나충전부	裸充電部	노출된 충전부
622	나포하다	拿捕	붙잡다, 나포하다
623	낙도	落島	외딴섬, 낙도
624	낙뢰	落雷	벼락
625	낙반	落盤	낙반
626	낙부	諾否	승낙 여부
627	낙상	落傷	떨어져 다침, 낙상
628	낙수	落水	낙수
629	낙인	烙印	낙인
630	낙하물	落下物	떨어진(떨어지는) 물체, 낙하물
631	낙하하다	落下	떨어지다, 낙하하다
632	낙후	落後	뒤떨어짐
633	난굴	亂掘	함부로 팜, 마구 파냄, 난굴
634	난류	卵類	알∨종류
635	난백	卵白	알∨흰자, 알 흰자위
636	난분	卵粉	달걀가루, 난분(卵粉)
637	난시청	難視聽	시청이 어려움, 난시청
638	날인하다	捺印	도장(을) 찍다, 날인하다
639	날조	捏造	(사실처럼) 꾸밈, 지어냄, 날조
640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
641	납기	納期	납부기한, 납기
642	납기일	納期日	납부기한, 납품기한, 납품기일, 납기일
643	납부	納付	납부
644	납부하다	納付	내다, 납부하다
645	납입	納入	냄, 치름, 납입
646	낭비하다	浪費	낭비하다
647	낭송하다	朗誦	낭송하다
648	내	內	∨내, ∨안
649	내경	內徑	안지름
650	내관	內管	내관(內管)
651	내력	耐力	내력(耐力)
652	내력시험	耐力試驗	내력시험(耐力試驗)
653	내륜	內輪	안쪽∨바퀴, 안쪽∨둘레
654	내마모성	耐磨耗性	내마모성
655	내방	來訪	찾아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656	내벽	內壁	안쪽∨벽
657	내부	內部	내부
658	내수성	耐水性	내수성, 내수성(耐水性)
659	내수용	內需用	국내∨소비용, 내수용
660	내식가공	耐蝕加工	부식∨방지∨가공
661	내식성	耐蝕性	내부식성(耐腐蝕性)
662	내신	內申	내부∨보고
663	내역	內譯	(비용)명세, (사업)내용, 구체적인 내용,
664	내역서	內譯書	명세서
665	내왕하다	來往	오가다
666	내용년수	耐用年數	내용연수(耐用年數), 사용∨가능∨햇수
667	내유성	耐油性	내유성(耐油性)
668	내지	乃至	~부터 ~까지의 규정, ~부터 ~까지, ~∨이상 ~∨이하
669	내진	耐塵	내진(耐塵)
670	내진	耐震	내진(耐震)
671	내측	內側	안쪽
672	내화성	耐火性	내화성(耐火性)
673	냉각	冷却	냉각
674	냉동용 쇼케이스	show case	냉동∨진열상자, 냉동용∨진열상자
675	너트	nut	너트, 암나사
676	네온사인	neon sign	네온사인
677	년월일	年月日	연월일 * 제조연월일
678	노견	路肩	갓길, 길어깨
679	노내	爐內	연소실 내부
680	노면	路面	노면
681	노목	老木	노목(老木)
682	노변	路邊	도로변, 길가
683	노상	路上	길, 노상
684	노역	勞役	노역
685	노유자	老幼者	노인과 어린이, 노유자
686	노임	勞賃	품삯, 임금
687	노정	路程	노정
688	노출하다	露出	드러내다, 노출하다
689	노트	note	공책, 노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690	노폭	路幅	길 폭, 길 너비
691	노화	老化	노화
692	노후시설	老朽	노후시설
693	노후하다	老朽	낡아서 못쓰게 되다, 낡다
694	녹등	綠燈	녹색 등불
695	녹비	綠肥	풋거름
696	농로	農路	농로, 논밭길
697	농막	農幕	농막
698	농무기	濃霧期	안개가 많은 철, 안개철
699	농번기	農繁期	농번기
700	농아자	聾啞者	청각∨및∨언어∨장애인, 청각∨또는∨언어∨장애인
701	농자	聾者	청각장애인
702	농지조성	農地造成	농지조성
703	뇌격	雷擊	어뢰 공격
704	뇨	尿	오줌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705	누광	漏光	새는 빛, 누광(漏光)
706	누광되다	漏光	빛이 새다
707	누락	漏落	누락
708	누락되다, 누락하다	漏落	빠뜨리다, 빠지다
709	누설	漏泄	누설
710	누설하다, 누설되다	漏泄	누설하다, 누설되다
711	누수	漏水	누수, 물이 샘
712	누출	漏出	누출
713	누출하다	漏出	새다, 새어 나가다
714	늑골	肋骨	갈비뼈
715	로부터 (~날로부터, ~일로부터)		부터(날부터, 일부터, ~한 날부터)
716	2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		둘 이상(○), 2 이상(x) ['단위명사'가 없으면 숫자를 한글로만 쓴다]

ㄷ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717	다과	多寡	많고 적음
718	다년생	多年生	여러해살이, 다년생
719	다대한	多大	큰, 많은
720	다류	茶類	차∨종류
721	다방	茶房	찻집
722	다수인	多數人	여럿, 여러 명
723	다액	多額	많은 액수, 많은 금액, 법정형의 상한
724	다음해		다음∨해
725	다중	多衆	다중, 여러, 많은
726	다층	多層	여러 층
727	단독	單獨	혼자, 혼자서, 홀로, 단독
728	단말	端末	단말
729	단미	斷尾	꼬리 자름, 꼬리 자르기
730	단변	短邊	짧은 변
731	단부호	短符號	짧은 신호
732	단서	但書	∨단서
733	단성	短聲	짧은소리
734	단수	端數	끝수, 우수리, 거스름돈
735	단수하다	斷水	물 대기를 중단하다, 물 공급을 중단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736	단음	短音	짧은소리, 단음
737	단정	短艇	작은 배
738	단축	短縮	줄임, 단축
739	단축하다	短縮	줄이다
740	단화	短靴	구두
741	달성하다	達成	이루다, 이룩하다, 달성하다
742	담수	淡水	민물
743	담수어	淡水魚	민물고기
744	담합	談合	담합
745	답	畓	논
746	답사	踏査	답사
747	답신	答申	응답
748	답신하다	答申	응답하다
749	답작	畓作	논농사
750	당	當	~당 (시간당, 마리당, 40명당)
751	당도	糖度	당의 정도, 단맛 정도, 달기, 당도
752	당면	當面	닥침, 당면
753	당부	當否	옳고 그름, 마땅함과 그렇지 않음, 당부(當否)
754	당월	當月	그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755	당일	當日	그날
756	당초	當初	당초, 맨 처음, 애초, 이전에, 원래
757	당해	當該	해당, 그 ['그'는 '그'가 지시하는 바가 문장에서 명확히 드러날 때에 사용]
758	대	垈	대(垈)
759	대기실	待機室	대기실
760	대기하다	待機	기다리다
761	대납	代納	대신 냄, 대신 납부
762	대동하고	帶同	더불어, 함께, 데리고
763	대동하다	帶同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764	대두	大豆	콩
765	대두유	大豆油	콩기름
766	대로	大路	큰길, 한길
767	대료	代料	대금, 값
768	대마	大麻	삼
769	대맥	大麥	보리, 겉보리
770	대목	臺木	접본, 대목(臺木)
771	대무	代務	대리∨근무
772	대별하다	大別	크게 나누다
773	대부하다	貸付	빌려주다, 대출하다, 대여하다, 대부하다주)[36]
774	대불금	代拂金	대신∨지급금
775	대비	對備	대비
776	대비	對比	대비
777	대사하다	對査	대조∨확인하다, 대조∨조사하다, 대조하여 조사하다
778	대상	代償	대상(代償)
779	대서사	代書士	법무사, 행정사
780	대서하다	代書	대신 쓰다
781	대선하다	貸船	배를 빌리다
782	대소	大小	크고∨작음, 크기
783	대안	對岸	건너편, 건너편 언덕
784	대여	貸與	빌려줌, 대여
785	대여하다	貸與	빌려주다, 대여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786	대오	隊伍	대열, 대오
787	대용하다	代用	대용하다
788	대위	代位	대위(O), 대신(X)
789	대응하다	對應	맞추다, 대응하다
790	대전	代錢	대금, 값, 가격, 돈
791	대좌하다	對坐	마주∨앉다
792	대주	貸主	빌려준 사람, 대주(貸主)
793	대지	垈地	대지
794	대집행	代執行	대집행(代執行)
795	대체	代替	대체
796	대체하다	代替	바꾸다
797	대출	貸出	대출
798	대출하다	貸出	빌려주다, 대출하다
799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800	대폭	大幅	많이, 크게, 넓게
801	대하	貸下	빌려줌, 대여
802	대하금	貸下金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정부로부터의) 대출금
803	대하여		에게, 대하여
804	대하여는		에게는, 대해서는
805	대하여는 (예: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은, ~는(정보는)
806	대합실	待合室	대기실
807	대향하고	對向	마주∨보고
808	댄서	dancer	무용가, 춤추는 사람
809	댐	dam	댐
810	덤핑	dumping	덤핑
811	데		① ~데: 갔는데 ② ∨데: 가는∨데, 가는∨데에
812	데생	dessin	데생(○), 뎃상(×)
813	도검	刀劍	칼
814	도과	徒過	지남, (기간을) 넘김
815	도과하다	徒過	지나다, (기간을) 넘기다
816	도괴	倒壞	무너짐, 무너뜨림

36)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대부', '양여'를 그대로 쓰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양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대부', '양여'의 표현을 사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817	도교	渡橋	다리
818	도구	道具	도구
819	도기	陶器	도기
820	도달일	到達日	도달한 날짜
821	도래	到來	이름, 도래(到來)
822	도래하다	到來	이르다
823	도료	塗料	칠, 칠감, 도료
824	도말하다	塗抹	지워 없애다
825	도메인	domain	도메인
826	도모	圖謀	꾀함, 도모
827	도박	賭博	노름, 도박
828	도벌	盜伐	몰래 베기, 도벌(盜伐)
829	도·남벌, 도벌·남벌	盜伐·濫伐	도벌·남벌, 도벌(盜伐)·남벌(濫伐)
830	도복목	倒伏木	쓰러진 나무
831	도비	道費	도의 경비, 도비(道費)
832	도색하다	塗色	색칠하다, 칠하다
833	도서	島嶼	섬
834	도선	渡船	나룻배
835	도선장	渡船場	나루터
836	도선	導船	수로 안내
837	도수	導水	물을 끌어들임, 물을 끌어올림
838	도수로	導水路	도수로(導水路)
839	도시	圖示	그림으로 보임, 그려∨보임
840	도어개폐장치	開閉裝置	문∨여닫이∨장치
841	도용하다	盜用	도용(盜用)하다, 훔쳐 쓰다, 몰래 쓰다
842	도입하다	導入	들여오다, 도입하다
843	도장	塗裝	색칠, 도색, 칠하기
844	도장하다	塗裝	칠하다
845	도정	搗精	방아∨찧기
846	도정공장	搗精工場	방앗간
847	도주하다	逃走	달아나다, 도주하다
848	도출하다	導出	도출하다, 이끌어 내다
849	도포하다	塗布	바르다, 도포하다
850	도품	盜品	도난∨물품
851	도화	圖畵	그림∨도면, 도화
852	독거수용	獨居	독방∨수용
853	독거실	獨居室	독방
854	독려하다	督勵	감독하며 격려하다, 독려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855	독림가	篤林家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856	돈지	豚脂	돼지기름, 돼지비계
857	돌제	突堤	돌출 제방
858	돌출	突出	튀어나옴, 돋움, 돌출
859	돌출부	突出部	튀어나온 부분, 내민 부분, 돋은 부분, 돌출부
860	돌핀	dolphin	배말뚝
861	동거하다	同居	동거하다
862	동급	同級	동급
863	동년	同年	같은 해, 그해
864	동등 이상의 학력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
865	동반	同伴	함께 옴, 함께 감
866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동목	同法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같은∨목
867	동복	冬服	겨울옷, 동복
868	동선	銅線	구리선
869	동순위자	同順位者	동순위자
870	동승자	同乘者	같이 탄 사람, 동승자
871	동안		∨동안
872	동의없이		동의∨없이
873	동일, 동일한	同一	같은, 동일한
874	동자	同字	같은 글자
875	동전	同前	위와 같음, 앞과 같음, 앞 조와 같음, [조 제목에서] 바로 앞 조의 제목으로 바꿔 씀
876	동정	動靜	동정
877	동종	同種	같은 종류
878	동체	胴體	몸통, 동체(胴體)
879	동태	動態	움직임, 동태
880	동행하다	同行	함께 가다, 같이 가다, 동행하다
881	두	頭	마리 (말 10두 → 말 10마리)
882	두개골	頭蓋骨	머리뼈
883	두건	頭巾	두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884	두류	豆類	콩∨종류, 콩류
885	두문	頭文	머리말
886	두발	頭髮	머리털, 머리, 머리카락
887	두부	頭部	머리, 머리부위
888	두수	頭數	마릿수
889	두절되다	杜絶	끊기다, 끊어지다
890	두창	痘瘡	마마, 천연두
891	드릴	drill	송곳, 기계송곳, 돌개송곳, 천공기, 드릴
892	득실	得失	얻고 잃음, 취득과 상실
893	득하다	得	받다, 얻다
894	등		∨등 [* 약칭할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음]
895	등광색	燈光色	등불색, 등불빛
896	등귀하다	騰貴	(가격이) 오르다
897	등기부등·초본		등기부∨등본·초본, 등기부∨등본과 등기부∨초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898	등재되다, 등재하다	登載	올리다, 올라 있다, 싣다, 실리다, 기록하여 올리다, 등재하다, 등재되다
899	등초하다	謄抄	복사하다
900	등화	燈火	불빛, 등불
901	등화관제	燈火管制	불빛가리기, 등화관제
902	디스켓	diskette	디스켓
903	디자인	design	디자인
904	때, 경우		* [이해 편]에 설명이 있음
905	또는		또는, 나, 이나, 거나, 쉼표, [문장 전체를 풀어 쓴다]
906	또는 (예: A·B 또는 C)		A, B 또는 C A나 B 또는 C A·B 또는 C A, B, C를 각 호를 만들어서 표시
907	데이타	data	자료, 데이터(○), 데이타(×)

ㄹ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908	라벨	label	라벨
909	라인	line	줄, 선, 라인
910	램프	lamp	등, 표시등
911	레미콘	remicon	레미콘
912	레벨경보시스템	system	수준경보장치, 수준경보체제
913	레인코트	raincoat	비옷, 우비
914	레일	rail	철로, 레일
915	레자	leather	인조가죽
916	레코드	record	음반, 기록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917	로서의(예: 주재자로서의 품위)		문맥에 맞게 고침 (예: 주재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
918	로타리식	rotary	회전식, 로터리식
919	로프	rope	줄, 밧줄, 로프(○) 로우프(×)
920	롤러	roller	롤러, 로울러(×)
921	룸쿨러	room cooler	냉방기
922	리	里	리, 동·리 [* 里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리'를 쓴다]

ㅁ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923	마대	麻袋	마대
924	마멸하다, 마멸되다	磨滅	닳다, 마멸하다, 닳아∨없어지다
925	마모	磨耗	닳아∨없어짐, 마모
926	마사지	massage	마사지(○), 맛사지(×)
927	마스크	mask	얼굴막이, 가리개, 입가리개, 탈, 마스크
928	마스트	mast	돛대
929	마포	麻布	삼베
930	마필	馬匹	말
931	만경	蔓莖	덩굴줄기
932	만기력부	滿期歷簿	형기∨종료∨기록부
933	만료	滿了	끝남, 마침, 만료
934	만료일	滿了日	끝나는 날, 만료일
935	만○○세		만∨○○세
936	만연	蔓延	번짐, 널리 퍼짐
937	만재하다	滿載	가득 싣다
938	만조	滿潮	만조
939	만찬	晩餐	저녁식사모임, 저녁식사, 만찬
940	말단	末端	끝, 하위
941	말라리아	malaria	말라리아
942	말미	末尾	끝∨부분, 끝, 뒤
943	말소하다	抹消	지워 없애다
944	말일	말일	[구체적인 날짜를 쓴다] 예: 1월 31일, 6월 30일 예외: 2월 말일
945	망구전개판	網具展開板	전개판(展開板), 그물∨전개판(展開板)
946	망실	亡失	잃음, 잃어버림
947	망실하다	亡失	잃다, 잃어버리다
948	매	枚	(사진 몇) 장
949	매 ~마다 (매 5년마다)		마다(5년마다)
950	매각하다	賣却	팔다, 매각하다
951	매기	每期	기마다, 매기, 매기(每期)
952	매뉴얼	manual	매뉴얼(○), 설명서, 안내서, 메뉴얼(×)
953	매도인	賣渡人	매도인, 파는 사람, 판 사람
954	매득금	賣得金	판매한 돈, 판매금액,
955	매립	埋立	메움, 매립
956	매매	賣買	매매
957	매몰	埋沒	파묻음
958	매몰되다	埋沒	파묻히다, 묻히다
959	매몰처리	埋沒處理	매몰처리
960	매설하다	埋設	파묻다, 매설하다
961	매수	枚數	장수, 통
962	매수인	買受人	매수인, 산 사람, 살 사람
963	매수하다	買收	사다, 매수(買收)하다
964	매수하다	買受	매수(買受)하다
965	매엽	每葉	면마다, 장마다, 쪽마다
966	매입하다	買入	사들이다, 매입하다
967	매장물	埋藏物	묻힌 물건, 매장물
968	매장하다	埋葬	묻다, 매장하다
969	매점	買占	사재기
970	매점매석	買占賣惜	매점매석
971	매점	賣店	가게
972	매직	每職	직급마다, 직종마다
973	매출	賣出	판매, 팔기, 매출
974	매회계연도	每	매∨회계연도
975	맥류	麥類	보리류, 보리
976	맥아	麥芽	엿기름
977	맹인, 맹자	盲人, 盲者	시각장애인
978	면류	麵類	국수류
979	면밀히	綿密	면밀히
980	면소	免訴	면소(免訴)
981	면식이 있다	面識	안면이 있다
982	면양	綿羊	면양
983	면적	面積	면적
984	면책되다	免責	면책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985	면탈하다	免脫	벗어나다
986	면화	棉花	목화
987	멸각하다	滅却	없애버리다
988	멸실	滅失	멸실
989	멸실하다	滅失	멸실하다
990	명기하다	明記	명확하게 적다, 명확하게 기록하다, 분명히 적다, 분명히 기록하다
991	명도	明渡	내줌, 내어줌, 넘겨줌, 비워줌
992	명령(지시)을 발하다	發	명령을 하다, 지시를 하다
993	명멸하다	明滅	깜박거리다
994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名目	어떤 명목으로도, 어떤 까닭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995	명세	明細	명세, 내용 * 내역(×)
996	명시하다	明示	분명하게 밝히다, 분명하게 적다, 구체적으로 밝히다
997	명의	名義	명의, 이름
998	명의개서	名義改書	명의∨변경
999	명찰	名札	이름표
1000	명칭	名稱	이름, 명칭
1001	명패	名牌	이름패, 명패
1002	명하다 (예: 영업의 정지를 명하다)	命ずる	처분을 하다, 명하다 * 명령하다 (×)
1003	모	母	어머니
1004	모돈	母豚	어미돼지
1005	모두진술	冒頭陳述	최초∨진술
1006	모발	毛髮	머리카락, 머리털
1007	모병하다	募兵	병사를 모집하다
1008	모사전송기	模寫電送機	팩스
1009	모색	毛色	털∨빛깔
1010	모선	母船	모선(母船)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011	모용	冒用	거짓으로 사용, 함부로 사용
1012	모재	母材	주요한 재료, 용접물
1013	모집자	募集者	모집인
1014	모터	motor	전동기, 발동기, 모터
1015	모피	毛皮	털가죽, 모피
1016	모필	毛筆	붓, 털붓
1017	모해	謀害	해침
1018	모해하다	謀害	모함하여 해치다
1019	모형	模型	모형
1020	모호하다	模糊	분명하지 아니하다
1021	목골	木骨	목재골조
1022	목과류	木果類	나무열매류, 나무과일류
1023	목근	木根	나무뿌리
1024	목도	牧道	목장도로, 목장길
1025	목도하다	目睹	목격하다, 보다
1026	목선	木船	나무배, 목선
1027	목전	目前	눈앞
1028	목차	目次	목차
1029	목책	木柵	나무∨울타리
1030	목초	木草	목초
1031	목탄	木炭	숯
1032	목피	木皮	나무껍질
1033	목함	木函	나무∨상자
1034	몰취	沒取	몰수, 몰취(沒取)
1035	몽리자	蒙利者	이용자, 이익을 얻는 사람
1036	묘목	苗木	묘목, 모종나무
1037	묘우	廟宇	묘우(廟宇)
1038	묘포	苗圃	묘목∨재배밭, 모밭
1039	무인	拇印	손도장, 지장
1040	무임	無賃	무료
1041	무주물	無主物	소유자∨없는∨물건, 임자∨없는∨물건
1042	무주의	無主	소유자∨없는, 임자∨없는
1043	무중신호	霧中	안개속∨신호, 무중신호(霧中信號)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044	무해	無害	해가 없는, 해롭지∨않은, 해롭지∨아니한
1045	무후가	無後家	대가 끊긴 집
1046	묵과	默過	(그대로) 넘겨버림
1047	묵서	墨書	검은 글씨
1048	묵선	墨線	검은 줄, 먹줄
1049	묵인하다	默認	(알고도) 넘겨버리다
1050	문란하다	紊亂	어지럽다, 문란하다
1051	문부	文簿	문서와 장부
1052	문책하다	問責	책임을 묻다, 책임 묻다, 문책하다
1053	문호 또는 장벽	門戶, 障壁	문 또는 담
1054	물납	物納	물품으로 냄, [약칭할 때] 물납
1055	물료	物料	물품과 재료, 재료, 원료
1056	물형	物形	물건의 생김새
1057	미간지	未墾地	개간하지 않은 땅
1058	미강	米糠	쌀겨
1059	미곡	米穀	쌀, 미곡
1060	미납	未納	(아직) 내지∨않음, 내지∨아니함, 내지∨못함, 미납
1061	미등	尾燈	꼬리등, 뒷등, 미등
1062	미만	未滿	∨미만
1063	미불	未拂	미지급
1064	미싱	machine	재봉틀
1065	미아	迷兒	미아
1066	미연에	未然	미리
1067	미완	未完	미완
1068	미제	未濟	처리되지 않은, 처리되지 아니한
1069	미처리된	未處理	처리되지 아니한, 처리되지 않은
1070	미치다, 미치지 아니 하다(영향 을 미치다)		주다, 주지 아니하다 (변동을 주다)
1071	미필	未畢	마치지∨아니함, 미필
1072	미흡하다	未洽	모자라다
1073	믹서	mixer	분쇄기, 혼합기
1074	밀집하다	密集	밀집하다
1075	밀폐하다	密閉	밀폐하다
1076	및		및, 와, 과, 쉼표, [문장 전체를 풀어 쓴다]
1077	및 (예: A·B 및 C)		A, B 및 C, A와 B 및 C, A·B 및 C,

ㅂ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078	바		① ~바: 이른바 ② ∨바: 정하는∨바에 따라 (의존명사일 때)
1079	바비큐	barbecue	통구이, 바비큐(○), 바베큐(×)
1080	바우처	voucher	(복지)이용권, (복지)상품권
1081	바이오정보	bio정보	생체정보
1082	바인더	binder	보관철, 서류 보관철, 서류 묶음, 묶음
1083	바자	bazar	바자
1084	박취	剝取	떼어냄
1085	박탈하다	剝奪	박탈하다
1086	반경	半徑	반지름
1087	반년납	半年納	6개월납
1088	반려하다	返戾	되돌려 보내다
1089	반맹	半盲	한쪽∨눈이 보이지 않음, 한쪽∨눈이 보이지 아니함, 부분∨시각장애
1090	반분	半分	반으로 나눔, 반분
1091	반소	反訴	맞소송
1092	반송	返送	돌려∨보냄, 되돌려∨보냄
1093	반월	半月	2분의 1개월
1094	반제하다	返濟	(돈을) 갚다, (돈을) 되갚다
1095	반출하다	搬出	실어내다, 내가다, 내어가다, 반출하다
1096	반포	頒布	반포, 배포
1097	반포하다	頒布	널리 알리다, 배포하다
1098	반하다	反する	어긋나다, 다르다
1099	반환하다	返還	반환하다, 돌려주다, 되돌려주다
1100	발광신호	發光信號	빛신호, 불빛신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101	발군	拔群	뛰어남, 빼어남
1102	발굴	發掘	발굴
1103	발굴하다	發掘	발굴하다
1104	발급	發給	발급
1105	발급하다	發給	발급하다
1106	발로	發露	드러남
1107	발매	發賣	팔기, 발매
1108	발매하다	發賣	팔다
1109	발문하다	發問	질문하다
1110	발병하다	發病	병나다
1111	발본	拔本	뿌리∨뽑음
1112	발부	發付	발급
1113	발송인	發送人,	보낸 사람, 보내는 사람
1114	발아하다	發芽	싹이 트다, 눈이 트다, 발아하다
1115	발주관서	發注官署	주문 관서
1116	발주하다	發注	주문하다
1117	발착	發着	출발과 도착
1118	발췌	拔萃	가려냄, 뽑아냄, 골라냄, 발췌
1119	발췌하다	拔萃	가려내다, 뽑아내다, 골라내다, 발췌하다
1120	발취	拔取	뽑아냄
1121	발코니	balcony	발코니
1122	발탁하다	拔擢	뽑다
1123	발하다	發	내다, 보내다, 시작하다, (명을) 내리다, 발송하다, 발표하다
1124	발행처	發行處	펴낸∨곳
1125	방기하다	放棄	내버리다, 내버려∨두다
1126	방독마스크	mask	방독면
1127	방류	放流	흘려보냄, 풀어놓음, 방류
1128	방류하다	放流	방류하다, 흘려보내다
1129	방목	放牧	놓아기름, 방목
1130	방비하다	防備	막을 준비를 하다, 방어하다
1131	방사제	防砂堤	모래막이 둑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132	방서시설	防鼠施設	쥐를 막는 시설
1133	방석커버	cover	방석∨씌우개, 방석덮개
1134	방수	防水	방수
1135	방수구	防水口	방수구(防水口)
1136	방습	防濕	습기∨방지, 방습
1137	방실	房室	방이나 집
1138	방열	防熱	방열, 방열(防熱)
1139	방열장치	防熱	방열장치
1140	방임하다	放任	버려두다, 내버려두다, 돌보지∨않다, 돌보지∨아니하다, 방임하다
1141	방제	防除	(병충해) 예방 및 구제
1142	방조제	防潮堤	방조제, 방조제(防潮堤)
1143	방조하다	幇助	돕다, 거들다, 방조하다
1144	방책	方策	방법, 방법과 계책
1145	방치하다	放置	버려두다, 내버려두다, 방치하다
1146	배기	排氣	공기∨배출
1147	배기구	排氣口	공기∨배출구
1148	배려하다	配慮	배려하다
1149	배면	背面	뒤쪽, 뒷면
1150	배석하다	陪席	배석하다
1151	배송	配送	배송
1152	배수	排水	물빼기, 배수
1153	배수관거	排水管渠	배수∨도랑
1154	배수구	排水溝	배수구
1155	배수로	排水路	배수로
1156	배양하다	培養	기르다, 배양하다
1157	배연	排煙	연기∨배출
1158	배유	配油	기름∨배급
1159	배제하다	排除	배제하다
1160	배출하다	排出	배출하다
1161	배출해역	排出海域	배출 해역
1162	배치되다	背馳	어긋나다, 배치되다
1163	배칭	batching	배칭(○), 뱃칭(×)
1164	배터리	battery	배터리(○), 밧데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165	배포하다	配布	배포하다
1166	백미	白米	쌀
1167	백사	白絲	흰∨실
1168	백색	白色	흰색
1169	벌채하다	伐採	나무를 베다
1170	범례	凡例	일러두기
1171	범선	帆船	돛단배
1172	범의	犯意	범죄∨의사
1173	범장	帆檣	돛대
1174	범정	犯情	범행∨당시∨상황(정황)
1175	범주	範疇	테두리, 범위, 범주
1176	범칙	犯則	범칙
1177	범포	帆布	돛의 천
1178	범하다	犯	범하다, 저지르다, 짓다
1179	법면	法面	비탈∨쪽, 비탈면, 경사면
1180	법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법령이 정하는		법에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1181	베어링	bearing	베어링
1182	베이지색	beige	베이지색
1183	벨	bell	벨
1184	벨트	belt	벨트
1185	벽지	僻地	외딴곳, 두메, 벽지
1186	변개하다	變改	변경하다
1187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된 경우
1188	변별	辨別	변별
1189	변별하다	辨別	분별하다, 변별하다
1190	변속기	變速機	변속기
1191	변식하다	辨識	분별하여 알다
1192	변제하다	辨濟	갚다, 물다, 변제하다
1193	변조	變造	변조
1194	변패	變敗	변하여 부패함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195	별		~별 (능력별, 성별, 월별, 직업별, 학년별)
1196	별갑	鼈甲	별갑, 자라∨등딱지
1197	별개	別個	다른, 별개의
1198	별단의	別段	다른, 특별한
1199	별도로	別途	따로, 별도로
1200	별책	別冊	별책
1201	별첨	別添	별도∨붙임
1202	별표 2		별표∨2
1203	병과하다	倂科	병과(倂科)하다
1204	병급하다	倂給	함께 지급하다, 같이 지급하다
1205	병기하다	倂記	함께 적다, 함께 쓰다, 병기(倂記)하다
1206	병사	病舍	병동
1207	병산	倂算	함께 계산, 같이 계산
1208	병서	竝書	나란히 쓰기, 함께 쓰기
1209	병용하다	倂用	같이 쓰다, 함께 쓰다, 더불어 쓰다, 병용하다
1210	병존	竝存	함께 존재, 병존
1211	병합처리하다	倂合	함께 처리하다, 병합처리하다
1212	병행	竝行	함께 함, 병행
1213	병행하다	竝行	함께 하다, 동시에 하다
1214	보결	補缺	결원∨보충
1215	보궐	補闕	보궐
1216	보균자	保菌者	병원균∨보유자
1217	보류하다	保留	보류하다
1218	보론	Boron	붕소
1219	보상	報償	보상, 보상(報償)
1220	보선	補選	보궐선거
1221	보선	保線	선로∨유지∨보수
1222	보유하다	保有	가지다, 갖다, 보유하다
1223	보장구	保障具	장애인∨보조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224	보전	補箋	보충지, 덧종이 (어음, 수표에) 덧댄∨종이, 덧붙인∨종이
1225	보전	保全	보전
1226	보전	補塡	보전(補塡)
1227	보전하다	補塡	채우다, (메워) 보충하다, 보전(補塡)하다
1228	보정하다	補正	보충하여 고치다, 바로잡다
1229	보지하다	保持	간직하다, 지니다
1230	보철	補綴	보충하여∨형태를∨바로잡음, 보철
3	보트	boat	보트(○), 보우트(×)
1231	보하다	補する	임명하다, 보하다
1232	보험수익자	保險受益者	보험∨수익자
1233	보험요율	保險料率	보험료율
1234	복개	覆蓋	덮개, 덮어씌우기
1235	복귀	復歸	복귀
1236	복명	復命	결과∨보고
1237	복명서	復命書	결과∨보고서
1238	복몰	覆沒	침몰, 가라∨앉음
1239	복본	複本	복본
1240	복부	腹部	배∨부분, 복부
1241	복토	覆土	흙∨덮기, 복토
1242	복포	覆布	포장천
1243	본가	本家	본가
1244	본건	本件	이 사건, 이 일, 이 건(件)
1245	본권	本權	이∨권리, 본래∨권리, 본권
1246	본드	bond	접착제, 본드
1247	본무	本務	맡은∨일, 주된∨일
1248	본범	本犯	본래의 범인
1249	본법	本法	이∨법
1250	본수	本數	포기∨수, 그루∨수
1251	본안	本案	이∨안, 본안
1252	본장	本章	이∨장
1253	본조	本條	이∨조
1254	본지	本旨	본뜻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255	볼트	bolt	수나사, 볼트
1256	봉서	封書	봉함편지
1257	봉쇄	封鎖	막음, 잠금, 봉쇄
1258	봉인	封印	봉함∨도장, 도장∨찍어∨봉합, 봉인
1259	봉입	封入	넣고 봉함, 봉투 넣기
1260	부	父	아버지
1261	부가	附加	덧붙임, 부가
1262	부가하다	附加	덧붙이다, 더하다, 부가하다
1263	부과하다	賦課	부과하다
1264	부극	負極	음극
1265	부기	附記	덧붙여∨적음, 부기
1266	부기하다	附記	덧붙여∨적다
1267	부녀	婦女	부녀자
1268	부대되다, 부대하다	附帶	부대하다
1269	부대시설	附帶施設	부대시설
1270	부동의하다	不同意	동의하지 않다, 동의하지 아니하다
1271	부락	部落	마을
1272	부란기	孵卵器	알∨까는∨기구
1273	부력	浮力	부력, 부력(浮力)
1274	부령이 정하는		부령으로 정하는
1275	부본	副本	복사본, 부본(副本)
1276	부불금	賦拂金	할부금
1277	부불방법	賦拂方法	지급∨방법
1278	부선	艀船	부선(艀船)
1279	부설하다	敷設	(깔아) 설치하다, 깔다, 시설하다, 부설하다
1280	부수하다	附隨	부수하다
1281	부실	不實	부실
1282	부양	浮揚	떠오름, 부양
1283	부여하다, 부여되다	附與	주다, 매기다
1284	부유물질	浮遊物質	떠다니는 물질
1285	부유하다	浮遊	떠다니다, 떠돌다
1286	부응하다	副應	맞추다, 따르다, 부응하다
1287	부의하다	附議	회의에 부치다
1288	부자	buzzer	버저(buzzer)
1289	부재	不在	(자리에) 있지∨아니함, 부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290	부적격자	不適格者	(자격에) 적합하지∨아니한∨사람, 부적격자
1291	부적당한	不適當	적당하지 아니한, 적당하지 않은
1292	부적합	不適合	부적합
1293	부적합하다	不適合	적합하지 아니하다, 적합하지∨않다, 맞지 아니하다, 맞지∨않다, 모자라다, 떨어지다
1294	부조	扶助	부조(扶助)
1295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하면, 부족한 경우에는
1296	부존	賦存	부존(賦存)
1297	부종하여	附從	따라붙어, 함께
1298	부지	敷地	터
1299	부지	不知	알지 못함, 모름
1300	부차적	副次的	부차적(副次的)
1301	부착하다	附着	붙이다, 부착하다
1302	부책	簿冊	문서, 장부
1303	부하다	附	붙이다, 첨부하다
1304	부하다	付	(회의에, 심판에) 부치다
1305	부합되다, 부합하다	附合	들어맞다, 일치하다, 부합하다
1306	부화	附和	(…를) 뒤따라
1307	부흥	復興	부흥
1308	분급하다	分給	나누어 지급하다
1309	분기하다	分岐	갈라지다, 나누어지다
1310	분납하다	分納	나눠∨내다, 나눠∨납부하다, 분할∨납부하다
1311	분담	分擔	분담(分擔), 나눠∨맡음
1312	분리대	分離帶	분리대
1313	분리선	分離線	분리선
1314	분리하다	分離	분리하다
1315	분립되다	分立	(의견이) 나뉘다, (의견이) 갈리다
1316	분만	分娩	분만(分娩)
1317	분말	粉末	가루
1318	분묘	墳墓	무덤
1319	분무기	噴霧器	분무기
1320	분배하다	分配	분배하다
1321	분사	噴射	분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322	분수	分收	분배, 수익분배
1323	분수하다	分收	(수익을) 나누다
1324	분식	粉食	분식
1325	분여	分與	분배
1326	분여하다	分與	분배하다, 나눠∨주다
1327	분장	分掌	분장
1328	분장하다	分掌	나눠∨맡다 * 업무분장
1329	분쟁	紛爭	분쟁
1330	분진	粉塵	분진, 먼지
1331	분철하다	分綴	나눠∨묶다, 나눠∨철하다
1332	분할	分割	분할
1333	분할하다	分割	나누다, 분할하다
1334	분할납부하다	分割納付	분할납부하다
1335	분합	分合	분합(分合), 나누고∨합침
1336	불	弗	달러
1337	불가결하다	不可缺	불가결하다,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1338	불가피하다	不可避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1339	불가항력	不可抗力	불가항력
1340	불구, 불구자	不具	신체장애인, 장애인
1341	불구하고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1342	불능	不能	불가능
1343	불능하다	不能	할 수 없다
1344	불도저	bulldozer	불도저(○), 불도우저(x)
1345	불명	不明	불명, 불명(不明)
1346	불명하다	不明	분명하지 아니하다, 알 수 없다, 명확하지 아니하다
1347	불문하고	不問	~에 상관없이, ~에 관계없이, 불문하고
1348	불복의 경우 불복이 있는 경우	不服のある	불복하는 경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349	불복종하다	不服從	불복종하다, 복종하지 아니하다, 따르지 아니하다
1350	불분명하다	不分明	불분명하다
1351	불비하다	不備	미비하다
1352	불산입	不算入	불산입
1353	불산입하다	不算入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불수리하다	不受理	수리하지 아니하다
1354	불시에	不時	불시에, 예고 없이
1355	불연성	不燃性	불연성(不燃性)
1356	불연재료	不燃材料	불연재료(不燃材料)
1357	불요	不要	불필요
1358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 불용액(不用額)
1359	불용품	不用品	불용품, 불용품(不用品)
1360	불응하다	不應	응하지 아니하다, 응하지 않다, 따르지 아니하다, 따르지 않다
1361	불의에, 불의의	不意	뜻하지 않은, 뜻하지 아니한, 불의에, 불의의
1362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1363	불입	拂入	납입, 냄
1364	불참하다	不參	불참하다, 참가하지 아니하다
1365	불하	拂下	매각
1366	불허하다	不許	불허하다, 허락하지 아니하다
1367	브레이크	brake	브레이크, 제동기
1368	비가연성	非可燃性	비가연성(非可燃性)
1369	비고	備考	비고
1370	비골	髀骨	넙다리뼈, 넓적다리뼈
1371	비골	鼻骨	코뼈
1372	비골	腓骨	종아리뼈
1373	비공	鼻孔	콧구멍
1374	비관리청	非管理廳	관리청이 아닌, 관리청이 아닌 자
1375	비기	誹譏	헐뜯기, 비방
1376	비닐하우스	vinyl house	비닐하우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377	비디오	video	비디오(○), 비데오(×)
1378	비래하다	飛來	날아오다
1379	비목	費目	비목, 비목(費目)
1380	비사	飛沙	비사(飛沙)
1381	비산	飛散	비산(飛散)
1382	비산하다	飛散	흩날리다
1383	비상점멸 표시등	非常點滅 標示燈	비상깜박이등
1384	비상한 경우	非常の 場合	비상시
1385	비송	非訟	비송(非訟)
1386	비옥	肥沃	비옥, 기름짐
1387	비위	非違	비위, 비위(非違)
1388	비장	脾臟	비장(脾臟: 지라), 지라
1389	비저	鼻疽	비저(鼻疽)
1390	비주거용	非住居用	비주거용, 주거용이 아닌
1391	비축하다	備蓄	비축하다
1392	비치하다	備置	갖춰 두다, 갖춰 놓다, 갖추어 두다, 갖추어 놓다, 준비하다
1393	비행	非行	비행
1394	비호하다	庇護	[부정적인 의미] 비호하다 [긍정적인 의미] 보호하다
1395	빈발하다	頻發	자주 발생하다
1396	빈번한	頻繁	잦은
1397	빙수	氷水	얼음물
1398	빙자하다	憑藉	빙자하다, (거짓으로) 핑계 삼다
1399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범위 이내로		범위에서 (○년의 범위에서)
1400	○분		100분의 ○ (이자율은 연 100분의 ○)
1401	에 부치다 (우체에 부치다)	付	으로 부치다 (우편으로 부치다)

ㅅ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402	사계	斯界	해당 분야, 해당 방면
1403	사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404	사구	砂丘	모래언덕
1405	사도	私道	사설 도로, 사도(私道)
1406	사력	砂礫	자갈
1407	사료	飼料	사료
1408	사료하다, 사료되다	思料	생각하다, 생각되다
1409	사류	絲類	실의 종류
1410	사리	砂利	자갈
1411	사면	斜面	비탈, 비탈면
1412	사멸시키다	死滅	죽여 없애다
1413	사물함	私物函	사물함
1414	사방지	砂防地	사방지(砂防地)
1415	사상에 이르게 하다	死傷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다
1416	사상자	死傷者	사상자(死傷者)
1417	사상하게 하다	死傷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다
1418	사상하다	死傷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다, 죽거나 다치다
1419	사생아	私生兒	혼외자녀
1420	사선	斜線	사선
1421	사송	使送	직접 배달
1422	사술	詐術	속임수
1423	사안	事案	사안
1424	사양	飼養	기르기, 사육
1425	사역집배구	使役集配	위탁 집배 구역
1426	사열	査閱	사열(査閱)
1427	사용되도록	使用	사용하도록
1428	사용하다	使用	사용하다
1429	사우	祠宇	사우(祠宇)
1430	사위	詐僞	거짓, 속임수
1431	사유	事由	사유
1432	사유	私有	사유(私有)
1433	사육	飼育	사육, 기르기
1434	사이렌	siren	사이렌(○), 싸이렌(×)
1435	사이즈 일람표	size	크기 일람표
1436	사인	sign	사인
1437	사인을 날인한 후	私印	개인 도장을 찍은 후
1438	사일로	silo	저장창고
1439	사장	沙場	모래사장
1440	사적	史蹟	사적
1441	사적	事蹟	사고∨흔적
1442	사전에	事前	미리, 사전에
1443	사정	査定	사정, 심사결정, 조사결정
1444	사지	四肢	사지
1445	사질토	砂質土	사질토(砂質土)
1446	사찰	寺刹	사찰
1447	사찰	査察	조사
1448	사체	死體	시체
1449	사칭하다	詐稱	사칭하다
1450	사택	舍宅	(임직원용) 주택
1451	사택	私宅	개인∨주택, 개인∨집, 집
1452	사행기구	射倖機具	사행∨기구
1453	사행심	射倖心	사행심
1454	사회성원	社會成員	사회 구성원
1455	삭감하다	削減	깎다, 줄이다
1456	삭도	索道	공중∨철선
1457	삭제하다	削除	삭제하다
1458	삭토	削土	흙깎기
1459	삭편	削片	(나무) 깎인 조각
1460	산간지	山間地	산간지역
1461	산란	産卵	산란
1462	산막	山幕	산막
1463	산식	算式	계산식
1464	산양	山羊	산양
1465	산양유	山羊乳	산양유, 산양유(山羊乳)
1466	산입	算入	산입, 산입(算入)
1467	산입하다	算入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포함하여 계산하다, [* 문맥에 맞게 문장, 어구, 어절을 다른 형태로 고칠 수도 있다]
1468	산입하지 아니한다	算入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버린다, 제외한다
1469	산재하다	散在	흩어져 있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470	산적하다	散積	산적하다, 산적(散積)하다
1471	산정	算定	계산해서 정함, 계산해서 결정함, 계산, 산출, 산정(算定)
1472	산채	山菜	산나물
1473	산책로	散策路	산책로
1474	산출하다	算出	계산해내다, (계산하여) 나오다, (계산하여) 정하다, (계산하여) 결정하다
1475	산회하다	散會	회의를 종료하다, 회의를 마치다
1476	살서제	殺鼠劑	쥐약
1477	살수	撒水	물 뿌리기, 물 뿌림
1478	살처분	殺處分	도살처분
1479	살포	撒布	살포
1480	삽수	揷穗	꺾꽂이모
1481	삽입하다	揷入	삽입하다, 넣다
1482	상 필요한		~을 위하여 필요한, ~상 필요한 [문맥에 맞게 고침]
1483	상각하다	償却	상각하다
1484	상간	相姦	간음, 성관계
1485	상계	相計	상계, 상계(相計)
1486	상관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상관∨있다(×)
1487	상근	常勤	정규, 상근(常勤)
1488	상기하다	詳記	상세하게 기록하다
1489	상당 (○급 상당)		∨상당 (○급∨상당)
1490	상당계급	相當階級	상당계급
1491	상당수	相當數	상당수, 많은 수
1492	상당한, 상당하는, 상당의	相當	① 상응하는, 타당한, 해당하는, 적절한, 적당한, 해당 조문의, 상당한 ② 많은
1493	상대방 있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있는
1494	상대방에 (도달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람, 동물]에게, [사물, 단체, 기관]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495	상대방이 확정한		상대방이 확정된
1496	상린자	相隣者	서로 이웃하는 자 (사람)
1497	상면	上面	윗면
1498	상무	常務	일상 업무, 상시적인 업무
1499	상박	上膊	위팔
1500	상반신	上半身	상반신
1501	상반하다, 상반되다	相反	어긋나다
1502	상방	上方	위쪽
1503	상변	上邊	윗변
1504	상병	傷病	상병(傷病), 다치거나 질병에 걸림, 다치거나 병듦,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림, 부상당하거나 병듦
1505	상병자	傷病者	다치거나∨병든∨사람, 부상당하거나∨병든∨ 사람
1506	상부여백	上部餘白	위쪽 여백
1507	상사	上司	상사
1508	상시	常時	평상시, 항상
1509	상시개호	常時介護	상시∨개호(介護), 상시∨간호
1510	상신	上申	'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고'와 같이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1511	상신하다	上申	'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고하다', '~하다'와 같이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1512	상실하다 상실되다	喪失	잃다,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상실되다
1513	상악골	上顎骨	위턱뼈
1514	상오	上午	오전
1515	상온	常溫	상온(常溫)
1516	상완	上腕	위팔
1517	상용	常用	상용(常用)
1518	상위	相違	서로 어긋남, 서로 다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519	상위 없음	相違	서로 다름이 없음, 서로 어긋남이 없음
1520	상위하다	相違	서로 어긋나다, 서로 다르다
1521	상응하다	相應	상응하다
1522	상이	傷痍	부상
1523	상이하다	相異	다르다, 서로 다르다
1524	상적하다	上積	포개어 쌓다
1525	상전	桑田	뽕밭
1526	상정하다	上程	(회의에) 부치다
1527	상주하다	常住	상주(常住)하다
1528	상지	上肢	팔
1529	상충하다	相衝	상충하다
1530	상치되다	相馳	(서로) 다르다, (서로) 어긋나다
1531	상호대차	相互貸借	상호대차
1532	상환하다	償還	상환(償還)하다, 갚다
1533	상환하다	相換	상환(相換)하다, 맞바꾸다
1534	상황	商況	시황(市況), 시장상황, 시장∨상황
1535	상회하다	上廻	넘다
1536	새로이		새로
1537	색도	色度	색도(色度)
1538	색상	色相	색상
1539	색인	索引	찾아보기
1540	색인목록	索引目錄	찾아보기∨목록
1541	색출	索出	색출
1542	생가	生家	생가(生家)
1543	생계비	生計費	생활비
1544	생육하다	生育	기르다, 키우다
1545	생존 중에	生存中	살아 있는 동안에
1546	생하다	生	생기다
1547	생환하다	生還	생환하다, 살아 돌아오다
1548	서간	書簡	편지, 우편
1549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가운뎃점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쓴다]
1550	서명· 날인하다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다, 서명날인하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다[가운뎃점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쓴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551	서미	書尾	(글의)끝, 끝∨부분
1552	서비스	service	서비스
1553	서식하다	棲息	살다, 서식하다 (* 서식지)
1554	서신	書信	편지
1555	서장	書狀	서류, 편지
1556	서족	鼠族	쥐
1557	서증	書證	서증(書證), 서면증거
1558	서체	書體	글씨체
1559	서한	書翰	편지
1560	서행	徐行	서행
1561	서행하다	徐行	천천히 운행하다
1562	서훈하다	敍勳	서훈(敍勳)하다, 훈장이나 포장(褒章)을 주다
1563	석명	釋明	석명(釋明)
1564	석명하다	釋明	밝히다, 밝혀내다
1565	석비	石碑	비석
1566	석유스토브	stove	석유난로
1567	석차	席次	성적∨순위
1568	석탄스토브	stove	석탄난로
1569	선거	船車	선박과 차량
1570	선관의무	善管義務	주의의무
1571	선교	船橋	선교(船橋)
1572	선금	先金	선금(先金)
1573	선급	先給	선급(先給), 우선∨지급
1574	선급금	先給金	선급금(先給金), 우선∨지급금
1575	선납	先納	선납, 선납(先納)
1576	선납보험료	先納 保險料	선납보험료
1577	선납일	先納日	선납일
1578	선납하다	先納	미리 내다
1579	선내	船內	선박 안
1580	선령	船齡	선박∨나이
1581	선로	船路	뱃길, 항로(航路)
1582	선류장	船留場	선류장(船留場), 계류장
1583	선명	船名	선박∨이름
1584	선미	船尾	선미(船尾)
1585	선박	船舶	선박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586	선박명	船舶名	선박∨이름
1587	선별	選別	선별
1588	선불	先拂	선지급
1589	선수	船首	선수(船首), 뱃머리
1590	선양하다	宣揚	명성을 떨치다, 권위를 떨치다
1591	선의로	善意	(그 사실을) 모르고서 * '선의'가 '모르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1592	선의인 경우에는		몰랐으면, 몰랐을 때에는 * '선의'가 '모르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1593	선임하다	選任	선임(選任)하다
1594	선저폐수	船底廢水	배∨밑바닥∨폐수
1595	선적항	船積港	선적항
1596	선주	船主	선주
1597	선주류	船舟類	선박 종류
1598	선차	船車	선박과 차량
1599	선착장	船着場	선착장
1600	선착지	船着地	선박∨도착지
1601	선창	船艙	부두
1602	선편	船便	배편
1603	선하증권	船荷證券	선화증권(船貨證券)
1604	선행하다	先行	선행하다, 선행(先行)하다
1605	선회장	旋回場	선회장(旋回場)
1606	선회하다	旋回	선회(旋回)하다, 빙빙 돌다
1607	설영인	設營人	설치운영자, 설치·운영자
1608	설해	雪害	눈∨피해, 설해(雪害)
1609	섬광등	閃光燈	섬광등, 섬광등(閃光燈)
1610	성벽	性癖	(못된, 나쁜) 성격
1611	성상	性狀	성질·상태, 성질과 상태
1612	성수기	盛需期	성수기
1613	성지	城地	성터
1614	성질을 변하지	性質	성질을 변하게 하지, 성질이 변하지
1615	성토	盛土	성토
1616	성행	性行	성격과 행동, 성품과 행실
1617	세력	歲曆	달력
1618	세목	稅目	세목
1619	세미나	seminar	세미나
1620	세수	世數	세대수(世代數)
1621	세인	世人	세상∨사람, 사람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622	세정	洗淨	세척
1623	세정도	洗淨度	세정도(洗淨度)
1624	세정수, 세정액	洗淨水	세척수, 세척액
1625	세척설비	洗滌設備	세척∨설비
1626	센서스	census	총조사, 전수조사
1627	셔터	shutter	셔터
1628	소	訴	소(訴)
1629	소가	訴價	소송목적의 값, 소송물 가액, 소송 가액
1630	소각	燒却	태우기, 소각
1631	소각설비	燒却設備	소각설비
1632	소각시설	燒却施設	소각시설
1633	소각처리	燒却處理	소각처리
1634	소각하다	燒却	소각하다
1635	소개	疏開	소개(疏開)
1636	소관상임위원회	所管	소관∨상임위원회
1637	소관청	所管廳	소관 기관, 소관 정부기관, 소관 행정청
1638	소구(권)	遡求	상환청구, 상환청구권
1639	소급하다	遡及	소급하다
1640	소등하다	消燈	(불을) 끄다
1641	소류지	小溜池	늪지
1642	소맥	小麥	밀
1643	소맥분	小麥粉	밀가루
1644	소멸	消滅	소멸
1645	소명요지	疏明要旨	[소송] 소명(疎明)∨요지, 소명 요지
1646	소명하다	疎明	[일반] 밝히다, 밝혀내다, [소송] 소명(疎明)하다, 소명하다, 밝혀내다
1647	소모	消耗	소모
1648	소분	小分	잘게 나눔, 작게 나눔
1649	소선	小船	소형 선박
1650	소속하에		∨소속으로
1651	소스	sauce	소스
1652	소신	所信	소신
1653	소실	燒失	소실(燒失), 불타 없어짐
1654	소아	小兒	유아·어린이, [병원진료과목] 소아
1655	소에 패소하다		소에서 패소하다
1656	소요되는	所要	드는, 필요한
1657	소요되다	所要	(비용이) 들다, (시간이) 걸리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658	소요비용	所要費用	필요한 비용, 드는 비용
1659	소요자금	所要資金	필요한 자금, 드는 자금
1660	소유자에 속한		소유자에게 속한, [사람, 동물]에게, [사물, 단체, 기관]에
1661	소음	騷音	소음
1662	소인	消印	소인(消印)
1663	소인미필의	消印未畢	소인이 없는
1664	소임	所任	임무
1665	소잠	掃蠶	누에떨기
1666	소장하다	所藏	소장하다, 간직하다
1667	소재	所在	있는 곳
1668	소재지	所在地	있는 곳, 소재지
1669	소정의	所定	정해진
1670	소제	掃除	청소
1671	소지	所持	소지
1672	소지하다	所持	가지다, 지니다, 소지하다
1673	소집	召集	소집
1674	소채	蔬菜	채소
1675	소택지	沼澤地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습지
1676	소폭	小幅	소폭
1677	소하물	小荷物	작은 짐, 잔짐
1678	소할	所轄	관할
1679	소행	素行	평소 행실
1680	소행	所行	[나쁜 뜻으로 주로 쓰임] 소행, 소행(所行)
1681	소형어선	小型漁船	소형∨어선
1682	소환장	召喚狀	출석요구서
1683	소훼하다	燒燬	(불로) 태우다, (불에) 태워∨없애다
1684	속구	屬具	(선박) 부속물
1685	속구목록	屬具目錄	(선박) 부속물∨목록
1686	속보	速報	속보
1687	속행	續行	계속함
1688	손괴	損壞	파손, 파손이나 붕괴
1689	손괴하다	損壞	파손하다
1690	손궤	損潰	무너짐
1691	손금	損金	손해액
1692	손모	損耗	손모(損耗)
1693	손상	損傷	손상
1694	손상하다	損傷	(물건을) 부수다, (명예, 품위를) 떨어뜨리다
1695	손실을 가하다		손실을 가하다, 손실을 입히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696	손해를 받다		손해를 입다
1697	송검	送檢	(검찰청에) 송치
1698	송기하다	送氣	공기를 보내다
1699	송달서	送達書	송달서
1700	송달하다	送達	송달하다
1701	송료	送料	우송료
1702	송부	送付	보냄, 송부, 발송
1703	송부하다	送付	보내다
1704	송수	送水	송수(送水)
1705	송·수신	送受信	송수신
1706	송증	送證	발송증서
1707	송하인	送荷人	송화인(送貨人), 짐∨부친∨사람, 화물∨발송인
1708	송환하다	送還	송환하다
1709	쇄골	鎖骨	빗장뼈, 쇄골
1710	쇄석	碎石	돌∨부수기
1711	쇄신하다	刷新	쇄신하다
1712	쇄정	鎖錠	잠금, 잠금장치를 함, 자물쇠로 채움
1713	쇼핑센터	shopping center	쇼핑센터(○), 쇼핑센타(x)
1714	수감	收監	수감
1715	수개, 수개의	數個	여러, 여러∨개, 여러∨개의
1716	수거	收去	수거
1717	수거인	收去人	수거인
1718	수거일자	收去日字	수거일
1719	수검	受檢	수검(受檢), 검사 받음
1720	수계하다	受繼	넘겨받다, 이어받다, 승계하다
1721	수괴	首魁	수괴(首魁)
1722	수교	修交	수교
1723	수교하다	修交	외교관계를 맺다
1724	수권	授權	수권(授權), 수권
1725	수근	樹根	나무뿌리
1726	수급	需給	수요·공급, 수요와 공급
1727	수급	收給	수입·지급, 수입과 지급
1728	수급	受給	수급(受給), 수급
1729	수난	水難	수난, 물난리
1730	수납	收納	수납
1731	수득	收得	이득금, 받는 이득
1732	수득하다	收得	(이득을) 받다, 거두어들이다
1733	수량	水量	물의 양
1734	수령	受領	수령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735	수령하다	受領	받다, 수령하다
1736	수로	水路	수로, 물길, 뱃길
1737	수뢰	受賂	수뢰
1738	수류	水流	물의 흐름
1739	수류지	水流地	수류지(水流地)
1740	수리	水利	수리(水利)
1741	수리	受理	[단순 접수일 때] 접수, [처리까지 할 때] 접수 처리, 수리(受理)
1742	수림지대	樹林地帶	숲∨지대
1743	수립하다	樹立	수립하다
1744	수매	數枚	여러∨장
1745	수매비축	收買備蓄	수매∨비축
1746	수매하다	收買	수매하다
1747	수면	睡眠	수면
1748	수배하다	受配	(배급을) 받다
1749	수봉	收捧	징수
1750	수불	受拂	출납, 받음과 치름
1751	수삭륜	垂索輪	밧줄받이장치, 밧줄받이(용) 바퀴
1752	수선	修繕	보수, 수리
1753	수세	水洗	수세(水洗), 물∨세척
1754	수세하다	水洗	물로 씻다
1755	수속	手續	절차
1756	수수	授受	주고∨받음
1757	수수	收受	받음, 거둬서 받음
1758	수수하다	授受	주거나∨받다
1759	수신	受信	수신
1760	수신하다	受信	받다
1761	수실	樹實	나무∨열매
1762	수심	水深	수심(水深), 수심
1763	수·출입	輸出入	수출입
1764	수압	水壓	수압
1765	수액	數額	액수
1766	수액	樹液	수액
1767	수여하다	授與	수여하다, 주다
1768	수엽	樹葉	나뭇잎, 수엽
1769	수용	受容	받아들임
1770	수용성	水溶性	수용성
1771	수용하다	受容	받아들이다
1772	수원	水源	수원(水源)
1773	수위	守衛	경비원
1774	수유부	授乳婦	젖∨먹이는∨여성, 젖먹이가∨있는∨여성
1775	수유자	受遺者	수유자(受遺者)
1776	수은 램프	lamp	수은등
1777	수의계약	隨意契約	수의계약
1778	수인	數人	여러∨사람, 몇∨사람, 여럿, 여러∨명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779	수임	受任	수임
1780	수임인	受任人	수임인
1781	수입면장	輸入免狀	수입허가서
1782	수입선	輸入先	수입처
1783	수입하다	輸入	수입하다
1784	수장	手掌	손바닥
1785	수장부	手掌部	손바닥∨부위
1786	수장하다	水葬	수장하다
1787	수재	收載	수록
1788	수저	水底	물∨아래, 물밑
1789	수저전선	水底電線	물밑∨전선
1790	수저준설	水底浚渫	물밑∨파기, 물밑∨파내기
1791	수정	受精	수정
1792	수정란	受精卵	수정란
1793	수제문서	手製文書	손으로 작성한 문서
1794	수조	水槽	물통, 수조
1795	수종	數種	여러∨종류
1796	수종	樹種	나무∨종류
1797	수죄	數罪	여러∨죄
1798	수주	受注	수주
1799	수주하다	受注	수주하다, 주문을 받다
1800	수중	水中	물속
1801	수증	受贈	증여받음
1802	수지	收支	수입·지출, 수입과 지출
1803	수지	樹枝	나뭇가지
1804	수지	樹脂	나뭇진
1805	수지계산서	收支計算書	수입·지출 계산서
1806	수직상방	垂直上方	수직으로 위쪽
1807	수직하방	垂直下方	수직으로 아래쪽
1808	수질	水質	수질
1809	수질오탁	水質汚濁	수질오염
1810	수차	數次	여러∨번, 여러∨차례
1811	수책	數冊	여러∨권
1812	수축	獸畜	집짐승, 짐승, 기르는∨동물
1813	수취	受取	수령
1814	수취인	受取人	수령인, 받는 사람, 받는이
1815	수취하다	受取	받다
1816	수침	水沈	물의 침투, 물의 침투 정도
1817	수탁교육	受託敎育	수탁교육
1818	수탁하다	受託	수탁하다, 위탁받다
1819	수태	受胎	[사람] 임신, [동물] 새끼배기
1820	수통	數通	여러∨통, 몇∨통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821	수표	水標	수위(水位)∨표지
1822	수피	樹皮	나무껍질
1823	수필	數筆	여러∨필지
1824	수하물	手荷物	손짐, 휴대화물, 수화물(手貨物)
1825	수학하다	修學	공부하다, 수학하다
1826	수행	隨行	수행
1827	수형목	秀型木	수형목(秀型木)
1828	수혜자	受惠者	수혜자
1829	수호하다	守護	수호하다
1830	수화인	受貨人	화물∨수령인, 수화인(受貨人)
1831	수확	收穫	수확
1832	수회	數回	여러∨차례
1833	숙근	宿根	묵은 뿌리
1834	숙성	熟成	숙성
1835	숙식	宿食	숙식
1836	숙주	塾主	교육시설의 장
1837	숙지하다	熟知	자세히 알다
1838	순로	順路	일반적 경로, 정상적 경로
1839	순번	順番	차례
1840	순시하다	巡視	순시하다
1841	순연	順延	차례로 미룸, 순차연기
1842	순응하다	順應	따르다, 응하다
1843	순차, 순차로	順次	차례, 차례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1844	순화하다	醇化	순화하다
1845	숫자		2명(○), 두∨명(○)
1846	숫자 띄어쓰기		제2장 중 94쪽에 설명 있음
1847	쉼표		제2장 중 75쪽에 설명 있음
1848	스노	snow	스노(○), 스노우(×)
1849	스위치	switch	스위치
1850	스카이라인	skyline	스카이라인
1851	스케줄	schedule	일정, 일정표, 계획, 계획표, 시간표
1852	스크린	screen	스크린, 화면, 영상막, 휘장, 막, 장막
1853	스크린 도어	screen door	안전문
1854	스테인리스	stainless	스테인리스(○), 스테인레스(×)
1855	스티커	sticker	스티커, 딱지
1856	스팀히터	steam heater	스팀히터
1857	스포츠	sports	스포츠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858	스프링	spring	스프링
1859	스프링클러	sprinkler	스프링클러
1860	스프링클러 헤드	springkler head	스프링클러∨헤드
1861	슬관절	膝關節	무릎관절
1862	슬라이드	slide	슬라이드
1863	습득	拾得	습득
1864	습득자	拾得者	주운 사람
1865	습득하다	拾得	줍다
1866	습벽	習癖	습벽(習癖), 나쁜 버릇
1867	습성	習性	습성
1868	습윤	濕潤	축축함
1869	습윤제	濕潤劑	습기유지제
1870	승강	乘降	타고 내림, 오르내림
1871	승강장	乘降場	승강장
1872	승계하다	承繼	이어받다, 승계하다
1873	승마	勝馬	승리한 말, 승리마(勝利馬)
1874	승선하다	乘船	승선(乘船)하다, 배에 타다
1875	승수	承水	물∨이어받음, 물∨승계
1876	승역지	承役地	[지역권에서] 편익∨제공지, 승역지(承役地)
1877	승용자동차	乘用自動車	승용차, 승용자동차
1878	승용하다	乘用	타다, 탑승하다
1879	승인년도	承認年度	승인연도
1880	승차권	乘車券	승차권
1881	승차하다	乘車	승차하다
1882	승하다	乘ずる	곱하다
1883	승합자동차	乘合自動車	승합차, 승합자동차
1884	시 (신청시)	時	∨시 (신청∨시, 신청할 때) * 예외(비상시, 평상시, 필요시, 유사시)
1885	시간당 (1시간당)		시간당 [* '1시간당'에서 '1'은 불필요하므로 생략한다]
1886	시건	施鍵	(자물쇠로) 잠금
1887	시건장치	施鍵裝置	잠금장치
1888	시계	視界	시계(視界)
1889	시굴	試掘	시험∨굴착
1890	시급을 요하다	時急	시급하다, 긴급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891	시달하다	示達	알리다, 지시하다, 문서로 지시하다, 전달하다
1892	시동하다	始動	시동하다
1893	시료	試料	시료, 시험용∨재료
1894	시말서	始末書	경위서
1895	시멘트	cement	시멘트
1896	시방서	示方書	설계설명서, 시방서
1897	시범	示範	시범
1898	시비	施肥	거름주기, 비료∨주기
1899	시상하다	施賞	시상하다, 상∨주다
1900	시스템	system	시스템
1901	시시	cc	시시(○), 씨씨(×) (예: 800시시)
1902	시야변상	視野變狀	시야∨이상
1903	시야협착	視野狹窄	시야∨협착
1904	시업, 시업중	施業	사업, 사업∨중
1905	시운전	試運轉	시험운전
1906	시작품, 시제품	試作品, 試製品	시험제품
1907	시정	視程	가시거리
1908	시정하다	是正	시정하다
1909	시찰하다	視察	시찰하다
1910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1911	시험축	試驗畜	시험용∨가축
1912	시혜를 줌	施惠	혜택을 줌
1913	식단	食單	식단
1914	식료	食料	식료, 음식재료
1915	식량	食糧	식량
1916	식목	植木	식목(植木), 나무∨심기
1917	식별하다	識別	(분별하여) 알아보다, 구별하다
1918	식부면적	植付面積	재배 면적, 경작 면적
1919	식생	植生	식생, 식생(植生)
1920	식생하다	植生	자라다
1921	식수	植樹	나무∨심기
1922	식순	式順	차례, 식의 차례
1923	식염	食鹽	먹는∨소금
1924	식재	植栽	(나무) 심기, (나무) 가꾸기
1925	식재면적	植栽面積	심은 면적
1926	식재하다	植栽	심고 가꾸다, 심다
1927	신고부	申告簿	신고∨장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928	신년	新年	신년
1929	신도	伸度	늘어나는 정도, 신도(伸度)
1930	신뢰	信賴	신뢰
1931	신립	申立	신청
1932	신명	身命	신명, 몸과 마음
1933	신문	訊問	신문(訊問)
1934	신문하다	訊問	신문(訊問)하다
1935	신병	身柄	신체 (구속) ['신병'이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
1936	신병인수	身柄引受	[이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로 함]
1937	신빙하다	信憑	신뢰하다
1938	신사실	新事實	새로운 사실
1939	신서	信書	편지
1940	신·구	新舊	신구
1941	신임지	新任地	새∨근무지
1942	신입	新入	신입
1943	신입하는 자	新入	새로 들어오는 사람, 새내기
1944	신입하다	新入	처음 들어오다, 새로 들어오다
1945	신장	伸張	높임, 증대
1946	신조	新造	신조(新造)
1947	신조한, 신조된	新造	새로 만든
1948	신지번	新地番	새∨토지번호, 새∨지번
1949	신체류지	新滯留地	새∨체류지
1950	신품종	新品種	새∨품종, 신품종
1951	실권	失權	권리∨잃음, 권리∨상실
1952	실권	失券	주권(株券)∨잃음, 주권(株券)∨상실
1953	실비	實費	실제∨비용, 실비(實費)
1954	실사	實査	실제∨조사
1955	실익	實益	실익, 실질적인∨이득
1956	실인	實印	인감도장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957	실중량	實重量	실제∨무게, (컨테이너 7무게를 뺀) 화물의 무게
1958	실증	實證	'실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함
1959	실추	失墜	떨어뜨림
1960	실화	失火	실화(失火)
1961	심굴하다	深掘	깊이 파다
1962	심낭	心囊	염통주머니, 심장주머니, 심막, 심낭
1963	심대하다	甚大	매우 중대하다
1964	심도	深度	심도(深度), 깊이, 깊은 정도
1965	심리	審理	심리, 심리(審理)
1966	심문	審問	심문, 심문(審問)
1967	심벌	symbol	심벌(○), 심볼(×)
1968	심신	審訊	심문(審問)
1969	심신장애	心身障碍	정신장애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970	심야	深夜	심야
1971	심오한	深奧	심오한
1972	심증	心證	심증
1973	심히	甚	매우, 몹시, 심하게
1974	싱가폴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폴(×)
1975	쌍방	雙方	양쪽
1976	쌍태아	雙胎兒	쌍둥이
1977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시행∨당시
1978	이 법 시행일전에, 이 법 시행전에		이 법 시행∨전에
1979	이 법을 시행한 후 최초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1980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ㅇ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981	아니 된다		아니∨된다, 안∨된다 [별표, 별지서식에서]
1982	아니면 (합격된 후가 아니면)		~하기 전에는 (합격하기 전에는)
1983	아니하게		아니하게, 않게
1984	아니하는		아니하는, 않는
1985	아니하는 한		아니하는 범위에서, 않는 범위에서, 아니하면, 경우 외에는
1986	아니한		아니한, 않은
1987	아동	兒童	아동
1988	아스팔트	asphalt	아스팔트
1989	아이스박스	ice box	냉동상자
1990	아자	啞者	말 못하는 사람
1991	악력	握力	쥐는 힘, 악력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992	악역	惡疫	악성 감염병
1993	악의로	惡意	(그 사실을) 알고도, 알고 *'악의'가 '알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1994	악의인 경우에는	惡意	알았으면, 알았을 때에는 *'악의'가 '알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1995	악천후	惡天候	거친 날씨
1996	악화되다	惡化	악화되다, 나빠지다
1997	안		∨안
1998	안검	眼瞼	눈꺼풀
1999	안료	顔料	안료
2000	안면	顔面	얼굴
2001	안벽	岸壁	부두∨벽
2002	안분계산	按分計算	안분계산, 똑같이 나누어 계산하다
2003	안분기장	按分記帳	분리∨기록
2004	안분하다	按分	(똑같이) 나누다, 일정 비율로 나누다, 일정한 비율로 나누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005	알선하다	斡旋	알선하다
2006	알카리	alkali	알칼리, 염기
2007	알콜	alcohol	알코올(○), 알콜(×)
2008	암거	暗渠	지하 도랑
2009	암염	巖鹽	돌소금, 암염
2010	압괴	壓壞	압력손상
2011	압날하다	押捺	(도장을) 찍다
2012	압력챔버	壓力 chamber	압력실(壓力室)
2013	압류	押留	압류
2014	압맥	壓麥	납작보리
2015	압송	押送	호송
2016	압수	押收	압수
2017	압착	壓着	압착, 눌러 붙임
2018	앙각	仰角	올려본 각
2019	앙등하다	昂騰	(가격이) 오르다
2020	앙양하다	昂揚	드높이다, 북돋우다
2021	애드벌룬	ad balloon	애드벌룬
2022	애로	隘路	어려움, 고충, 애로
2023	액량	液量	액체량
2024	액상	液狀	액체
2025	액와	腋窩	겨드랑이
2026	액적	液滴	물방울
2027	액제	液劑	물약
2028	야간	夜間	야간
2029	야기하다, 야기되다	惹起	일어나다, 일으키다, 생기다
2030	야산	野山	야산
2031	야생조수	野生鳥獸	야생조수(野生鳥獸)
2032	야유회	野遊會	야유회
2033	야적하다	野積	야적하다
2034	야채	野菜	채소
2035	약가	藥價	약값
2036	약간	若干	몇
2037	약간인	若干人	몇∨명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038	약기하다	略記	줄여 쓰다
2039	약사	藥事	약사(藥事)
2040	약사	藥師	약사(藥師)
2041	약장	略章	약장(略章)
2042	약장	略裝	약식∨복장
2043	약지	藥指	넷째∨손가락
2044	약취하다	略取	[사람을] 약취(略取)하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데려가다
2045	약취하다	掠取	[물건을] 약취(掠取)하다, 약탈해 가져가다, 훔치거나 빼앗아서 가져가다
2046	약호	略號	약식∨부호
2047	양도	讓渡	양도, 양도(讓渡)
2048	양도양수	讓渡讓受	양도·양수, 양도(讓渡)·양수(讓受)
2049	양도하다	讓渡	양도하다, 양도(讓渡)하다 * 넘겨주다(x), 넘기다(x)
2050	양말단	兩末端	양 끝
2051	양묘	養苗	모기르기, 양묘
2052	양봉	養蜂	벌치기, 양봉
2053	양부	良否	'양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함
2054	양산	量産	대량생산
2055	양상	樣相	상태
2056	양성공	養成工	수련공
2057	양수	讓受	양수, 양수(讓受)
2058	양수하다	讓受	양수하다, 양수(讓受)하다 * 넘겨받다(x)
2059	양식	樣式	[문서에서] 서식, 양식
2060	양안	兩眼	양쪽∨눈
2061	양안	兩岸	양쪽 언덕
2062	양여	讓與	무상양도, 양여
2063	양유	羊乳	양유(羊乳), 양젖
2064	양육하다	養育	양육하다
2065	양잠	養蠶	누에치기, 양잠
2066	양정	量定	결정, ~량∨결정, ~∨정도∨결정
2067	양지간	兩地間	양∨지역∨사이
2068	양축	養畜	가축∨사육
2069	양치식물	羊齒植物	양치식물, 고사리식물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070	양토	養兎	토끼 기르기, 양토(養兎)
2071	양하	揚荷	짐∨나르기, 짐∨나르기[揚荷]
2072	양형	量刑	형량 결정
2073	어구	漁具	어구, 고기잡이∨도구
2074	어렵	漁獵	고기잡이
2075	어로	漁撈	고기잡이
2076	어망	漁網	그물, 고기그물, 어망
2077	어법	漁法	고기잡이 방법
2078	어분	魚粉	생선가루
2079	어상자	魚箱子	고기상자
2080	어·패류, 어패류	魚貝類	어패류
2081	어유	魚油	생선기름
2082	어즙	魚汁	생선즙
2083	어황	漁況	고기잡이∨상황, 어황, 어황(漁況)
2084	어획	漁獲	어획
2085	억제하다	抑制	억제하다
2086	언	堰	둑
2087	언도	言渡	선고
2088	언동	言動	말과 행위, 말과 행동
2089	언제	堰堤	둑, 댐
2090	얻다		(승인, 면허, 인가, 동의 등을) 받다
2091	엄수	嚴守	엄수
2092	엄중문책하다	嚴重問責	엄중히 책임을 묻다
2093	업태	業態	영업실태
2094	업황	業況	영업상황
2095	없는 한		없으면, 없다면, 없을 때에는
2096	에		와, 과, 로, 으로, 을, 를, 보다, 에, 에게, 에서, 이
2097	에 관계있는		과(와) 관계있는
2098	에 부족하고		보다 적고
2099	에 있어 (제공함에 있어)		데, 데에, 할 때 (제공하는∨데, 제공하는∨데에, 제공할 때)
2100	에 있어서, 에 있어서는		제2장 중 46쪽에 설명 있음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101	에게		[사물, 단체, 기관] ~에, [사람, 동물] ~에게
2102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에스컬레이터
2103	에어컨디셔너	air-conditioner	에어컨, 냉난방조절기
2104	에의		문맥에 맞게 고침
2105	엑기스	extract	추출물, 농축액, 진액
2106	엘리베이터	elevator	엘리베이터
2107	여과하다	濾過	여과하다
2108	여백	餘白	여백
2109	여부	與否	∨여부
2110	여부	與否	사용하는지, 사용하는지 여부(○), 승인, 승인 여부(○), 인정, 인정 여부(○), 타당성(○), 타당성 여부(x)
2111	여분	餘分	나머지, 여분
2112	여수	餘水	남는∨물
2113	여입하다	戾入	도로 넣다
2114	여죄	餘罪	여죄, 다른 범죄
2115	여타의	餘他	그 밖의 (다른 것)
2116	여하에 불구하고	如何	~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2117	여하한	如何	어떠한, 어떤
2118	여하한 명의로도	如何한 名義로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2119	역문	譯文	번역문
2120	연계하다	連繫	연계하다
2121	연돌	煙突	굴뚝
2122	연동하다	連動	연동하다, 맞물려 움직이다, 함께 움직이다
2123	연령	年齡	나이, 연령[복합명사일 때: 수급연령]
2124	연륙	連陸	육지와 연결된, 연륙
2125	연번	連番	일련번호
2126	연분진	鉛粉塵	납∨분진, 납∨먼지
2127	연소	燃燒	연소
2128	연소재	燃燒滓	연소재
2129	연쇄	連鎖	연쇄
2130	연승	延繩	주낙
2131	연식	年式	연식
2132	연와조	煉瓦造	벽돌 구조
2133	연월수	延月數	총개월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134	연율	年率	연이율, 연∨이자율
2135	연장	延長	총길이, 전체 길이
2136	연접되다	連接	이어지다, 연이어지다, 접하다, 서로 맞닿다, 연접되다
2137	연철하다	連綴	이어∨붙이다
2138	연초종자	煙草種子	담배씨
2139	연혁	沿革	연혁, 내력
2140	열독하다	閱讀	읽다
2141	열람에 공하다	閱覽	열람하도록 제공하다
2142	열람하다	閱覽	열람하다
2143	열석자	列席者	참석자
2144	열석하다	列席	참석하다
2145	열식간벌	列式間伐	줄솎아베기
2146	염	鹽	소금, 염
2147	염가	廉價	싼값, 염가
2148	염료	染料	염료
2149	염수	鹽水	소금물
2150	염수장	鹽水藏	소금물∨절임, 소금물∨저장, 염수장(鹽水藏)
2151	염장	鹽藏	소금∨절임, 염장(鹽藏)
2152	엽구	獵具	수렵도구
2153	엽기	獵期	수렵기간
2154	엽연초	葉煙草	잎담배
2155	영달	令達	'영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침전달', '명령전달'과 같이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2156	영림	營林	산림경영
2157	영림계획	營林計劃	산림경영계획
2158	영선	營繕	수리
2159	영아	嬰兒	영아
2160	영어	營漁	어업∨경영
2161	영위하다	營爲	하다, 경영하다
2162	영접하다	迎接	영접하다
2163	영조물	營造物	공공시설물, 영조물
2164	영치금	領置金	보관금, 영치금(領置金)
2165	영치품	領置品	보관품, 영치품(領置品)
2166	영치하다	領置	보관하다, 영치(領置)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167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2168	예가	豫價	예정∨가격, 예정된 가격
2169	예고하다	豫告	예고하다
2170	예납하다	豫納	미리∨납부하다, 미리∨내다
2171	예단하다	豫斷	예단하다
2172	예선	曳船	예인선(曳引船)
2173	예선삭	曳船索	예인(曳引) 밧줄
2174	예속되다	隷屬	예속되다
2175	예수하다	預受	맡다, 유치하다, 관리하다
2176	예시	例示	예시
2177	예인작업	曳引作業	예인 작업
2178	예인하다	曳引	예인하다
2179	예입	預入	예금, 저금
2180	예정하다	豫定	예정하다
2181	예찰	豫察	예비관찰
2182	예측하다 (예견하다)	豫測	예측하다(예견하다)
2183	예치	預置	예치
2184	예치금	預置金	예치금
2185	예탁	豫託	예탁(豫託), 미리 맡김
2186	예탁	預託	예금∨위탁
2187	예하기관	隷下機關	소속∨기관
2188	예항하다	曳港	항구로∨예인(曳引)하다
2189	예후	豫後	처치 후 상태, 병세 진행, 병세 전망, 예후
2190	오기하다	誤記	잘못∨쓰다, 오기하다
2191	오납	誤納	오납(誤納)
2192	오니	汚泥	오염된 흙, 오니(汚泥)
2193	오니류	汚泥類	오염된∨흙∨종류, 오니류(汚泥類)
2194	오독	汚瀆	더럽힘
2195	오류	誤謬	오류
2196	오리지널	original	오리지널(○), 오리지날(×)
2197	오물	汚物	오물, 쓰레기
2198	오벌목	誤伐木	잘못∨벤∨나무
2199	오손	汚損	망가짐,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2200	오수	汚水	더러운 물
2201	오수정화	汚水淨化	오수(汚水)∨정화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202	오액	汚液	구정물(汚液)
2203	오염시키다	汚染	오염시키다
2204	오욕하다	汚辱	모욕하다
2205	오인	誤認	오인(誤認)
2206	오인하다	誤認	잘못∨인식하다
2207	오일	oil	기름, 기름류
2208	오일펌프	oil pump	기름 펌프
2209	오자	誤字	틀린∨글자
2210	오지	奥地	오지
2211	오페라	opera	오페라
2212	오피스텔	officetel	오피스텔
2213	옥내	屋內	집∨안, 건물∨안, 옥내
2214	옥내소화전	屋內消火栓	실내∨소화전
2215	옥상	屋上	옥상
2216	옥상간판	屋上看板	옥상∨간판
2217	옥외	屋外	집∨밖, 건물∨밖, 옥외
2218	온도경보시스템	system	온도경보장치
2219	온수	溫水	온수, 더운물, 뜨거운∨물
2220	옹벽	擁壁	옹벽
2221	와이어로프	wire rope	와이어∨로프
2222	완경사	緩傾斜	완만한 경사
2223	완곡	緩曲	완만한∨곡선
2224	완관절	腕關節	손목관절
2225	완구	玩具	장난감
2226	완납하다	完納	다∨내다, 완전히∨납부하다
2227	완료	完了	완료
2228	완료하다	完了	마치다, 끝내다
2229	완비되다, 완비하다	完備	완비되다, 완비하다
2230	완수하다	完遂	완수하다
2231	완제	完濟	모두 변제, 전부 변제
2232	왕래	往來	왕래
2233	외	外	∨외
2234	외견상	外見上	겉보기에
2235	외경	外徑	바깥지름
2236	외관	外觀	겉모습, 외관
2237	외관도	外觀圖	외관도(外觀圖)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238	외기	外氣	외부∨공기
2239	외륜	外輪	바깥 바퀴, 외륜(外輪)
2240	외면	外面	외면
2241	외모	外貌	외모
2242	외문	外門	겉문
2243	외상	外傷	외상
2244	외에는 (~한 외에는)		~가 아니면, ~가 아닌 경우에는
2245	외의	外衣	겉옷
2246	외장	外裝	외장
2247	외피	外皮	겉포장, 겉껍질
2248	외함	外函	바깥상자, 겉상자, 외함(外函)
2249	요금	料金	요금
2250	요대	腰帶	허리띠
2251	요대체	要代替	'대체가 필요함'과 같이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함
2252	요령	要領	요령
2253	요부조자	要扶助者	도움이 필요한 사람
2254	요식	要式	요식
2255	요역지	要役地	[지역권에서] 편익∨수혜지, 요역지(要役地)
2256	요체	要諦	핵심
2257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때	要請	(~가) 요청하면, (~가) 요청한 경우, (~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면, (~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2258	요청이 있는 경우	要請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경우
2259	요하는, 필요로 하는	要	~이 필요한
2260	요하다	要する	~가 필요하다, 요구되다
2261	용광하다	鎔鑛	광물을 녹이다, 금속을 녹이다
2262	용기	容器	그릇, 용기
2263	용도	用途	용도
2264	용무	用務	용무, 볼일
2265	용법	用法	사용법
2266	용선	傭船	용선(傭船)
2267	용수로	用水路	용수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268	용수원	用水源	용수원(用水源)
2269	용수하다	用水	물을 사용하다
2270	용융되다	熔融	녹다
2271	용이하다	容易	쉽다
2272	용인	傭人	고용인
2273	용인하다	容認	용인(容認)하다
2274	용적	容積	부피, 용적
2275	용접공	鎔接工	용접기사
2276	용제	溶劑	용제(溶劑)
2277	용착	溶着	용착(溶着)
2278	용출	湧出	용출, (물 따위가) 솟아∨나옴
2279	용출하다	湧出	(물 따위가) 솟아∨나오다
2280	용해하다	鎔解	용해하다
2281	우단	右端	오른쪽 끝
2282	우란	右欄	오른쪽∨칸, 오른쪽란,
2283	우력	偶力	[물리용어] 우력(偶力), 짝힘
2284	우모	羽毛	깃털
2285	우발하다	偶發	우발하다, 우연히 발생하다
2286	우송하다	郵送	우편으로 부치다
2287	우역	牛疫	우역(牛疫)
2288	우의	雨衣	비옷
2289	우지	牛脂	쇠기름
2290	우천시	雨天時	비∨올∨때
2291	우체함	郵遞涵	우체통
2292	우측상단	右側上端	오른쪽∨위, 오른쪽∨위∨끝
2293	우편수취함	郵便受取函	우편함
2294	우현	右舷	우현, 우측∨뱃전, 오른쪽∨뱃전
2295	운고	雲高	구름∨높이
2296	운반선	運搬船	운반선(運搬船)
2297	운송하다	運送	운송하다
2298	운임	運賃	운송료
2299	운전수	運轉手	운전사
2300	원거리	遠距離	원거리, 먼 거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301	원격지	遠隔地	먼∨거리, 멀리∨떨어진∨곳, 원격지(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뜻 외에 접근성이 낮다는 의미가 있는 경우)
2302	원단	原緞	원단
2303	원래	原來	원래
2304	원목	原木	원목
2305	원무	園務	업무, 유치원∨업무, (~)원의∨업무
2306	원본	元本	원본(元本)
2307	원상	原狀	원상(原狀), 원래 상태
2308	원수	員數	사람∨수, 인원
2309	원아	園兒	원아(園兒)
2310	원에 의하다	願	의사에 따르다
2311	원야	原野	원야(原野), 벌판
2312	원추형	圓錐形	원뿔형
2313	원피	原皮	원피(原皮), 가공하지∨않은∨가죽
2314	월	月	[기간일 때] 개월 [날짜일 때] 월
2315	월경	越境	경계∨넘기, 국경∨넘기
2316	월계	月計	한달∨합계, 월계, 월계(月計)
2317	월권	越權	월권
2318	월동	越冬	월동, 겨울나기
2319	월부	月賦	월부
2320	월부금	月賦金	월부금
2321	월선	越線	선을 넘음, 월선
2322	월실수액	月實收額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2323	월하장	越夏場	여름∨날∨곳, 월하장(越夏場)
2324	월할계산	月割計算	월할(月割) 계산
2325	위계	僞計	속임수, 위계(爲計)
2326	위계를 한 자	僞計	거짓 구실을 꾸민 사람, 거짓 계략을 꾸민 사람,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
2327	위규	違規	규정∨위반
2328	위기하다	委棄	[지역권에서] (소유권을) 넘기다
2329	위락	慰樂	놀이
2330	위력	威力	위력(威力)
2331	위반되다, 위반하다 (~에 위반하다, ~에 위반되다)	違反	~를 위반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332	위배되다	違背	위배되다
2333	위산	違算	위산(違算), 틀린 계산
2334	위식	僞飾	거짓으로∨꾸밈, 가식
2335	위약	違約	위약
2336	위증	僞證	위증
2337	위탁증거금	委託證據金	위탁증거금(委託證據金)
2338	위해	危害	위해(危害)
2339	위해하다	危害	위해하다
2340	유가공	乳加工	유가공
2341	유고시	有故時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고가 있을 때(x)
2342	유관기관	有關機關	관계 기관, 유관 기관
2343	유기	遺棄	유기
2344	유기하다	遺棄	유기하다, 버리다, 내버리다
2345	유년	幼年	어린∨나이, 어린∨시절, 어린아이
2346	유도표지판	誘導標識板	유도표지판(誘導標識板)
2347	유도하다	誘導	유도하다
2348	유락	遊樂	유락(遊樂)
2349	유루	遺漏	빠진∨부분, 빠짐, 누락
2350	유류	遺留	유류(遺留)
2351	유막	油膜	기름∨막
2352	유무	有無	사망자∨유무(○), 타당성, 타당한지(○), 타당성∨유무(x)
2353	유보	留保	유보(留保)
2354	유분	油分	기름∨성분
2355	유사하다	類似	비슷하다, 유사하다
2356	유산균	乳酸菌	유산균
2357	유수	流水	흐르는 물, 유수(流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358	유수검지장치	流水檢知裝置	유수검지장치(流水檢知裝置)
2359	유수분리	油水分離	유수분리(油水分離)
2360	유수탱크	溜水	유수탱크
2361	유숙하다	留宿	(남의 집에서) 묵다, 유숙하다
2362	유실물	遺失物	유실물
2363	유실수	有實樹	열매나무, 유실수
2364	유실자	遺失者	잃어버린 사람
2365	유실하다	遺失	유실하다, 잃어버리다
2366	유아	幼兒	유아
2367	유아	乳兒	젖먹이
2368	유압	油壓	유압
2369	유예	猶豫	유예
2370	유예하다	猶豫	유예하다, 미루다
2371	유용	有用	유용, 유용(有用)
2372	유용	流用	유용(流用)
2373	유용하다	流用	유용(流用)하다, 돌려쓰다, 유용하다
2374	유우	乳牛	젖소
2375	유의하다	留意	유의하다
2376	유인물	油印物	인쇄물, 등사물
2377	유입	流入	유입
2378	유입구	流入口	유입구
2379	유입하다	流入	유입하다, 흘러들다
2380	유자격자	有資格者	자격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2381	유종	油種	기름의 종류
2382	유증	遺贈	유증(遺贈), 유언으로 한 증여
2383	유지	留止	정지, 중지
2384	유지	遺志	유지(遺志)
2385	유지	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2386	유지하다	留止	멈추다
2387	유찰	流札	유찰
2388	유처리제	油處理劑	기름처리제
2389	유첨	有添	붙임 있음, 첨부물 있음
2390	유출하다	流出	유출하다, 흘러나오다, 흘러나가다, 새다
2391	유치	留置	유치(留置)
2392	유치증서	留置證書	보관증서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393	유치하다	誘致	유치하다
2394	유탈	遺脫	유탈
2395	유탈하다	遺脫	빠지다, 빠뜨리다
2396	유탱크	油tank	기름탱크, 기름통
2397	유포	流布	유포
2398	유포하다	流布	퍼뜨리다
2399	유해하다	有害	유해하다
2400	유황	硫黃	유황(硫黃)
2401	유휴노동력	遊休 勞動力	유휴노동력
2402	유휴지	遊休地	유휴지
2403	유희	遊戱	놀이
2404	육골분	肉骨粉	고기뼛가루
2405	육분	肉粉	고깃가루
2406	육상	陸上	육상
2407	육성	育成	육성
2408	육안	肉眼	눈, 맨눈
2409	육우	肉牛	고기소
2410	육종	育種	종자∨키우기, 씨앗∨개량
2411	윤락여성		성매매여성, 성매매자
2412	윤축	輪軸	윤축(輪軸)
2413	율, 률, 열, 렬	率	① 률, 렬: 확률, 유량변동률 ② 율, 열: (‘ㄴ’이나 ‘모음’ 다음에서) 비율, 선율, 전율, 백분율, 보험료율, 나열
2414	으로부터 (공직으로 부터)		에서(공직에서)
2415	으로부터 (처음으로 부터)		로부터 (처음부터)
2416	으로써		~여, ~여서, ~으로써 (놀여서, 보고함으로써)
2417	은닉	隱匿	은닉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418	은닉재산	隱匿財産	은닉∨재산
2419	은닉하다	隱匿	감추다, 숨기다
2420	은비	隱秘	은밀히 함
2421	은폐하다	隱蔽	은폐하다
2422	음곡	音曲	음악
2423	음성기능	音聲機能	음성기능
2424	음수	陰數	음수, 0보다 작은 수
2425	음용	飮用	음용, 마시는∨데∨쓰는, 마시는, 먹는
2426	음용수	飮用水	먹는 물, 마시는 물
2427	음행	淫行	음행, 음란한 짓(행위)
2428	음향	音響	음향, 소리
2429	음향신호 장치	音響 信號裝置	음향신호장치
2430	응결	凝結	응결
2431	응소	應召	응소, 소집에 응함
2432	응하다	應하다	(명령에) 따르다 (협상에) 응하다 (검사를) 받다 [문맥에 맞게 해당 내용을 풀어 씀]
2433	의		*[이해 편]에 설명이 있음
2434	의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부터)		가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2435	의거하여	依據	의하여, 따라, 좇아, 근거 삼아
2436	의뢰	依賴	의뢰
2437	의료수가	醫療酬價	의료수가(醫療酬價)
2438	의료시혜	醫療施惠	의료∨혜택
2439	의용하다	依用	의용(依用)하다, 빌려 쓰다
2440	의의	意義	의의, 뜻
2441	의제	擬制	의제
2442	의하여 (방법에 의하여)		따라 [수단·방법으로 쓰일 때] 으로, 의하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443	의하여 (합의에, 서류에, 외상에, 고의에 의하여)		'의하여'를 그대로 사용 (합의에 의하여, 서류에 의하여, 외상에 의하여, 고의에 의하여)
2444	의하여, 의한다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에 따른, 따른다 (제○조에 따라, 제○조에 따른)
2445	이 법에 규정한		이 법에서 규정한
2446	이각	耳殼	귓바퀴
2447	이격거리	離隔	이격거리
2448	이견	異見	이견
2449	이관	耳管	이관(耳管)
2450	이관	移管	이관
2451	이관하다	移管	관할을 옮기다
2452	이내	以內	∨이내
2453	이농	離農	이농
2454	이동	異同	같지 않음, 이동(異同)
2455	이동하다	移動	이동하다
2456	이륜자동차	二輪自動車	이륜자동차
2457	이를		목적어가 따로 있으면 '이를'을 삭제함
2458	이면	裏面	이면, 뒷면(뒤쪽), 속, 안
2459	이물	異物	이물, 이물질, 다른 물질
2460	이상		∨이상
2461	이상 ~ 이내, 내지 ~ 이내		~∨이상 ~∨이하
2462	이석하다	離席	자리를 뜨다, 자리를 비우다
2463	이설	移設	이설
2464	이설하다	移設	(시설을) 옮기다, (시설을) 옮겨∨설치하다
2465	이송하다	移送	옮기다, 이송하다
2466	이수	履修	이수
2467	이수하다	履修	(과정)을 마치다, (과목, 교육)을 이수하다
2468	이시	異時	다른 때, 다른 시각
2469	이식	利息	이자
2470	이식	移植	옮겨심기
2471	이식하다	移植	옮겨∨심다, 이식(移植)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472	이완되다	弛緩	느슨해지다, 이완(弛緩)되다
2473	이용	移用	이용
2474	이월하다	移越	이월(移越)하다
2475	이율	利率	이자율
2476	이의	異義	이의
2477	이입하다	移入	이입(移入)하다, 옮겨 넣다
2478	이재자	罹災者	재해∨피해자
2479	이적	利敵	이적(利敵)
2480	이적	移積	옮겨∨쌓기
2481	이적	移籍	이적(移籍)
2482	이적하다	移積	옮겨∨쌓다
2483	이전	以前	∨이전
2484	이전하다	移轉	이전(移轉)하다
2485	이종	異種	이종, 다른 종류
2486	이질환	耳疾患	귓병
2487	이첩하다	移牒	보내어∨알리다, 넘기다
2488	이체	移替	이체(移替)
2489	이축	移築	이축(移築)
2490	이취하다	泥醉	심하게 취하다
2491	이탈	離脫	이탈
2492	이탈하다	離脫	이탈하다, (...에서) 벗어나다
2493	이표	利票	이자∨지급표
2494	이하	以下	∨이하
2495	이행기	履行期	이행기(履行期)
2496	이환되다	罹患	(질병에) 걸리다
2497	이후	以後	∨이후
2498	익금	益金	이익금
2499	익년	翌年	다음 해, 이듬해
2500	익월	翌月	다음∨달
2501	익일	翌日	이튿날, 다음∨날
2502	익충	益蟲	익충(益蟲)
2503	인	人	명 [* 예외: 2인승, 3인분, 5인 가족]
2504	인감을 날인하다	印鑑	인감도장을 찍다
2505	인거인	隣居人	이웃, 이웃에 사는 사람, 이웃사람
2506	인계하다	引繼	인계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507	인공부화	人工孵化	인공부화
2508	인근	隣近	인근
2509	인낙	認諾	인낙(認諾)
2510	인도하다	引渡	인도하다, 넘겨주다
2511	인동거리	隣棟	이웃한 건물과의 거리
2512	인마	人馬	사람과 동물
2513	인망	引網	인망(引網), 끌그물
2514	인멸	湮滅	인멸
2515	인멸하다	湮滅	없애다, 없애버리다, 인멸하다
2516	인발	引拔	[공업용어]인발(引拔)
2517	인부	認否	인정∨여부
2518	인부임	人夫賃	삯
2519	인상채득	印象採得	치아 본뜨기
2520	인성	靭性	질긴 성질, 질긴 정도
2521	인수서	引受書	인수∨확인서
2522	인수·인계	引受引繼	인수인계
2523	인수증	引受證	인수∨증명서, 인수증
2524	인수하다	引水	물을 끌어들이다
2525	인스턴트	instant	즉석식품
2526	인식	認識	인식
2527	인식하다	認識	알아보다
2528	인·허가	認許可	인가·허가
2529	인양	引揚	인양
2530	인양하다	引揚	끌어올리다, 건져내다
2531	인영	印影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2532	인용	認容	인용(認容)
2533	인육	印肉	인주, 도장밥
2534	인입	引入	인입
2535	인장	印章	도장
2536	인장강도	引張强度	인장강도(引張强度)
2537	인장력	引張力	당기는 힘, 인장력
2538	인접하다	隣接	인접하다
2539	인증	認證	인증
2540	인지	認知	인지
2541	인지	隣地	인접∨지역, 이웃∨토지, 이웃∨땅
2542	인출	引出	인출(引出)
2543	인출하다	引出	(돈을) 찾다
2544	인취	引取	인수∨취득, 인수∨취득하다, 넘겨받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545	인치하다	引致	인치(引致)하다
2546	인터폰	inter phone	인터폰
2547	인프라	Infra	기반시설
2548	인하	引下	인하
2549	인하여 (~로 인하여)	因	~로 인하여, ~로 [* '~때문에'로 순화하지 않음]
2550	인하하다	引下	인하하다, 내리다
2551	인후	咽喉	목구멍
2552	일계	日計	날수 계산
2553	일괄하여	一括	한꺼번에
2554	일단	一團	일단(一團)
2555	일두	一頭	한 마리
2556	일람정기출급	一覽定期出給	일람정기출급(一覽定期出給), 정한 날짜에 지급
2557	일람표	一覽表	일람표
2558	일련번호	一連番號	일련번호
2559	일로부터	日	날부터
2560	일몰시	日沒時	일몰∨시, 해 질∨때, 해가∨질∨때
2561	일몰후	日沒後	일몰∨후, 해 진∨후, 해가∨진∨후
2562	일방	一方	어느∨한쪽, 한쪽
2563	일방향	一方向	한쪽 방향
2564	일부인	日附印	날짜도장
2565	일상지	一上肢	한쪽∨팔
2566	일수	日數	날의 수, 날짜, 일수
2567	일시, 일시에	一時	일시(에), 한꺼번(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잠시
2568	일시유치	一時留置	일시 유치
2569	일시정지	一時停止	우선∨멈춤
2570	일신상	一身上	개인∨사정
2571	일실하다	逸失	잃어버리다
2572	일액	日額	하루치, 일당
2573	일원	一員	구성원, 한∨사람
2574	일자	日字	날짜
2575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동안
2576	일정률	一定率	일정∨비율
2577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기간, 일정∨기간에
2578	일조	日照	볕쪼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579	일체	一體	하나, 일체
2580	일체, 일체의, 일절, 일절의	一切	① 모든, 전부 ② (부정문에서) 어떤 ~도, 절대로, 전혀
2581	일출시	日出時	일출∨시, 해가 뜰 때
2582	일출전	日出前	일출∨전, 해가 뜨기∨전
2583	일탈하다	逸脫	일탈하다
2584	일할계산	日割計算	일할계산
2585	일할계산 하다	日割計算	날∨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 날∨수대로 계산하다
2586	일환으로	一環	(~의) 하나로
2587	임검	臨檢	현장조사, 현장검사, 현장검증
2588	임도	臨道	임시∨도로
2589	임료	賃料	삯, 임대료
2590	임면	任免	임면(任免)
2591	임목무육	林木撫育	숲∨가꾸기
2592	임무	任務	임무
2593	임부	妊婦	임산부
2594	임상	林相	산림∨모습, 숲의∨모습, 산림의 형태
2595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2596	임원 및 직원		임원 및 직원, 임직원
2597	임지	任地	근무지
2598	임차	賃借	임차(賃借)
2599	임하여	臨	임하여, 직면하여, 이르러, 나가서, 따라야
2600	임해	臨海	임해(臨海)
2601	입각하여	立脚	~에 따라서, 근거하여, 입각하여
2602	입간판	立看板	입간판
2603	입거하다	入渠	입거(入渠)하다
2604	입고	入庫	입고
2605	입고하다	入庫	(물건을) 창고에 넣다
2606	입도	粒度	낟알∨크기, 알∨크기
2607	입면도	立面圖	입면도
2608	입목죽	立木竹	입목(立木)·죽(竹)
2609	입방미터	立方	세제곱미터
2610	입산	入山	입산, 산에 들어감
2611	입안	立案	입안, 입안(立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612	입안하다	立案	(안·계획 등을) 만들다, 세우다
2613	입양	入養	입양
2614	입어	入漁	입어(入漁)
2615	입욕	入浴	목욕
2616	입자	粒子	알갱이, 작은 알갱이
2617	입자상	粒子狀	알갱이∨형태, 입자∨모양, 입자∨형태
2618	입적하다	入籍	(호적에) 올리다
2619	입정	入廷	법정∨입장
2620	입정하다	入廷	법정에 들어가다
2621	입증하다	立證	증명하다, 입증하다 ['입증'을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622	입질하다	入質	질권을 설정하다
2623	입표	立標	경계표지, 입표(立標)
2624	입하	入荷	입하
2625	입하하다, 입하되다	入荷	~이 들어오다, ~을 들여오다
2626	입회	入會	가입
2627	입회	立會	참관, 참석, 현장 출석
2628	입회인	立會人	참관인, 참석자, 현장∨출석자
2629	잉여	剩餘	잉여금, 나머지
2630	잉태	孕胎	임신
2631	--하지 못한다		[불능의 의미일 때] ~할 수 없다. [금지의 의미일 때] ~해서는 아니 된다
2632	경우를 제외한다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괄호 안에서 쓸 때]
2633	이를 준용한다 (○○규정은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의 경우에는 ○○을 준용한다, ~에 관하여는 ○○을 준용한다

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634	자	子	자녀
2635	자	者	① 사람 ② 자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가리킬 때]
2636	자견	仔犬	(12개월 미만의)강아지
2637	쿨러	cooler	냉각기
2638	히터	heater	난방기
2639	자력	資力	재산적 능력
2640	자문	諮問	① [질문하는 쪽] 자문하다, 문의하다, 묻다 ② [대답하는 쪽] 자문에 응하다, 질문에 답하다, 질문에 검토의견을 내놓다 [* 자문을 받다(x), 자문을 얻다(x), 자문을 구하다(x), 자문을 요청하다(x)]
2641	자변으로	自辯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자기의 비용 부담으로
2642	자복하다	自服	자복하다
2643	자비로	自費	자기∨비용으로, 자비로
2644	자서하다	自書	직접 쓰다, 스스로 쓰다, 직접 적다, 스스로 적다
2645	자세	姿勢	자세
2646	자수	字數	글자∨수
2647	자영	自營	자영
2648	자유유입	自由流入	자유 유입
2649	자의	自意	자의, 스스로
2650	자인	自認	스스로 인정, 자인(自認)
2651	자조	自助	자조(自助)
2652	자조금	自助金	자조금(自助金)
2653	자중	自重	자중(自重), 물건 자체의 무게
2654	자진하여	自進	스스로, 자진하여
2655	자축	仔畜	새끼 가축
2656	자택	自宅	자택, 자기∨집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657	자필	自筆	자필
2658	자하다	資	협조하다
2659	자행하다	恣行	저지르다
2660	자형	字形	(글자) 모양, 자형(字形)
2661	작도	作圖	제도
2662	작량감경	酌量減輕	작량감경, 정상참작∨감경
2663	작량감경하다	酌量減輕	헤아려∨가볍게∨하다
2664	작량하여	酌量	헤아려, 고려하여
2665	작목	作目	작목
2666	작문	作文	글짓기
2667	작부체계	作付體系	작부체계(作付體系), 경작 차례
2668	잔고	殘高	잔액
2669	잔교	棧橋	구름다리, 선창다리
2670	잔무	殘務	남은 일, 잔무
2671	잔여	殘餘	남은, 나머지
2672	잔유량	殘有量	잔유량, 남아 있는 양
2673	잔임기간	殘任期間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자의) 남은 임기
2674	잔재하다	殘在	남아∨있다, 남다
2675	잔존하다	殘存	남아∨있다, 남다
2676	잔형기	殘刑期	남은 형기
2677	잠견	蠶繭	누에고치
2678	잠사	蠶絲	잠사(蠶絲: 누에고치실)
2679	잠실	蠶室	잠실(蠶室: 누엣간)
2680	잠업	蠶業	잠업(蠶業)
2681	잠입하다	潛入	숨어들다, 잠입하다
2682	잠종	蠶種	누에씨
2683	잡무	雜務	잡무
2684	잡서	雜書	잡서
2685	잡초	雜草	잡초
2686	장거리	長距離	장거리
2687	장경	長徑	장축
2688	장관 (○○장관)		'기관 이름'과 '장관 직책'은 붙여 씀 (예: 국방부장관)
2689	장기간	長期間	장기간
2690	장남	長男	장남, 맏아들
2691	장래에	將來	앞으로, 장래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692	장리하다	掌理	맡아 처리하다, 맡다
2693	장물	臟物	장물
2694	장방형	長方形	직사각형
2695	장벽	障壁	장벽
2696	장부호	長符號	긴∨부호
2697	장사	葬事	장사(葬事)
2698	장성	長聲	긴소리
2699	장애	障碍	장애
2700	장애자	障碍者	장애인
2701	장음	長音	긴소리
2702	장책	墻柵	울타리, 담
2703	장치	裝置	장치(裝置), 장착
2704	장치	藏置	보관
2705	장치물품	藏置物品	보관물품
2706	장표	帳票	장부와 전표
2707	재가	裁可	결재
2708	재감중	在監中	수감 중
2709	재개	再開	재개
2710	재개하다	再開	재개(再開)하다, 다시 시작하다
2711	재결	裁決	재결(裁決)
2712	재경정	再更正	재경정
2713	재경정하다	再更正	다시 고치다
2714	재식하다	栽植	심다
2715	재심	再審	다시 심사, 다시 심의, 재심
2716	재액	災厄	재해
2717	재영중	在營中	군복무 중
2718	재이용	再利用	재이용
2719	재임	再任	재임
2720	재적	材積	목재∨부피, 목재∨면적
2721	재정	裁定	재정(裁定)
2722	재정인	在廷人	'재정인'을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함
2723	재제	再製	다시∨제작, 재제(再製)
2724	재직한 자		재직한 사람
2725	재차	再次	다시, 거듭, 두∨번째
2726	재활용	再活用	재활용
2727	쟁송	爭訟	쟁송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728	쟁투	爭鬪	다툼, 서로 다툼
2729	저가	低價	싼값
2730	저감	低減	저감, 줄이기
2731	저감하다	低減	줄이다
2732	저렴하다	低廉	(가격이) 싸다, 값싸다, 저렴하다
2733	저류	貯溜	저류
2734	저류하다	貯溜	(물 등을) 가두어∨두다
2735	저명	著名	이름난, 저명한
2736	저목장	貯木場	나무창고
2737	저수	貯水	저수(貯水)
2738	저수시설	貯水施設	저수시설
2739	저수조	貯水槽	저수조
2740	저습지	低濕地	저습지(低濕地)
2741	저자	著者	지은이
2742	저지 고지	低地高地	낮은 땅 높은 땅, 낮은 지역 높은 지역
2743	저지하다	沮止	막다, 막아내다
2744	저촉	抵觸	불일치
2745	저촉되다	抵觸	어긋나다, 일치하지∨아니하다, 일치하지∨않다
2746	저치	貯置	저장
2747	저판	底板	밑판
2748	저하하다	低下	(처우를) 낮추다, (처우가) 낮아지다, (기능이) 떨어지다
2749	저해하다	沮害	방해하다, 해치다
2750	적격자	適格者	자격에 적합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조건에 적합한 사람
2751	적격하다	適格	적격하다
2752	적기	適期	제때, 알맞은 시기, 제철, 적기
2753	적대	赤帶	붉은색 띠
2754	적등	赤燈	붉은색 등
2755	적립하다	積立	적립하다
2756	적발하다	摘發	적발하다, 들추어∨내다
2757	적부	適否	적합∨여부
2758	적색	赤色	붉은색
2759	적설	積雪	적설, 눈∨쌓임
2760	적송	積送	(물품을) 실어∨보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761	적송방법	積送方法	실어 보내는 방법
2762	적송지	積送地	적송지(積送地)
2763	적시하다	摘示	구체적으로 제시하다
2764	적시	適時	제때, 적시
2765	적요란	摘要欄	비고란
2766	적용범위	適用	적용∨범위
2767	적의한	適宜	마땅한, 적절한
2768	적재고	積載庫	(쌓아 두는) 창고, 적재고
2769	적재고	積載高	적재 높이
2770	적재지	積載地	짐 싣는 곳, 적재지
2771	적재하다	積載	(짐을) 싣다
2772	적전	敵前	적전(敵前)
2773	적정하다	適正	적절하다, 알맞다, 적정하다(적정 수준)
2774	적정한	適正	적절한, 적당한, 적정한
2775	적조	赤潮	적조
2776	적출	積出	(짐을)실어냄, 적출
2777	적출하다	摘出	들어내다, 꺼내다, 끄집어내다
2778	적취	摘取	꺼내 가짐
2779	적하	積下	(짐) 내리기
2780	적하	積荷	(짐) 싣기, (짐) 쌓기, 쌓아 놓은 물품, 적화(積貨)
2781	적하목록	積荷目錄	화물∨목록, 짐∨목록
2782	전	前	∨전
2783	전	田	밭
2784	전가하다	轉嫁	넘기다, 떠넘기다, 미루다
2785	전공상	戰公傷	전상·공상
2786	전과	前科	전과
2787	전과	前過	과거의 잘못, 전과(前過)
2788	전기매트	mat	전기∨매트
2789	전단	傳單	전단
2790	전단	前段	∨전단
2791	전답	田畓	논밭
2792	전대	轉貸	다시 빌려 줌, 전대(轉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793	전대	前貸	미리 빌림
2794	전대하다	轉貸	다시 대여하다, 다시 빌려 주다 전대(轉貸)하다
2795	전도	轉倒	엎어짐, 쓰러짐, 전도
2796	전도	前渡	선지급, 미리∨지급
2797	전득자	轉得者	넘겨받은 사람, 넘겨받은 자
2798	전등기	前登記	종전∨등기
2799	전락하다	轉落	굴러 떨어지다
2800	전말	顚末	경위
2801	전말조사	顚末調査	경위조사
2802	전매하다	轉賣	다시 팔다, 전매(專賣)하다
2803	전면	前面	앞면
2804	전몰	戰歿	전사
2805	전문증거	傳聞證據	전문증거(傳聞證據)
2806	전방	前方	앞쪽
2807	전복	顚覆	뒤엎음, 뒤집힘, 전복
2808	전분	澱粉	녹말
2809	전사	轉寫	복사
2810	전속하다	專屬	전속(專屬)하다
2811	전수하다	傳授	넘겨주다, 전해주다, 전수하다
2812	전승	傳承	전하여 이어감, 전승
2813	전업	專業	전업, 전문업
2814	전업	轉業	업종∨바꿈, 업종∨전환, 직업전환
2815	전용	專用	전적으로 사용, 전용(專用)
2816	전원	全員	모든 사람, 모두, 전원
2817	전월	前月	지난달
2818	전일	前日	전날
2819	전임의	專任	전담하는
2820	전입하다	轉入	전입하다
2821	전자오르간	organ	전자오르간
2822	전작	田作	밭농사
2823	전작물	田作物	밭작물
2824	전장	全長	전체∨길이
2825	전쟁종지	戰爭終止	전쟁이 끝남
2826	전조	前條	앞 조문
2827	전조등	前照燈	전조등
2828	전지	戰地	전쟁∨지역, 전쟁터
2829	전차금	前借金	미리 빌려 준 돈, 미리 지급한 돈, 미리 준 돈
2830	전책임	全責任	모든 책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831	전체	全體	전체
2832	전촉	轉囑	위촉, 다시 위촉, 촉탁, 다시 촉탁
2833	전촉하다	轉囑	촉탁하다, 전촉하다, 다시 위촉하다, 다시 맡기다, 다시 촉탁하다
2834	전출하다	轉出	옮겨가다, 전출(轉出)하다
2835	전파하다	傳播	퍼뜨리다, 전파하다
2836	전폐	全廢	아주 그만둠, 모두 없앰
2837	전표면	前表面	앞∨표면, 앞∨겉면
2838	전해	電解	전기분해
2839	전행하다	專行	오로지 ~가 하다, 오로지 ~만이 한다
2840	전환하다	轉換	바꾸다, 전환하다
2841	전후	前後	앞뒤, 순서
2842	전후양시에	前後兩時	앞뒤의 두∨시점에
2843	절감하다	節減	줄이다, 절약하다, 절감하다
2844	절개하다	切開	째다, 자르다, 절개(切開)하다
2845	절단	切斷	자르기, 절단
2846	절반하다	折半	반으로 가르다, 반씩 나누다
2847	절사	切捨	끊어∨버림, 버림
2848	절상	切上	값∨높임, 값∨올림
2849	절상하다	切上	올리다, 끊어∨올리다
2850	절손	切損	부러짐, 잘려∨없어짐, 절손(切損)
2851	절·성토 구간	切土, 盛土	절토·성토∨구간, 절토(切土)·성토(盛土) ∨구간
2852	절연차폐체	絶緣 遮蔽體	절연·차단∨물체
2853	절엽	切葉	절엽(切葉)
2854	절지	切芝	절지(切芝), 떼 뜨기
2855	절차를 취하다	節次	절차를 밟다, 차례를 밟다, 순서를 밟다
2856	절취	切取	자름, 자르기, 잘라냄, 잘라∨가짐
2857	절취선	切取線	자르는 선
2858	절취하다	切取	자르다
2859	절취하다	竊取	훔치다
2860	절토	切土	땅깎기, 깎아냄, 절토(切土)
2861	절하	切下	절하(切下)
2862	절화	折花	절화(折花)
2863	점멸	點滅	점멸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864	점멸하다	點滅	깜빡이다
2865	점·사용 허가		점용·사용∨허가
2866	점유하다	占有	점유하다
2867	점진적으로	漸進	점진적으로, 점차
2868	점토	粘土	찰흙, 점토
2869	점포	店鋪	가게, 점포
2870	점하다	占	차지하다
2871	점화하다	點火	불붙이다
2872	접견	接見	접견
2873	접대부	接待婦	접대부
2874	접도	椄刀	접칼(나무를 접붙일 때 쓰는 칼)
2875	접속되다	接續	이어지다, 연결되다, 접속되다
2876	접수처	接受處	접수처
2877	접안하다	接岸	접안(接岸)하다
2878	접지부분	接地部分	땅에 닿는 부분, 접지부분
2879	정	情	정황, 사정, 사실
2880	정격	定格	정격(定格)
2881	정관이 정하는	定款	정관에서 정하는
2882	정당에게	政堂	정당에 [사람, 동물] ~에게 [사물, 단체, 기관] ~에
2883	정도	精度	정밀도
2884	정려	精勵	모든 힘을 다함
2885	정려하다	精勵	부지런히 하다, 부지런히 힘쓰다, 노력하다
2886	정립	定立	정하여 세움, 정립
2887	정맥	精麥	보리쌀
2888	정박	碇泊	배가 머무름, 정박
2889	정박하다	碇泊	배가 머무르다, 정박하다
2890	정범	正犯	정범(正犯)
2891	정산	精算	정산(精算)
2892	정상	情狀	사정, 형편
2893	정수	淨水	깨끗한 물, 물을 깨끗이 함, 정수
2894	정시	呈示	내어 보임, 정시(呈示)
2895	정실로	情實	사사로이
2896	정신병자,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2897	정양	靜養	요양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898	정역	定役	정역(定役)
2899	정온	定溫	일정한 온도
2900	정온하다	靜穩	고요하고 편안하다, 평온하다
2901	정원수	定員數	정원(定員)
2902	정위	正位	바른 위치, 바른 자리
2903	정육	精肉	정육, 살코기
2904	정을 알고	情	(그) 사실을 알고, 정황(또는 사정)을 알고
2905	정전	正前	바로 앞
2906	정정	訂正	정정
2907	정정하다	訂正	바로잡다, 고치다 바로 고치다
2908	정제	錠劑	알약
2909	정제하다	整除	나누어 떨어지다
2910	정착된	定着	정착된
2911	정체되다	停滯	밀리다, 막히다, 정체되다
2912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따라
2913	정황	情況	형편, 상황, 정황
2914	제	諸	여러, 모든
2915	제관계	諸關係	모든 관계
2916	제2조제1항 제1호가목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조, 항, 호, 목 번호를 모두 붙여 쓴다]
2917	제5위	弟5位	다섯째∨자리
2918	제거	除去	없앰, 제거
2919	제고를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높이려고
2920	제고하다	提高	높이다, 제고하다
2921	제공하다	提供	제공하다
2922	제구	祭具	제사∨용구
2923	제규정	諸規定	모든 규정, 각종∨규정, 여러∨가지∨규정
2924	제기하다	提起	(소송을) 제기하다, (안을) 내다
2925	제동장치	制動裝置	제동장치
2926	제모	制帽	제모(制帽)
2927	제반	諸般	모든
2928	제방	堤防	제방, 둑
2929	제법	製法	제조법
2930	제빙	製氷	제빙
2931	제세	諸稅	각종 세금
2932	제세동기	除細動器	(자동)심장충격기
2933	제세공과금	諸稅公課金	각종 세금과 공과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934	제소	提訴	소송 제기, 제소
2935	제소하다	提訴	소송을 제기하다
2936	제수당	諸手當	모든 수당, 각종 수당
2937	제습기	除濕機	습기 제거기
2938	제·개정		제정·개정
2939	제염	除鹽	제염(除鹽)
2940	제염장	製鹽場	제염장(製鹽場)
2941	(~로부터) 제외하다		~에서 제외하다
2942	제원	諸元	규격·성능∨표시, 형태 특성, 규격 및 성능∨지표, 제원(諸元)
2943	제위험	諸危險	모든 위험, 각종 위험
2944	제조년월일		제조 연월일
2945	제조하다	製造	제조하다
2946	제증명	諸證明	각종 증명
2947	제지하다	制止	막다, 제지하다
2948	제진장치	除塵裝置	먼지 제거장치
2949	제진하다	除塵	먼지를 제거하다
2950	제초제	除草劑	제초제
2951	제하다	除	빼다
2952	제하여	際	~할 때에
2953	조 번호와 조 제목		조 번호와 조 제목은 서로 붙여 쓴다. [예: 제2조(정의) ------]
2954	조견표	早見表	일람표
2955	조기	早期	일찍, 이른 시일, 조기
2956	조달	調達	조달
2957	조달하다	調達	조달하다, 대다, 마련하다
2958	조도	照度	조명도, 조도
2959	조력	助力	도움, 조력
2960	조련	調練	훈련, 조련
2961	조례	條例	∨조례(시·도∨조례)
2962	조례가 정하는	條例	조례로 정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2963	조림	造林	조림(造林)
2964	조림자	造林者	나무 가꾸는 사람, 조림자(造林者)
2965	조미료	調味料	조미료
2966	조변	調辨	조달, 현지조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2967	조서	調書	조서
2968	조석	潮汐	조석(潮汐)
2969	조선대	造船臺	배 만드는 작업대
2970	조선자	造船者	배 만드는 자
2971	조선지	造船地	배 만든 곳, 배 만드는 곳
2972	조세탈루	租稅脫漏	조세 탈루, 조세 누락
2973	조속한	早速	빠른, 조속한
2974	조수	鳥獸	조수(鳥獸)
2975	조업	操業	작업
2976	조작하다	造作	조작하다
2977	조장하다 (종용하다)	助長	조장하다, 장려하다, 촉진하다
2978	조재	造材	조재(造材)
2979	조적	組積	벽돌쌓기
2980	조정	調整	조정
2981	조정	調停	조정(調停)
2982	조제하다	調劑	(약을) 조제하다
2983	조차	操車	조차(操車)
2984	조처	措處	처리, 조치
2985	조체	繰替	일시∨전용
2986	조치하다	措置	조치하다
2987	조타	操舵	조타, 조타(操舵)
2988	조타기	操舵機	조타기
2989	조해	潮害, 鳥害	조수(潮水) 피해, 조류 피해
2990	조회	照會	조회
2991	조회하다	照會	알아보다
2992	족하다	足	~로 충분하다, ~로 만족하다
2993	존부	存否	존재∨여부
2994	존속기간	存續期間	존속기간(存續期間)
2995	존안	存案	보존
2996	존치하다	存置	존치하다, 그대로 두다
2997	종	種	종
2998	종결하다	終結	마치다, 끝내다, 종결하다
2999	종계	種鷄	종계(種鷄: 씨닭), 씨닭, 종계
3000	종국	種麴	누룩 (씨)
3001	종균	種菌	씨균, 종균(種菌), 종균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002	종근	種根	씨뿌리, 종근(種根), 종근
3003	종돈	種豚	종돈(種豚: 씨돼지), 씨돼지, 종돈
3004	종란	種卵	씨알, 종란(種卵), 종란
3005	종람에 공하다	從覽	열람하게 하다, 볼 수 있도록 하다
3006	종래의	從來	종래의, 기존의
3007	종료	終了	종료
3008	종료시까지		끝날 때까지, 종료할 때까지, 종료∨시까지
3009	종료하다	終了	끝나다, 마치다
3010	종마	種馬	종마
3011	종묘	種苗	종묘
3012	종물	從物	종물(從物), 딸린 물건
3013	종봉	種蜂	씨벌, 종봉(種蜂)
3014	종서	縱書	세로쓰기
3015	종선	從船	부속선
3016	종신	終身	종신
3017	종양	種羊	종양(種羊)
3018	종양	腫瘍	종양
3019	종용하다	慫慂	부추기다
3020	종용 또는 유서한	慫慂, 宥恕	'종용', '유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순화함
3021	종자	種子	종자, 씨, 씨앗
3022	종지하다	終止	끝나다
3023	종축	種畜	씨가축
3024	종토	種兎	씨토끼
3025	종횡	縱橫	종횡
3026	좌단	左端	왼쪽∨끝
3027	좌란	左欄	왼쪽 칸, 왼쪽란
3028	좌수	座數	계좌∨수
3029	좌의	左	왼쪽의
3030	좌초하다	坐礁	좌초하다
3031	좌측	左側	왼쪽
3032	좌현	左舷	좌현
3033	죄적	罪迹	범행 흔적, 범죄 흔적
3034	죄적을 인멸하다	罪迹, 湮滅	범죄 흔적을 없애다
3035	죄증	罪證	범죄의 증거
3036	죄질	罪質	죄질, 죄의 성질
3037	주간	晝間	낮, 주간
3038	주개	廚芥	음식물∨찌꺼기
3039	주관절	肘關節	팔꿈치∨관절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040	주근	主根	원뿌리
3041	주금	株金	주식출자금
3042	주도	主導	주도
3043	주둔	駐屯	주둔
3044	주류	酒類	술, 술∨종류
3045	주류	駐留	주류
3046	주말하다	朱抹	붉은 선으로 지우다
3047	주물	主物	주물(主物), 주된 물건
3048	주민등록증을 묻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3049	주방	廚房	주방
3050	주벌	主伐	주된 벌목
3051	주범	主帆	주된 돛
3052	주벽	酒癖	술버릇
3053	주산단지	主産團地	주∨생산단지
3054	주서	朱書	붉은 글자
3055	주서 믹서	juicer mixer	과즙기
3056	주석	註釋	풀이, 주석
3057	주선	朱線	붉은 선
3058	주선하다	周旋	주선하다
3059	주수하다	注水	물을 넣다, 물을 주다
3060	주야	晝夜	밤낮
3061	주업	主業	주된 업무, 주업무
3062	주유	注油	주유
3063	주유하다	注油	주유하다, 기름(을)∨넣다
3064	주입	注入	주입
3065	주입하다	注入	주입하다
3066	주재	主宰	주관, 맡아서 처리
3067	주정	酒精	에탄올
3068	주지하다, 주지시키다	周知	주지하다, 주지시키다
3069	주파수대폭		주파수대역폭
3070	주취	酒醉	주취, 음주
3071	주취하다	酒醉	술에 취하다
3072	주화	鑄貨	주화
3073	주효하다	奏效	효과적이다
3074	죽	竹	죽(竹), 대나무
3075	죽목	竹木	죽목(竹木)
3076	준설	浚渫	준설(浚渫)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077	준수하다	遵守	준수하다, 지키다
3078	준용	準用	준용
3079	준하다	準	준하다
3080	중	中	∨중
3081	중간예납	中間豫納	중간예납
3082	중과세	重課稅	중과세
3083	중과세하다	重課稅	중과세하다
3084	중권엽	中卷葉	속말음잎
3085	중량	重量	무게, 중량
3086	중증	重症	중증
3087	중하다	重	무겁다, 심하다, 중하다
3088	중혼	重婚	이중혼인
3089	즉각	卽刻	즉각
3090	즉시급	卽時給	즉시 지급
3091	즉시로, 즉시로부터	卽時	즉시, 그때부터
3092	증빙서류, 증빙서	證憑書類	증명서류, 증명서
3093	증식	增殖	증식
3094	증식하다	增殖	증식하다, 불리다
3095	증적	證迹	증거흔적
3096	지		① ~지: 있는지 [막연한 의문] ② ∨지: 면직된∨지 [시간의 흐름]
3097	지가	地價	지가
3098	지급필통지	支給畢通知	지급완료통지
3099	지대	地代	토지 임대료
3100	지대하다	至大	매우 크다
3101	지득하다	知得	알게 되다
3102	지려천박	智慮淺薄	지적능력부족
3103	지력증진	地力增進	땅심 돋우기, 지력증진
3104	지령	指令	지령
3105	지령서	指令書	지령서
3106	지료	地料	토지 임대료
3107	지물	地物	지물(地物)
3108	지반침하	地盤沈下	지반침하
3109	지변	支辨	변제, 충당, 갚음
3110	지분	持分	몫, 지분
3111	지불	支拂	지급
3112	지불기	支拂期	지급시기, 지급기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113	지불하다	支拂	지급하다
3114	지소	池沼	못과 늪
3115	지속적으로	持續的	지속적으로
3116	지연하다, 지연되다	遲延	지연하다, 지연되다
3117	지장	指章	손도장
3118	지장목	支障木	장애가 되는 나무
3119	지장물	支障物	장애물, 방해물, 걸림돌, 지장물(支障物), [문맥에 맞춰 순화함]
3120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3121	지주목	支柱木	버팀목
3122	지중	地中	지하, 땅속, 지중(地中)
3123	지지대	支持臺	버팀대
3124	지지하다	支持	지지하다
3125	지질	地質	지질(地質)
3126	지체없이		지체∨없이
3127	지침	指針	지침, 길잡이
3128	지칭하다	指稱	지칭하다, 말하다, 일컫다, 가리키다
3129	지탱하다	支撐	지탱하다
3130	지편	紙片	종이∨조각
3131	지표	地表	지표
3132	지표수	地表水	지표수(地表水)
3133	지하부	地下部	지하부
3134	지형	地形	지형
3135	직결되다	直結	직결되다
3136	직경	直徑	지름
3137	직계존·비속	直系尊卑屬	직계존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3138	직권 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職權	직권으로 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3139	직근	直近	바로 위, 바로 아래
3140	직근상급기관	直近上級機關	바로 위 상급기관
3141	직립상태	直立狀態	직립상태
3142	직매하다	直賣	직매하다
3143	직상	直上	바로 위
3144	직상층	直上層	바로 위층
3145	직송	直送	직송, 바로 보냄
3146	직업보도	職業輔導	직업 교육·지원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147	직영	直營	직영
3148	직전	直前	직전
3149	직진	直進	직진
3150	직파	直播	직파(直播), 바로 뿌림
3151	직하	直下	바로 아래
3152	직하층	直下層	바로 아래층
3153	진균	眞菌	곰팡이, 진균
3154	진달	進達	전달
3155	진달하다	進達	보내다, 전달하다
3156	진동	振動	진동
3157	진력하다	盡力	힘쓰다
3158	진부	眞否	진정∨여부, 진위 여부
3159	진애	塵埃	먼지
3160	진의	眞意	진의
3161	진작	振作	진작
3162	진작하다	振作	북돋다, 북돋우다, 떨치다
3163	진정	眞正	진정(眞正)
3164	진화	鎭火	진화
3165	진화용	鎭火用	진화용(鎭火用)
3166	집결지	集結地	집결지
3167	집금	集金	수금
3168	집금수당	集金手當	수금수당
3169	집래하다	集來	모이다
3170	집수암거	集水暗渠	집수(集水)∨도랑, 물∨모으는∨도랑
3171	집유	集乳	집유(集乳)
3172	집진장치	集塵裝置	먼지∨제거장치, 먼지∨모음장치
3173	집필	執筆	집필, 글쓰기
3174	집필하다	執筆	집필하다, (글을) 쓰다
3175	집하장	集荷場	집하장, 집하장(集荷場)
3176	집합하다	集合	모이다
3177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178	집화	集貨	집화(集貨)
3179	집회	集會	집회
3180	징구하다	徵求	내게∨하다, 받다
3181	징벌에 처하다	懲罰	징계하다
3182	징수하다	徵收	징수하다, 징수(徵收)하다, 받다 * 거두어들이다(x)
3183	징후	徵候	조짐, 징후
3184	juice	juice	주스(○), 과즙, 쥬스(×)

大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185	차감하다	差減	빼다
3186	차관선	借款先	차관 공여자
3187	차광	遮光	빛가림
3188	차기	次期	다음, 다음번, 차기
3189	차년도	次年度	다음∨연도, 다음 해
3190	차단	遮斷	차단
3191	차단하다	遮斷	끊다, 차단하다
3192	차대	車臺	차대(車臺)
3193	차도, 차로	車道, 車路	차도, 차로
3194	차도보행	車道步行	차도보행
3195	차륜	車輪	차바퀴, 바퀴
3196	차마	車馬	차마
3197	차면시설	遮面施設	가림, 가림 시설
3198	차명	車名	차∨이름, 자동차∨이름
3199	차순위자	次順位者	바로 다음 순위자, 차순위자
3200	차용물	借用物	차용물
3201	차용하다	借用	차용하다
3202	차음	遮音	소리∨차단
3203	차인잔액	差引殘額	뺀 나머지 돈, 뺀 나머지 금액
3204	차임	借賃	임차료
3205	차임, 선임	車賃, 船賃	차비, 뱃삯
3206	차입금	借入金	차입금
3207	차입하다	差入	차입(差入)하다, [옥바라지인 경우 : 넣어 주다]
3208	차입하다	借入	차입(借入)하다
3209	차장	車掌	승무원
3210	차재	借財	차재
3211	차제	此際	이 기회에
3212	차종	車種	차 종류, 자동차 종류, 차종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213	차주	借主	차용인
3214	차질없이	蹉跌	차질 없이
3215	차체	車體	차체
3216	차출하다	差出	뽑아내다
3217	차폐	遮蔽	가림, 차폐
3218	차폐능력	遮蔽能力	차폐능력
3219	차폭등	車幅燈	차폭등(車幅燈)
3220	차형	車型	차 형태, 자동차 형태
3221	차환	借換	차환(借換)
3222	차회	次回	다음번, 다음∨회
3223	차후	此後	이후
3224	착공	着工	공사∨시작, 착공
3225	착급	着給	착급(着給)
3226	착모	着帽	착모
3227	착모하다	着帽	모자를 쓰다
3228	착색	着色	물들임, 착색
3229	착석하다	着席	앉다, 자리에 앉다
3230	착수	着水	착수(着水)
3231	착수하다	着手	시작하다
3232	착순	着順	도착순, 도착 순서
3233	착용하다	着用	입다, 쓰다, 신다, 착용하다
3234	착유	搾乳	젖∨짜기, 착유(搾乳)
3235	착정장치	鑿井	우물∨파는 장치
3236	착화	着火	점화
3237	찬동	贊同	찬성
3238	찬조	贊助	찬조, 찬조(贊助)
3239	찬조하다	贊助	뜻을 같이하다
3240	참관	參觀	참관, 살펴봄
3241	참작하다	參酌	고려하다, 참작하다
3242	참절하다	僭竊	불법으로 점령하다
3243	참칭	僭稱	거짓, 참칭(僭稱)
3244	창성	創姓	성(姓)을 지음, 창성(創姓)
3245	채광	採光	채광
3246	채굴하다	採掘	캐내다, 캐어내다
3247	채납	採納	채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248	채납하다	採納	(기부 등을) 받아들이다
3249	채수	採水	물∨퍼 올리기
3250	채염	採鹽	소금∨채취
3251	채조	採藻	해조∨채집
3252	채종	採種	씨받기, 채종(採種)
3253	채취	採取	캐내다, 얻다, 채취하다
3254	채탄	採炭	석탄∨캐기, 채탄
3255	채포물	採捕物	채취물
3256	책무	責務	책무
3257	책정	策定	정함, 책정
3258	처단하다	處斷	처벌하다
3259	처사	處事	일∨처리
3260	처소	處所	처소
3261	처한다, 처하다	處	(벌금에) 처한다, 처하다 * (벌금형을) 과(科)한다, 부과하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하다
3262	척결하다	剔抉	척결하다, 없애다
3263	척골	脊骨	척추뼈, 등골뼈
3264	척도	尺度	척도
3265	척추	脊椎	척추
3266	천거하다	薦擧	추천하다
3267	천공	穿孔	구멍 뚫기
3268	천반	天盤	천장의 암반
3269	천재·지변	天災·地變	천재지변
3270	천정	天障	천장
3271	천후상태	天候狀態	날씨 상태, 기후 상태
3272	철도임	鐵道賃	철도∨운임
3273	철야	徹夜	밤샘, 철야
3274	철야하다	徹夜	밤새우다
3275	철주	鐵柱	쇠기둥
3276	철폐하다	撤廢	없애다
3277	철하다	綴	철하다
3278	첨가하다	添加	첨가하다
3279	첨기하다	添記	추가로 적다, 함께 적다
3280	첨목	添木	버팀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281	첨부	添附	붙임, 첨부
3282	첨언하다	添言	덧붙여 말하다
3283	첨장	添狀	첨가 명세서
3284	첩부하다	貼付	붙이다
3285	첩용하다	貼用	붙이다
3286	청과	靑果	청과
3287	청무	廳務	관청 업무
3288	청부	請負	도급
3289	청수	淸水	맑은 물
3290	청인	廳印	관인(官印)
3291	청정하다	淸淨	맑고 깨끗하다, 청정하다
3292	청진	聽診	청진
3293	청취	聽取	청취
3294	청취하다	聽取	듣다
3295	체감하다	遞減	차례로 줄이다
3296	체결하다	締結	체결하다
3297	체납세	滯納稅	체납세
3298	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 지방세∨체납처분
3299	체납하다	滯納	체납하다
3300	체당금	替當金	대신∨지급금, 대신 지급한 비용
3301	체당하다	替當	대신 지급하다
3302	체득	體得	체득
3303	체득하다	體得	몸으로 익히다, 체득하다
3304	체류하다, 체재하다	滯留, 滯在	체류하다
3305	체약국	締約國	조약체결국
3306	체임	替任	교체임용
3307	체차	遞次	차례로
3308	체크	check	체크(○), 첵크(×)
3309	체크밸브	check valve	검사밸브
3310	체포하다	逮捕	체포하다
3311	체표	體表	몸의 표면
3312	초년	初年	첫해
3313	초두	初頭	첫머리, 처음
3314	초두목	梢頭木	초두목(梢頭木)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315	초래하다	招來	(지장을) 주다, 불러일으키다, 가져오다
3316	초병	哨兵	보초병
3317	초본류	草本類	풀류, 풀∨종류, 초본류(草本類)
3318	초빙	招聘	모셔 옴, 모심, 초빙
3319	초생지	草生地	풀밭
3320	초식가축	草食家畜	풀먹이 가축
3321	초일	初日	첫날
3322	초지	草地	초지, 풀밭, 꼴밭
3323	초지조성	草地造成	꼴밭∨조성, 풀밭∨조성, 초지∨조성
3324	촉구하다	促求	촉구하다
3325	촉탁	囑託	촉탁
3326	촉탁하다	囑託	(업무를) 맡기다, 촉탁하다
3327	총가	銃架	총∨받침대
3328	총괄적	總括的	종합적, 전체적
3329	총리령이 정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3330	총·포		총포
3331	총용뇌관	銃用	총∨뇌관
3332	총용실포	銃用	총알
3333	총종	銃種	총∨종류, 총의 종류
3334	총체적	總體	전체적
3335	최고	催告	독촉
3336	최다액	最多額	최다액, 최다액(最多額)
3337	최단	最短	최단, 최단(最短), 가장 짧음
3338	최대경	最大徑	최대∨지름
3339	최악	最惡	최악, 가장∨나쁨
3340	최장	最長	최장, 최장(最長), 가장∨긺
3341	최종일	最終日	최종일, 마지막∨날
3342	최초	最初	처음, 맨∨처음, 최초
3343	최하위	最下位	맨 아래, 제일 낮은, 최하위
3344	추계	推計	어림셈, 추정, 추계
3345	추궁하다	追窮	캐묻다, 따져∨묻다, 추궁하다
3346	추기하다	追記	추가로 적다
3347	추락하다	墜落	추락하다
3348	추불	追拂	추가 지급
3349	추산	推算	추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350	추산하다	推算	어림잡다, 미루어서 계산하다
3351	추서	追敍	추서
3352	추송하다	追送	추가로 보내다, 덧붙여 보내다
3353	추업	醜業	'추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추한 업종', '추한 직업'과 같이 문맥에 맞은 단어로 순화함
3354	추완하다	追完	추후∨보완하다
3355	추월	追越	앞지르기
3356	추이	推移	추이
3357	추인	追認	추인
3358	추적하다	追跡	추적하다
3359	추지하다	推知	추측하여 알다, 미루어 알다
3360	추징	追徵	추가∨징수
3361	추출하다	抽出	추출하다
3362	추후	追後	나중, 이다음, 뒤, 다음, 추후
3363	추흔	醜痕	흉한 흉터
3364	축거	軸距	앞뒤바퀴의∨거리
3365	축분	畜糞	축분(畜糞), 가축∨똥
3366	축사	畜舍	축사, 가축우리
3367	축소하다	縮小	축소하다, 줄이다
3368	축적하다, (누적하다)	蓄積	축적하다(누적하다)
3369	축제	築堤	둑 쌓기, 축제(築堤)
3370	축조	築造	축조
3371	축종	畜種	가축의 종류, 가축의 종자
3372	축척	縮尺	축척
3373	출감	出監	출소
3374	출구	出口	출구, 나가는 곳
3375	출급	出給	출급, 내줌
3376	출두	出頭	출석
3377	출두하다	出頭	출석하다
3378	출산	出産	출산
3379	출선하다	出船	배가 떠나다, 배가 출발하다, 출선(出船)하다
3380	출소	出訴	소∨제기
3381	출수	出水	출수
3382	출어	出漁	출어
3383	출연	出捐	출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384	출원	出願	출원
3385	출입구, 출·입구	出入口	출입구, 출입문
3386	출자좌	出資座	출자계좌
3387	출재	出財	출재(出財)
3388	출재하다	出財	출재(出財)하다, 재산을 내놓다
3389	출정	出廷	법정∨출석
3390	출정하다	出廷	법정에 출석하다
3391	출주하다	出走	경주에 내보내다
3392	출처	出處	출처
3393	출하	出荷	출하
3394	출하하다	出荷	실어∨내다, 출하하다
3395	출항하다	出港	(배가) 나가다, 출항하다
3396	출현하다	出現	나타나다, 출현하다
3397	충기판실		충기밸브실
3398	충당하다	充當	충당하다
3399	충용	充用	충용(充用)
3400	충용하다	充用	보충하여 쓰다
3401	충원	充員	충원
3402	충원하다	充員	인원을 채우다
3403	충전하다	充塡	채우다, 충전하다
3404	취거하다	取去	가져가다
3405	취급하다	取扱	취급하다
3406	취락	聚落	취락, 촌락
3407	취사	炊事	밥 짓기, 부엌일, 취사
3408	취사장	炊事場	취사장
3409	취소있은 후		취소된 후
3410	취약점	脆弱點	취약점
3411	취입	取入	끌어들임
3412	취입	吹入	녹음
3413	취지	趣旨	취지
3414	취집	聚集	수집
3415	취집하다	取集	수집하다
3416	취체	取締	단속, 규제
3417	취출	取出	꺼냄
3418	취침시간	就寢時間	취침시간
3419	취하	取下	취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420	취합하다	聚合	모으다
3421	츄잉껌	chewing gum	추잉껌(○), 츄잉검(×)
3422	측구	側溝	옆도랑, 곁도랑, 겉도랑
3423	측방	側方	옆부분, 옆쪽
3424	측벽	側壁	측벽(側壁)
3425	측약	側藥	마찰제, 마찰약
3426	측정하다	測定	측정하다, 재다
3427	측표	測標	측량표지
3428	측후	測候	기후∨측정, 기상∨측정
3429	층고	層高	층고(層高), 층과 층 사이의 높이
3430	치골	恥骨	치골
3431	치사하다	致死	치사(致死)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다, 죽음에 이르게 하다, 죽게 하다
3432	치상하다	致傷	치상(致傷)하다, 상해에 이르게 하다, 다치게 하다
3433	치아	齒牙	치아, 이
3434	치아우식증		충치
3435	치어	稚魚	어린∨물고기, 치어(稚魚)
3436	치유	治癒	치료, 치유
3437	치잠	稚蠶	어린누에
3438	치주질환		잇몸병
3439	치차	齒車	톱니바퀴
3440	치탈	褫奪	박탈
3441	치패	稚貝	어린 조개
3442	침구	寢具	침구
3443	침목	枕木	받침목, 침목
3444	침몰품	沈沒品	침몰품
3445	침몰하다	沈沒	침몰하다
3446	침수	沈水	침수
3447	침전물	沈澱物	침전물
3448	침탈	侵奪	침탈
3449	침하	沈下	침하
3450	침하하다	沈下	내려앉다
3451	칭량	秤量	무게 측정

ㅋ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452	카드	card	카드
3453	카탈로그	catalog	카탈로그
3454	캠핑	camping	야영
3455	커튼	curtain	커튼
3456	커피숍	coffee shop	커피숍(○), 커피숖(×)
3457	컨베이어	conveyor	컨베이어(○), 콘베이어(×)
3458	컨테이너	container	컨테이너(○), 콘테이너(×)
3459	컬러	color	컬러(○), 칼라(×)
3460	컵	cup	컵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461	케이블	cable	케이블
3462	코드	cord	코드
3463	코스	course	코스, 과정, 경로
3464	코치	coach	코치
3465	콘택트렌즈	contact lens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
3466	콘텐츠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3467	쿠폰	coupon	쿠폰
3468	퀴즈	quiz	문답
3469	크레인	crane	기중기
3470	클립	clip	클립
3471	캐비닛	cabinet	캐비닛(○), 케비넷(×)

ㅌ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472	타, 타~	他	다른 것, 다른∨~
3473	타가	他家	다른∨집, 남의∨집
3474	타당성 여부, 타당성 유무	妥當性	타당성, 타당한지
3475	타력	惰力	타력(惰力)
3476	타방	他方	다른 쪽
3477	타법과의 관계	他法	다른 법률과의 관계
3478	타설	打設	타설
3479	타안	他眼	다른 눈
3480	타에 우선하여	他, 優先	다른 것에 우선하여
3481	타인	他人	타인(단체나 법인이 포함된 경우에 사용), 다른 사람(사람인 경우에만 사용)
3482	타전하다	打電	전보나 무전을 치다, 타전하다
3483	타정	打釘	못을 박음
3484	타정총	打釘銃	못총
3485	타처	他處	다른 곳
3486	타형	他刑	다른 형(刑)
3487	탁도	濁度	혼탁도
3488	탁송하다	託送	운송을 위탁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489	탁월하다	卓越	뛰어나다
3490	탄자	彈子	탄알
3491	탈곡장	脫穀場	탈곡장
3492	탈구	脫臼	탈구, 삠
3493	탈루	脫漏	탈루, 누락
3494	탈선	脫線	탈선
3495	탈수	脫水	탈수
3496	탈의실	脫衣室	탈의실
3497	탈자	脫字	빠진 글자, 탈자
3498	탈지	脫脂	기름∨빼기, 탈지
3499	탈지면	脫脂綿	약솜, 탈지면
3500	탈취	奪取	탈취
3501	탈환하다	奪還	탈환하다
3502	탈회	脫會	탈퇴
3503	탐방	探訪	탐방
3504	탐지하다	探知	탐지하다
3505	탑승	搭乘	탑승
3506	탑승하다	搭乘	탑승하다, 타다
3507	탑재하다	搭載	탑재하다, 싣다
3508	태그	tag	태그(○), 택(×)
3509	태만히 하다	怠慢	게을리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510	태양	態樣	형태, 모습이나 형태
3511	택벌	擇伐	골라베기
3512	택지	宅地	택지
3513	터어키	Turkey	터키
3514	텔레비전	television	텔레비전(○), 텔레비젼(×)
3515	토물	吐物	구토물
3516	토사	土砂	토사, 토사(土砂), 흙과 모래, 흙모래
3517	토석	土石	토석, 토석(土石), 흙과 돌
3518	토성	土性	토양의 성질
3519	토압	土壓	토압(土壓), 땅의 압력
3520	토제	土堤	흙둑
3521	토지	土地	토지
3522	토취장	土取場	취토장(取土場), 채토장(採土場), 흙 파는 곳
3523	통고	通告	통지처분, 통고처분
3524	통고하다	通告	알리다
3525	통괄하다	統括	총괄하다
3526	통기	通氣	통기
3527	통리하다	統理	총괄하다
3528	통모함이 없이	通謀	모의하지 않고, 모의하지 아니하고
3529	통보	通報	통보
3530	통보하다	通報	통보하다, 알리다
3531	통산하다	通算	합산하다
3532	통상	通常	일반적으로, 일반, 보통
3533	통상우편물	通常郵便物	보통우편물
3534	통선	通船	통선(通船: 강과 바다를 오가는 배)
3535	통신일부인	通信日附印	통신 날짜도장
3536	통·폐합	統廢合	통폐합
3537	통용	通用	통용, 널리∨쓰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538	통정한	通情	상대방과 짜고 한
3539	통지	通知	통지
3540	통지하다	通知	알리다, 통지하다
3541	통찰	洞察	통찰
3542	통첩	通牒	통지
3543	통첩하다	通牒	알리다, 통지하다
3544	통할하다	統轄	총괄하다
3545	통항	通航	통항
3546	통화등기	通貨登記	현금등기
3547	퇴거하다	退去	퇴거하다, 나가다
3548	퇴비사	堆肥舍	두엄간
3549	퇴석하다	退席	퇴장하다
3550	퇴소하다	退所	퇴소하다
3551	퇴적	堆積	퇴적
3552	퇴정	退廷	법정∨퇴장
3553	퇴청	退廳	퇴근
3554	퇴치하다	退治	퇴치하다
3555	퇴행운전	退行運轉	후진∨운전
3556	퇴행하다	退行	퇴행하다
3557	투기	投棄	투기
3558	투기하다	投棄	버리다, 투기하다
3559	투수성	透水性	투수성(透水性)
3560	투시하다	透視	투시하다
3561	투영하다	投影	투영하다
3562	투입	投入	투입
3563	투항	投降	투항
3564	트럭	truck	트럭
3565	트렁크	trunk	화물칸, 트렁크
3566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3567	특사배달	特使	특별배달
3568	특식	特食	특별식
3569	특약	特約	특약
3570	특칙	特則	특칙

ㅍ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571	파출부	派出婦	가사도우미
3572	판	板	널빤지
3573	파고	波高	물결의 높이
3574	파기하다	破棄	파기하다
3575	파랑	波浪	파도
3576	파산관재인	破産管財人	파산관재인
3577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연인만 있는 경우에는 '사람')
3578	파쇄하다	破碎	분쇄하다
3579	파양	罷養	파양
3580	파열하다	破裂	파열하다
3581	파운드	pound	파운드
3582	파일	file	파일(○), 화일(×)
3583	파종	播種	씨뿌리기, 파종
3584	파출급	派出給	출장∨지급
3585	파훼	破毁	파손
3586	판독	判讀	판독
3587	판매대전	販賣代錢	판매대금
3588	판명	判明	밝혀짐, 판명
3589	판명되다	判明	밝혀지다
3590	판시	判示	판시
3591	패류	貝類	조개류
3592	패각류	貝殼類	조개껍데기류, 조가비류
3593	패션	fashion	패션
3594	패용	佩用	패용, 달기
3595	패용하다	佩用	달다
3596	팩시밀리	facsimile	팩시밀리
3597	팬츠	pants	바지
3598	퍼센트	percent	퍼센트
3599	펌프	pump	펌프
3600	페스트	pest	흑사병
3601	펜스	fence	울타리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602	편도	片道	편도
3603	편승하다	便乘	편승하다
3604	편제	編制	편제
3605	편중되다	偏重	편중되다, 치우치다
3606	편철	編綴	철, 편철
3607	편철하다	編綴	철하다
3608	편취	騙取	속여 뺏음, 편취
3609	편취하다	騙取	속여 뺏다
3610	평량	評量	양을 재다
3611	평문	平文	보통 문장
3612	평방미터	㎡	제곱미터
3613	평분	平墳	평분(平墳)
3614	평이	平易	평이
3615	평이하다	平易	평이하다, 쉽다
3616	평정	評定	평가, 평정
3617	폐기하다	廢棄	폐기하다
3618	폐산	廢酸	폐산(廢酸)
3619	폐색	閉塞	막힘, 막음, 폐색(閉塞), 폐색
3620	폐쇄하다	閉鎖	폐쇄하다
3621	폐야	肺野	허파면, 허파
3622	폐지	廢止	(사업의) 폐업, (시설의, 운영의) 폐지
3623	폐지한다 (~법은 이를 폐지한다)		~법은 폐지한다
3624	폐직되다	廢職	직책이(직위가) 없어지다, 직책을(직위를) 없애다
3625	폐질	廢疾	불치병
3626	폐천부지	廢川敷地	폐∨하천터, 폐∨하천땅
3627	폐치분합	廢置分合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침,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628	포가	砲架	총포받침대
3629	포대	布袋	포대
3630	포말소화기	泡沫消火器	거품소화기
3631	포상하다	褒賞	포상하다
3632	포스터	poster	포스터
3633	포승	捕繩	포승
3634	포유, 포유동물	哺乳	포유동물
3635	포장노면	鋪裝路面	포장된 노면
3636	포장도	鋪裝道	포장도로
3637	포전	圃田	채소밭
3638	포전매매	浦田賣買	밭떼기 매매, 밭떼기 거래, 포전매매(浦田賣買)
3639	포착하다	捕捉	포착하다
3640	포탈하다	逋脫	포탈하다
3641	포태하다	胞胎	임신하다
3642	포획하다	捕獲	포획하다
3643	폭등하다	暴騰	폭등하다
3644	폭로	暴露	폭로
3645	폭원	幅員	너비, 땅∨넓이
3646	폭주	暴注	폭주
3647	폭주하다	暴注	밀리다, 쌓이다, 밀려들다, 폭주하다
3648	폴리오	polio	척수성∨소아마비
3649	표기	表記	표기하다
3650	표류물	漂流物	표류물
3651	표목	標木	푯말
3652	표방	標榜	내세움, 표방
3653	표방하다	標榜	내세우다
3654	표상	表象	표시, 상징
3655	표시판		표지판
3656	표의자	表意者	의사∨표시자
3657	표지	標識	표지
3658	표찰	標札	표지판, 이름표
3659	표토	表土	표토(表土)
3660	푼		푼, 퍼센트
3661	품신	稟申	건의
3662	품행	品行	품행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663	풍압	風壓	풍압, 바람의 압력
3664	풍해	風害	풍해, 바람∨피해
3665	퓨즈, 퓨우즈	fuse	퓨즈(○), 퓨우즈(×)
3666	프로토콜	protocol	프로토콜(protocol)
3667	플라스틱	plastic	플라스틱(○), 프라스틱(×)
3668	플랑크톤	plankton	플랑크톤
3669	피교육자	被敎育者	교육 대상자, 교육을 받는 사람
3670	피병사	避病舍	격리 병동
3671	피복	被服	옷
3672	피석방자	被釋放者	석방된 사람
3673	피용자	被傭者	피용자(被傭者), 고용된 사람
3674	피징발자	被徵發者	징발당한 사람, 징발된 사람
3675	피탈	被奪	빼앗김, 탈취 당함
3676	피혁	皮革	가죽
3677	핀랜드	Finland	핀란드
3678	핀셋	pincette	핀셋
3679	필로티, 피로티	pilotis	필로티(○), 피로티(×)
3680	필요 또는 유익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3681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할 때에는
3682	필요있는, 필요∨있는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
3683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684	필요한		에 필요한, 에 관하여 필요한
3685	필자	筆者	글쓴이
3686	필증	畢證	증명서, 확인증, ~증
3687	필터	filter	여과기
3688	필하다	畢	마치다

ㅎ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689	에 한하다, 한한다 (~에 한한다)	限	~에 한정한다, ~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만을 할 수 있다, ~만을 말한다
3690	하 (~조건하에서는)	下	~하, 에서는, ~하는 *[이해 편]에 설명이 있음
3691	하계	夏季	하계, 여름철
3692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려면, ~하려는 경우에는, ~할 때에는, ~할 경우에는
3693	하구	河口	하구
3694	하구언	河口堰	하굿둑
3695	하근무복	夏勤務服	여름∨근무복
3696	하기	夏期	여름철, 하기(夏期)
3697	하는 때		할 때, 하는 경우
3698	하단	下端	하단, 아래쪽
3699	하달하다	下達	알리다
3700	하등의	何等	아무런
3701	하면	下面	아랫면, 하면(下面)
3702	하물	荷物	하물(荷物), 화물
3703	하방	下方	아래쪽
3704	하부선창	下部船艙	하부선창
3705	하상	河床	하천∨바닥, 하상(河床)
3706	하악골	下顎骨	아래턱뼈
3707	하여금(예: ~로 하여금)		~에게, ~을, ~이, ~로 하여금
3708	하여서		하여서
3709	~하여서는		~해서는
3710	하역	荷役	하역
3711	하오	下午	오후
3712	하자	瑕疵	하자, 흠, 결함, 잘못, 문제점
3713	하정모	夏正帽	여름용 정모(正帽)
3714	하주	荷主	화물주, 화주(貨主)
3715	하중	荷重	하중, 무게
3716	하지	下肢	다리
3717	하지 아니하는 한		~하는 경우 외에는,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718	하차	下車	하차
3719	하차하다	下車	차에서 내리다
3720	하청	下請	하도급
3721	하폭	河幅	하천∨폭
3722	하향하다	下向	하향하다
3723	하화하다	下貨	짐∨내리다, 짐을 내리다
3724	하회하다	下廻	밑돌다
3725	학령	學齡	취학연령
3726	한 때		하였을 때, 한 경우
3727	한·수해	旱·水害	한해(旱害)·수해
3728	한하여		~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 ~에만
3729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3730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두 차례만, 두 번까지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두 번만
3731	한해	旱害	가뭄∨피해, 한해(旱害)
3732	할 수 있은 후에		할 수 있게 된 후에 (예: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3733	할당	割當	배정
3734	할당하다	割當	배정하다
3735	할맥	割麥	보리∨정제, 정제∨보리, 할맥
3736	할인	割引	할인
3737	할증료	割增料	할증료
3738	함수	鹹水	짠물
3739	함양하다	涵養	기르다, 함양하다
3740	함에 족한		~할 수 있는
3741	함에는		할 때에는, 하는 경우에는
3742	함유량	含有量	함유량
3743	함유하다	含有	함유하다, 포함되어 있다, 들어 있다
3744	합산	合算	합산
3745	합의관할	合議管轄	합의관할
3746	합작투자	合作投資	공동투자, 합작투자
3747	합책	合冊	합책, 책∨합침, 장부∨합침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748	합책하다	合冊	책을 합치다, 장부를 합치다
3749	합철	合綴	한데 묶음, 합침
3750	항 번호		항 번호(①,②,③)는 다음 단어와 띄어 쓴다. (예: ①∨)
3751	항간	港間	항구∨사이
3752	항계	港界	항만경계
3753	항공서간	航空書簡	항공∨우편
3754	항공임	航空賃	항공∨운임
3755	항로	航路	뱃길, 항로
3756	항법	航法	항해∨방법
3757	항온	恒溫	항온, 일정한 온도
3758	항쟁	抗爭	항쟁
3759	해당	該當	해당∨○○
3760	해도	海圖	해도, 바다 지도
3761	해독하다	解讀	해독하다
3762	해득	解得	이해(理解)
3763	해머	hammer	해머 (○), 햄머 (×)
3764	해면	解免	해임, 해임 또는 면직
3765	해면	海面	해수면
3766	해면하다 해면되다	解免	물러나게 하다 (~에서) 물러나다
3767	해상	海床	바다∨밑바닥, 해상(海床)
3768	해상	海上	바다 위, 해상
3769	해소	解消	(사유가) 없어짐, 해소
3770	해소되다	解消	(사유가) 없어지다
3771	해수	海水	해수, 바닷물
3772	해이	解弛	해이
3773	해외	海外	국외
3774	해외동포	海外同胞	재외동포
3775	해저	海底	바다∨밑, 해저
3776	해조류	海藻類	해조류
3777	해철	解撤	해체
3778	해촉	解囑	해촉(解囑)[37]
3779	해충	害蟲	해충
3780	해태	海苔	김
3781	해태하다	懈怠	게을리하다, 제때 하지 아니하다, 제때∨하지∨않다 * 게을리∨하다 (×)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782	해풍	海風	바닷바람, 해풍
3783	해하다	害	해치다, 침해하다, 해를 끼치다
3784	해황	海況	바다 상황
3785	핸드폰		휴대전화(○) 핸드폰(×) 휴대폰(×)
3786	핸들	handle	운전대
3787	행선지	行先地	목적지
3788	행정처분		[붙여 씀] (건축허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인가취소, 등록취소, 변경허가, 변경인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중지명령, 착공신고, 폐쇄명령 등)
3789	행하다		하다, 수행하다 (사업을 하다, 업무를 수행하다)
3790	향수하다	享受	받다, 누리다
3791	향유	享有	누림, 향유
3792	향유하다	享有	누리다
3793	향응	饗應	향응
3794	향후	向後	향후, 다음
3795	허부	許否	허가∨여부
3796	허브	hub	중심지
3797	허여	許與	허락
3798	허위	虛僞	거짓
3799	허하다	許	허락하다, 허가하다
3800	헥타르	hectare	헥타르(○), 헥타아르(×)
3801	헬멧	helmet	안전모
3802	현등	舷燈	현등(舷燈)
3803	현상	現狀	현재 상태
3804	현시	顯示	표시
3805	현시하다	顯示	나타내다
3806	현안문제	懸案問題	현안
3807	현원	現員	현재∨인원
3808	현재증	現在症	현재∨증세
3809	현재하다	現在	있다
3810	현재하지 아니하다	現在	있지∨아니하다, 있지∨않다
3811	현저하다	顯著	현저하다
3812	현저한, 현저히	顯著	현저한, 현저히

37) 종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도 어렵고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813	현존선	現存船	현재∨있는∨배, 현존선
3814	현존하다	現存	현존하다
3815	혈통	血統	혈통
3816	혈흔	血痕	혈흔, 핏자국
3817	혐오감	嫌惡感	혐오감
3818	협각	夾角	끼인각, 사잇각
3819	협소하다	狹小	협소하다, 좁다
3820	협조전	協助箋	협조문
3821	형광램프	lamp	형광등
3822	형무소	刑務所	구치소, 교도소
3823	형상	形狀	모양 · 상태, 형상
3824	형상물	形象物	형상물
3825	형적	形迹	남은 흔적
3826	호객	呼客	호객
3827	호명	呼名	호명
3828	호명하다	呼名	이름을 부르다
3829	호선	互選	호선(互選)
3830	호선하다	互選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다, 호선(互選)하다
3831	호소	湖沼	호수와 늪, 늪, 호소(湖沼)
3832	호안	護岸	호안(護岸)
3833	호오스	hose	호스
3834	호우	豪雨	호우, 큰비
3835	호전	好轉	호전
3836	호전되다	好轉	좋아지다
3837	호창되다	呼唱	불리다
3838	호천	湖川	호수와 하천
3839	호출하다	呼出	호출하다
3840	호칭	呼稱	호칭
3841	호칭하다	呼稱	부르다
3842	호환	互換	호환
3843	혹은	或	또는
3844	혹한	酷寒	혹한
3845	혼거수용	混居收容	공동수용, 집단수용
3846	혼거실	混居室	공동생활실
3847	혼동되다	混同	혼동되다
3848	혼입	混入	섞어∨넣음, 혼입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849	혼재	混載	함께 실음
3850	혼재	混在	섞여 있음
3851	혼촉	混觸	뒤섞여 접촉, 잘못 이음
3852	혼합하다	混合	혼합하다
3853	혼혈아	混血兒	다문화가정 자녀
3854	혼화하다	混和	섞다
3855	화기주의	火氣注意	불조심
3856	화단	花壇	화단
3857	화물창	貨物艙	화물창고
3858	화분	花粉	꽃가루, 화분
3859	화일	file	파일(○), 화일(×)
3860	화주	貨主	화물주, 화주(貨主)
3861	화훼	花卉	화초
3862	확산	擴散	퍼짐, 확산
3863	확약	確約	확약
3864	확인인	確認印	확인∨도장
3865	확장	擴張	확장
3866	확지하다	確知	확실히 알다
3867	확진	確診	확정∨진단
3868	확폭	擴幅	(폭의) 확장
3869	환가	換價	환가(換價)
3870	환가할 수 있는	換價	(금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3871	환급	還給	환급
3872	환급금	還給金	환급금
3873	환급하다	還給	환급하다, 되돌려주다
3874	환기하다	喚起	환기하다
3875	환매하다	還買	환매하다
3876	환문하다	喚問	불러∨묻다
3877	환부불능	還付不能	반환∨불능, 반환∨불가능
3878	환부	還付	환부(還付), 반환
3879	환부하다	還付	반환하다
3880	환불하다	還拂	환불하다
3881	환소	還所	환소(還所)
3882	환소하다	還所	(교도소로) 데려오다
3883	환수	還收	환수(還收)
3884	환수하다	還收	환수하다, 돌려받다, 도로 거두어들이다
3885	환승하다	換乘	갈아타다, 환승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	
3886	환적하다	換積	옮겨 싣다, 환적(換積)하다
3887	환전	換錢	환전
3888	환전하다	換錢	환전하다
3889	환차손	換差損	환차손
3890	환축	患畜	병든 가축
3891	환취권	還取權	환취권(還取權)
3892	황색	黃色	노란색
3893	회개하다	悔改	뉘우치다
3894	회계년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3895	회람	回覽	회람, 돌려보기
3896	회람하다	回覽	돌려보다
3897	회뢰	賄賂	뇌물수수
3898	회무	會務	(위원회)의 사무
3899	회보	回報	회답
3900	회보	會報	회보
3901	회보하다	回報	(대답을) 통지하다
390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각한 손해
3903	회부	回附	(회의에) 부침, 회부
3904	회부하다	回附	(회의에) 부치다, (안건을 ~에) 넘기다
3905	회송하다	回送	돌려보내다
3906	회수하다	回收	회수하다
3907	회전익	回轉翼	회전날개
3908	회합	會合	모임
3909	회항	回航	회항
3910	횡	橫	가로
3911	횡단도로	橫斷道路	횡단보도
3912	횡단하다	橫斷	횡단하다
3913	횡령하다	橫領	횡령하다
3914	횡목	橫木	가로지름 막대
3915	횡서	橫書	가로쓰기
3916	횡전	橫轉	옆으로 회전
3917	횡치	橫馳	가로지름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	
3918	후	後	∨후
3919	후단	後端	∨후단
3920	후동목	後棟木	자투리 나무
3921	후면	後面	뒷면, 뒤쪽
3922	후방	後方	후방, 뒤쪽, 뒷방향
3923	후부	後部	뒷부분
3924	후불	後拂	후지급
3925	후사경	後寫鏡	뒷거울
3926	후폐	朽廢	낡아서 버림
3927	훈계하다	訓戒	훈계하다
3928	훈육	訓育	교육
3929	훈증	燻蒸	훈증(燻蒸)
3930	훈화	訓話	훈화
3931	훼기	毁棄	파기
3932	훼손하다	毁損	훼손하다
3933	휴대	携帶	휴대
3934	휴대하다	携帶	지니다
3935	휴식실	休息室	휴게실
3936	휴지하다	休止	(사업을) 휴업하다, (시설을, 운영을) 휴지하다
3937	흉고직경	胸高直徑	가슴높이지름
3938	흉골	胸骨	복장뼈
3939	흉부	胸部	흉부, 가슴∨부위
3940	흉위	胸圍	가슴둘레
3941	흑색	黑色	검은색
3942	흑판	黑板	칠판
3943	흠결	欠缺	흠
3944	흡습	吸濕	습기∨흡수
3945	흡입	吸入	흡입
3946	희귀	稀貴	희귀
3947	희귀목	稀貴木	희귀목
3948	희박하다	稀薄	희박하다, 드물다
3949	희석	稀釋	희석
3950	희석하다	稀釋	묽게 하다

Ⅱ 법령 유형별 작성례

1 법률 작성례

○ 기본 조
◇ 선택 조　　◎ 선택 항, 선택 호　　/ 선택 단어, 구, 절
< > 생략할 수 있는 부분

• 법률 작성례는 현행 법률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입법례를 기본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례로, 반드시 작성례에 맞춰서 법률안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제　　호

○○○법/○○○에 관한 법률

목적

제○조(목적) 이 법은 ~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규정하여 ~에 ~하는 것을/이바지하는 것을/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목적) 이 법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이란 ~를 위하여 ~를 제공하거나/갖추어 ~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업"이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학, 예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과 출판을 말한다.

제○조(정의) 이 법에서 "~업"이란 ~것을 말한다.

계획

제○조(★★종합계획) ① ★★장관은 ~을 위하여 ~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 관한 사항
2.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 필요한/관한/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수립할 때에는 미리/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위원회가 심의한 후 확정된다. 이 경우 ★★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필요하다고 인정하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제○조(★★위원회) ① ~을 심의하기/수행하기 위하여 ~부장관 소속으로/~부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에 관하여 ~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장관 소속으로/~부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 등에 필요한/관한(○)/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이사회)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허가

제○조(★★업의 허가) ① ★★업을 하려는/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과 ★★를 갖추어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업을 하려는/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과 ★★를 갖추어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중 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를 받아야 하며,/받아야 한다. 다만,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할 때에는 미리/할 때에는 사전에 제○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조건, 기한이나 ☆☆를 붙일 수 있다.

⑤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과 ★★ 등의 허가 세부기준과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않은 영업 등의 금지) ★★업자가 아닌 자는 ★★를 업(業)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하면 안 된다.

제○조(허가 요건)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제○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허가 제한)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각 호 내용 생략)

제○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자연인만 있는 경우에는 '사람')
3. 이 법, 「~법」 또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법」 또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조에 따른 시설과 ☆☆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 등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 년으로 한다.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년의 범

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장관은/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른 허가를 하면/할 때/하였으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기록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여야/내주어야 한다.

② ~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재발급받을 수 있다.

③ 허가증은 타인/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조(영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자/종전 사업자/종전 영업자의 지위/허가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허가 등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업자가 영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법인인 ★★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되는 법인

◎ ★★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법인인 ★★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업자/종전 사업자/종전 영업자의 지위//허가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허가 등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업자/종전 사업자/종전 영업자의 지위//허가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허가 등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조제○항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조제○항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조제○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간 새로 운 ★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상속으로 승계 받은 자는 제외한 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영업의 개시) ① 제○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업자는 영업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휴업, 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제○조에 따른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중단한/휴업한 경우

◎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휴업하려는 경우

2.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만둔/폐업한 경우

◎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만두려는/폐업하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 일정 기간 중단한 ★★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단 기간/휴업 기간은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관으로부터/시·도지사로부터 그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영업자 준수사항)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영업자 준수사항)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조(영업 제한) ★★장관은/시·도지사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의 영업 시간, 영업소의 관리·운영, 그 밖에 영업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조(허가취소 등)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조제○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조에 따른 기간(제○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날 때까지 ~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미달하게 된 경우
7. 제○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9. 제○조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1. 제○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한다.

신고

제○조(★★ 등의 신고 등) ① ★★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제○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장관/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장관은/시·도지사는//★★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바로/지체 없이 발급해야/내주어야 한다.

등록

제○조(★★업의 등록 등) ① ★★사업을 하려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장관/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업의 등록 등) ① ★★을 개설하려는 자는 그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장관/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퍼센트/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퍼센트/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비영리법인

④ 제1항에 따라 ★★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별로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장관/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등록기준) 제○조제○항에 따른 ★★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시설과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업의 등록을 하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 등록증과 ★★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은 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적힌/기재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일 이내에 ★★장관/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부령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과징금

제○조(과징금처분)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영업정지를 하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항과 제○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와 담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

제○조(이행강제금)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장관은/시·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장관은/시·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회를 초과할 수 없다./이행강제금은 ○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할 수 없다.

⑤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조(허가 등의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를/허가 또는 ★★를 받으려는 자는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수법인

제○조(사업) 공사는/공단은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각 호 생략)

제○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공단에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이사를 두고,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장관이 임면한다.

◎ 이사장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조(대리인의 선임 등) 법인의 대표는 직원 중에서 법인의 소송업무를 담당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대리인인 직원은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및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조(대리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지정한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을 갈음하여 공단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보고・검사

제○조(★★업자의 보고)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총리령으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자로 하여금/★★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조(보고·검사 등)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자의 사무실,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하기 ★★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검사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 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 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지도

제○조(행정지도 및 개선명령 등)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을 위하여 ★★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장관은/시·도지사는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을 하는 자에게 지도 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영업시설 등이 제○조제○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업자가 제○조제○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제○조제○항을 위반하면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폐쇄조치

제○조(폐쇄조치)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조제○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정당한 사 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나 그 대리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공표

제○조(☆☆의 공표)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한 경우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공표할 수 있다./공표하여야 한다.

청문

제○조(청문) ★★장관은/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할 때에는 미리/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조에 따른 허가취소
2. 제○조에 따른 등록취소

제◇조(청문) 제○조에 따라 ★★의 허가를 취소하려면/취소할 때에는 미리/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준용

제○조(준용규정)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에 관하여는 「~법」 중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위탁

제○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호의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 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각 호 내용 생략)

제◇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관이나 ~단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를 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제○조, 제△조 또는 제□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제○조 또는 제○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제○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조에 따른 ★★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조○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거짓 신고를 한 자
3. 제○조제○항에 따른 ★★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조를 위반하여 ★★장관/시·도지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조에 따른 ★★장관/시·도지사의 명령·검사·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 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의 개정규 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유효기간) 제○조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은 폐지한다.

제○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호 ~법은 폐지한다.

제○조(◆◆에 관한 적용례) 제○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의 규정에 따라 ★★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년까지는/★★개월까지는 제○조에도 불구하고 ★★업을 할 수 있다.

제○조(★★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한 허가는 이 법에 따라 ★★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한 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종전의 「~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에 따라 한 고시, 행정처분, 행정기관의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신고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업자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까지는 제○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와 ▲▲위원회로 본다.

제○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③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 작성례

○ 기본 조
◇ 선택 조 ◎ 선택 항, 선택 호 / 선택 단어, 구, 절
< > 생략할 수 있는 부분

• 대통령령 작성례는 현행 시행령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입법례를 기본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례로, 반드시 작성례에 맞춰서 대통령령 안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
제○조(목적) 이 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목적)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둔다.
적용범위
제○조(적용 범위) 일반직국가공무원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다.
예비허가
제◇조(예비허가 등)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조제○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에 제○조제○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조 및 이 영 제○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정식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시·도지사가 예비허가를 할 당시 정식 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했거나, 예비허가를 받은 후에 ★★장관/시·도지사로부터 정식 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에는 그 기한까지 정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예비허가신청이나 정식허가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공고, 허가 심사절차,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허가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등록기준
제○조(★★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조에 따른 일반★★업 또는 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조제○항제○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각 목 생략)

3. 일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과징금

제○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조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부과권자는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과징금을 낸 자에게/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조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원을 말한다.

③ 법 제○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될 때에는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법 제○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담보 변경 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않았을 때
3.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독촉

제○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않으면 부과권자는 납기(納期)가 지난 날부터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일 이내로 한다.

연체금

제○조(연체금) ① 공단은 법 제○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합계는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않을 수 있다.

제○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조제○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체납한 경우(사업장 가입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연체금의 징수) ① 법 제○조에 따른 연체금은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납기 초과일수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체금을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산금

제○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조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가산금 액수가 공단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공유재산

제○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법 제○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법 제○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법 제○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무상 양여 또는 사용·수익은 그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위탁

제○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 ★★장관은 제○조 및 제○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조, 및 제○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따른 회계와 재산관리 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이 회계의 재산의 매각·관리 및 그에 따른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설비기준

제○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조제○항에 따른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보공개청구

제○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조제○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위원회 – 설치

제○조(설치) …에 관하여 ★★장관/도지사/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도지사/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 기능

제○조(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심의·의결한다.
1.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고용 등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2.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위원회 – 구성

제○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위원장
2.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 – 임기

제○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 신분

제○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3. (이하 다른 사유 추가)

제◇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척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둔다.]
5. (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해촉 사유 추가 가능)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 위원의 결격사유

제○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하 다른 사유 추가)

위원회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회 – 위원장

제○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 운영

제○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 소위원회

제○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 분과위원회

제○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개 이내의/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 간사

제○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 소속 ~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 간사는 ~부 △△과장이 된다.

위원회 – 위원 수당

제○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 운영 세칙

제○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표

제○조(☆☆의 공표)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법 제○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법 제○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태료 – 부과·징수절차

제○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조○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그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법령은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법령에 규정된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만, 그 법령에 없는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법령에서 정할 수 있음.

부칙 – 특례

제○조(오염방지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지하수의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제○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조제○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제○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조(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특례)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때 별표 1에 따른 1종 및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3종 및 4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경한다.
② 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터 적용한다.
[※ 제1항은 특례이고, 제2항은 적용례에 해당함]

부칙 – 경과조치

제○조(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제○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기존의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른 ★★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업의 면허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업종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적합하지 않은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부령 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로부터 ★★업허가나 ★★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 직제

제○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방위·재난관리 집행기능이 ★★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310명(1급 1명, 2·3급 1명, 3·4급 1명, 4급 4명, 4·5급 7명, 5급 31명, 6급 34명, 7급 14명, 연구관 10명, 연구사 4명,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 명, 소방정 13명, 소방령 15명, 소방경 29명, 소방위 34명, 소방장 27명, 소방교 34명, 소방사 8명, 기능7급 3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 4급상당 1명, 5급상당 4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2명)을
★★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 서식 경과조치

제○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서식은 부칙 제○조제○호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항에 따른 서식을 제외한 서식 중 그 서식을 사용하려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 경과조치

제○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외투(육군장병 공용) 및 여군 일반외투(육군장병 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 벌칙 경과조치

제○조(벌칙 적용 시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과태료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조제○항 및 제○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조 제○항제○호	250	250	250
나. 법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법 제○조제○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조 제○항제○호	500	700	1,000

별표 – 과태료

[별표 ○]

★★업의 등록기준(제○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3 부령 작성례

○ 기본 조
◇ 선택 조 ◎ 선택 항, 선택 호 / 선택 단어, 구, 절
< > 생략할 수 있는 부분

- 부령 작성례는 현행 부령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입법례를 기본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례로, 반드시 작성례에 맞춰서 부령안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

제○조(목적) 이 규칙은 「~법」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에/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 소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의 선박

2.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 여객선
4.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

허가 신청

제○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조제○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조에 따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할/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영 제○조제○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조제○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교육확인서(법 제○조제○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영 제○조제○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법 제○조제○항제○호 또는 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③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그 영업허가관리대장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조제○호 및 제○호가목의 영업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업허가증과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
2. 영 제○조제○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영업허가증과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

④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렸으면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허가증

시설기준

제○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처분기준 – 정지, 취소

제○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동일한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분의 기준이 등록 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일 때에는 등록 등의 취소 또

는 해임명령을 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일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둘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등록신청

제○조(★★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제○항에 따른 ★★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업의 등록기준에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게 하는 업종인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업의 등록기준에서 시설·장비를 보유하게 하는 업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영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적은/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 등본은 제외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적은/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 등본을 포함한다.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일반★★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조제○항제○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법 제○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조제○항에 따라 건설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않을 때에는/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말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5. 외국인이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외국법인이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공장등록원부 등본

신고

제○조(★★업의 신고)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업의 종

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함으로써/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확인서(법 제○조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증
시설·설비기준
제○조(시설 및 설비기준)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제○항에 따른 ★★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과징금
제○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연체금
제○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영 제○조제○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된다) 3. 그 밖에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산금
제○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조제○항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가산금 액수가/가산금이 공단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제○조(설치) …에 관하여 ★★장관/도지사/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도지사/시장 소속으로 ~ 위원회를 둔다.
부칙 – 행정처분기준 경과조치
제○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3 ★★업자 및 ★★업자의 준수사항

제9호를 1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제9호를 2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산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진행되고 있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이 규칙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서식 경과조치

제○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XX년 7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복 경과조치

제○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 면허증 경과조치

제○조(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중 "유효기간"은 "적성검사기간"으로 본다.

부칙 - 각종 경과조치

제◇조(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설치된 안전표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처분기준 중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면 등록취소를 하고,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 시설기준 중

[별표 ○]

업종별 시설기준(제○조 관련)

1. ★★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건물 안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별표 – 시설·설비기준 중
[별표 ○] ★★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조 관련) 1. ★★업 가. 탈의실,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탈의실, 욕실 및 휴식실(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은 그 설치 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공간을 나눠서는 안 된다. 라. 욕조의 물을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례

축산물가공처리법[38]

현 행	개 정 안
畜産物加工處理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家畜"이라 함은 소·말·羊(염소 등 山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飼育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動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2. "畜産物"이라 함은 식육·포장육·原乳·食用卵·食肉加工品·乳加工品·알加工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사('은')가 바뀔 때, 조사까지 밑줄 긋는다】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동물': 한자를 한글로 변환만한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食肉)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의미 단위로 밑줄을 긋거나 끊는다. '축산물이란 식육'은 이어서 읽으면 오히려 어색해서 밑줄을 각각 그었다】 ·포장육·원유·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乳加工品) 【한글로 변환하면서 그 옆에 한자를 병기한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 모두에 밑줄을 긋는다】 ·알 가공품을 말한다.

38) 2010. 5. 25. 공포, 2011. 11. 26. 시행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반영되었고, 같은 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명 변경됨

현 행	개 정 안
2의2.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호' 번호를 고친 경우 마침표까지 밑줄을 긋는다】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畜産物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食品衛生法에 의한다. ~~ 이하 생략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마침표(.)는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 긋지 않을 수도 있되, 같은 법령 안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39]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표준규격화)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향상하게 하며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고칠 때, 두 개 이상의 단어 모두에 밑줄을 긋는다】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표준규격화) ① 【'①'→'①∨'과 같이 띄어쓰기만 바뀐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 절차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품질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중간에 낀 '품질인증을'이나 '자는'은 신·구가 동일하므로 밑줄 긋지 않아도 되지만, 앞뒤에 있는 단어가 모두 변경됐으면 중간에 낀 단어도 포함해서 밑줄을 그을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9) 2008. 3. 28. 공포·시행된 법률 제900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반영되었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은 2011. 7. 전부 개정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제명 변경됨

현 행	개 정 안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조사만 바뀐 경우 조사('의')와그 앞말('품질인증') 까지 모두 밑줄을 긋는다】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조사('에')는 신·구가 같으면 밑줄을 긋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기서 조사 '에'에 밑줄을 그은 것은 '때에는'에서 시작된 밑줄을 이 말과 의미상 별로 연결이 안 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까지 이어서 긋다보니 명사인 '규정'까지만 밑줄을 긋는 것보다는 조사 '에' 까지 밑줄을 긋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때에는'과 '제6조제4항의 규정'을 각각 밑줄을 긋든가 아니면 밑줄을 이어서 그으려면 조사 '에'까지 밑줄을 긋도록 한다】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게하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6조제1항에 【조사('에')는 신·구가 같으면 밑줄을 긋지 않는다】 따른 품질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나 수산물가공업과 【괄호 전체를 밑줄 그을 때에는 괄호 바로 앞에 있는 단어('생산자단체')도 밑줄을 긋는다. 그 단어가 신·구 같아도 밑줄을 긋는다】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 【조문('제32조')에 밑줄을 그을 때에는 바로 앞에 있는 법령 제명(' 「민법」 ')전체도 같이 이어서 밑줄을 긋는다】 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 【각호의 1'은 '각호'를 고치지 않더라도 항상 밑줄을 함께 긋는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숫자'(6')가 바뀌지 않더라도 숫자에 붙은 단어'(월')가 바뀌면 숫자까지 밑줄을 긋는다】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③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대상품목 및 대상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 바뀐 부분이 '조(항)'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내용 개정"이면 '조(항)' 전체(항 번호와 마침표까지 포함한다)를 밑줄 긋고, "순수 알법 개정"이면 달라진 부분만 밑줄을 긋는다(순수알법 개정일 때에도 각 호가 생기거나 항 없는 조가 되는 경우처럼 '조(항)'의 구조가 바뀐 경우에는 '조(항)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전체'를 밑줄 그을 수 있다】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 및 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와 등록신청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862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2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조사'(를')가 변경되지 않았지만 어구 전체를 밑줄 그어야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해되므로 조사'를'까지 밑줄을 그었다】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와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어미'(하게')도 조사처럼 신·구 동일하면 밑줄을 긋지 않지만, 2개 이상의 단어가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사와는 달리 어미가 변경되지 않았어도 어미까지 밑줄을 긋는다】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1.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2.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장' 제목을 띄어쓰기나 한글화만 하고, 제목의 글자 자체를 삭제, 추가, 변경하지 않았으면 밑줄을 긋지 않고'장 번호와 제목'만 신·구조문대비표에 써준다. 띄어쓰기나 한글화를 포함해서 아무 것도 고친 게 없으면 '장 번호와 제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쓰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제3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제16조(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 항'은 입안편집기에서 자동으로 줄 조정이 되지만, '호, 목'은 자동 조정이 안 되므로 수작업으로 '호, 목'의 현행과 개정안이 서로 줄이 맞도록 조정한다】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 등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① 제16조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현 행	개 정 안
5. 「농지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한농지전용의허가 6.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7.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국가는 굴패각매립으로 【단어('굴패각매립')중에서 일부('패각')만 변경 '[패각(貝殼)]'된 경우에도 단어 전체('굴패각매립')에 밑줄을 긋는다】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껍질을 까거나 굴 가공·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당해 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굴 패각(貝殼)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 【'굴양식어업인이나'와 '제25조'는 이어서 읽으면 어색하므로 밑줄을 이어 긋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제25조에'의 '에'까지 밑줄을 긋는다면 이 두 단어를 이어서 밑줄 그을 수 있다】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제21조(우선구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어미('하게')가 신·구 동일하므로 어미('하게')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할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1조(우선구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4조의2(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소속기관의 장,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항)’ 전체를 밑줄 그을 때, 개정 내용 중 대부분이 순수알법 개정이면 ‘조(항) 번호나 제목’은 밑줄 긋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
제25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①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제2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그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출하하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 또는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내용 개정 사항은 진한 글씨체로 쓰되, 맨끝에 있는 조사 (‘는’)는 보통 글씨체로 쓴다】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출하하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 생산·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점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점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 및 제2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4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내용 개정에 해당할 때, 개정안 '제2항'에 대응되는 부분이 '제4항의 정'이므로 '제4항' 뿐만이 아니라 '의 규정'도 진한 글씨체로 쓴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의 적합여부, 위해물의 혼입여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삭 제 【기존에 삭제된 항이 있는 경우, 현행란에는 '항 삭제'를 표시하되, 개정안란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해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생산·가공시설에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시설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현 행	개 정 안
3.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 또는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이 법 제19조에 따라 【내용 개정 부분은 진하게 표시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부분은 '수산업법 제19조'가 '이 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로 내용 개정된 것이므로 '이 법' 부분만 진하게 표시하면 안되고, '이 법 제19조' 전체를 진하게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한다)을 등록한 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에서 '그'와 '밖의'는 각각 하나의 단어이고 '그'는 신·구동일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그 밖에')를 밑줄 긋는다】 정하는 경우
제32조(검사증서의 교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어미('할')는 신·구 동일하므로 밑줄을 긋지 않는다】 수 있다.	제32조(검사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1조(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을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장순서를 바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밑줄 긋는다】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검역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등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패류독소·식중독균·항생물질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을, 【마지막에 오는 쉼표(,)는 쉼표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밑줄을 긋지 않는다】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前段階)의 수산물에 대하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현 행	개 정 안
여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수·어장·자재 등 2.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수산물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用水)·어장·자재 등 2.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결과 잔류된 중금속·패류독소·식중독균·항생물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때에는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생산단계인 경우에 한한다. 【마지막에 오는 마침표(.)는 밑줄을 긋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밑줄상태가 현행과 개정안 양쪽이 서로 같고 다른 모든 조문에서도 서로 같아야 한다】 1. 허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의 초과사실 통지 2.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방법의 지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그 조치받은 내용에 따라 그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2.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어장·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제53조(벌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내용 개정은 하지 않으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조문에 후단, 단서, 각 호, 호, 목, 항 등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등 ‘조’나 ‘항’ 등의 전체 구조를 바꾼 경우에는 그 조문 내용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단, 조 번호와 제목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면 밑줄을 긋지 않는다】	제53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Ⅲ 어문 규정

1. 이 규정집은 그동안 정부가 고시한 어문 규정(이하 “고시본”이라 부른다)을 한데 묶은 것으로, 국민의 어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2. 이 규정집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년 3월 28일)

나. ‘표준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3호(2017년 3월 28일)

다. ‘외래어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2017년 3월 28일)

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42호(2014년 12월 5일)

* 국립국어원 누리집 참조

3. 각각의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체재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고시본에서 보인 설명 방식과 용어 등을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가. 띄어쓰기는 현행 규정에 따랐다. 띄어쓰기에 원칙 규정과 허용 규정이 있을 경우, 될 수 있으면 원칙 쪽을 따르되, 편(編)·부(部)·장(章)·절(節)·항(項)이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 등에는 편의상 허용 쪽을 따랐다.

예: 제1편, 제2부, 제5장, 제3절, 제6항.
(원칙: 제1 편, 제2 부, 제5 장, 제3 절, 제6 항.)

나. 문장 부호의 이름과 용법도 현행 규정에 따랐다.

예: 짧은 줄표(-) → 붙임표

다. 규정문에 따른 용례임을 나타내는 '보기' 표시를 삭제하였다.

예: 보기 make[meik] 메이크 → make[meik] 메이크

4. 각 규정문에서 사용된 용어가 각기 달리 나타나더라도 이들을 학교 문법 용어에 따라 통일하지 아니하였다. 고시본 자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대로 보이기 위함이다.

예: 긴소리: '표준 발음법'* 제6, 7항

장 음: '외래어 표기법' 제7항

끝소리: '한글 맞춤법' 제21, 28, 29, 40항

말 음: '표준 발음법'* 제11항

* 국립국어원 누리집 참조

5. 고시본의 표기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차이를 보이는 것에는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주에서 처리하였다.

예: 소리나다 (각주) '소리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리 나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6항

6. 여기에서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원말 앞에 씀.

~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씀.

- 복합어의 결합 단위 사이에 씀.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때 씀.

/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복수 표준어임을 나타낼 때 씀.

1.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 286

제2장 자모 ····· 286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286

제1절 된소리 ····· 286
제2절 구개음화 ····· 287
제3절 'ㄷ' 소리 받침 ····· 287
제4절 모음 ····· 287
제5절 두음 법칙 ····· 288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 290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290

제1절 체언과 조사 ····· 290
제2절 어간과 어미 ····· 291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294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297
제5절 준말 ····· 299

제5장 띄어쓰기 ····· 302

제1절 조사 ····· 302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302
제3절 보조 용언 ····· 303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303

제6장 그 밖의 것 ····· 304

부 록 문장 부호 ····· 308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 과 같이 정한다.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음 :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 음 :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썩
어찌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	(○)	(×)
맏이	마지	핥이다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걷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닫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돗자리	엇셈	웃어른	핫옷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제4절 모음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	(×)	(○)	(×)
계수(桂樹)	게수	혜택(惠澤)	헤택
사례(謝禮)	사레	계집	게집
연몌(連袂)	연메	핑계	핑게
폐품(廢品)	페품	계시다	게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제9항 '의' 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	(×)	(○)	(×)
의의(意義)	의이	늴리리	닐리리
본의(本義)	본이	띄어쓰기	띠어쓰기
무늬[紋]	무니	씌어	씨어
보늬	보니	틔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늴리리	닐리리	유희(遊戱)	유히

제5절 두음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	(×)	(○)	(×)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	(×)	(○)	(×)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 몇 리냐?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	(×)	(○)	(×)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치열(齒列)	치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전율(戰慄)	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 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 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	(×)	(○)	(×)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	(○)	(×)
딱딱	딱닥	꼿꼿하다	꼿곳하다
쌕쌕	쌕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눙눅하다
똑딱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쓱싹쓱싹	쓱삭쓱삭	싹싹하다	싹삭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쌉쌀하다	쌉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씁쓸하다	씁슬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짭짤하다	짭잘하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밭이	밭을	밭에	밭도	밭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곬이	곬을	곬에	곬도	곬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좇다	좇고	좇아	좇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늙다	늙고	늙어	늙으니
젊다	젊고	젊어	젊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훑다	훑고	훑어	훑으니
읊다	읊고	읊어	읊으니
옳다	옳고	옳아	옳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또 저것은 먹이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적 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얇아	얇아도	얇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베어	베어도	베어서
쉬어	쉬어도	쉬어서	저어	저어도	저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희어	희어도	희어서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	노니	논	놉니다	노시다	노오
불다 :	부니	분	붑니다	부시다	부오
둥글다 :	둥그니	둥근	둥급니다	둥그시다	둥그오
어질다 :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긋다 :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	지어	지으니	지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까맣다 :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마오
동그랗다 :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라오
퍼렇다 :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러오
하얗다 :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야오

4. 어간의 끝 'ㅜ, ㅡ'가 줄어질 적

푸다 :	퍼	펐다	뜨다 :	떠	떴다
끄다 :	꺼	껐다	크다 :	커	컸다
담그다 :	담가	담갔다	고프다 :	고파	고팠다
따르다 :	따라	따랐다	바쁘다 :	바빠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적

걷다[步] :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싣다[載] :	실어	실으니	실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ㅜ'로 바뀔적

깁다 :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	구워	구우니	구웠다
가깝다 :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괴롭다 :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밉다 :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적

하다 :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적

이르다[至] :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적

가르다 :	갈라	갈랐다	부르다 :	불러	불렀다
거르다 :	걸러	걸렀다	오르다 :	올라	올랐다
구르다 :	굴러	굴렀다	이르다 :	일러	일렀다
벼르다 :	별러	별렀다	지르다 :	질러	질렀다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훑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앎	만듦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髢]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몫몫이	샅샅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홑지다	넋두리	빛깔	엿댕이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낚시	늙정이	덮개	뜯게질	갉작갉작하다	갉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굵다랗다	굵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랗다	늙수그레하다	얽죽얽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큼하다	얄따랗다	얄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실컷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낚이다	쌓이다	핥이다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돋구다	솟구다	돋우다
갖추다	곧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밭치다	부딪치다
뻗치다	엎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쏟뜨리다/쏟트리다	
젖뜨리다/젖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흩뜨리다/흩트리다	

[붙임] '-업-,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	(×)
깔쭉이	깔쭈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쌕쌕이	쌕쌔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펄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삐죽이	삐주기	홀쭉이	홀쭈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 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꽹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뻐꾸기	얼루기	칼싹두기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	(×)	(○)	(×)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숙덕이다	숙더기다
끄덕이다	끄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처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껄이다	지꺼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헐떡이다	헐떠기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 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꽂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밑천
부엌일	싫증	웃안	웃옷	젖몸살	첫아들
칼날	팥알	헛웃음	홀아비	홑몸	흙내
값없다	겉늙다	굶주리다	낮잡다	맞먹다	받내다
벋놓다	빗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샛노랗다	시꺼멓다
싯누렇다	엇나가다	엎누르다	엿듣다	옻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따님(딸-님)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부손(불-손)
소나무(솔-나무)	싸전(쌀-전)	여닫이(열-닫이)
우짖다(울-짖다)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짇고리(바느질~)	사흗날(사흘~)	삼짇날(삼질~)
섣달(설~)	숟가락(술~)	이튿날(이틀~)
잗주름(잘~)	푿소(풀~)	섣부르다(설~)
잗다듬다(잘~)	잗다랗다(잘~)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댓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볏가리	부싯돌	선짓국	쇳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잿더미	조갯살	찻집	쳇바퀴
킷값	핏대	햇볕	혓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윷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욧잇	깻잎	나뭇잎	댓잎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촛국	콧병	탯줄	텃세
핏기	햇수	횟가루	횟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댑싸리(대ㅂ싸리)	멥쌀(메ㅂ쌀)	볍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것)	수탉(수ㅎ닭)	안팎(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것)	암탉(암ㅎ닭)

제5절 준 말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럭아
어제그저께	엊그저께
어제저녁	엊저녁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이	뭣이/무에
무엇을	뭣을/무얼/뭘

제34항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탔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폈다

[붙임 1] 'ㅐ, ㅔ'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갰다
내어	내	내었다	냈다
베어	베	베었다	벴다
세어	세	세었다	셌다

[붙임 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여	해	하였다	했다
더하	더해	더하였다	더했다
흔하여	흔해	흔하였다	흔했다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사/저, 왔/웠'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꽈	꼬았다	꽜다
보아	봐	보았다	봤다
쏘아	쏴	쏘았다	쐈다
두어	둬	두었다	뒀다
쑤어	쒀	쑤었다	쒔다
주어	줘	주었다	줬다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ㅙ, ㅞ'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괬다
되어	돼	되었다	됐다
뵈어	봬	뵈었다	뵀다
쇠어	쇄	쇠었다	쇘다
쐬어	쐐	쐬었다	쐤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뎌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텨	버티었다	버텼다
치이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제37항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다	쌔다	누이다	뉘다
펴이다	폐다	뜨이다	띄다
보이다	뵈다	쓰이다	씌다

제38항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쌔어 싸여	뜨이어	띄어
보이어	뵈어 보여	쓰이어	씌어 쓰여
쏘이어	쐬어 쏘여	트이어	틔어 트여
누이어	뉘어 누여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 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	(○)	(×)
-(으)ㄹ거나	-(으)ㄹ꺼나	-(으)ㄹ걸	-(으)ㄹ껄
-(으)ㄹ게	-(으)ㄹ께	-(으)ㄹ세	-(으)ㄹ쎄
-(으)ㄹ세라	-(으)ㄹ쎄라	-(으)ㄹ수록	-(으)ㄹ쑤록
-(으)ㄹ시	-(으)ㄹ씨	-(으)ㄹ지	-(으)ㄹ찌
-(으)ㄹ지니라	-(으)ㄹ찌니라	-(으)ㄹ지라도	-(으)ㄹ찌라도
-(으)ㄹ지어다	-(으)ㄹ찌어다	-(으)ㄹ지언정	-(으)ㄹ찌언정
-(으)ㄹ진대	-(으)ㄹ찐대	-(으)ㄹ진저	-(으)ㄹ찐저
-올시다	-올씨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ㄹ까? -(으)ㄹ꼬? -(스)ㅂ니까? -(으)리까? -(으)ㄹ쏘냐?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	(×)	(○)	(×)
심부름꾼	심부름군	귀때기	귓대기
익살꾼	익살군	볼때기	볼대기
일꾼	일군	판자때기	판잣대기
장꾼	장군	뒤꿈치	뒷굼치
장난꾼	장난군	팔꿈치	팔굼치
지게꾼	지겟군	이마빼기	이맛배기
때깔	땟갈	코빼기	콧배기
빛깔	빛갈	객쩍다	객적다
성깔	성갈	겸연쩍다	겸연적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

(○)	(×)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마추다
뻗치다(다리를 뻗친다. 멀리 뻗친다.)	뻐치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	(×)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	(×)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썩힌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걷히다	외상값이 잘 걷힌다.

걷잡다	걷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한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밭치다	술을 체에 밭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밭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흥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앎	앎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부록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 이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마침표(.)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ㄴ.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붙임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기.
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기

ㄱ.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ㄴ.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ㄱ.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ㄴ.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압록강은 흐른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건강한 몸 만들기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1919. 3. 1. 10. 1.~10. 12.

(3)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3·1운동	8·15 광복

(4)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가. 인명	ㄱ.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

[붙임]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2. 물음표(?)

(1)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점심 먹었어? 이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제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섯 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
지금? 뭐라고? 네?

[붙임 1]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 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붙임 2]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2)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1690?~1777?)의 자는 자청이고, 호는 우곡이다.

3. 느낌표(!)

(1)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
어머!

[붙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어, 벌써 끝났네.
날씨가 참 좋군.

(2)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야, 정말 재밌다!
지금 즉시 대답해!
앞만 보고 달리자!

(3)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4)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쓴다.

네!　　네, 선생님!
흥부야!　　언니!

4. 쉼표(,)

(1)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집을 보러 가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살기에 편한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이다.

다만, (가)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

(나)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2)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5, 6 세기　　6, 7, 8 개

(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저는 신뢰와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온바, 이번 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네, 지금 가겠습니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다.
나에게도 작은 소망, 이를테면 나만의 정원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열정, 이것이야말로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그 사실, 넌 알고 있었지?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님.
다시 보자, 한강수야.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들을 맞았다.

[붙임 1] 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붙임 2]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쓴다.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붙임] '쉼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5. 가운뎃점(·)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한(韓)·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분석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다만,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상·중·하위권 금·은·동메달
통권 제54·55·56호

[붙임] 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상, 중, 하위권 금, 은, 동메달
통권 제54, 55, 56호

6.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문방사우: 종이, 부, 먹, 벼루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두시언해 6:15(두시언해 제6권 제15장)

(4)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65:60(65 대 60)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쌈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7. 빗금(/)

(1)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쓴다.

먹이다/먹히다
남반구/북반구
금메달/은메달/동메달
(　　)이/가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이다.

(2)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

100미터/초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 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하고 생각하였다.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 호연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10. 소괄호(( ))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2014. 12. 19.(금)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기호(嗜好), 자세(姿勢)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4)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웃음)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 )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
민수가 할아버지( ) 꽃을 드렸다.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
(가) 동해, (나) 서해, (다) 남해

11. 중괄호({ })

(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주격 조사 { 이 / 가 }　　국가의 성립 요소 { 국토 / 국민 / 주권 }

(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 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

12. 대괄호 ([ ])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윤석중 전집 (1988), 70쪽 참조]
>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 신경준의 ≪여암전서≫에 "삼각산은 산이 모두 돌 봉우리인데, 그 으뜸 봉우리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白雲)이라 하며 [이하 생략]"
>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없다' 임.]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붙임]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백남준은 2005년에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붙임]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15. 줄표 (—)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이다.
>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이다.
>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붙임]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16. 붙임표 (-)

(1) 차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2)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 원-달러 환율
>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17. 물결표 (~)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 9월 15일~9월 25일
> 김정희(1786~1856)
>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붙임]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9월 15일-9월 25일
> 김정희(1786-1856)
>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18. 드러냄표(˙)와 밑줄(_)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 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붙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19. 숨김표(○,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 육군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0. 빠짐표 (□)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 大師爲法主口口賴之大口薦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21.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쓴다.

> "빨리 말해!"
> "……."

(3)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붙임 1]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 "어디 나하고 한번……."하고 민수가 나섰다.
>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2]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 "어디 나하고 한번…."하고 민수가 나섰다.
>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3]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3)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2. 표준어 규정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 321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321

제 1 절 자음 ····· 321
제 2 절 모음 ····· 323
제 3 절 준말 ····· 326
제 4 절 단수 표준어 ····· 328
제 5 절 복수 표준어 ····· 329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330

제 1 절 고어 ····· 330
제 2 절 한자어 ····· 330
제 3 절 방언 ····· 331
제 4 절 단수 표준어 ····· 332
제 5 절 복수 표준어 ····· 334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 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 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끄나풀	끄나불	
나팔-꽃	나발-꽃	
녘	녁	동~, 들~, 새벽~, 동틀 ~.
부엌	부억	
살-쾡이	삵-괭이	
칸	간	1. ~막이, 빈~, 방 한 ~. 2. '초가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임.
털어-먹다	떨어-먹다	재물을 다 없애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가을-갈이 거시기 분침	가을-카리 거시기 푼침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강낭-콩	강남-콩	
고삿	고샅	겉~, 속~.
사글-세	삭월-세	'월세'는 표준어임.
울력-성당	위력-성당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갈비	가리	~구이, ~찜, 갈빗-대.
갓모	갈모	1. 사기 만드는 물레 밑고리. 2. '갈모'는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
굴-젓	구-젓	
말-곁	말-겻	
물-수란	물-수랄	
밀-뜨리다	미-뜨리다	
적-이	저으기	적이-나, 적이나-하면.
휴지	수지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돌	돐	생일, 주기.
둘-째	두-째	'제2, 두 개째'의 뜻.
셋-째	세-째	'제3, 세 개째'의 뜻.
넷-째	네-째	'제4, 네 개째'의 뜻.
빌리다	빌다	1. 빌려 주다, 빌려 오다. 2. '용서를 빌다'는 '빌다'임.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	(×)	비 고
열두-째 스물두-째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로.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로.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	(×)	비 고
수-꿩	수-퀑/숫-꿩	'장끼'도 표준어임.
수-나사	숫-나사	
수-놈	숫-놈	
수-사돈	숫-사돈	
수-소	숫-소	'황소'도 표준어임.
수-은행나무	숫-은행나무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비 고
수-캉아지	숫-강아지	
수-캐	숫-개	
수-컷	숫-것	
수-키와	숫-기와	
수-탉	숫-닭	
수-탕나귀	숫-당나귀	
수-톨쩌귀	숫-돌쩌귀	
수-퇘지	숫-돼지	
수-평아리	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	(×)	비 고
숫-양 숫-염소 숫-쥐	수-양 수-염소 수-쥐	

제2절 모 음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깡충-깡충	깡총-깡총	큰말은 '껑충껑충'임.
-둥이	-동이	←童-이. 귀-, 막-, 선-, 쌍-, 검-, 바람-, 흰-.
발가-숭이	발가-송이	센말은 '빨가숭이', 큰말은 '벌거숭이, 뻘거숭이'임.
보퉁이	보통이	
봉죽	봉족	←奉足. ~꾼, ~ 들다.
뻗정-다리	뻗장-다리	
아서, 아서라	앗아, 앗아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
오뚝-이	오똑-이	부사도 '오뚝-이'임.
주추	주초	←柱礎. 주춧-돌.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부조(扶助)	부주	~금, 부좃-술.
사돈(査頓)	사둔	밭~, 안~.
삼촌(三寸)	삼춘	시~, 외~, 처~.

제9항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 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내기	-나기	서울-, 시골-, 신출-, 풋-.
냄비	남비	
동댕이-치다	동당이-치다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아지랑이	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미장이	미쟁이	
유기장이	유기쟁이	
멋쟁이	멋장이	
소금쟁이	소금장이	
담쟁이-덩굴	담장이-덩굴	
골목쟁이	골목장이	
발목쟁이	발목장이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괴팍-하다	괴퍅-하다/괴팩-하다	
-구먼	-구면	
미루-나무	미류-나무	←美柳~.
미륵	미력	←彌勒. ~보살, ~불, 돌~.
여느	여늬	
온-달	왼-달	만 한 달.
으레	으례	
케케-묵다	켸켸-묵다	
허우대	허위대	
허우적-허우적	허위적-허위적	허우적-거리다.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구려	-구료	
깍쟁이	깍정이	1. 서울 ~, 알~, 찰~. 2.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 은 '깍정이'임.
나무라다	나무래다	
미수	미시	미숫-가루.
바라다	바래다	'바램[所望]'은 비표준어임.
상추	상치	~쌈.
시러베-아들	실업의-아들	
주책	주착	←主責. ~망나니, ~없다.
지루-하다	지리-하다	←支離.
튀기	트기	
허드레	허드래	허드렛-물, 허드렛-일.
호루라기	호루루기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	(×)	비 고
윗-넓이	웃-넓이	
윗-눈썹	웃-눈썹	
윗-니	웃-니	
윗-당줄	웃-당줄	
윗-덧줄	웃-덧줄	
윗-도리	웃-도리	
윗-동아리	웃-동아리	준말은 '윗동'임.
윗-막이	웃-막이	
윗-머리	웃-머리	
윗-목	웃-목	
윗-몸	웃-몸	~ 운동.
윗-바람	웃-바람	
윗-배	웃-배	
윗-벌	웃-벌	
윗-변	웃-변	수학 용어.
윗-사랑	웃-사랑	
윗-세장	웃-세장	
윗-수염	웃-수염	
윗-입술	웃-입술	
윗-잇몸	웃-잇몸	
윗-자리	웃-자리	
윗-중방	웃-중방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	(×)	비 고
위-짝	웃-짝	
위-쪽	웃-쪽	
위-채	웃-채	
위-층	웃-층	
위-치마	웃-치마	
위-턱	웃-턱	~ 구름[上層雲].
위-팔	웃-팔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웃-국	윗-국	
웃-기	윗-기	
웃-돈	윗-돈	
웃-비	윗-비	~걷다.
웃-어른	윗-어른	
웃-옷	윗-옷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	(×)	비 고
구법(句法)	귀법	
구절(句節)	귀절	
구점(句點)	귀점	
결구(結句)	결귀	
경구(警句)	경귀	
경인구(警人句)	경인귀	
난구(難句)	난귀	
단구(短句)	단귀	
단명구(短命句)	단명귀	
대구(對句)	대귀	~법(對句法).
문구(文句)	문귀	
성구(成句)	성귀	~어(成句語).
시구(試句)	시귀	
어구(語句)	어귀	
연구(連句)	연귀	
인용구(引用句)	인용귀	
절구(絶句)	절귀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귀-글 글-귀	구-글 글-구	

제3절 준 말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귀찮다	귀치 않다	
김	기음	~매다.
똬리	또아리	
무	무우	~강즙, ~말랭이, ~생채, 가랑~, 갓~, 왜~, 총각~.
미다	무이다	1. 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다. 2. 찢어지다.
뱀	배암	
뱀-장어	배암-장어	
빔	비음	설~, 생일~.
샘	새암	~바르다, ~바리.
생-쥐	새앙-쥐	
솔개	소리개	
온-갖	온-가지	
장사-치	장사-아치	

제15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경황-없다	경-없다	
궁상-떨다	궁-떨다	
귀이-개	귀-개	
낌새	낌	
낙인-찍다	낙-하다/낙-치다	
내왕-꾼	냉-꾼	
돗-자리	돗	
뒤웅-박	뒝-박	
뒷물-대야	뒷-대야	
마구-잡이	막-잡이	
맵자-하다	맵자다	모양이 제격에 어울리다.
모이	모	
벽-돌	벽	
부스럼	부럼	정월 보름에 쓰는 '부럼'은 표준어임.
살얼음-판	살-판	
수두룩-하다	수둑-하다	
암-죽	암	
어음	엄	
일구다	일다	
죽-살이	죽-살	
퇴박-맞다	퇴-맞다	
한통-치다	통-치다	

[붙임]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	(×)	비 고
아래-로	알-로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본말	준말	비 고
거짓-부리		작은말은 '가짓부리, 가짓불'임
노을		저녁~
막대기		
망태기		
머무르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
서두르다		
서투르다		
석새-삼베	석새-베	
시-누이	시-뉘/시-누	
오-누이	오-뉘/오-누	
외우다	외다	외우며, 외워 : 외며, 외어.
이기죽-거리다	이죽-거리다	
찌꺼기	찌끼	'찌꺽지'는 비표준어임.

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거든-그리다	거둥-그리다	1.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 2. 작은말은 '가든-그리다'임.
구어-박다	구워-박다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
귀-고리	귀엣-고리	
귀-띔	귀-틤	
귀-지	귀에지	
까딱-하면	까땍-하면	
꼭두-각시	꼭둑-각시	
내색	나색	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
내숭-스럽다	내흉-스럽다	
냠냠-거리다	얌냠-거리다	냠냠-하다.
냠냠-이	얌냠-이	
너[四]	네	~ 돈, ~ 말, ~ 발, ~ 푼.
넉[四]	너/네	~ 냥, ~ 되, ~ 섬, ~ 자.
다다르다	다닫다	
댑-싸리	대-싸리	
더부룩-하다	더뿌룩-하다/듬뿌룩-하다	
-던	-든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임. 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던가	-든가	
-던걸	-든걸	
-던고	-든고	
-던데	-든데	
-던지	-든지	
-(으)려고	-(으)ㄹ려고/-(으)ㄹ라고	
-(으)려야	-(으)ㄹ려야/-(으)ㄹ래야	
망가-뜨리다	망그-뜨리다	
멸치	며루치/메리치	
반빗-아치	반비-아치	'반빗' 노릇을 하는 사람. 찬비(饌婢). '반비'는 밥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
보습	보십/보섭	
본새	뽄새	
봉숭아	봉숭화	'봉선화'도 표준어임.
빰-따귀	뺨-따귀/빰-따구니	'빰'의 비속어임.
뻐개다[斫]	뻐기다	두 조각으로 가르다.
뻐기다[誇]	뻐개다	뽐내다.
사자-탈	사지-탈	
상-판대기	쌍-판대기	
서[三]	세/석	~ 돈, ~ 말, ~ 발, ~ 푼.
석[三]	세	~ 냥, ~ 되, ~ 섬, ~ 자.
설령(設令)	서령	
-습니다	-읍니다	먹습니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음 뒤에는 '-ㅂ니다'임.

(○)	(×)	비 고
시름-시름	시늠-시늠	
씀벅-씀벅	썸벅-썸벅	
아궁이	아궁지	
아내	안해	
어-중간	어지-중간	
오금-팽이	오금-탱이	
오래-오래	도래-도래	돼지 부르는 소리.
-올시다	-올습니다	
옹골-차다	공골-차다	
우두커니	우두머니	작은말은 '오도카니'임.
잠-투정	잠-투세/잠-주정	
재봉-틀	자봉-틀	발~, 손~.
짓-무르다	짓-물다	
짚-북데기	짚-북세기	'짚북더기'도 비표준어임.
쪽	짝	편(귿). 이~, 그~, 저~. 다만, '아무-짝'은 '짝'임.
천장(天障)	천정	'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코-맹맹이	코-맹녕이	
흉-업다	흉-헙다	

제5절 복수 표준어

제18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ㄱ)	(ㄴ)	비 고
네	예	
쇠-	소-	-가죽, -고기, -기름, -머리, -뼈.
괴다	고이다	물이 ~, 밑을 ~.
꾀다	꼬이다	어린애를 ~, 벌레가 ~.
쐬다	쏘이다	바람을 ~.
죄다	조이다	나사를 ~.
쬐다	쪼이다	볕을 ~.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 ㄴ을 모두 표준어로 삼음)

(ㄱ)	(ㄴ)	비 고
거슴츠레-하다	게슴츠레-하다	
고까	꼬까	~신, ~옷.
고린-내	코린-내	
교기(驕氣)	갸기	교만한 태도.
구린-내	쿠린-내	
꺼림-하다	께름-하다	
나부랭이	너부렁이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난봉	봉	
낭떠러지	낭	
설거지-하다	설겆다	
애달프다	애닯다	
오동-나무	머귀-나무	
자두	오얏	

제2절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가루-약	말-약	
구들-장	방-돌	
길품-삯	보행-삯	
까막-눈	맹-눈	
꼭지-미역	총각-미역	
나뭇-갓	시장-갓	
늙-다리	노닥다리	
두껍-닫이	두껍-창	
떡-암죽	병-암죽	
마른-갈이	건-갈이	
마른-빨래	건-빨래	
메-찰떡	반-찰떡	
박달-나무	배달-나무	
밥-소라	식-소라	큰 놋그릇.
사래-논	사래-답	묘지기나 마름이 부쳐 먹는 땅.
사래-밭	사래-전	
삯-말	삯-마	
성냥	화곽	
솟을-무늬	솟을-문(~紋)	
외-지다	벽-지다	
움-파	동-파	
잎-담배	잎-초	
잔-돈	잔-전	
조-당수	조-당죽	
죽데기	피-죽	'죽더기'도 비표준어임.
지겟-다리	목-발	지게 동발의 양쪽 다리.
짐-꾼	부지-군(負持一)	
푼-돈	분-전/푼-전	
흰-말	백-말/부루-말	'백마'는 표준어임
흰-죽	백-죽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개다리-소반	개다리-밥상	
겸-상	맞-상	
고봉-밥	높은-밥	
단-벌	홑-벌	
마방-집	마바리-집	馬房~.
민망-스럽다/ 면구-스럽다	민주-스럽다	
방-고래	구들-고래	
부항-단지	뜸-단지	
산-누에	멧-누에	
산-줄기	멧-줄기/멧-발	
수-삼	무-삼	
심-돋우개	불-돋우개	
양-파	둥근-파	
어질-병	어질-머리	
윤-달	군-달	
장력-세다	장성-세다	
제석	젯-돈	
총각-무	알-무/알타리-무	
칫-솔	잇-솔	
포수	총-댕이	

제3절 방 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도 표준어로 남겨 둠)

(ㄱ)	(ㄴ)	비 고
멍게	우렁쉥이	
물-방개	선두리	
애-순	어린-순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귀밑-머리	귓-머리	
까-뭉개다	까-무느다	
막상	마기	
빈대-떡	빈자-떡	
생인-손	생안-손	준말은 '생-손'임.
역-겹다	역-스럽다	
코-주부	코-보	

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	비 고
-게끔	-게시리	
겸사-겸사	겸지-겸지/겸두-겸두	
고구마	참-감자	
고치다	낫우다	병을 ~.
골목-쟁이	골목-자기	
광주리	광우리	
괴통	호구	자루를 박는 부분.
국-물	멀-국/말-국	
군-표	군용-어음	
길-잡이	길-앞잡이	'길라잡이'도 표준어임.
까다롭다	까닭-스럽다/까탈-스럽다	
까치-발	까치-다리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
꼬창-모	말뚝-모	꼬챙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
나룻-배	나루	'나루[津]'는 표준어임.
납-도리	민-도리	
농-지거리	기롱-지거리	다른 의미의 '기롱지거리'는 표준어임.
다사-스럽다	다사-하다	간섭을 잘 하다.
다오	다구	이리 ~.
담배-꽁초	담배-꼬투리/ 담배-꽁치/담배-꽁추	
담배-설대	대-설대	
대장-일	성냥- 일	
뒤져-내다	뒤어-내다	
뒤통수-치다	뒤꼭지-치다	
등-나무	등-칡	
등-때기	등-떠리	'등'의 낮은 말.
등잔-걸이	등경-걸이	
떡-보	떡-충이	
똑딱-단추	딸꼭-단추	
매-만지다	우미다	
먼-발치	먼-발치기	
며느리-발톱	뒷-발톱	
명주-붙이	주- 사니	
목-메다	목-맺히다	
밀짚-모자	보릿짚-모자	
바가지	열-바가지/열-박	
바람-꼭지	바람-고다리	튜브의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쇠로 만든 꼭지.
반-나절	나절-가웃	
반두	독대	그물의 한 가지.
버젓-이	뉘연-히	
본-받다	법-받다	
부각	다시마-자반	

(○)	(×)	비 고
부끄러워-하다	부끄리다	
부스러기	부스럭지	
부지깽이	부지팽이	
부항-단지	부항-항아리	부스럼에서 피고름을 빨아내기 위하여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
붉으락-푸르락	푸르락-붉으락	
비켜-덩이	옆-사리미	김맬 때에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흙덩이.
빙충-이	빙충-맞이	작은말은 '뱅충이'.
빠-뜨리다	빠-치다	'빠트리다'도 표준어임.
뻣뻣-하다	왜긋다	
뽐-내다	느물다	
사로-잠그다	사로-채우다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 놓다.
살-풀이	살-막이	
상투-쟁이	상투-꼬부랑이	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
새앙-손이	생강-손이	
샛-별	새벽-별	
선-머슴	풋-머슴	
섭섭-하다	애운-하다	
속-말	속-소리	국악 용어 '속소리'는 표준어임.
손목-시계	팔목-시계/팔뚝-시계	
손-수레	손-구루마	'구루마'는 일본어임.
쇠-고랑	고랑-쇠	
수도-꼭지	수도-고동	
숙성-하다	숙-지다	
순대	골집	
술-고래	술-꾸러기/술-부대/술-보/술-푸대	
식은-땀	찬-땀	
신기-롭다	신기-스럽다	'신기하다'도 표준어임.
쌍동-밤	쪽-밤	
쏜살-같이	쏜살-로	
아주	영판	
안-걸이	안-낚시	씨름 용어.
안다미-씌우다	안다미-시키다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
안쓰럽다	안-슬프다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앉은뱅이-저울	앉은-저울	
알-사탕	구슬-사탕	
암-내	곁땀-내	
앞-지르다	따라-먹다	
애-벌레	어린-벌레	
얕은-꾀	물탄-꾀	
언뜻	펀뜻	
언제나	노다지	
얼룩-말	워라-말	

(○)	(×)	비 고
에는	엘랑	
열심-히	열심-으로	
입-담	말-담	
자배기	너벅지	
전봇-대	전선-대	
주책-없다	주책-이다	'주착→주책'은 제11항 참조.
쥐락-펴락	펴락-쥐락	
-지만	-지만서도	← -지마는.
짓고-땡	지어-땡/짓고-땡이	
짧은-작	짜른-작	
찹-쌀	이-찹쌀	
청대-콩	푸른-콩	
칡-범	갈-범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복 수 표 준 어	비 고
가는-허리/잔-허리	
가락-엿/가래-엿	
가뭄/가물	
가엾다/가엽다	가엾어/가여워, 가엾은/가여운.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개수-통/설거지-통	'설겆다'는 '설거지하다'로.
개숫-물/설거지-물	
갱-엿/검은-엿	
-거리다/-대다	가물, 출렁.
거위-배/횟-배	
것/해	내 ~, 네 ~, 뉘 ~.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고깃-간/푸줏-간	'고깃-관, 푸줏-관, 다림-방'은 비표준어임.
곰곰/곰곰-이	
관계-없다/상관-없다	
교정-보다/준 -보다	
구들-재/구재	
귀퉁-머리/귀퉁-배기	'귀퉁이'의 비어임.
극성-떨다/극성-부리다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	
기승-떨다/기승-부리다	
깃-저고리/배내-옷/배냇-저고리	
꼬까/때때/고까	~신, ~옷.
꼬리-별/살-별	
꽃-도미/붉-돔	
나귀/당-나귀	
날-걸/세-뿔	윷판의 쨀밭 다음의 셋째 밭.
내리-글씨/세로-글씨	

복 수 표 준 어	비 고
넝쿨/덩굴	'덩쿨'은 비표준어임.
녘/쪽	동~, 서~.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느리-광이/느림-보/늘-보	
늦-모/마냥-모	←만이앙-모.
다기-지다/다기-차다	
다달-이/매-달	
-다마다/-고말고	
다박-나룻/다박-수염	
닭의-장/닭-장	
댓-돌/툇-돌	
덧-창/겉-창	
독장-치다/독판-치다	
동자-기둥/쪼구미	
돼지-감자/뚱딴지	
되우/된통/되게	
두동-무니/두동-사니	윷놀이에서, 두 동이 한데 어울려 가는 말.
뒷-갈망/뒷-감당	
뒷-말/뒷-소리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들락-날락/들랑-날랑	
딴-전/딴-청	
땅-콩/호-콩	
땔-감/땔-거리	
-뜨리다/-트리다	깨-, 떨어-, 쏟-.
뜬-것/뜬-귀신	
마룻-줄/용총-줄	돛대에 매어 놓은 줄. '이어줄'은 비표준어임.
마-파람/앞-바람	
만장-판/만장-중(滿場中)	
만큼/만치	
말-동무/말-벗	
매-갈이/매-조미	
매-통/목-매	
먹-새/먹음-새	'먹음-먹이'는 비표준어임.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멱통/산-멱/산-멱통	
면-치레/외면-치레	
모-내다/모-심다	모-내기, 모-심기.
모쪼록/아무쪼록	
목판-되/모-되	
목화-씨/면화-씨	
무심-결/무심-중	
물-봉숭아/물-봉선화	
물-부리/빨-부리	
물-심부름/물-시중	
물추리-나무/물추리-막대	
물-타작/진-타작	
민둥-산/벌거숭이-산	
밑-층/아래-층	
바깥-벽/밭-벽	

복 수 표 준 어	비 고
바른/오른[右]	~손, ~쪽, ~편.
발-모가지/발-목쟁이	'발목'의 비속어임.
버들-강아지/버들-개지	
벌레/버러지	'벌거지, 벌러지'는 비표준어임.
변덕-스럽다/변덕-맞다	
보-조개/볼-우물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	'행-내기'는 비표준어임.
볼-따구니/볼-퉁이/볼-때기	'볼'의 비속어임.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	'부치개-질'은 비표준어임.
불똥-앉다/등화-지다/등화-앉다	
불-사르다/사르다	
비발/비용(費用)	
뾰두라지/뾰루지	
살-쾡이/삵	삵-피.
삽살-개/삽사리	
상두-꾼/상여-꾼	'상도-꾼, 향도-꾼'은 비표준어임.
상-씨름/소-걸이	
생/새앙/생강	
생-뿔/새앙-뿔/생강-뿔	'쇠뿔'의 형용.
생-철/양-철	1. '서양철'은 비표준어임. 2. '生鐵'은 '무쇠'임.
서럽다/섧다	'설다'는 비표준어임.
서방-질/화냥-질	
성글다/성기다	
-(으)세요/-(으)셔요	
송이/송이-버섯	
수수-깡/수숫-대	
술-안주/안주	
-스레하다/-스름하다	거무-, 발그-.
시늉-말/흉내-말	
시새/세사(細沙)	
신/신발	
신주-보/독보(櫝褓)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씁쓰레-하다/씁쓰름-하다	
아귀-세다/아귀-차다	
아래-위/위-아래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앉음-새/앉음-앉음	
알은-척/알은-체	
애-갈이/애벌-갈이	
애꾸눈-이/외눈-박이	'외대-박이, 외눈-퉁이'는 비표준어임.
양념-감/양념-거리	
어금버금-하다/어금지금-하다	
어기여차/어여차	
어림-잡다/어림-치다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어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얼렁-뚱땅/엄벙-뗑	

복 수 표 준 어	비 고
여왕-벌/장수-벌	
여쭈다/여쭙다	
여태/입때	'여직'은 비표준어임.
여태-껏/이제-껏/입때-껏	'여직-껏'은 비표준어임.
역성-들다/역성-하다	'편역-들다'는 비표준어임.
연-달다/잇-달다	
엿-가락/엿-가래	
엿-기름/엿-길금	
엿-반대기/엿-자박	
오사리-잡놈/오색-잡놈	'오합-잡놈'은 비표준어임.
옥수수/강냉이	~떡, ~묵, ~밥, ~튀김.
왕골-기직/왕골-자리	
외겹-실/외올-실/홑-실	'홑겹-실, 올-실'은 비표준어임.
외손-잡이/한손-잡이	
욕심-꾸러기/욕심-쟁이	
우레/천둥	우렛-소리, 천둥-소리.
우지/울-보	
을러-대다/을러-메다	
의심-스럽다/의심-쩍다	
이에요/이어요	
이틀-거리/당-고금	학질의 일종임.
일일-이/하나-하나	
일찌감치/일찌거니	
입찬-말/입찬-소리	
자리-옷/잠-옷	
자물-쇠/자물-통	
장가-가다/장가-들다	'서방-가다'는 비표준어임.
재롱-떨다/재롱-부리다	
제-가끔/제-각기	
좀-처럼/좀-체	'좀-체로, 좀-해선, 좀-해'는 비표준어임.
줄-꾼/줄-잡이	
중신/중매	
짚-단/짚-뭇	
쪽/편	오른~, 왼~.
차차/차츰	
책-씻이/책-거리	
척/체	모르는 ~, 잘난 ~.
천연덕-스럽다/천연-스럽다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철-때기'는 비표준어임.
추어-올리다/추어-주다	'추켜-올리다'는 비표준어임.
축-가다/축-나다	
침-놓다/침-주다	
통-꼭지/통-젖	통에 붙은 손잡이.
파자-쟁이/해자-쟁이	점치는 이.
편지-투/편지-틀	
한턱-내다/한턱-하다	
해웃-값/해웃-돈	'해우-차'는 비표준어임.
혼자-되다/홀로-되다	
흠-가다/흠-나다/흠-지다	

3.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1 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 2 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 3 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 4 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 2 장 표기 일람표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 모 음		모 음	
국제 음성 기호	한 글		국제 음성 기호	한 글	국제 음성 기호	한 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ㅂ, 프	j	이*	i	이
b	ㅂ	브	ɥ	위	y	위
t	ㅌ	ㅅ, 트	w	오, 우*	e	에
d	ㄷ	드			ø	외
k	ㅋ	ㄱ, 크			ɛ	에
g	ㄱ	그			ɛ̃	앵
f	ㅍ	프			œ	외
v	ㅂ	브			œ̃	윙
θ	ㅅ	스			æ	애
ð	ㄷ	드			a	아
s	ㅅ	스			ɑ	아
z	ㅈ	즈			ɑ̃	앙
ʃ	시	슈, 시			ʌ	어
ʒ	ㅈ	지			ɔ	오
ts	ㅊ	츠			c	옹
dz	ㅈ	즈			o	오
tʃ	ㅊ	치			u	우
ʤ	ㅈ	지			ə**	어
m	ㅁ	ㅁ			ə.	어
n	ㄴ	ㄴ				
ɲ	니*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르				
h	ㅎ	흐				
ç	ㅎ	히				
x	ㅎ	흐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제3장 표기 세칙

제1절 영어의 표기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1항 무성 파열음 ([p], [t], [k])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gap[gæp] 갭	cat[kæt] 캣	book[buk] 북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apt[æpt] 앱트	setback[setbæk] 셋백	act[ækt] 액트

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stamp[stæmp] 스탬프	cape[keip] 케이프	nest[nest] 네스트
part[pɑ:t] 파트	desk[desk] 데스크	make[meik] 메이크
apple[æpl] 애플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chipmunk[tʃipmʌŋk] 치프멍크
sickness[siknis] 시크니스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bulb[bʌlb] 벌브	land[lænd] 랜드	zigzag[zigzæg] 지그재그
lobster[lɔbstə] 로브스터	kidnap[kidnæp] 키드냅	signal[signəl] 시그널

제3항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mask[mɑ:sk] 마스크	jazz[dʒæz] 재즈	graph[græf] 그래프
olive[ɔliv] 올리브	thrill[θril] 스릴	bathe[beið] 베이드

2.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섀',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flash[flæʃ] 플래시	shrub[ʃrʌb] 슈러브	shark[ʃɑ:k] 샤크
shank[ʃæŋk] 섕크	fashion[fæʃən] 패션	sheriff[ʃerif] 셰리프
shopping[ʃɔpiŋ] 쇼핑	shoe[ʃu:] 슈	shim[ʃim] 심

3.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ㅈ'으로 적는다.

mirage[mirɑ:ʒ] 미라지	vision[viʒən] 비전

제4항 파찰음([ts], [dz], [tʃ], [d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ʃ], [dʒ]는 '치', '지'로 적는다.

Keats[ki:ts] 키츠	odds[ɔdz] 오즈	switch[switʃ] 스위치
bridge[bridʒ] 브리지	Pittsburgh[pitsbə:g] 피츠버그	hitchhike[hitʃhaik] 히치하이크

2. 모음 앞의 [tʃ], [dʒ]는 'ㅊ', 'ㅈ'으로 적는다.

chart[tʃɑ:t] 차트	virgin[və:dʒin] 버진

제5항 비음([m], [n], [ŋ])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steam[sti:m] 스팀	corn[kɔ:n] 콘	ring[riŋ] 링
lamp[læmp] 램프	hint[hint] 힌트	ink[iŋk] 잉크

2.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

hanging[hæŋiŋ] 행잉	longing[lɔŋiŋ] 롱잉

제6항 유음([l])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

hotel[houtel] 호텔	pulp[pʌlp] 펄프

2.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다만,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slide[slaid] 슬라이드	film[film] 필름	helm[helm] 헬름
swoln[swouln] 스월른	Hamlet[hæmlit] 햄릿	Henley[henli] 헨리

제7항 장모음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team[ti:m] 팀	route[ru:t] 루트

제8항 중모음([ai], [au], [ei], [ɔi], [ou], [auə])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time[taim] 타임	house[haus] 하우스	skate[skeit] 스케이트
oil[ɔil] 오일	boat[bout] 보트	tower[tauə] 타워

제9항 반모음([w], [j])

1.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 [wou]는 '워', [wɑ]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word[wəːd] 워드	want[wɔnt] 원트	woe[wou] 워
wander[wɑndə] 완더	wag[wæg] 왜그	west[west] 웨스트
witch[witʃ] 위치	wool[wul] 울	

2.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swing[swiŋ] 스윙	twist[twist] 트위스트	penguin[peŋgwin] 펭귄
whistle[hwisl] 휘슬	quarter[kwɔːtə] 쿼터	

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얘',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yard[jɑːd] 야드	yank[jæŋk] 얭크	yearn[jəːn] 연
yellow[jelou] 옐로	yawn[jɔːn] 욘	you[juː] 유
year[jiə] 이어	Indian[indjən] 인디언	battalion[bətæljən] 버탤리언
union[juːnjən] 유니언		

제10항 복합어

1.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cuplike[kʌplaik] 컵라이크	bookend[bukend] 북엔드
headlight[hedlait] 헤드라이트	touchwood[tʌtʃwud] 터치우드
sit-in[sitin] 싯인	bookmaker[bukmeikə] 북메이커
flashgun[flæʃgʌn] 플래시건	topknot[tɔpnɔt] 톱놋

2.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Los Alamos[lɔs æləmou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top class[tɔpklæs] 톱 클래스/톱클래스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1절 표기 원칙

제1항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kara 앙카라	Gandhi 간디

제3항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Hague 헤이그	Caesar 시저

제4항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東京 : 도쿄, 동경	京都 : 교토, 경도	上海 : 상하이, 상해
臺灣 : 타이완, 대만	黃河 : 황허, 황하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제1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홍해	발트해	아라비아해

제2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타이완섬	코르시카섬	(우리나라 : 제주도, 울릉도)

제3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온타케산(御岳)	주장강(珠江)	도시마섬(利島)
하야카와강(早川)	위산산(玉山)	

제4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Rio Grande 리오그란데강	Monte Rosa 몬테로사산
Mont Blanc 몽블랑산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산맥